



2011

여성기업 백서



발간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산업의 고도화, 고령화 및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역할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업 활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여 122만 개를 넘어서서 전체 사업체의 3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는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기업의 양적 성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경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의 여성기업 정책은 매년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창업,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지원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14개의 여성기업지원종합센터가 설립되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조직되어 정책집행의 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기업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여성기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여성기업 백서는 여성기업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발전과제를 도출하여 필요한 정책과 연구를 제안하는 여성기업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료집입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적 전환점을 맞는 이 시점에 여성기업의 개념체계, 국내외 여성기업 관련법과 제도의 비교분석,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여성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통해 여성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여성기업 백서가 정부의 발전된 정책과 여성기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연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2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전 수 혜**

목 차

발 간 사

제1부 총 론

제1장 여성기업에 대한 이해

- 1. 여성기업 정의 3

제2장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 1. 국내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6
- 2. 해외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13

제3장 여성기업의 현황 및 특성

- 1.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및 창업 21
- 2. 아·태지역 여성기업 현황 26
- 3. 우리나라 여성기업 현황 29
- 4. 여성기업인의 특성 33
- 5. 여성기업의 중요성 38

제2부 여성기업의 현주소

제1장 여성창업 동향

- 1. 창업 특성 43
- 2. 창업기업의 애로와 문제 52

제2장 여성기업 동향

- 1. 여성기업의 구조 59

2. 경영지표상의 변화 추세	62
3. 사업현황에 대한 인식 수준	65
4. 경영활동 애로사항	67
5. 교육·연수의 요구 수준	71
6.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	76

제3부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

제1장 국내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1. 개 요	83
2. 주요 지원기관 현황	91

제2장 국내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

1. 개 요	108
2. 중앙부처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	111
3.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사업 성과	165
4.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공사례	168

제3장 해외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1. 미국의 여성기업지원 현황	187
2. 영국의 여성기업지원 현황	191
3. 일본의 여성기업지원 현황	195
4. 대만의 여성기업지원 현황	197
5. 독일의 여성기업지원 현황	200
6. 각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비교	202

제4부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제1장 여성기업 발전과제

1. 보호·육성정책의 전환	207
2.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방향	208
제2장 여성창업 촉진과제	
1.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연구 추진	215
2. 준비된 창업유도로 성공률 제고	234
3.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 촉진	248
4.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촉진	253
5.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확대	259
6. 여성창업에 대한 홍보 강화	268
제3장 여성기업 육성과제	
1. 여성기업 마케팅지원 확대	271
2.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280
3. 여성기업의 네트워크 및 혁신역량 강화	286
4.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구조전환	294
제4장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1. 여성기업관련 제도 및 법률 검토	299
2.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	315
3. 여성기업정책연구원(가칭 : KWEPI) 설립 운영	319
4. 여성기업 공제조합 설립 운영	323
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증장기 발전전략	327
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혁신전략	338
별첨자료	343
표목차	490
그림목차	498

제 1 장

여성기업에 대한 이해

1. 여성기업 정의

가. 국내의 여성기업 정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그 기준은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 ②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이다.

한편, 우리나라 통계청은 여성기업을 여성이 대표하는 사업체 즉, 여성이 대표자로서 실제 경영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¹⁾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목상으로 여성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경영자는 남편 등 남성인 기업도 여성기업으로 파악될 수 있는 문제가

1) 정의선, 여성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2002

통계청 등의 공식통계에서는 여성명의로 된 기업을 모두 여성기업으로 간주²⁾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해외의 여성기업 정의

미국은 여성기업에 대해 여성에 의한 소유개념 이외에 ‘일상영업’을 여성기업 개념에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엄격한 개념으로 여성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여성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에 대한 권한과 법적 책임에 있어서 여성의 소유여부에 대한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대만의 경우에는 여성이 기업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나 서류상에 여성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여성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들 보다 가장 폭넓은 개념을 적용하여 여성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인도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여성의 직접적인 소유나 경영의 관점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이 고용한 여성의 비율, 즉 여성고용비율을 여성기업의 요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각 나라별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르게 정의되어져 있지만, 여성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로 여성기업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나라별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본다.

2) 김정조, 한국의 여성기업, 2010

〈표 1-1〉 각 나라별 여성기업 정의

구분	개념
미국	미국의 중소기업법(1953년 제정)은 여성기업을 ‘1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의 기업을 소유(공개된 기업의 경우 주식의 51%)하는 1인 이상의 기업으로, 경영(management) 및 일상 영업(daily business operation)이 1인 이상의 여성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으로 정의
독일	독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따른 법률(2001년 통과)에 따라 여성기업을 ‘기업의 모든 의사 자율권과 법적 책임을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라고 정의 ³⁾
대만	대만은 ‘여성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여성이름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정의 ⁴⁾
인도	인도는 여성기업을 ‘여성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 기업으로 기업자본금의 최소 51%를 여성이 투자하고, 적어도 기업의 고용인력 중에서 51%가 여성인 기업’으로 정의

다. 본 백서에서의 정의

본 백서의 2부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기업의 현황자료는 정부의 사업체 통계(establishment statistics), 즉 정부의 사업체조사에서 파악되는 사업체, 경제단체나 협회의 등록 사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록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른 여성기업의 정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된 여성기업의 정의와는 의미상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백서에서는 여성기업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를 여성기업이라고 정의한다. 아울러, 앞서 발견된 국내와 해외의 여성기업 정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여성기업을 재정의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3) 중소기업청, 선진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실질적인 여성기업지원사업 수립방안, 2004

4) 중소기업청, 선진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실질적인 여성기업지원사업 수립방안, 2004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1. 국내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가. 여성발전기본법(1995. 12. 30. 제정, 2011. 6. 7. 일부개정)

1) 입법 배경과 취지

1995년 UN이 개최한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정부와 다른 모든 기관들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성 주류화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에서는 성 주류화 정책이 주요정책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였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여성계의 활발한 활동과 정부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정부장관(제2)실을 설치하였으며, 1995년에는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마련하고, 그 과제의 하나로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가 여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 제정되었다.⁵⁾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⁶⁾

5) 국회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서울: 동 위원회), 2006

6) 국회 행정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안 심사보고서(서울: 동 위원회, 1995) 동법의 제안경위는 다음과 같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주양자의원 외 22인으로부터 1995년 12월 6일 발의되어 동년 12월 7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건의 제정 법안에 대하여 제177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1995년 12월 12일)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3차-

2)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총 6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제6장 보칙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목적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남녀평등 촉진, 모성 보호, 성차별적 의식 해소 및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건강한 가정조성,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또한 앞에서 말한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각 대상별 노력과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등의 책무와 그에 따른 조치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렇게 시행된 정책을 분석·평가하며 이를 담당할 지정기관의 대상과 기준 및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설치 및 역할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년 중 1주년을 여성주간으로 정한다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여성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의 공직 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고용 전반에 남녀평등을

제5차 회의(1995년 12월 14일, 15일, 18일)를 열고 2건의 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상기 양 법안은 각각 본회의를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법안의 공통 내용인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촉진을 골자로 하는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였으며, 제9차 위원회(1995년 12월 19일)에서 이를 행정위원회의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달성하기 위한 고용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 조치방안 및 조치결과의 공표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노력과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마련, 여성의 직장 및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지원시책,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지원책, 여성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법제도 또는 시책 마련, 여성의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과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활성화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보호를 위한 여성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제4장은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와 기금관리자의 지정 및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5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및 청문 등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6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내용과 매년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과 여성관련 입법 간의 중간법’이며, 종합적인 ‘여성지위향상법’인 동시에 여성정책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법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정책의 수립, 운용절차와 메커니즘을 정하는 도구로서 ‘정책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내용 및 방향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⁷⁾ 받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목적과 같이 양성평등이나 여성발전을 위한 실체적 내용을 모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범력을 가지는 실체법으로서의 내용은 개별 법률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2009

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2. 5. 제정, 2009. 12. 30 일부개정)

1) 입법 배경 및 취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문적 능력을 갖춘 고급 여성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생활 참여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과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었으므로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1997년 11월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 과 ‘여성경제인지원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 각각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었고, 양 법안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산업자원위원회가 이를 통합한 법안을 제출⁸⁾한 결과, 1999년 1월 6일 제19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러한 통합 법안을 통해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될 수 있었다.⁹⁾

2) 주요 개정 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은 1999년 제정된 후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총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1차 개정(2005년 5월)은 제정법상 여성경제인의 정의가 여성기업의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한 기업의 최고이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업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여성경제인으로 인정

8) 지성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경과, 1999

9)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서울·동 위원회),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기업활동 참여와 창업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하고, 여성경제인지원 및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정착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1998

되지 않아 법률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여성경제인의 정의를 ‘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규정하여 여성경제인의 범위를 모든 기업의 여성임원으로 확대시켜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동기 부여, 여성의 고용 증대 및 경제 기여도 증가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차 개정(2009년 5월)은 여성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통폐합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개정 전 법률상의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와 통합하여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촉진위원회는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정 전 법률에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구매 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주요 납품업체수의 10~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구매 총액 대비 여성기업에 대한 구매 비중은 2.8%로 과도하게 낮은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제시하되, 공공기관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개정(2009년 12월)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등 통보절차 규정에 대한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문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개정 전 법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계약실적 통보절차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동 법에서는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계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계약실적 대신 구매실적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것으로서 한자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우리말 순화,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는 수정, 길고 복잡한 문장의 간소화 등을 통해 법령 수요자인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였다.

3)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미국과 같이 중소기업법 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아닌, 독립된 법으로 1999년에 제정되었다.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목적, 여성기업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의 창업지원시책, 그리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및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성기업지원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목적을 기반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여성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법률에서는 이러한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¹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소유와 경영’에

10)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 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으로 등기된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 ②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그리고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하며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백서의 제4부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여성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본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는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심의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한 현황 및 성과 그리고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2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안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여성창업 촉진과 더불어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실시하도록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매년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여성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 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경영안정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지원의 구심체 역할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등의 업무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협회 산하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법 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아닌 독립된 법으로서,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해외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현황

해외 국가들도 각자 자국의 여성기업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적으로 별도의 독립법을 제정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간접적으로 타 법률 내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해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 장에서는 독립법을 시행중인 미국과 근거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영국, 일본 등의 법률 현황을 살펴본다.

가. 미 국

1) 개 요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기업 관련 법안은 1988년에 제정된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으로서, 이 법은 1964년에 소수자 및 여성의 차별 금지 및 이들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민권리법(Civil Right Act)」과 1974년에 혼인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신용기회평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등을 제정배경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법률의 변화

1964년 민권법 제7장에서 인종, 성별 등 소수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함에 따라서 많은 여성이 비전통적 직업영역에 참여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에 성별 또는 혼인상태에 따른 신용거래상의 차별을 금지하였다. 또한, 여성에게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신용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972년에 제정된 「고용평등법」은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였다. 1974년에 「신용기회평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의 제정으로 혼인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1977년 「공공사업고용법(Public Works Employment Act)」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정부 조달부문에서 정부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소수 집단 또는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우대하도록 하였다. 본 법안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제8조 내에 규정되었다.

1978년에 제정된 「우대 조치법(Affirmative Action Act)」은 연방정부의 구매 시, 소기업 및 여성소기업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988년에는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이 제정되어 여성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법률적인 근간이 되었다.

1991년에 「여성기업개발법(Women's Business Development Act) 및 1994년에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이 제정되었으며, 복잡한 연방정부의 조달체제를 단순화시키고 각 연방기구와 여성소기업간 5% 계약목표가 수립되었다. 또한, 전국 여성기업위원회의 조직체계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2000년부터 '여성소기업 연방정부 계약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법 제8조)을 시행하여 여성소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정부기구로 하여금 '제한경쟁'을 허용하도록 하여 기존 여성기업인에게 일정률의 계약을 지원하던 조치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3년에 제정된 「여성소기업증진법(Women's Small Business Improvement Act)」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국(Office of Women's Business Ownership)을 설치하였으며, 여성기업국은 110개의 지방 여성기업 센터와 온라인 여성기업센터의 사업관할, 기술, 회계, 관리에 관한 정보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여성기업센터유지법(Women's Business Centers Preservation Act)」을 제정하여 여성기업센터를 영구사업화 함으로써, 센터의 신설과 기존 센터의 예산지원을 연장하였다.

3) 주요 법률 내용

세계 최초의 여성기업법인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 WBOA)」의 입법 배경에는 여성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미국의 경제발전에서 공헌자로 보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여성경제인법'으로 일맥상통하는 본 법은 여성이 소유 및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법 내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별도로 수정한 법률이다.

이러한 여성기업소유법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기업의 법률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고, 여성기업이 자본 및 다른 생산요소들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을 분석·정의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한편, 상호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여성경제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 여성기업소유법 제정 목적 >

-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소기업의 법률적 이익 증진
- 자본과 다른 생산요소들에 접근하는 경우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 제거
- 여성경제인들이 겪는 차별장벽을 분석, 정의, 확인하는 정부의 노력에 의회의 참여를 요청
- 협력관계 형성에서 여성경제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포함

여성기업소유법에서는 여성기업의 정의, 지원방안, 지원예산 및 운용방안, 국가여성기업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여성기업의 정의로서,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이란 ‘1명 또는 2명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에서 1명 또는 2명 이상의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여성기업지원기관의 설립방안으로서,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소기업을 위해서 시범계획을 시행하려는 비영리 민간단체(Private Organization)들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는 타당성을 평가하고 승인한 후에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여성기업들의 경영·자금·마케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¹¹⁾ 둘째, 경영능력 기술 지원

11)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시범사업으로 1991년 만료되는 시점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시행된

방안으로서, 여성기업인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산 및 운용 위임방안으로서, 제201조에 따라 필요한 시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본에 대한 접근 보장에서는 「소비자신용보호법률」을 수정하여 「보증 및 우대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채권자들에게 공통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자들에게 5만달러 이하의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여성기업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는 ‘국가여성기업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여성 소유의 기업들이 미국 경제의 주류에 합류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장벽 등을 포함한 여성 소유 기업의 지위, 상태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연방정부의 구매 조달 등 여성 소유기업과 관련된 정부주도 사업 등을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이후 매 12개월마다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소유기업의 지위 및 상태 등에 대한 검토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 여성소유기업과 관련된 정부주도 사업에 대한 검토,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인구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노동통계청, 인구조사청에서 동법의 여성기업 정의에 따라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수를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달자료에 의거하여 각각의 연방대행기관들은 성별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기업 및 여성기업 수에 관한 정보를 연방조달정책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991년에 「여성기업소유법」을 개정한 「여성기업개발법(Women's Business Development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여성기업소유법」에

모든 민간단체의 시범계획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상·하원의 소기업위원회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i) 지원받는 사람들의 수, ii) 이제 시작되고 있는 사업 수, iii) 지원사업의 총 수명액

iv) 지원받는 회사의 이익 증감, v) 지원받는 회사에게 발생한 고용률의 증감

또한, 이 보고서는 적어도 24개월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30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의해 지원된 여성기업들이 나름의 성과를 보임에 따라, 1991년에 종료되는 시범사업 및 소자본 대출프로그램을 연장시켜 미국 내 여성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기업개발법은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운영과 시범사업들의 연장,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운영방식에 있어서 수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소액대출 프로그램 운영방식 >

-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소기업을 위해서 시범계획을 시행하는 민간단체(Private Organization)들에게 정부 보조금과 동일한 매칭 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지원
- 1차년도에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2:1, 2차년도에는 1:1, 3차년도에는 1:2의 비율로 민간단체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

4)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률 특징 요약

미국의 중소기업법은 법의 목적에서부터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범위와 지원시책에 이르기까지 법규의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법규시행기관의 자의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여성기업에 주어져야 할 지원혜택이 남성기업에 돌아갈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여성기업의 지원사항도 지원방법(직접대출 또는 보증)과 절차, 그리고 대출한도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에서 여성경제인법이라고 평가되는 여성기업소유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미국 내에서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여성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축인 동시에 미국 경제발전의 공헌자로 인정하였으며, 미국 중소기업법의 내용 중에서 여성기업에 관한 부분을 새롭게 확대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영국

영국의 여성기업 관련법 규정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여성기업을 위한 독립법이 아닌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률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며, 영국의 여성기업 및 남녀평등 관련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영국의 여성기업 및 남녀평등 관련 주요 법률 >

- 평등임금법(Equal Act)
-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 공정고용법(Fair Employment(Northern Ireland) Act)

평등임금법이 도입된 1970년 이전의 영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시장경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 평등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뒷받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은 1992년 이후부터 육아정책, 모성에 대한 고려,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보호, 교육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은 없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민간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교육 및 훈련, 자금 지원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체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11월 자료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여성기업가를 위하여 5,000명의 비즈니스 멘토 모집계획을 발표하였고, 비즈니스 멘토는 여성기업인의 사업 설립을 돕는 목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매년 42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¹²⁾

12) computerworld UK, By Anh Nauyev, published 4th Nov, 2011

다. 일본

일본은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을 직접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법 역시 현재 구비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 규모인 여성기업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¹³⁾ 다만, 1999년 산업회복법 보충결의안에 ‘정부는 여성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최초로 공식 문서화하였다.¹⁴⁾ 2003년 11월에는 민노당이 노동 고용 조항에 여성기업가 및 비영리조직의 양적 확대 및 여성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서 일정부분 정부계약에 대한 보장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성지원 관련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라. 대만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본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발전법(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Statute)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발전법 내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기업지원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 또한 제정되어 있지 않다.

13) 이태야, 여성기업지원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14) 이정섭, 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2007

제 3 장

여성기업의 현황 및 특성

1.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및 창업

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OECD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로 한국의 15세~6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6~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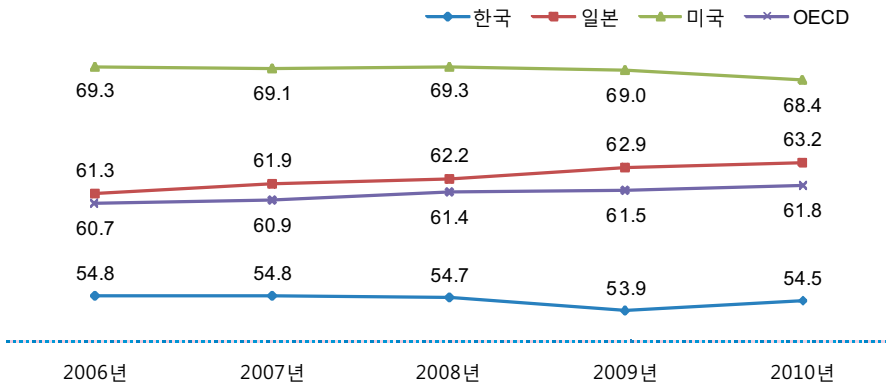
2006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4.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0.7%와 5.9%p 차이를 보였으며, OECD 34개 회원국 중 30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4.5%, OECD 평균은 61.8%로 7.3%p 차이로 격차는 벌어졌으나, 순위는 30위로 2006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 미국과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2006년 미국은 69.3%, 일본은 61.3%를 보이며 한국과 각각 14.5%p, 6.5%p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후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답보상태를 유지하며 격차가 점점 커지다가 2009년에는 최대 9%p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와서는 미국이 68.4%로 2008년 이후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63.2%로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2009년도 대비 0.6%p가 증가했지만, OECD 평균 및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흐름상으로 본다면, 전쟁 직후 태어나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격변기를 거치며 생활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6.5%에 그친 것에 반해, 베이비부머

세대¹⁵⁾의 자녀인 에코부머세대¹⁶⁾에서는 54.6%로 크게 증가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한국의 대졸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61.8%로 OECD 회원국 평균 82.8%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한국의 대졸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91.8%로 OECD 회원국 평균 92.1%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 OECD 주요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15~64세)
(단위 : %)



※ 자료 : OECD, 2011 Employment Outlook

또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 여성인력의 고용률은 52.6%로 2006년 53.1% 대비 0.5%p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56.7%보다 4.1%p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별 여성고용률을 보면, 일본의 경우 2006년 58.8%에서 2007년 59.5%, 2008년 59.7%, 2009년 59.8%, 2010년 60.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2006년 66.1%에서 2007년 65.9%, 2008년 65.5%, 2009년 63.4%, 2010년 62.4%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15) baby-boomer, 2차대전 이후 1946-196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16) echo-boomer, 1979-198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경우 2006년 68.8%에서 2007년 69.9%, 2008년 70.1%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9년 69.0%, 2010년 68.8%로 감소하면서 2006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6년 53.1%, 2007년 53.2%, 2008년 53.2%를 기록하며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2009년 52.2%, 2010년 52.6%로 2006년과 비교 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 평균을 보면, 2006년 56.7%, 2007년 57.2%, 2008년 57.6%로 증가하다가 2009년과 2010년에는 56.7%로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성 고용률에 대한 OECD 평균치와 주요 국가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일본, 미국, 캐나다는 OECD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 평균치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표 1-2〉 OECD 주요국가의 여성고용률 추이(15~64세)

(단위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한국	53.1	53.2	53.2	52.2	52.6
일본	58.8	59.5	59.7	59.8	60.1
미국	66.1	65.9	65.5	63.4	62.4
캐나다	68.8	69.9	70.1	69.0	68.8
OECD 평균	56.7	57.2	57.6	56.7	56.7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측면에서 남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이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1년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남성은 평균 74.0%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은 49.8%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24.2%p,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11.8%p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에서도 남성은 2002년에서 2011년까지 평균 71.2%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은 48.3%로, 남성의 고용률보다 22.9%p, 전체고용률보다 11.1%p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20대에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 대부분이 30~40대가 되면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줄어들었다가, 40~50대가 되면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다시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M자형 곡선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1-3〉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경제 활동 인구	남	13,435	13,539	13,727	13,883	13,978	14,124	14,208	14,319	14,492	14,683	14,039
	여	9,486	9,418	9,690	9,860	10,001	10,092	10,139	10,076	10,256	10,416	9,943
	전체	22,921	22,957	23,417	23,743	23,978	24,216	24,347	24,394	24,748	25,099	23,982
경제 활동 참가율	남	75.0	74.7	75.0	74.6	74.1	74.0	73.5	73.1	73.0	73.1	74.0
	여	49.8	49.0	49.9	50.1	50.3	50.2	50.0	49.2	49.4	49.7	49.8
	전체	62.0	61.5	62.1	62.0	61.9	61.8	61.5	60.8	61.0	61.1	61.6
고용률	남	72.2	71.9	72.0	71.6	71.3	71.3	70.9	70.1	70.1	70.5	71.2
	여	48.4	47.4	48.3	48.4	48.8	48.9	48.7	47.7	47.8	48.1	48.3
	전체	60.0	59.3	59.8	59.7	59.7	59.8	59.5	58.6	58.7	59.1	59.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2011

나. 여성창업률

OECD Science의 2010년 각 나라별 여성창업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창업률은 19.8%로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여성창업률이 높은 나라로는 멕시코가 51.2%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가 50.7%로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 43.3%, 중국 42.0%, 일본 32.6%의 여성창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 한국보다 여성창업률이 높고, 그 격차 또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여성창업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그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1-4〉 국가별 여성창업률 현황

(단위 : %)

국가명	2010년	2005년	국가명	2010년	2005년
멕시코	51.2	35.4	영국	34.0	26.2
러시아	50.7	-	스페인	33.9	41.4
남아프리카	45.7	44.8	핀란드	32.9	33.6
브라질	45.4	42.2	일본	32.6	29.1
벨기에	43.7	33.9	포르투갈	31.7	-
미국	43.3	39.3	헝가리	31.5	-
프랑스	42.6	34.2	네덜란드	31.3	29.8
중국	42.0	38.9	덴마크	30.9	28.4
스위스	41.8	40.4	아일랜드	30.1	27.0
칠레	41.4	36.4	노르웨이	29.8	27.1
이탈리아	40.1	33.8	스웨덴	29.5	32.7
호주	39.7	35.9	그리스	25.2	37.0
이스라엘	36.6	-	슬로베니아	24.5	30.6
독일	36.5	33.5	한국	19.8	-
아이슬란드	34.8	32.7	터키	18.7	-

※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1

2. 아·태지역 여성기업 현황

2010년 마스터카드월드와이드(MasterCard Worldwide)의 조사에 따르면, 아·태지역 국가들 중 여성경제활동률은 중국이 67%로 가장 높고, 베트남 65%, 태국 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은 47.3%, 뉴질랜드는 56%, 싱가포르는 50.9%로 나타났으며, 여성기업수에서는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여성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여성CEO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도 기준 한국이 3.5%로 가장 높고, 뉴질랜드 3.1%, 싱가포르 2.8%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소상공인 및 지식·감성기반의 1인창조기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기업 성장률에서는 베트남이 4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9.7%, 싱가포르 4.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기업활동률에서는 태국이 47%로 가장 높으며, 필리핀 40%, 인도네시아 3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률에서는 홍콩이 무려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호주 91%, 싱가포르 90%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아·태지역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여성CEO 비중 및 여성기업수에 대한 지표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가경제 및 여성기업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지표인 여성기업환경, 여성기업 성장률 및 활동률, 여성취업률 및 경제활동률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지표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창출과 더불어 아·태지역의 선두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표 1-5> 아·태지역 여성기업 환경조사 주요 순위

(단위 : %)

지표	1위	2위	3위
여성경제활동률	중국(67)	베트남(65)	태국(64)
여성기업수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여성경제활동 인구 대비 여성CEO 비중	한국(3.5)	뉴질랜드(3.1)	싱가포르(2.8)
여성기업환경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여성기업성장률	베트남(42.5)	말레이시아(9.7)	싱가포르(4.2)
여성기업활동률	태국(47)	필리핀(40)	인도네시아(37)
여성취업률	홍콩(93.8)	호주(91)	싱가포르(90)

※ 자료 : MasterCard Worldwide, 2010년 아·태지역 여성기업환경 평가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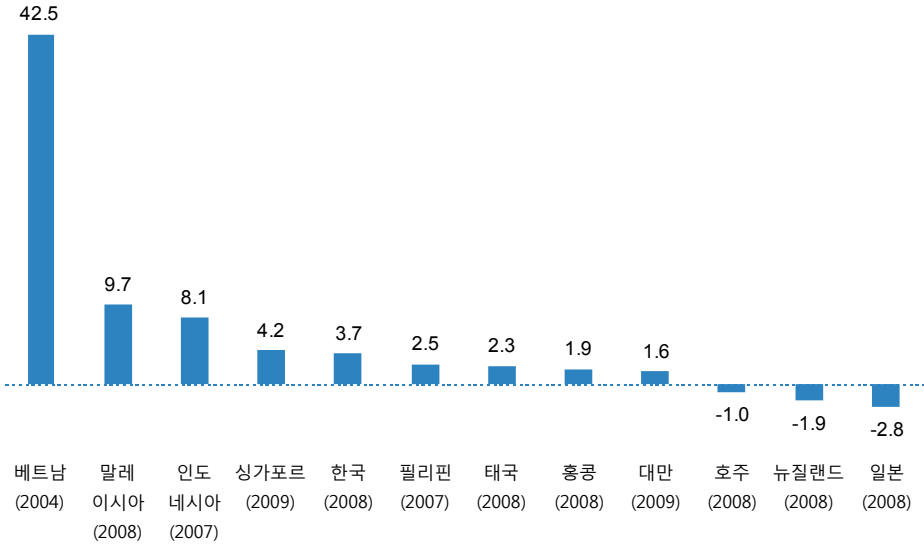
또한, 2000년 이후 여성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42.5%(2004년)를 기록하며 아·태지역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말레이시아보다도 무려 약 4.4배에 달하는 성장률로서, 베트남의 여성기업 발전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9.7%(2008), 인도네시아 8.1%(2007년), 싱가포르 4.2%(2009년), 한국 3.7%(2008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일본, 뉴질랜드, 호주의 여성기업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8%, -1.9%, -1.0%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연도인 2007년에서 2009년 동안 여성기업 연평균 성장률만으로 비교해본다면, 말레이시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한국, 필리핀, 태국, 대만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아·태지역 국가별 경제성장률과도 관련이 있다. 2008년 국가 경제성장률이 말레이시아가 4.8%인 반면, 한국은 2.3%로 절반수준이며, 이러한 결과가 여성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이 자료의 각 국가별 여성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수치가 동일 연도에 대한 조사결과치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2〉 아·태지역의 여성기업 성장률

(단위 : %)



※ 자료 : MasterCard Worldwide, 2010년 아·태지역 여성기업환경 평가결과 보고

한편, 2010년 아·태지역 여성기업환경 평가결과 보고에 따르면, 기업 환경과 여성기업활동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취업 기회와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산업기술, 대외교역, 세제지원 등과 같은 기업환경이 좋아도 취업기회가 많으면 여성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처럼 경제인프라 부족, 시장경제에 필요한 법제도 미비 등 기업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취업기회가 없으면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1-6> 아·태지역 여성기업환경 종합분석 결과

(단위 : %)

국가	기업환경 순위	여성기업 연평균성장률	기업활동	여성취업률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싱가포르	1	4.17	8.3	90	50.9
뉴질랜드	2	-1.93	28.2	87.4	56
홍콩	3	1.92	6.5	93.8	50
호주	9	-1.03	21.1	91	52.7
태국	12	2.25	47.4	42.6	64.5
일본	15	-2.8	11.1	87	43.2
한국	19	3.66	18.8	69.6	47.3
말레이시아	23	9.69	8.7	78.9	43.2
대만	46	1.58	-	60.7	47.4
중국	89	-	36	26.3	67.2
베트남	93	42.54	-	21.2	65.3
인도네시아	122	8.05	36.9	30.7	44
인도	133	-	27.6	8.5	32.4
필리핀	144	2.46	40.1	51.4	46

※ 자료 : MasterCard Worldwide, 2010년 아·태지역 여성기업환경 평가결과 보고

3. 우리나라 여성기업 현황

통계청에서 발간한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수는 총 1,221,653개로, 전체 사업체의 3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사업체수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연평균 1.2%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것은 전체 사업체수의 연평균 성장률 0.5%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여성의 기업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7〉 전체 사업체 및 여성 사업체수 추세

(단위 : 개,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성장률
전체 사업체	3,262,925	3,264,782	3,293,558	0.5
여성 사업체	1,192,048	1,202,411	1,221,653	1.2
전체 사업체 대비 여성 사업체 비율	36.5	36.8	37.1	0.8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2009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수는 16,818천명이다. 그 중에서 여성 종사자수는 6,930천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하고 있다.

〈표 1-8〉 남녀 종사자수 규모

(단위 : 천명, %)

구분	총종사자수	종사자 성별	
		남자	여자
종사자수	16,818	9,888	6,930
비율	100.0	58.8	41.2

※ 자료 :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조사

여성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33.8%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이 28.1%로 그 다음으로 많아 두 산업이 여성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사업체의 경우는 도매 및 소매업이 2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사업체와 달리 운수업과 제조업이 각각 15.9%, 12.7%로 기타 산업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여성 사업체의 제조업 비율은 4.8%). 여성 사업체와 남성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비교하면, 여성 사업체에서의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이외에 교육 서비스업 등이 있다.

〈표 1-9〉 남녀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

(단위 : %, 개)

구분	비중			사업체수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농업, 임업 및 어업	0.0	0.1	0.1	158	2,144	2,302
광업	0.0	0.1	0.1	147	1,693	1,840
제조업	4.8	12.7	9.7	58,032	262,342	320,37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	0.1	0.0	37	1,437	1,47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	0.2	0.2	627	4,411	5,038
건설업	0.9	4.0	2.9	11,283	83,433	94,716
도매 및 소매업	28.1	25.0	26.2	342,943	518,793	861,736
운수업	1.3	15.9	10.4	15,284	328,787	344,071
숙박 및 음식점업	33.8	10.4	19.1	413,002	215,076	628,07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3	1.0	0.7	3,395	20,783	24,178
금융 및 보험업	0.4	1.6	1.2	4,317	34,024	38,3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	4.2	3.8	38,311	87,493	125,8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6	2.9	2.1	7,231	60,327	67,55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6	1.2	1.0	7,412	25,400	32,8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	0.5	0.4	404	11,364	11,768
교육 서비스업	7.2	3.6	4.9	87,494	74,960	162,4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2	2.9	3.0	39,676	59,300	98,97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4	2.9	3.1	42,091	60,606	102,69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3	10.6	11.2	149,809	219,532	369,341
합 계	100	100	100	1,221,653	2,071,905	3,293,558

※ 자료 :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조사

여성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19.3%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상도 지역이 각각 19.1%, 13.5%로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체가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로서 1.6%에 불과하다. 남성 사업체 분포도 이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남성 사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고 다음으로 경기도, 경상도 지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0〉 남녀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단위 : %, 개)

지역	여성		남성		총사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서울	19.1	232,938	23.7	490,148	22.0	723,086
부산	8.5	103,941	7.5	156,032	7.9	259,973
대구	5.4	65,657	5.5	113,108	5.4	178,765
인천	4.7	57,964	4.9	101,633	4.8	159,597
광주	3.2	38,877	2.9	60,271	3.0	99,148
대전	2.9	35,386	2.8	57,790	2.8	93,176
울산	2.5	30,439	1.8	38,215	2.1	68,654
경기	19.3	235,674	20.5	424,334	20.0	660,008
강원	4.1	49,589	3.3	67,980	3.6	117,569
충청	7.3	88,702	7.0	145,822	7.1	234,524
전라	8.0	97,529	7.2	149,879	7.5	247,408
경상	13.5	165,387	11.6	240,273	12.3	405,660
제주	1.6	19,570	1.3	26,420	1.4	45,990
전국	100.0	1,221,653	100.0	2,071,905	100.0	3,293,558

※ 자료 :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조사

여성기업의 성장률, 이익률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도를 기준으로 여성기업은 당기순이익률이 22.1%로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비해, 고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기업이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에 비해 설비·시설 투자가 적은 업종에 밀집되어 있고, 은행 차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11〉 기업구분별 경영실적

(단위 : 천개, %)

구분	여성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체수	1,221	18.8	3,066	3
매출액 성장률*	8.6	9.9	4.7	0.7
영업이익률*	22.1	6.2	4.5	5.8

주1) 경영실적 기준 : 여성기업(2010년), 벤처기업·중소기업·대기업(2009년)

주2) 매출액 성장률 : 여성기업(2006년~2010년의 연평균 성장률), 벤처기업·중소기업·대기업(2008년 대비 2009년 성장률)

주3) 영업이익률 : 여성기업은 당기순이익률(2010년 기준), 벤처기업·중소기업·대기업은 영업이익률(2009년 기준)

※ 자료 : 중소기업청, 2011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4. 여성기업인의 특성

미국 SBA의 소기업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 및 여성기업인의 차이점으로는 남성기업인이 사업경험이 더 많고, 새로운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사업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집약적 사업을 발견할 가능성에 있어서도 남성기업인이 여성기업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반면, 여성기업인은 저위험 사업을 선호하고, 여성기업인의 평균 가족구성원 수가 남성기업인보다 더 많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남성 및 여성기업인의 차이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여성기업인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17) 자료 : SBA, Small Business Research Summary, 2007

가. 경력단절과 전문분야의 차이

Brush에 의하면, 여성기업인은 경험이나 교육과 같은 배경요소가 남성 기업인과 다른데, 먼저 경험의 면에서 여성기업인은 경영진, 과학직 또는 기술직보다는 교사, 소매 판매직, 사무직, 비서직 등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은 자주 중단된다고 밝히고 있다.¹⁸⁾

남성은 여성보다 빈번하게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한다는 Brush의 연구결과는 그만큼 경험이나 경력의 활용에 있어서 여성이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의 불리한 점은 최근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다음으로 교육의 면에서 여성은 대학에서 공학 계열보다는 주로 인문·사회·교육계열을 전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전공 특성은 여성기업인의 전공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2〉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남녀학생 분포

(단위 : %)

구분	전문대		대학		대학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인문계열	2.3	5.3	9.3	19.5	13.5	13.9
사회계열	20.9	31.3	30.0	30.6	25.7	21.5
교육계열	0.3	9.1	2.9	6.6	20.8	32.0
공학계열	47.2	7.0	36.4	9.4	14.9	4.3
이학계열	7.1	6.5	10.9	13.9	8.1	7.7
의약계열	7.9	19.8	2.6	5.4	9.6	10.6
예체능계	14.3	20.9	8.0	14.5	7.5	10.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18) 자료 : Brush, C. G,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1992

19) 강혜련, 여성경영자의 관리역량과 기업성과, 경영논총, 제21집, 2003

또한, 2007년도 기준 유망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술·벤처분야에서의 창업자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창업자가 95.3%인데 반해 여성창업자는 4.7%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 창업자 중 이공계열 전공자의 비율이 낮고, 비교적 창업하기 쉬운 분야에서의 창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여성기업에게 적합한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1-13> 벤처 창업자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남성	2,935 (96.6)	2,650 (96.2)	3,092 (95.3)
여성	103 (3.4)	106 (3.8)	152 (4.7)
전체	3,038 (100.0)	2,756 (100.0)	3,244 (100.0)

※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5-2007

나. 경영 방식의 차이

여성기업인의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 김영옥은 우선 여성기업인이 소비자로서 일상제품에 대한 미비점과 소비자의 욕구과약이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⁰⁾ 따라서 여성기업인은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 시에 여성 특유의 감성을 반영한 제품 출시를 장점으로 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기업인은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여러 의견을 내놓을 수 있으며 사내 분위기가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Carter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기업인과 남성기업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²¹⁾

20) 자료 :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1998

21) 자료 : Carter, N. M., Williams, M. and Reynolds, P. D., Discontinuance among New Firms in Retail: the Influence of Initial Resources, Strategy, and Gender, 1997

< 여성기업인과 남성기업인의 차이 >

- 여성기업인은 남성기업인에 비해 비용 지향적이지 않다.
- 여성기업인은 인간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종업원과 고객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 여성기업인은 수직적 조직구조보다는 수평적 조직구조를 선호한다.

또한, 여성기업인은 이윤, 성장과 같은 경제적 목표도 중시하지만, 고객만족과 같은 사회적 목표도 추구한다는 의견도 있다.

<표 1-14> 기업인의 성별 특성

구분	여성기업인	남성기업인
의사결정	창의적, 감수성, 가치지향적인 직관적인 사고	분석적이고 개발을 중시하는 논리적인 사고방식
조직관리	가족적인 관계를 중시	위계적인 관계를 중시, 규칙과 절차확립에 역점
성취욕구	고객만족과 근로자와의 인간관계 형성 중시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달성 중시
기타	질적인 성장, 근로자의 기술향상과 후생복지 강조	사업의 외향적 성장에 치중하는 편

※ 자료: National Foundation for Women Business Owner, Style of success, the thinking and management styles of women and men business owners, 1994
 김영옥,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1998 (재인용)

다. 네트워크의 차이

여성기업인은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계 네트워크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여성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업을 소유할 때 독립적·경제적 실체로서 자신을 사업의 창업자나 기업의 소유자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주변 환경을 사업과

연관된 관계로 인식하여 자신의 인생 속에 통합시키는 경향이 있다.²²⁾ 그러나 자신이 구축하는 네트워크 안에는 여성의 비중이 높고, 네트워크가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Heilman & Chen에 따르면, 기업경영을 위해서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지만,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의 대외협력 네트워크가 기업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여성창업기업의 경우에 환경변화와 부족한 자원 압력,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생존 및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²³⁾

실제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여성의 참여 제한 때문에, 기업경영에 있어서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불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점차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여성기업인의 불리함 수준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에 부적응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평점 3.22점이었지만, 2010년도에는 평점 3.16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여성기업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대한 결과 역시 2008년에 평점 3.06점에서 2010년 평점 2.99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가사 및 자녀 보육의 추가 부담에 대해서도 2008년 평점 3.85점에서 2010년 평점 3.45점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소원인으로는 여성을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면에서는 예전보다 점차 환경이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Brush,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92

23) 나중덕·김승호·최락열, 여성창업기업의 환경 및 경영자 특성, 협력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2004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있다. 특히,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인한 여성의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2008년 평점 3.02점에서 2010년 3.06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지속된 것에 대한 전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동안 여성의 소극적인 사회활동에 따른 성차별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성기업인들 간에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표 1-15〉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점에 대해 느끼는 정도

(단위 : 점)

내용	평점	
	2008년	2010년
가사 및 자녀보육 추가 부담	3.85	3.45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접대 문화 등)에 적응 곤란	3.22	3.16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 제한	3.02	3.06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3.06	2.99
소극적, 위험회피 성향 경영으로 인한 사업 기회 상실 우려	2.99	2.98

주) 5점 기준 : 5점 많이 느낀다 ~ 1점 전혀 느끼지 않는다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5. 여성기업의 중요성

여성은 시대적 발전과정에 따라 정치·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분야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의 지위란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 담당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책임, 권리 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가리킨다.

이러한 여성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활동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요소 중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여성특유의 직관 및 민감성과 섬세함 등이 남성보다 나은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여성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경제적 세력화’란 말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말한다. 이렇듯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기업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성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전체 기업체수 중에서 여성기업이 37.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기업체의 고용에 대한 비중은 40.3%로 결코 낮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기업이 평균적으로 남성기업보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²⁴⁾

특히, 여성의 고용관점에서 보면 여성기업의 고용효과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의 여성인력 고용비율은 63%로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고용비율인 26%보다 37%p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효과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서 차입경영을 최소화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데 반해, 여성기업은 부채비율이 낮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에

24) 자료 :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조사

건설한 기업성장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여성기업은 일상생활의 소비자 욕구 파악이 빠르다는 강점과 여성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타 기업과 상생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기업이 갖게 될 위치와 의미는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성기업을 위한 법률이나 지원체계는 대부분 여성기업에 대한 보호적 성격이 강하다.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는 여성기업이 보호 및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보호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보다는, 남성기업과 동등한 입장으로 여성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주적 발전체제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여성기업의 내일과 국가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

제 1 장

여성창업 동향

1. 창업 특성

가. 자발적 창업의 증가

여성의 창업동기에 대해서 연구한 Hisrich and Brush²⁵⁾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독립의 욕구가 일차적인 창업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창업동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 창업동기의 형태 >

- 일에 대한 불만족 / 사업기회의 인식 / 개인적인 도전
- 경영자가 되고 싶은 욕망 / 자유와 유연성에 대한 욕구
- 재정적 독립을 위한 자금 확보의 필요성 / 성취욕구
- 독립적인 사업운영 / 야망의 실현 / 지식과 기술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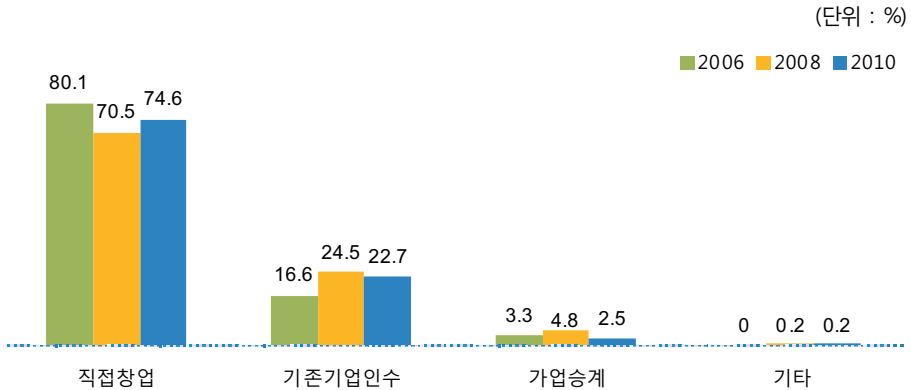
여성이 창업하는데 있어서 독립심과 성취욕구(자아실현 욕구)라는 긍정적 창업촉진요인(Pull Factor)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가족가업의 승계, 정부지원, 친구의 권유, 적정한 일의 발견 등과 같은 외부압박 요인(Push Factor)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긍정적 창업촉진요인(Pull Factor)과 외부압박 요인(Push Factor) 중 어떤 요인에 의해서 창업을 더욱 많이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적절한 창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5) Hisrich and Brush, The woman entrepreneur: Starting, financing, and managing a successful new business, Lexington Books 1986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2010년도 여성기업의 창업유형은 직접 창업의 비율이 74.6%로 가장 높고, 기존사업의 인수나 가업승계(남편이나 부친의 사업승계)와 같은 외부의 창업요인은 2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창업의 경우에는 2006년 80.1%에서 2008년 70.5%로 9.6%p 감소했으며, 2010년에는 74.6%로 2008년도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기업인수의 경우에는 2006년 16.6%에서 2008년 24.5%로 7.9%p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2.7%로 2008년도 대비 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업승계의 경우 2006년도 3.3%에서 2008년 4.8%로 1.5%p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5%로 2008년도 대비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 여성기업인의 창업유형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성은 창업유형 중 직접 창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존기업인수, 가업승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2008년도는 직접창업의 비율이 감소하고 기존 기업인수 및 가업승계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08년 1/4분기까지는 경제성장률이 5.5%로서 안정적인 경기 속에서 여성의 직접창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2008년 3/4분기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여성의 직접창업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9년 2/4분기부터 점차 국내외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2010년도 조사 결과치와 같이 여성의 직접창업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7년 해외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의 여성기업 창업유형 중에서 여성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가 83.7%로 가장 높으며, 가족의 기업체 승계가 8.7%, 다른 사람의 기업 인수가 7.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자신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는 영국과 독일이 88.3%로 가장 높으며, 호주가 85%, 미국 및 일본은 78.3%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가족의 기업체 승계로 창업하는 경우는 일본이 21.7%로 가장 높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8.7%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 이유는 가업승계를 중요시하는 일본의 문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이 10.0%, 호주 및 독일이 5.0%이며, 영국은 1.7%로 기업체 승계로 창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여성기업의 국가별 창업유형

(단위 : %)

구분	평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다른 사람의 기업을 인수	7.7	11.7	10.0	10.0	0.0	6.7
가족(남편, 부모 등)의 기업체 승계	8.7	10.0	1.7	5.0	21.7	5.0
자신이 직접 창업	83.7	78.3	88.3	85	78.3	88.3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외여성기업 실태조사, 2007

결론적으로, 직접 창업한 경우가 가족의 기업체 승계 및 기존 기업의 인수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나고, 특히 영국과 독일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의 기업체를 승계한 경우는 일본이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더욱 짧아진 창업준비기간

여성이 창업을 결심하고 실제적으로 창업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창업준비기간으로 본다면, 창업준비기간은 과거에 비해서 더욱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이 소자본의 손쉬운 아이템 창업을 선호하며 다소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한편, 창업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하다보니 과거보다 창업준비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창업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준비기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32.7%, 1년에서 2년 사이가 16.3%, 2년에서 3년 사이가 6.3%, 3년에서 5년 사이가 2.7%, 5년 이상은 1.2%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2-2〉 창업준비기간 현황

(단위 : %)

준비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1년 ~ 2년	2년 ~ 3년	3년 ~ 5년	5년 이상	무응답	전체
비 중	40.7	32.7	16.3	6.3	2.7	1.2	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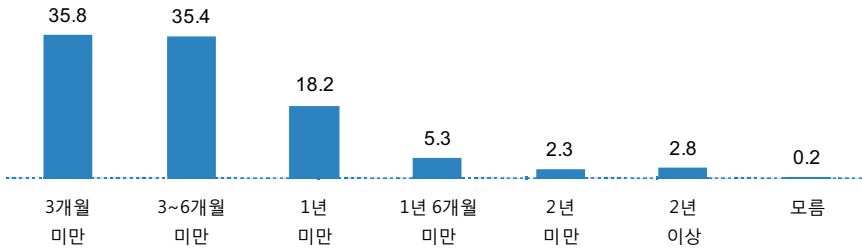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09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창업준비기간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비교할 수는 없다. 한편,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여성기업의 창업준비기간은 3개월 미만이 35.8%로 가장 높으며,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은 35.4%로 뒤를 잇고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8.2%,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6개월 미만이 전체의 71.2%로서, 2006년도 대비 30.5%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도와 비교해 보면,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010년에 14.5%p 감소하였으며, 1년에서 2년 사이가 8.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4년 동안 창업준비기간이 계속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창업에 대한 외부적인 제약요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2> 창업준비기간 현황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다.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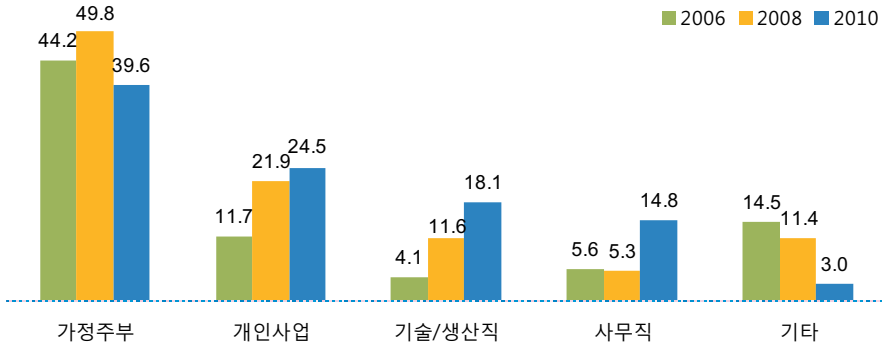
여성기업의 성공요인을 거론할 때, 남성기업과 다르게 파악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창업자의 경력단절 문제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은 여성이 가사나 육아 등의 이유로 사회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창업하는 것이다.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창업자의 창업 전 직업은 가정주부 39.6%, 개인사업 24.5%, 기술/생산직 18.1%, 사무직 14.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는 창업 전 직업이 가정주부인 경우가 전체의 44.2%를 차지하였지만, 2008년에는 49.8%로 높아졌다가 2010년에는 39.6%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당시의 경제상황과 결부시켜 해석해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즉, 2008년에 발생한 국제금융

위기가 가정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졌고 가정주부가 취업 및 창업의 길로 들어서는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3〉 연 사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 증사한 직업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과거에 비해서 경력단절 상태의 창업이 증가하는 것은 가정주부가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점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려는 욕구가 증가하지만, 구직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창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은 충분한 창업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 및 경제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경력단절 상태의 창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도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애로와 필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창업 이전 업종과의 연관성은 다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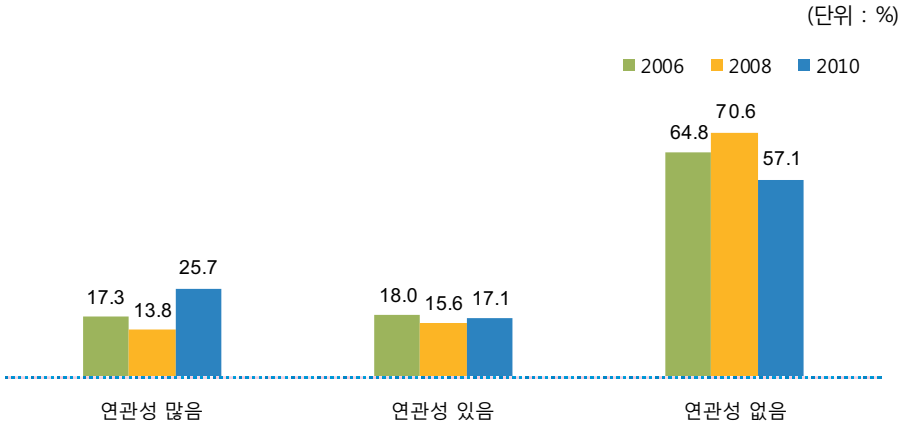
Toe²⁶⁾에 의하면, 여성창업자들이 이전 직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성공확률이 훨씬 높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재 여성의 창업은 창업자의

26) 자료 : Toe, S. K., Women Entrepreneurs of Singapore, Singapore Business Developmental Series: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Enterprising Culture, 1996

경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문 분야의 창업 확대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여성창업자가 자신의 경험과 무관한 분야에서 창업하는 비율이 57.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 70.6%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경험과 연관성이 많은 분야에 창업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2006년에는 17.3%, 2008년에는 13.8%로 3.5%p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25.7%로 증가하여 2006년도 대비 8.4%p, 2008년도 대비 11.9%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경력이나 전공 및 전문성을 살린 창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림 2-4〉 창업이전과 창업업종의 연관성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마. 감성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높은 관심

여성창업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외에 발표된 창업유망 업종에 대하여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와 감성기반 서비스분야로 구분해서 여성기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기업은 다음과 같은 감성기반 서비스 업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여성기업의 감성기반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심분야 >

- 스트레스 해소 관련 분야(21.0%)
- 친환경 생활·가정용품 제조 판매 분야(20.0%)
- 영유아 보육·교육 등의 전문서비스 분야(14.5%)
- 가사 노동 경감을 위한 각종 대행서비스 분야(12.2%)
- 실버 홈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9.4%)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스트레스 해소 관련 분야로서, 설문대상자의 21.0%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친환경 생활·가정용품 제조 판매 분야에 20.0%, 영유아 보육·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14.5%, 가사 노동 경감을 위한 각종 대행서비스 분야에 12.2%, 실버 홈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 9.4%가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라이프케어 서비스, 디자인 아웃소싱업, 색채 및 조명과 경관 등 첨단 인테리어업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여성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분야보다 감성기반 서비스분야에 관심을 더 갖는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창업자들은 자신의 생활주변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감성기반 서비스분야에서의 창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감성기반 서비스업 중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업 분야는 대체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여성에게 친숙한 분야가 전체의 77.1%(1~5번)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여성기업의 관심 사업 분야

(단위 : %)

구분	번호	상세구분	응답 비중
감성기반 서비스업 ²⁷⁾	1	스트레스 해소 서비스업 (스파, 네일케어, 두피케어, 풋케어 등의 테라피 서비스)	21.0
	2	친환경 생활·가정용품 제조 판매	20.0
	3	영유아 보육·교육 등의 전문서비스	14.5
	4	가사 노동 경감을 위한 각종 대행서비스	12.2
	5	실버 홈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 모니터링, 카운슬링, 기기 렌탈 등)	9.4
	6	라이프케어 서비스 (자산 관리, 식단 및 운동 관리 등)	8.8
	7	디자인 아웃소싱업 (기업체, 개인)	8.7
	8	색채, 조명, 경관 등 첨단 인테리어업	6.0
	9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2.8
	10	게임 관련업 (게임 콘텐츠 기획 및 SW 개발업)	1.7
지식기반 서비스업 ²⁸⁾	1	가정 원예 및 조경업	8.7
	2	레저 여행 관련 서비스업	8.1
	3	마케팅 조사 및 사회조사업	7.7
	4	광고 및 PR대행업	7.7
	5	경영, 기술 관련 전문 상담(컨설팅)업	7.3
	6	영화, 방송, 공연 등 문화 콘텐츠 기획, 제작업	4.5
	7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업	4.3
	8	건물, 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3.3
	9	e-러닝, 디지털 출판업	2.7
	1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업	2.3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7) 감성기반 서비스업 :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편의성을 도모하고 감성으로 고객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비스

28) 지식기반 서비스업 : 기존 산업 사회의 노동, 자본, 토지라는 중요 생산요소에 대비하여 인간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식을 그 주요 생산요소로 삼는 서비스로써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상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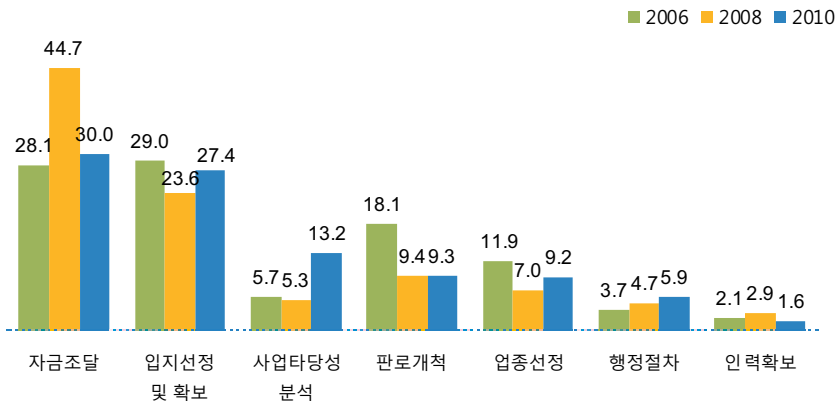
2. 창업기업의 애로와 문제

가. 자금조달은 여전히 가장 큰 애로

여성기업인의 창업준비단계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비율은 2008년도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2006년의 조사에서는 창업준비단계 애로사항 중에서 자금조달에 응답한 비율은 28.1%였지만, 2008년은 44.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경색되고 기업들이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10년에는 30.0%로 2008년도 대비 14.7%p가 감소하여 자금애로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남아 있다.

<그림 2-5>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반면,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업종선정, 행정절차에서의 애로는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사업타당성 분석으로는 2006년에 5.7%, 2008년에 5.3%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13.2%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선정 애로는 2006년 11.9%에서 2008년 7.0%, 2010년 9.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전에 비해 창업분야가 많아지고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아이템을 분석한 후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업종을 선택하여 창업하는지에 따라서 창업의 성패여부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여성창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창업자가 업종선택과 사업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행정절차 애로는 2006년 3.7%, 2008년 4.7%, 2010년 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창업에 있어서 4대보험 의무 가입 및 기타 행정적 서류준비사항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행정적 소요시간 및 과정이 많아진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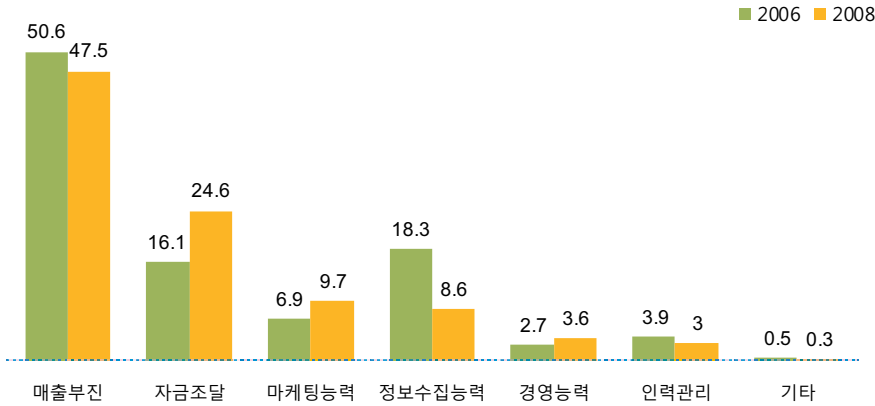
나. 판매·마케팅 애로의 증가

2009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창업초기에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매출부진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금 조달, 마케팅능력, 정보수집능력, 경영능력, 인력관리 등의 순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부진에 대한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2006년 50.6%에서 2008년 47.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금조달에 대한 애로사항은 2006년 16.1%에서 2008년 24.6%로 가장 큰 증가폭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마케팅능력에 대한 애로사항은 2006년 6.9%에서 2008년 9.7%로 증가한 반면, 정보수집에 대한 애로사항은 2006년 18.3%에서 2008년 8.6%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6> 창업초기 애로사항(1)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9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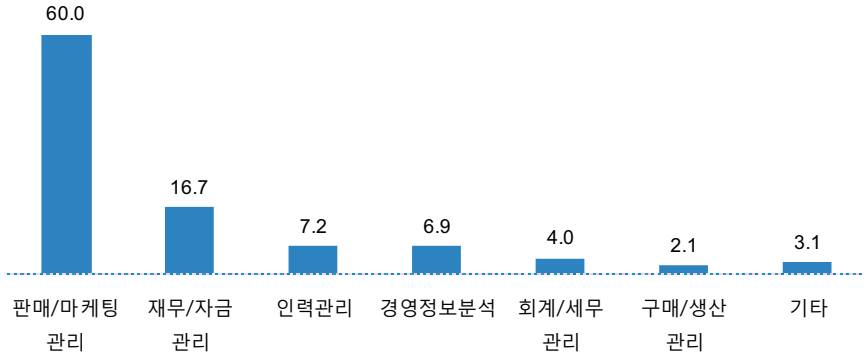
많은 애로사항을 뚫고 창업을 했지만 사업에 성공하는 여성기업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창업초기에 발생하는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출부진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창업초기에 겪는 애로사항으로 판매·마케팅관리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무·자금관리 16.7%, 인력관리 7.2%, 경영정보분석 6.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항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년도의 조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판매·마케팅관리나 매출부진은 상호연관되어 있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창업초기의 여성기업은 여전히 판매·마케팅 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7〉 창업초기 애로사항(2)

(단위 : %)



주) 당초 실태조사시 애로사항 없는 여성기업은 제외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창업 초기기업이 판매·마케팅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여성의 창업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는 경력단절, 본인의 경험과 연관성이 낮은 분야에서 창업한 것에 따른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판매·마케팅 애로사항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자본 창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창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판매부진은 단기간에 사업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창업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창업한 여성기업이 초기에 실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판매·마케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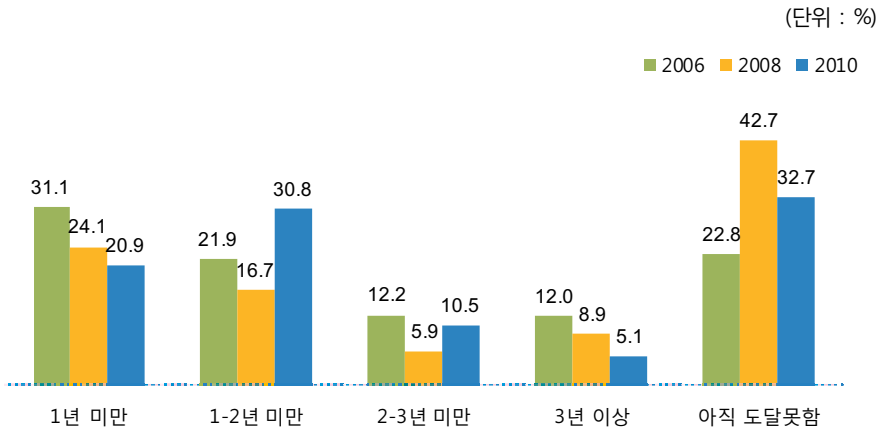
다. 손익분기점 미달 상태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연속성은 이익창출에 달려있지만, 여성기업 중에서 32.7%는 창업 후 한 번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이 1년 미만인 여성기업은 2006년 31.1%, 2008년 24.1%, 2010년 20.9%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1~2년 미만인 여성기업은 2006년 21.9%에서 2008년 16.7%로 감소하다가 2010년 30.8%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3년 미만인 여성기업은 2006년 12.2%에서 2008년 5.9%로 절반정도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10.5%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3년 이상 걸렸다는 여성기업은 2006년 12.0%, 2008년 8.9%, 2010년 5.1%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여성기업도 2006년 22.8%에서 2008년 42.7%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32.7%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이 짧아지고 그 도달기간의 비중이 클수록 기업은 안정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이 2년 미만까지의 여성기업이 전체에서 5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하여 볼 때, 여성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후 2년 미만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여성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8〉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손익분기점 미달기업은 만성적인 적자상태가 지속되다가 자본이 고갈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기업으로서, 다행히 창업 후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한 여성기업의 비율이 2008년도 대비 2010년에는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여성기업에 대한 사업진단 및 지원이 필요하다.

라. 전문가의 도움없이 창업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창업 전문기관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창업자의 대부분은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관련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 기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4.8%이며, 또한,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곳은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진흥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 등과 같은 공공전문기관이 73.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금융기관 11.5%, 여성인력개발센터 4.9%, 일반 컨설팅사 3.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창업자가 창업지원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일차적으로 전문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예비창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표 2-4〉 창업준비 시 도움 받은 기관

(단위 : %)

도움 받은 기관	비중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창업진흥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	73.7
금융기관	11.5
여성인력개발센터	4.9
일반 컨설팅사	3.3
업체관련 협회	1.6
시군구의 창업민원실	1.6
기 타	3.2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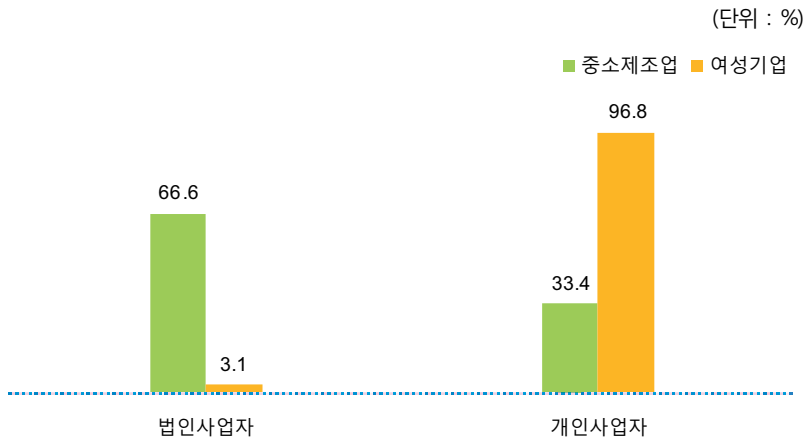
여성기업 동향

1. 여성기업의 구조

가. 대부분 개인사업자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가 9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3.1%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비율은 2008년도의 조사결과인 97.0%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일반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을 비교한 결과는 법인형태의 여성기업은 3.1%인 반면에, 일반 중소기업은 66.6%로 조직형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9> 중소기업/여성기업 간 조직형태 비교



주) 여성기업의 기타 조직형태 0.1%는 제외

※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나. 5인 미만의 소기업

2010년도 여성기업의 평균 종사자는 2.86명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종사자수와 비교하면 1/6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2-5〉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의 평균 종사자수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10년	증감 추이
중소기업	18.9	18.6	-0.3
여성기업	3.0	2.86	-0.14

※ 자료 : 중소기업청, 2011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종업원 수는 2008년 평균 2.50명에서 2010년 2.36명으로 0.14명이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 종업원 수는 2008년 0.50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종업원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32.1%로, 2008년 40.1% 대비 8%p 감소하여 가족 및 친지에 의존하는 가족생계형 기업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여성인력 중심의 구조

여성기업의 인력구성을 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63%가 여성인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6%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남성근로자의 비율이 여성근로자 비율의 약 3배 규모로 종업원 수가 증가하여도 여성근로자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의 고용비율은 감소하여 남녀의 인력비중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구조를 보인다.

〈표 2-6〉 고용유형별 비중

(단위 : %)

구분	종업원 규모	고용유형별 비중	
		남성	여성
중소제조업	5-9인	73	27
	10-19인	75	25
	20-59인	75	25
	50-99인	74	26
	100-199인	73	27
	200-299인	76	24
	전체	74	26
여성기업	5인 미만	32	68
	5-19인	34	66
	20인 이상	53	47
	전체	37	63

※ 자료 : 중소기업청, 2010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라. 고학력 여성기업가의 증가

2010년 기준 여성기업 대표자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졸 이상이 3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2006년 75.7% 대비 2010년 69.5%로 6.2%p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은 2006년 24.1%에서 30.5%로 6.4%p 증가하여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는 사회 추세가 여성창업자의 고학력화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7〉 대표자의 학력

(단위 :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고졸 이하	75.7	67.3	69.5
대졸 이상	전문대졸	30.4	5.3
	4년제/대학원졸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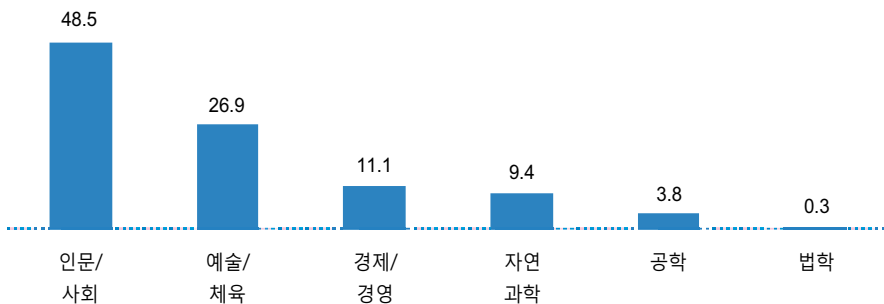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마. 기업대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다수

전공분야는 인문·사회계열 48.5%, 예술·체육계열 26.9%, 경영 및 경제계열 11.1%, 자연과학계열 9.4%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공계 전공자는 13.2%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이공계를 전공하는 여성이 적다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기술중심의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2-10〉 대표자의 전공분야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 경영지표상의 변화 추세

가. 매출보다는 수익 중심으로 경영

여성기업의 재무지표는 2006년도 조사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은 매출성장보다는 수익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는 특성이 여러 재무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성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2010년 약 251백만원으로서, 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2% 증가한 수준이다. 자본은 2010년 약 164백만으로 연평균 15.1%가 증가한 수준이다. 2010년도 기준으로 부채는 87백만원,

매출액은 147백만원, 당기순이익은 33백만원으로 각각 연평균 36%, 8.6%, 25.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 연도별 재무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자산총액	자본	부채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2006년	113,350	88,000	25,350	105,910	13,010
2008년	162,127	117,802	47,358	175,811	26,161
2010년	251,158	164,380	86,778	147,206	32,619
연평균성장률 (2006-2010)	22.0	15.1	36.0	8.6	25.8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06년의 당기순이익률은 12.3%이나 2010년에는 22.1%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2009년 당기순이익률 4%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성기업의 수익중심 경영성향은 일반 중소기업의 재무지표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중소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반면에, 여성기업은 부채비율이 낮고 수익성은 높다.

나. 작은 기업 규모에서의 안정적 경영 추구

2008년 기준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을 보면 155.6%인 반면, 여성기업은 40.2%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여성기업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설비·시설투자가 적은 업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은행차입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여성기업은 차입 경영 최소화로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려는 특성이 덧붙여져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표 2-9〉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 비교

(단위 : % 배, 천원)

구분	연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총자산 증가율	당기 순이익률	부채비율	자기자본 회전률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중소 제조업	2008년	19.2	3.3	155.6	3.0	219,043
	2009년	12.3	4.0	148.1	2.7	231,497
	2008년 대비 증감율	-36.2	21.8	-4.8	-10.0	5.69
여성기업	2006년	-1.4	12.3	40.5	1.7	44,870
	2008년	43.0	14.9	40.2	1.5	59,500
	2010년	54.9	22.1	52.8	0.9	51,470
	2008년 대비 증감율	27.6	48.3	31.3	-40.0	-13.5

주) 중소기업 제조업 수익성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로 계산

※ 자료 : 중소기업청, 2010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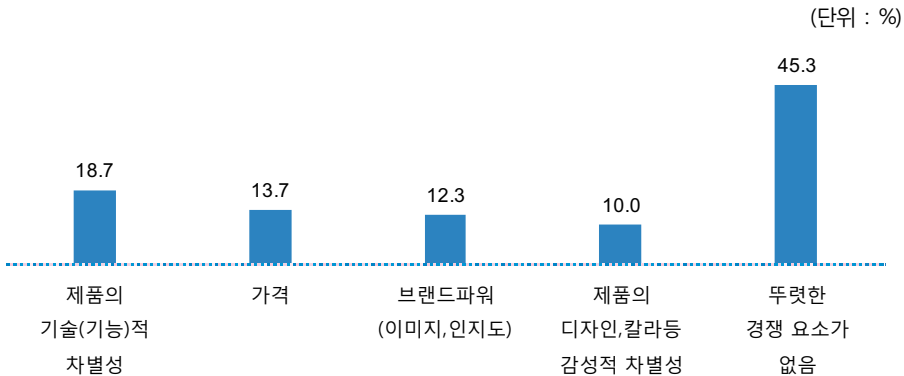
2008년 중소기업 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219백만원에 달하는 반면, 여성기업은 약 59백만원으로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간 규모는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경영지표 상 수익성은 호전되고 있으나, 활동성과 생산성은 둔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기업의 생산성(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2010년 기준 52백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5%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영지표의 변화는 여성기업들이 경기 둔화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인력 감축 또는 자동화 등을 통해 수익성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한 결과로 보인다.

3. 사업현황에 대한 인식 수준

가. 자사의 제품경쟁력에 대해 낮게 평가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의 제품이 타 기업의 제품에 비해서 강점 또는 장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45.3%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여성기업이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비중과 지적재산권 보유율이 낮은 점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자사의 제품에 있어서 강점이나 장점으로 여기는 요소로는 제품의 기술적 차별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격, 브랜드파워 등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2-11〉 제품의 핵심적인 경쟁력(제조업)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나. 자신의 사업을 쇠퇴기로 인식

기업의 수명주기론에 따르면, 기업의 발전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사업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되는 쇠퇴기로 이어지며, 쇠퇴기에 접어든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장과 수익의 한계성 때문에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은 현재 자신의 사업분야가 이미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6.9%에 달하며, 도입기라고 인식하는 기업은 불과 7.3%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반 중소기업체와의 인식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2010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중소기업체 중에서 자신의 사업분야를 성장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4%로 높게 나타났지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여성기업의 25.8%만이 성장기에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0〉 성장단계별 위치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연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소제조업	2008년	9.8	46.7	35.1	8.4
	2009년	9.7	48.4	36.0	5.9
여성기업 전체	2010년	7.3	25.8	37.1	29.8
여성기업 제조업	2010년	6.3	23.7	37.3	32.7

- 주) 1. 진입기 :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품 / 서비스 개발단계
 2. 성장기 :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의 지속적으로 증가, 양적·질적으로 발전 단계
 3. 성숙기 :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
 4. 쇠퇴기 :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단계
 ※ 자료 : 중소기업청, 2010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이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진입했다고 여기게 되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나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경영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성창업자들이 성숙기 또는 쇠퇴기 사업 분야에 진입하여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을 운영 하도록 하거나 또는 사업철수대상 기업들이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초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만 매출 및 고용, 생산유발 계수 등이 정체 또는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쇠퇴기에 접어든 여성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등의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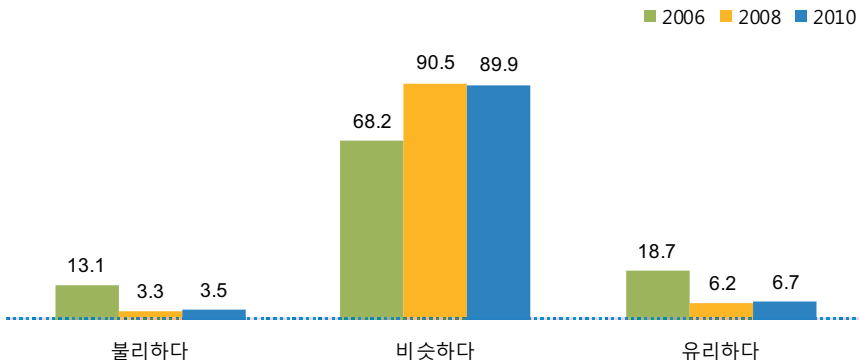
4. 경영활동 애로사항

가. 남성기업 대비 여전히 경영상 애로는 존재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상에 있어서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하여 많은 불리함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2006년의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자가 13.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여성기업이 불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로 크게 낮아지고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9%로 2006년 68.2% 대비 21.7%p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여성기업인이 성별의 차이에 의해 겪는 불리함이 과거에 비해 대부분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12> 남성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하지만, 여성기업의 불리함을 느끼는 정도는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업원 규모별로는 20인 이상의 규모에서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규모화된 여성기업에서 불리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1〉 남성기업 대비 여성기업이 느끼는 불리함의 정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불리하다	비슷하다	유리하다
전체		1,220,907	3.5	89.9	6.7
업종별	제조업	58,032	4.7	87.0	8.3
	건설업	11,283	7.3	90.2	2.4
	도매 및 소매업	342,943	4.3	91.1	4.6
	숙박 및 음식점업	413,002	2.2	90.3	7.5
	기타	395,647	3.6	89.4	7.1
종업원 규모별	5인 미만	1,165,219	3.2	90.2	6.5
	5-19인	49,132	5.7	84.7	9.6
	20인 이상	6,556	14.7	82.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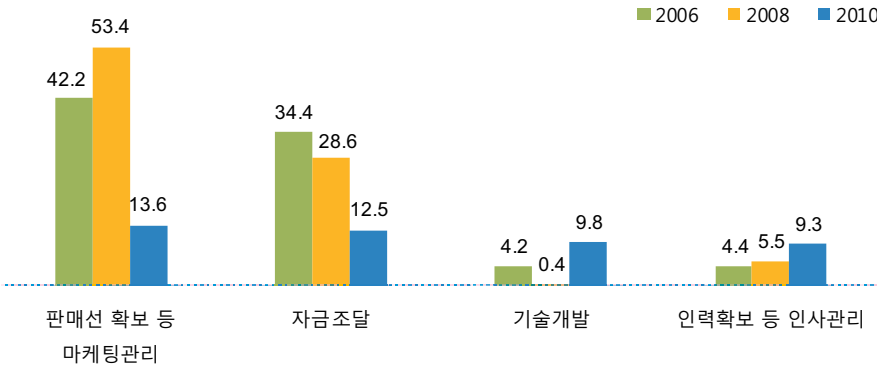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나. 판로확보·마케팅이 가장 큰 애로

2009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기업활동 영역 중에서 판매·마케팅에 대한 애로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금조달에 대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기업의 마케팅 관리 활동 애로는 2006년 42.2%에서 2010년 13.6%로 28.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금조달활동 애로는 2006년 34.4%에서 2010년 12.5%로 21.9%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3> 기업활동 애로사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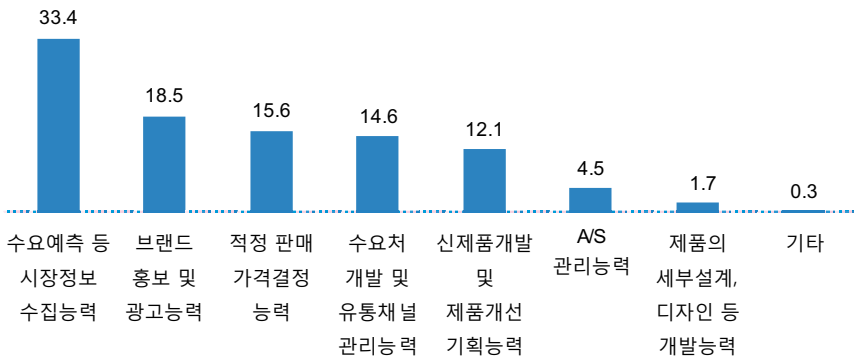
주) 당초 실태조사시 애로사항 없는 여성기업은 제외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9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마케팅부문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수요예측과 같은 시장정보수집능력 33.4%, 브랜드 홍보 및 광고능력 18.5%, 적정 판매가격 결정능력 15.6%, 수요처 개발 및 유통채널 관리능력 14.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여성기업이 취약한 마케팅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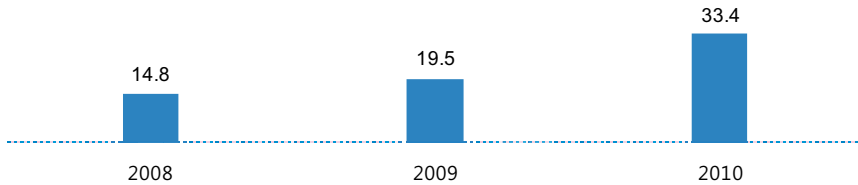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특히, 수요예측 및 시장정보 수집능력 분야에서 애로를 겪는다는 응답률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은 여성기업이 사업·경제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15〉 시장정보 수집능력 애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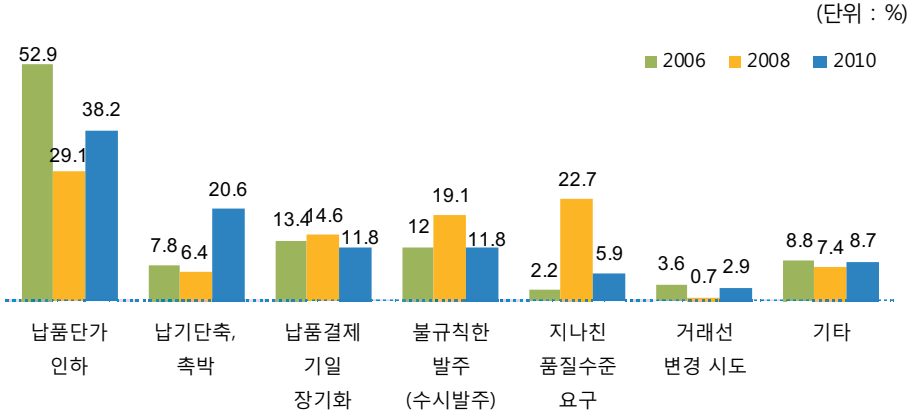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다. 모기업과의 납품거래 시 애로사항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기업과의 납품거래에 따른 애로점에 있어서 납품단가 인하가 가장 큰 애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납기단축 및 촉박이 높으며 납기결제기일 장기화 및 불규칙한 발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납품단가 인하는 2006년 52.9%에서 2010년 38.2%로 14.7%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납기단축 및 촉박에서는 2006년 7.8%에서 2010년 20.6%로 12.8%p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불규칙한 발주 애로점은 2008년 19.1%에서 2010년 11.8%로 7.3%p의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애로점은 2008년 22.7%에서 2010년 5.9%로 무려 16.8%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6〉 모기업 납품거래 시 애로사항



주) 당초 실태조사시 애로사항 없는 여성기업은 제외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전반적으로 볼 때, 2006년도 상황보다는 여성기업의 납품거래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기단축을 요구하는 일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기업 간에 상생관계 구축과 동반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중소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점차 줄여야 할 것이며, 함께 공생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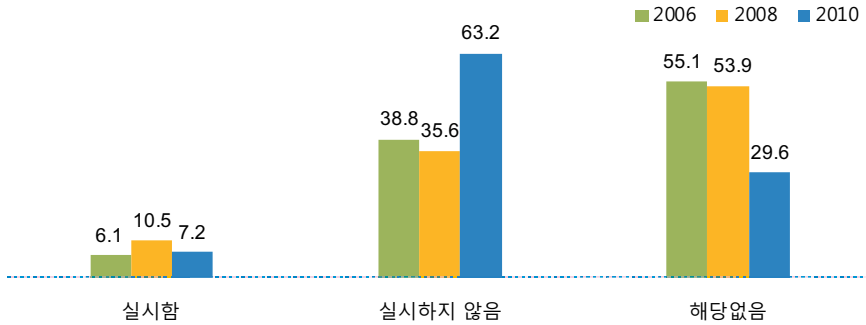
5. 교육·연수의 요구 수준

가. 직원교육은 매우 부족

여성기업 중에서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010년도에 7.2%에 불과하며, 2008년도 대비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2008년 35.6%에서 2010년 63.2%로 27.6%p의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성기업의 종업원 교육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7〉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실시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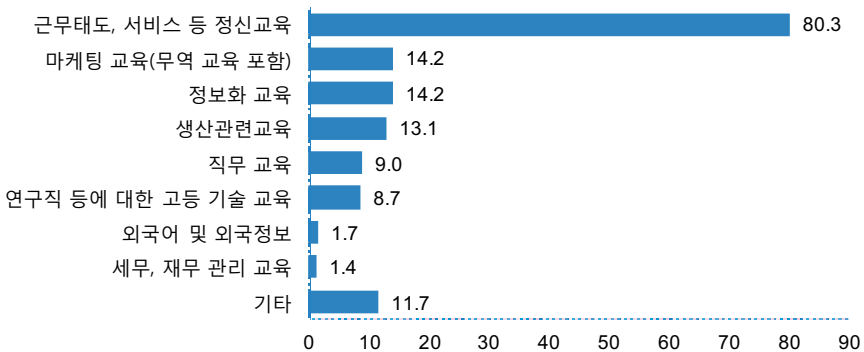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또한, 여성기업이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내용에서는 근무태도, 서비스 등 정신교육이 80.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전문적인 교육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성과창출과 관련된 마케팅 교육, 정보화 교육, 생산관련 교육, 직무교육, 고등 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각각 14.2%, 14.2%, 13.1%, 9.0%, 8.7%만이 실시되고 있다.

〈그림 2-18〉 직원 교육(훈련) 내용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나. 경영자 교육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여성경영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60.2%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하다. 종업원 규모별 측면에서 보면, 5인 미만의 여성기업 중 62.3%가 ‘불필요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5~19인 미만의 여성기업 중 52.0%가 ‘보통이다’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인 이상의 여성기업 중 35.3%가 ‘필요하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보통이다’와 ‘불필요하다’도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종업원 규모가 큰 여성기업일수록, 경영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2〉 여성경영자 교육의 필요성

(단위 : %)

구분		불필요	보통	필요
전체		60.2	25.3	14.6
종업원 규모별	5인 미만	62.3	23.6	14.1
	5~19인 미만	29.7	52.0	18.3
	20인 이상	32.4	32.4	35.3
대표자학력	고졸 이하	66.3	23.0	10.7
	전문대졸	51.7	33.6	14.7
	대졸 이상	45.0	29.7	25.3
	거절/무응답	37.5	50.0	12.5
교육/연수참가 경험	있다	19.7	40.5	39.8
	없다	63.5	24.0	12.4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대표자학력 측면에서 보면, 고졸 이하의 66.3%가 ‘불필요하다’에 응답하였으며, 10.7%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대졸의 51.7%가 ‘불필요하다’에, 14.7%가 ‘필요하다’에 응답한 것을 보이며, 대졸 이상 중 45.0%가 ‘불필요하다’에, 25.3%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표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영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및 연수참가 경험 측면에서 보면, 유경험자의 경우 19.7%만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9.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무경험자의 경우 63.5%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2.4%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교육 및 연수참가 경험자일수록 경영자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무경험자일수록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종업원 규모가 크고, 대표자의 학력이 높고, 교육 및 연수참가 경험이 있을수록 경영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 경영자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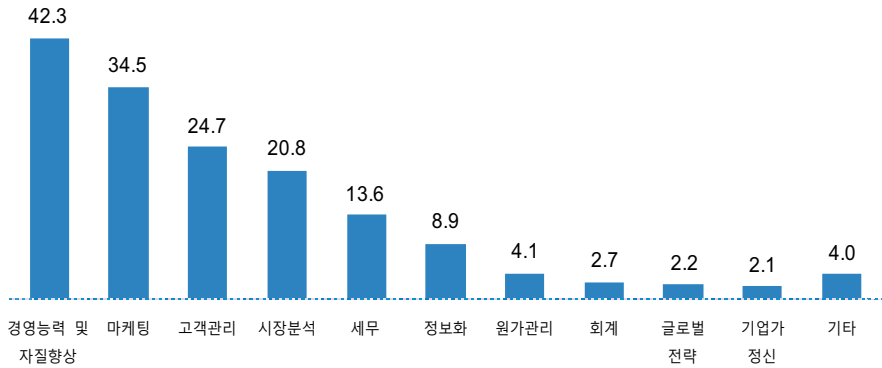
다. 경영자에 대한 경영/마케팅 교육 필요

여성경영자 교육내용면에서는 경영능력 및 자질향상 교육이 42.3%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마케팅 34.5%, 고객관리 24.7%, 시장분석 20.8%, 세무 13.6%, 정보화 8.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마케팅 분야(마케팅 34.5%, 고객관리 24.7%, 시장분석 20.8%)에 대한 교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기업의 마케팅 애로가 많고, 경영자의 마케팅관련 능력에 따라 기업의 성과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성과 및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9〉 여성경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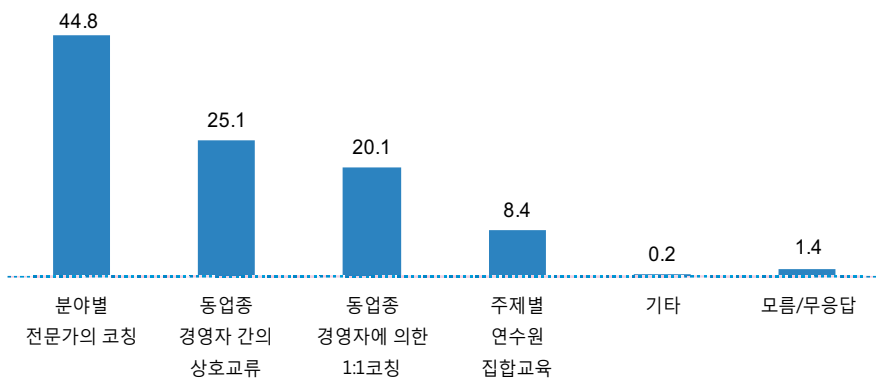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라. 전문가에 의한 코칭을 희망

여성기업인은 분야별 전문가(컨설턴트)나 동 업종의 경영자에 의한 경영현안 및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코칭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0〉 여성경영자 교육에 적합한 방법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자세히 살펴보면, 분야별 전문가의 코칭방법을 44.8%가 선호하였으며, 동업중 경영자 간의 상호교류 방법에 25.1%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업중 경영자에 의한 1:1코칭방법에 20.1%가 응답하였으며, 주제별 연수원 집합교육 방법에는 8.4%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경영인은 분야별 전문가의 코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동업중 경영자와의 관계(상호교류, 1:1코칭)를 통한 방법을 가장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6.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

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부족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이용경험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3〉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정책 인지도 및 평가

(단위 : %)

구분	자금지원 제도	세제지원 제도	기술지원 제도	판로지원 제도	정보화지원 제도	수출지원 제도	
인지도	2006년	28.2	19.0	15.7	13.6	17.9	13.0
	2008년	21.0	14.6	14.6	11.5	14.3	11.8
	2010년	38.4	22.8	15.0	11.6	10.6	9.7
이용 경험	2006년	3.9	1.4	0.8	0.7	0.6	0.8
	2008년	10.8	2.8	0.7	0.5	0.3	0.5
	2010년	13.6	3.9	1.0	1.1	2.6	0.3
효과	2006년	75.9	77.5	95.2	93.3	93.0	94.1
	2008년	76.7	92.1	67.1	44.5	20.1	48.9
	2010년	93.8	91.7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분야별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자금지원제도가 38.4%로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다음으로 세제지원제도 22.8%, 기술지원제도 15.0%, 판로지원제도 11.6% 순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원정책을 이용한 경험에서는 자금지원제도가 13.6%로 다른 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세제지원과 정보화지원제도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이들 지원제도의 이용률도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모든 지원제도에 있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정책이 이용자를 위해서 실용적이고 고객 지향적으로 발전되어진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유용한 지원정책을 여성기업들이 더욱 많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홍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여성기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발전에 큰 주축이 될 것이다.

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지원 요구 사항

1) 창업을 위한 시장정보와 컨설팅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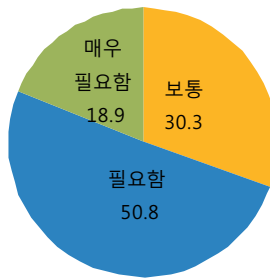
여성기업은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자금, 정보, 컨설팅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창업에 관련된 시장정보 제공과 컨설팅에 대한 요구수준은 2008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자금지원에 대한 요구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자금요구는 낮아지고 시장정보와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원인은 창업을 함에 있어서 단지 창업자금이 충분하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아이템 선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정보 제공과 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요구

대기업과 여성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있어서, 전체 여성기업의 69.7%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적 지원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2-21> 대기업과 여성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단위: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정책적 지원요구사항 >

- 여성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매칭/교류 기회 제공 : 45.7%
- 대기업의 여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27.2%
- 관련 대기업을 통한 경영 및 기술 등의 지도 : 12.0%
- 대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6.5%

정부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도 지속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및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발전 전략으로서 동반성장 전략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전략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3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추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2010년 12월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업종·지역별 동반성장 이행 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더불어 사이버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12개 지역별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 중이다. 따라서 여성기업도 동반성장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감성적인 특성을 잘 활용해야 하고, 타기업과의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1 장

국내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1. 개 요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규모로 창업 및 운영되고 있는 여성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하여, 여성기업으로서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1999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체계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과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체계 안에서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창업 촉진과 여성기업 육성, 지원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분야를 정립할 수 있었다.

1999년부터 국내 여성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실태 조사를 시작했으며,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여성창업보육센터(2006년도부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로 변경)를 설치하고 여성창업과 관련된 강좌 및 교육과정을 개설함은 물론,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 및 여성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경영 및 정보화와 관련된 교육 및 연수과정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의 홍보를 지원하며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단 등을 파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여성기업의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여 여성기업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은 각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부처로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여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추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은 추진성과와 사회 및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되거나 중단, 변화되어 오면서 체계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정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매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의 지원정책 방향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큰 틀은 2005년부터 매년 수립되고 있는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을 통하여 결정되고 있다. 2005년에서 2012년까지 기본계획 상의 지원정책방향은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추진 중에 있다.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에 나타난 지원정책방향의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2007년의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정책과 창업된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을 이루었다. 2008년부터 2009년의 기본계획에서는

<표 3-1>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주요 내용

연도	정책 목표	추진 과제
2005년	다양한 분야에 여성창업을 활성화 하고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여성기업을 경제발전의 하나의 축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기업 유망직종의 발굴·육성 여성기업 경영혁신 지원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006년	혁신형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와 여성기업에 대한 균형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에 안정적인 정책자금 및 보증공급 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 강화 여성기업 책임관 제도 시행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제54차 세계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
2007년	혁신형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와 여성기업정책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에 안정적인 정책자금 및 보증공급 여성CEO 경영혁신 교육 강화 여성기업제품 판로 및 공공구매 확대 여성기업의 정책접근성 제고 여성기업단체의 기능 활성화
2008년	여성의 창업촉진 및 글로벌 여성기업 육성 (향후 5년간 2만5천개 창업, 10만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창업기반의 획기적 개선 여성기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여성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09년	여성의 창업촉진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창업 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경영안정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성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2010년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 및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동반성장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여성창업 시스템 구축 여성기업 경영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 진입장벽 완화 및 불평등 관행 해소
2011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창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여성기업지원인프라 확충·제정비
2012년	여성특화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창업 협력프로그램 시행 여성기업의 창업지원 시스템 보완 판로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제공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2005-2012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화 지원이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우선, 창업 촉진 지원정책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기업활동 촉진지원정책에서는 여성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 2011년의 기본계획에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여성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기업의 경영애로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 인프라를 확충·재정비하는 방향도 제시하였다.

한편, 2012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에서는 일반 중소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여성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인식하여 여성특화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정책수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관련 정보망을 통합하고, 여성특화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기업의 창업지원 시스템을 보완하고, 나아가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및 3D 사이버 전시회 등의 보다 강화된 판로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내용을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과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보면 세부적인 추진과제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여성창업 촉진정책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에서 밝힌 지원정책은 여성의 창업촉진 및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창업의 양적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2008년 이후의 지원정책은 창업의 질적 향상으로 초점이 변화되어졌다. 즉, 고부가가치 창업 아이템 발굴,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성공창업사례 전파교육 실시 등과 같이 창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졌다.

〈표 3-2〉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 흐름

구분	2005년 ~ 2007년	2008년 이후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교육 강화 및 자금지원 • 창업사전 정보·지식의 제공 • 소상공인 창업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발굴 •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멘토링 기능 강화 • 성공창업사례 전파교육 실시 • 1인 여성기업 창업 촉진 • 창업보육 역량 증대 • 여성창업 구조전환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정책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초기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홍보 및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포럼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자금 및 보증,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여성기업책임관 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및 유럽과 미국과의 FTA체결에 따른 국내외 시장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서 여성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에 대한 홍보지원방안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국제대회와 여성지도자회의 등을 참가 지원하거나 유치하여 국내외 여성기업인 및 관계자들 간에 네트워크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해외 판로확대방안 이외에 3D 사이버 전시회 및 해외바이어DB 구축을 통하여 수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3-3〉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 흐름

구분		2005년 ~ 2011년	2012년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	판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여성기업제품 온라인/홈쇼핑 지원 대-여성기업 동반성장 지원 국내외 박람회/전시회/상담회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유명박람회 참가 지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경영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인 교육/세미나/포럼 지원 경제인대회 및 경영연수 지원 경영안정자금 및 보증 지원 멘토링 제도 및 프로그램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지원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건강 관리시스템 연계 미래기업형 업종전환 구조개선 컨설팅 지원 각 부문 강화 추진 자금/보증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여성기업책임관제도 도입 및 활성화 여성기업 실태조사 실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여성기업전용 입주단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보육실 확장 및 여성특화창업보육센터 운영
	글로벌 네트 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여성경제인대회 참가 지원 여성지도자회의의 참가 지원 해외정책동향 정보 수집 및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여성경제인대회 유치 및 개최 여성기업 전용 수출사이트 (3D 사이버 전시장) 구축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시행과 비슷한 시기인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이라는 정책이 수립되면서 2008년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가재원을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부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²⁹⁾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그리고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국가재정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배분 및 효율적인 이용, 투명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서는 2010년에 최초로 각 중앙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매년 작성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성인지 예산서는 34개 기관에서 25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수는 2011년 245개에서 2012년 254개로 3.7% 증가하였다.

〈표 3-4〉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현황

(단위 : 개,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상기관수	29	34	34
사업수	195	245	254
예산금액	7.3	10.2	10.7

※ 자료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2010-2012

2009~2011년 성평등 목표별 여성수혜자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인력 활용’ 외에는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여성인력 활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의 여성수혜자 비율은 2010년부터 평균이하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사업의 낮은 수혜율이 전체사업의 수혜율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5〉 성평등 목표별 여성수혜자 비율

(단위 : 개, %)

성평등 목표	사업수	2009년	2010년	2011년
여성인력 활용	124	50.2	42.3	42.4
여성권익 보호	23	51.6	51.7	53.4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12	50.2	50.2	50.3
전체	159	50.5	49.5	49.7

주1) 여성수혜자 비율 = 여성수혜자 수/전체수혜자 * 100

주2) 사업수는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144개이고, 2012년에 기타 성별영향 분석이 가능한 사업 15개 추가

※ 자료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2011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한 31개 기관, 74개 일자리 사업의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여성수혜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여성수혜자 비율은 54.8%로 높은 반면 2010년부터는 47.6%로 감소하였다. 여기서 일자리 사업이란 기획재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말하며,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고용촉진사업, 교육훈련사업으로 분류된다.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장기실업자 또는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74개 사업 중 가장 많은 44개 사업이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분류되었다. 고용촉진사업은 사업주 지원금 및 보조금 지원, 취업취약계층의 구직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훈련사업은 개인·산업 및 지역·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사회서비스 및 단기적 일자리 성격의 사업이 많은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여성수혜자 비율이 53% 이상인 반면, 창출된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교육훈련사업의 여성수혜자 비율은 2009년 56.9%였으나, 2010년 36.1%, 2011년 35.4%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감소원인은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고용노동부), 예정 지역주민 직업전환 교육(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여성수혜자 비율이 10%p 이상 감소하였기 때문이다.³⁰⁾

<표 3-6> 일자리 사업 유형별 여성수혜자 비율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일자리사업 평균	54.8	47.6	48.1
직접 일자리 창출	53.1	53.7	54.7
고용촉진	30.6	32.0	30.3
교육훈련	56.9	36.1	35.4

※ 자료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2011

30) 자료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2011

2. 주요 지원기관 현황

가. 중앙부처

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고,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 여성기업 관련 업무를 실제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여성창업 촉진, 여성기업 육성,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 관련사항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내의 기업협력과, 기술개발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림 3-1>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관련 지원사업

정책 방향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여성창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전창업스쿨 • 창업경진대회 •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기업 육성	판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 수출여성기업지원 •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지원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 창업성장 기술개발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 • 여성CEO MBA 교육 • 전국경영연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한편, 여성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수립되는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및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기업관련 대표기관으로서 사업계획 및 실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등이 있다.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및 정책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기능 >

-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시정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 여성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의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학기술부

우리나라의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창의인재를 키우고 창조형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달성을 목표로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를 확립하고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등에서 대학교육,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개혁 및 과학기술 혁신 등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부처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여성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 지식경제부

우리나라의 산업,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 자원, 우정사업(우편·예금·보험) 등 산업정책을 통합조정하고, 무역·통상과 자원·에너지 정책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로서, 실물경제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여성기업지원사업에는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사업이 있다.

4) 여성가족부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통한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정부정책에 따른 성별영향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인력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교육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5) 특허청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 설정 등의 심사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보호, 창출, 활용 등 국가의 지식재산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우리나라 지식재산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특허청에서는 우수발명인의 판로 및 사업화를 위한 여성발명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6)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다양한 내·외자 물품 및 용역 계약은 물론이고 시설 공사, 국유재산관리, 해외조달시장 개척 등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원자재 비축 및 관리, 조달물품 품질관리 및 시장조절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조달청에서는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와 9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창업 촉진을 위하여 여성창업교육부터 창업자금 지원,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과 교육, 여성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마케팅, 전시회 및 홍보, 공공구매 등의 지원사업과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를 위하여 여성기업인을 위한 포럼 및 경영연수, 경제인대회와 국제교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주시, 구미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고양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다.

〈표 3-7〉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황

지자체명	제정일자	지자체명	제정일자
부산광역시	2009년 07월 08일	경상남도	2009년 08월 13일
인천광역시	2007년 1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 01월 07일
울산광역시	2008년 10월 16일	전주시	2009년 02월 27일
광주광역시	2009년 11월 16일	구미시	2009년 09월 28일
경기도	2008년 07월 25일	경기도 광주시	2011년 12월 30일
충청북도	2008년 08월 08일	경기도 고양시	2011년 08월 05일
전라남도	2011년 05월 13일	-	-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2011

이를 기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과 기회보장을 의무화하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및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별로 등록된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21세기여성CEO연합,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등이 있다.

<표 3-8>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

관련 단체 (소관부서)	설립목적	사업내용 요약	회원수/ 설립연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공동 이익증진과 건전한 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 촉진 사업추진 등 	1,571명/ 1971년
(社)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청)	여성벤처 기업이 뿌리를 내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벤처기업의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 등 	610명/ 1999년
(社)21세기여성CEO연합 (기획재정부)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과 새로운 기업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인 경제인사와의 교류 여성경영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등 	108명/ 2003년
(社)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지식경제부)	우수한 IT여성기업인의 발굴 및 전문 여성 인력의 양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경제부 여성IT인력 취업 지원 사업 IT여성기업지원 등 	179명/ 2001년

관련 단체 (소관부서)	설립 목적	사업내용 요약	회원수/ 설립연도
(社)한국여성공학 기술인협회 (지식경제부)	공학기술계 여성인력의 육성 및 활용과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 워크 형성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공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리더 양성 공학기술계 여성활용에 대한 정부정책 제안 등 	800명/ 2004년
(社)한국여성 발명협회 (특허청)	여성의 잠재력을 창의성 계발로 이끌어 냈으로써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발명사업화지원 여성발명 저변 확대 여성발명 인력 양성 등 	500명/ 1993년
(社)한국여성 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여성 경영자들의 경제단체로서 여성 경영인들의 교류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경제인구 증대 여성경영의 세계화 도모 등 	210명/ 1993년

※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2011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공동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의 경영 능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지원분야로 여성CEO MBA 교육, 전국경영연수,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세계여성경제인대회 등의 지원사업이 있으며, 여성기업 판로 지원분야로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 등의 지원사업이 있다. 그리고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과 여성기업 실태조사 사업도 있다.

<표 3-9>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지원	여성CEO MBA 교육	여성CEO의 경영활동상 애로사항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자율적인 멘토링관계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전국경영연수	한국 여성경제인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기업의 판로확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CEO의 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국제적 수준의 여성기업인 대회에 국내 대표단을 파견하여 여성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외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
여성기업 판로지원	세계여성 경제인대회	한국과 회원국 간에 비즈니스 공유 및 기회 제공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여성기업의 문제점과 전망을 정부기관 및 정책기구에 건의하고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하여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시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홍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설명회와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배포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율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	여성기업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고, 여성기업에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효율적인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정책·보고자료의 통계적 근거로 활용하며 분야별 여성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여성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 도출을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
여성창업 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 및 자활의지 제고와 더불어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2)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민간 협력단체로서, 여성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여성벤처기업의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고 여성벤처기업이 뿌리를 내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벤처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 여성벤처기업 활성화 정책개선 활동, 여성벤처기업 육성정책 건의, 여성벤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여성벤처기업 정보제공, 여성벤처기업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

〈표 3-10〉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여성벤처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	여성의 창업 제고를 위한 창업캠프, 강좌, 현장체험, 창업사업화 등을 단계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벤처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기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창업의식 고취를 통하여 여성인력의 고용창출에 기여
여성벤처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활동	여성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타개 및 사회인지도 개선을 통해 여성이 기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여성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건의	여성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체질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여성벤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여성벤처기업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성 및 효과적인 여성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여성벤처기업의 정보제공	여성벤처기업의 활동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및 입찰, 신기술동향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여성벤처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 여성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켓채널 구축 및 연계지원활동 등 현지진출방안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3) 21세기여성CEO연합

21세기여성CEO연합은 여성CEO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민간협력단체로서, 여성경영인이 효율적으로 기업경영지식을 공유하고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여성경영인상을 정립하고자 설립되었다. 21세기여성CEO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인사 교류 사업, 여성경영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사업, 최고경영지식 개발 연구 및 조사 등이 있다.

〈표 3-11〉 21세기여성CEO연합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세계적인 경제인사교류	세계 유명CEO 초청강연 및 세계경영인과 한국문화를 공유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세계적인 경영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경영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여성경영인의 능력개발과 여성경영인 경영사례 연구 및 교류를 활성화 하고 여성경영인이 겪는 불이익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최고경영지식 개발 연구 및 조사	글로벌 여성CEO 포럼 및 학회, 각 경영분야별 연구세미나, 산·학·연을 연계한 연구워크숍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

4)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는 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IT여성기업인의 발굴 및 전문여성 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기업(취약기업) 그룹웨어 ASP, e-Catalogue 제작, 이브와 프로젝트 멘토링, 그린 IT 자활 여성공동체창업 아카데미 등이 있다.

〈표 3-12〉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여성기업(취약기업) 그룹웨어 ASP 지원	여성기업(취약기업)의 IT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정보 활용지수를 높이고, e-business 확산을 통한 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웨어 ASP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기업(취약기업) e-Catalogue 제작 지원	여성기업의 취약부문인 IT활용지수의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e-Catalogue 제작을 지원하여 온라인 마케팅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이브와 프로젝트 멘토링 지원	이공계 여대생들에게 다양한 IT산업현장의 기업인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산업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그린 IT 자활여성공동체창업 아카데미 지원	에비여성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창업교육 및 창업 현장컨설팅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5)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공학기술계 여성인력의 육성 및 활용과 상호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상생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과 공학기술의 선순환적 활용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리더육성, 산업기술문화 조성, WATCH 21, R&D 중간조직 활성화 등이 있다.

〈표 3-13〉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리더육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고급여성공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산업기술문화 조성	산업현장의 여성공학기술인 리더 발굴 및 표창, 여성공학인 활용 우수 기업사례 및 여성기술인 성공사례 발굴 등 여성공학기술인의 사회적 인식확산을 지원하는 사업
WATCH 21	공대여대학원생의 리더십 함양 및 글로벌 고급여성인력 양성, 새로운 공학계 교육안 제시, 우수여성공학기술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
R&D 중간조직 활성화	여성공학기술인력 향상 및 정책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공학계 산업기술인력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연 분야별 여성공학기술인력 간의 인프라구축으로 정책제안 등을 지원하는 사업

6)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들에게 발명의 생활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성 발명인구의 저변확대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발명풍토를 조성하며, 지식기반 사회와 세계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창의성 계발로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대한민국여성발명품 박람회, 시제품제작 지원, 변리자문서서비스, 국제발명품전시회 참가지원, 여성발명경진대회, 여성발명인 워크숍 등이 있다.

〈표 3-14〉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대한민국여성발명품 박람회	국내외 여성발명품의 홍보 및 전시를 통한 실질적인 판로개척, 비즈니스 매칭 기회 제공, 국내외 여성발명기업인들의 교류 확대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강화, 국제적인 위상 제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시제품제작 지원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여성창업자의 우수한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사업화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변리자문서서비스	여성발명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 특허출원 안내 등 무료 변리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국제발명품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시장의 신기술 개발동향의 파악 및 정보를 수집하며 국제전시회 관람을 통한 발명아이디어 개발 및 의욕고취, 여성발명인들의 발명품을 해외에 홍보할 기회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발명경진대회	여성들의 창의력 발휘 기회 제공 및 대학생의 발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발명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여성발명인 워크숍	여성발명인의 지식재산권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여성발명인 간에 정보 교환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발명인 성공사례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구분	사업내용
세계여성발명 & 기업인워크숍	세계여성발명 & 기업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 역량 강화와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여성발명창의교실	여성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이를 창업 또는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발명지도사 (초급)양성과정	미취학 아동 보육, 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발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지도인력 양성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여대생발명캠프	여대생의 창의성 개발 및 발명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7)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는 여성경영인들의 교류는 물론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안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경제인구 증대, 여성경영의 세계화 도모, 정부 및 유관단체에 정책제안 등이 있다.

〈표 3-15〉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기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증진을 추구하여 지위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경제인구 증대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여성기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예비여성경영인을 발굴하고 고급여성인력의 활동을 유도하는 사업
여성경영의 세계화 도모	해외교포 여성기업인 및 외국 여성경영단체와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사업
정부 및 유관단체 정책제안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에 경제정책을 제안하고 여성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여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유도하는 사업

라.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별로 등록된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진흥원 등이 있다.

<표 3-16>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관련단체 (소관부서)	설립목적	사업내용 요약	설립연도
(財)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창업보육 •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2006년
(株)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청)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판매 및 유통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 전시, 마케팅 지원 • 국내 판로지원 및 해외수출 지원 등 	1995년
(財)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추진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경영, 인력양성, 연구, 창업 지원 등 • 여중·고·대학(원)생을 위한 영재 발굴, 연구대회, 멘토링, 아카데미 지원 등 	2011년
(財)한국여성경제진흥원 (기획재정부)	여성경제진흥을 통한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성숙한 양성 평등의 경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 여성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여성경제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등 	2009년

※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창업보육,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각 지역별 센터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보육성과 및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 여성 기업 창업지원기관의 메카로서 위상구축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지원센터 운영 및 확장 사업으로 구분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다. 또한 여성 창업 지원사업으로 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등이 있으며, 여성기업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는 해외유명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수출여성기업지원이 있다.

〈표 3-1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여성창업 지원	실전창업스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감성기반의 서비스분야, 유통분야의 창업 및 기술교육을 통해 여성창업 촉진 및 1인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여성창업경진대회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효과적인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며, 사업화 능력을 배양시켜 창업활성화 및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창업을 꿈꾸는 여대생을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기업가정신 고취 및 경영체협의 장을 제공하여 실제 여성창업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여성기업 종합지원 센터운영	지원센터 운영 (창업BI운영)	여성 창업유망업종에 속하는 여성기업에 대해 창업보육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전문 컨설팅 서비스 및 국내외 판로지원,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출여성기업 지원	해외판로를 모색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명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경험 제공, 수출 기회 제공 및 해외판로 개척을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

2)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판로 및 유통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질 및 저렴한 가격을 갖추고 경쟁력은 있지만 판매처의 부족으로 제품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에 입점하도록 하여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마케팅장소 제공 및 매장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은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과 패션주얼리 전용관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의류 및 패션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디자이너, 대학생 및 일반인 중 패션디자인 전공자이며, 예술 및 디자인계열 전공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디자이너 창업관 참여자 중에서 우수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 패션관련 사이트 및 패션잡지에 홍보와 인터넷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며, 매장 입점비, 임대료, 판매사원 인건비, 기타 관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시판매와 패션쇼 및 국내외 전시회 참여까지도 지원한다.

<표 3-18>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지원	시장진출을 앞둔 우수한 여성 초보디자이너에게 상품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3)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추진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지역센터 설치·운영,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 일자리 연계형 교육, 경력개발 교육, 연수훈련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이 있다.

〈표 3-19〉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지역센터 설치·운영	각 지역별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	국가차원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기본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이공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사업
일자리 연계형 교육	미취업 및 경력단절, 비정규직 전문학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창의실험지도자 과정,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 웹매니저 과정, 경력단절 여성과학자 재진입 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경력개발 교육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 경력단절 또는 퇴직예정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경영교육, 창업컨설팅, 리더십교육, 그린 리더십, 코-리더십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연수훈련 지원	비정규직의 경력개발지원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및 취업능력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연구활동지원, 신기술훈련과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및 교육	e-멘토링, 열린멘토링, 찾아가는 멘토링, 캠퍼스 멘토링, 멘토링 플로우, 취업클리닉, 온라인멘토링 교육, 멘토 워크숍, 멘티 워크숍, 멘토링 코디네이터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으로 진학결정, 직업 진로 및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4)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은 여성경제인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루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국내외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경제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여성 경제 진흥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협력 등이 있다.

〈표 3-20〉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국내외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여성경제인의 발전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인식과 기업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실태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여 여성에 대한 단점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여성 근로자 및 간부, 여성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경제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여성경제인에 대하여 사업발전단계와 사업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며, 여성경제인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
여성경제 진흥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협력	여성경제활동이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분석하여 정책제안하는 사업

제 2 장

국내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

1. 개 요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평가 및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본 백서에서는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였으며, 특히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분석에 있어서 여성창업 촉진, 여성기업 육성(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재정비 등의 총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중앙부처가 추진한 여성기업지원사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3-21〉 중앙부처의 여성기업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주관부처 / 수행기관
여성창업 촉진	실전창업스쿨	중소기업청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이장 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발명진흥지원	특허청 / 한국여성발명협회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주관부처 / 수행기관	
여성기업 육성	관 로 확 대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수출여성기업지원	중소기업청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유통센터
	기 술 개 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	중소기업청, 조달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중소기업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재정비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CEO MBA 교육		
	전국경영연수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여성가족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	지식경제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여성기업지원사업을 여성창업 촉진, 여성기업 육성,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3-22〉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지자체명	
여성창업 촉진	여성창업기업 지원	서울, 전남, 충남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 확장	서울, 부산, 대구, 경남, 대전, 충북	
	여성창업지원(창업멘토링 / 교육)	대구, 경남, 울산, 강원,	
	여성창업자금 지원	부산	
	여대생 창업센터	충북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제주	
여성기업 육성	관료 확대	여성농어업인 기업육성 지원	광주
		여성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경북, 전남
		여성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경남, 강원
		여성기업공공구매	강원, 충남
		여성기업제품 홍보물 제작	제주
		여성기업 전시회참가 지원	
	정책자금	운전자금이차보전	경북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남, 충남, 제주
		중소기업 육성자금우대 지원	강원
		여성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경기
여성기업 자금 지원		충북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재정비	여성CEO 경영혁신포럼 개최	부산, 전북, 경남	
	여성친화기업문화조성 약정체결 지원	광주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강원, 경북, 전남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지자체명
여성기업 인프라 확충·재정비	여성협회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인천
	여성경제인, 여성기업인대회 지원	경북, 강원, 대전
	여성경제인 국제교류사업	강원
	여성기업 전용단지 조성	
	여성기업 디렉토리 구축	전북
	내일의 여성CEO 육성	충북, 충남
	여성CEO 멘토링 지원	충북
	유망여성CEO 리더십교육 지원	제주

2. 중앙부처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

가. 여성창업 촉진 지원사업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발명진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등이 있다.

1) 실전창업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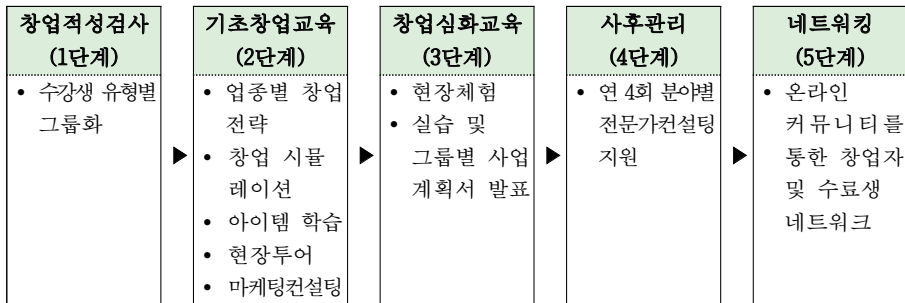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와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식·감성기반 서비스분야 및 유망분야에 대한 창업교육을 통하여, 여성 창업촉진과 1인창조기업 육성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예비여성창업자로서, 교육비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표 3-23〉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예비여성창업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강사료, 강의장 임차료, 교재비, 홍보비, 실습비 등)의 80% 지원 전문가 컨설팅 무료 지원(수료생에 한해 연 4회)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1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은 예비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수강생유형별로 그룹화하기 위한 창업적성검사단계, 업종별 창업전략수립 및 창업 시뮬레이션과 현장투어, 마케팅컨설팅 등의 기초창업교육단계, 현장체험 및 실습과 사업계획서 수립 등의 창업심화교육단계, 전문가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단계, 실전창업스쿨을 통하여 창업한 창업자와 수료생 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단계 등으로 창업준비에서 창업기업 운영까지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프로세스



교육장좌수는 2009년 30회에서 2010년 48회, 2011년 51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수강생은 2009년 816명, 2010년 1,249명, 2011년 1,302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육 후 창업률은 2009년 17.5%, 2010년 18.4%, 2011년 19.1%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만족도 역시 2009년 81점, 2010년 83점, 2011년 86점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3-24>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성과

(단위 : 회, 명, %,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교육강좌수	30	48	51
교육수강생수	816	1,249	1,302
교육 후 창업률	17.5	18.4	19.1
교육수강생 만족도	81	83	86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표 3-25> 지역별 실전창업스쿨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교육과정	참가자 수
서울(중앙)	두피케어샵/베이커리카페/외식창업/패션점포(손뜨개바느질)/아트비즈/CS강사	157
부산	두피케어샵/아로마테라피 DIY샵/디저트카페	96
대구/경북	퓨전떡카페/커피전문점/예쁜글씨POP/수제떡&쿠기전문	99
광주/전남	쇼핑몰창업과 소셜네트워크 마케팅/파티플래너/패션디자이너 향토음식전문점	100
대전/충남	꽃집/커피전문점	81
인천	베이커리카페/바리스타/피부토탈라인	100
울산	떡카페/미술심리치료/천연비누&천연화장품	76
강원	라떼아트/커피전문점/플라워샵	80
경기	e-commerce/셀프메이드, 쿠기&케익전문점/베이커리페이스트리/바리스타	130
충북	바리스타/플로리스트/인테리어코디네이터/가구 DIY공방	100
전북	북아트지도사/매너컨설팅	126
경남	리본코디네이터/에나타임브런치/헤어샵/CS강사	107
제주	바리스타	50
합 계		1,302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011

교육 후 창업률은 2010년 18.4%에서 2011년 19.1%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창업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창업률을 평가하여 정책성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준비단계에 맞는 교육설계와 실전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에 대해서만 창업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여성창업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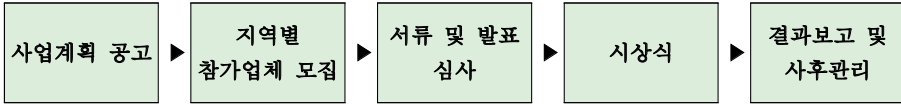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효과적인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며 사업화 능력을 배양시켜 창업 활성화 및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표 3-26〉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팀) 및 창업 후 2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및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1명)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1,000만원 - 최우수상(2명)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각 500만원 - 우수상(3명)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각 300만원 - 장려상(3명)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및 상금 200만원(1명) 우리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2명) • 수상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 신용보증서 발급 우대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3

지원대상은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 창업 후 2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이며, 총 9명의 대회시상 및 포상뿐만 아니라, 수상자에게는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및 신용보증서 발급 우대 등을 지원한다.

<그림 3-3>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2011년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지역별 참가자 수는 총 176개팀으로, 서울이 67개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3개팀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참가자 중에서 약 51%가 서울 및 경기도에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7>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참가수	67	11	8	14	5	9	1	5	23	5	17	9	2	176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팀 수는 2009년 131개팀, 2010년 169개팀, 2011년 176개팀으로, 2010년도 대비 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상팀 수는 2009년 10개팀, 2010년 9개팀, 2011년도 9개팀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지난 3년간 수상팀의 96%가 창업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은 대부분 검증된 아이템을 가진 기술 창업으로 현재 일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창업보다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표 3-28〉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참가팀수	131	169	176
수상팀수	10	9	9
창업업체수	10	8	9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 중소기업청, 2012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3)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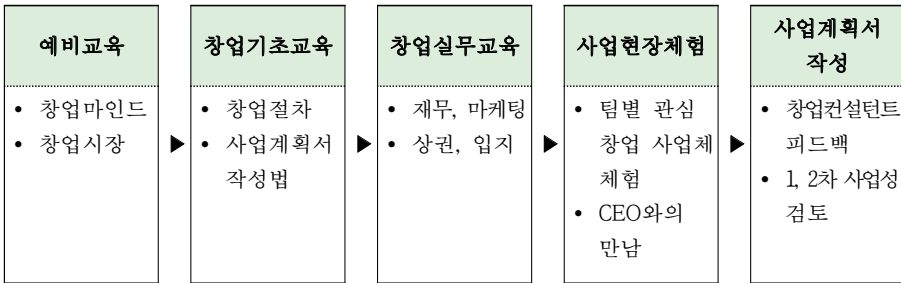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은 차세대 여성창업을 꿈꾸는 여대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창업마인드 고취 및 창업분위기 확산, 여성창업가 배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업에 관심 있는 여대생이며, 공통경비, 장학금, 학점인정 등을 지원한다.

〈표 3-29〉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창업에 관심 있는 여대생(서울, 부산, 대구/경북지역 각 4개 대학)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전창업 전문교육(강사료, 교재비, 우수중소기업 탐방, 워크숍 등)의 공통경비 지원 • 교육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우수팀 장학금 지급(해당 지역) • 참여대학과 MOU 체결을 통하여 학점 인정(2학점 이상)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1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은 창업마인드 및 창업시장에 대한 예비교육단계, 창업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창업기초교육단계, 재무 및 마케팅과 상권 및 입지분석에 대한 창업실무교육단계, 사업체 체험 및 CEO면담 등의 사업현장체험단계, 사업계획서 작성단계 등 교육과 실제 창업과정을 매칭하여 성공창업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림 3-4>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2011년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의 수강생수는 총 292명으로, 서울 46명, 대구/경북 88명, 부산 63명, 광주/전남 42명, 강원 23명, 전북 30명 등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교육수강생 수는 2009년 269명, 2010년 272명, 2011년 29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10년도 대비 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만족도에서는 2010년 82점에서 2011년 83점으로 1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0>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교육 수강생수	269	272	292
교육 수강생 만족도	-	82	83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2011년 차세대 여성CEO 수강생 중 1명이 현재 창업을 하였고, 여성창업 경진대회에서 5명이 수상하는 등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은 여대생 창업 마인드 고취 및 창업분위기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1〉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참가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	대구/경북	부산	광주/전남	강원	전북	합계
상반기	24	48	45	-	-	-	117
하반기	22	40	18	42	23	30	175
소 계	46	88	63	42	23	30	292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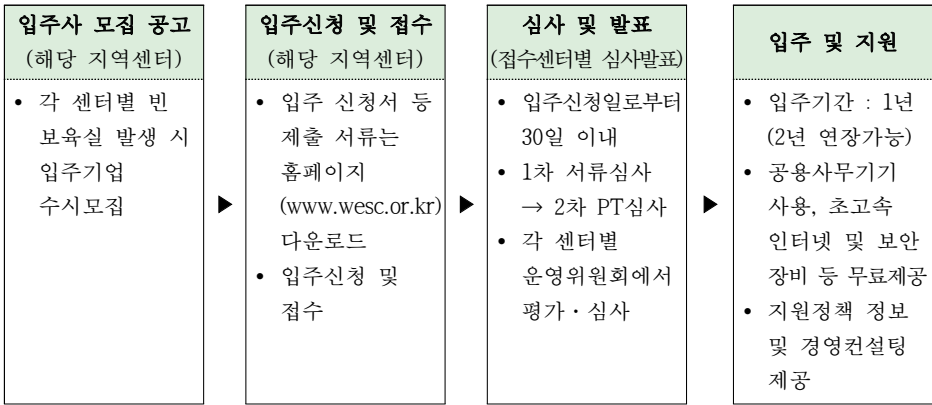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여성의 창업유망업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 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실시 등 여성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 여성창업자) 및 여성경제인으로서, 여성기업 창업보육시설 및 전문가 컨설팅, 각종 인증획득 지원, 판로지원과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내 보육센터 입주는 입주사 모집 공고, 입주신청 및 접수, 심사 및 발표, 입주 및 지원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32>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4개 지역센터 입주기업 및 여성경제인 •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지원시설(공동 사무기기 사용, 초고속 인터넷 및 보안장비) 제공 • 경영, 세무 등의 컨설팅, 산업재산권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비,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국내외 판로지원 • 중소기업 지원시책 ·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29

<그림 3-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센터 입주프로세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14개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총보육실 168개 중에서 154개의 보육실이 입주된 상태로서, 지역적으로는 인천지역센터의 보육실수가 19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구/경북과 충북이 각각 16개, 경남과 광주/전남 각각 15개, 강원과 전북 각각 13개 등의 순으로 각 지역센터 내의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의 보육실은 입주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보육실 입주 여성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 및 시설,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3:1, 수도권은 12:1의 높은 입점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IT, 패션 및 생활용품, 일반 제조, 뷰티, 섬유 의류, 출판광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입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표 3-3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보육실수	입주업체수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주요 업종
중앙	9	9	출판업, IT, 애니메이션 제작, 콘택트 렌즈제조업 등
서울	9	9	IT, 게임소프트개발, 주얼리, 의료기기 제조 등
부산	10	10	화장품, 의류, 미용용품 제조, 출판업, 컨설팅 등
대구/경북	16	16	섬유 의류, 유아교재 제조 등
광주/전남	15	10	비누, 세정용품, 차량용품 제조, 영상 제작업 등
대전/충남	10	6	광고대행서비스, 출판업 등
인천	19	18	의류, 악세사리 제조, 금형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울산	6	5	여행서비스, 조경업, 기계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
강원	13	12	인쇄, 홈페이지 개발, 출판업, 의류 제조 등
경기	10	10	생활소품, 공작기계, 유아용품 제조, 광고기획 등
충북	16	14	공예품, 아동용품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북	13	13	세정용품, 유아용품 제조, IT개발, 전시대행서비스 등
경남	15	15	공작기계, 조명기기, 의류 제조 등
제주	7	7	영상산업, 광고기획대행, 의류 제조 등
합 계	168	154	-

주) 광주/전남의 보육실 수는 2012년 3월 기준 확장예정인 5개가 반영됨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인큐베이팅 성과를 살펴보면, 입주업체의 매출액은 2009년 250억원, 2010년 375억원, 2011년 442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2011년에는 2010년도 대비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개 지역센터의 입주 고용인원을 보면, 2010년 148개 입주기업에서 562명을 고용하였으며, 2011년은 154개 입주기업에서 785명을 고용하여 1개 업체당

평균 2010년 3.8명, 2011년 5.1명으로 34%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업체평균 매출액 증가율에서는 2009년 46%, 2010년 17%, 2011년 13.3%를 보이고 있으며, 업체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3년을 주기로 신규업체가 입주되고, 기존업체가 졸업하면서 증가율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입주업체의 만족도에서는 2009년 87점, 2010년 85.5점, 2011년 88.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표 3-3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단위 : 억원, %,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입주업체 총매출액	250	375	442
업체평균 매출액증가율	46	17	13.3
입주업체 만족도	87	85.5	88.3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5)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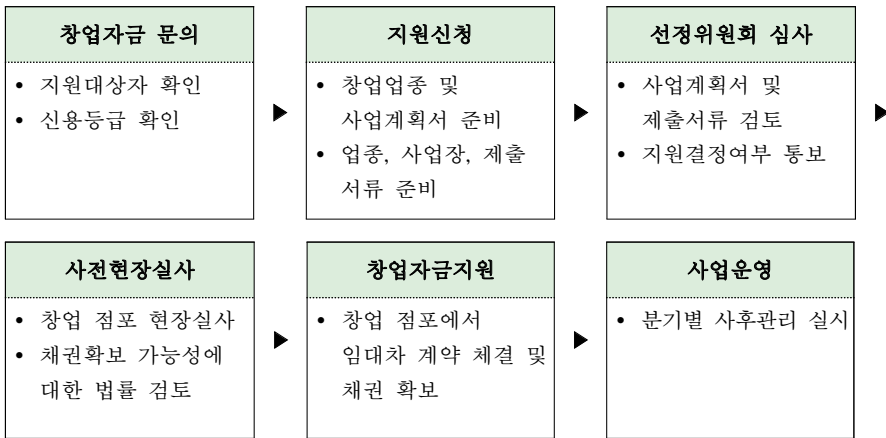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가장으로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며, 연 3.0% 이자율에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표 3-35>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가장으로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제외업종 : 주점업, 사치·향락업종 예비창업자, 신용관리대상자, 사업자등록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근로복지공단 및 아름다운재단과 소상공인진흥원의 지원자금을 받은 자 등
지원사항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 2년간 연 3.0% 이자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여성가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문의를 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창업자금 문의단계, 지원신청 단계, 선정위원회 심사단계, 창업할 점포에 대한 실사와 법률적 검토를 하는 사전현장실사단계, 창업자금지원단계, 창업자금을 지원한 점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운영단계 등으로 수행되며, 특히 현장평가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림 3-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2009년 신규지원으로는 16명에게 4.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연장으로는 29명에게 7.67억원을 지원하여 총 45명에게 12.12억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 신규지원으로는 32명에게 8.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연장으로는 5명에게 1.3억원을 지원하여 총 37명에게 9.7억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 신규지원으로는 19명에게 4.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연장으로는 6명에게 1.7억원을 지원하여 총 25명에게 6.25억원을 지원하였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동안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총지원자수는 504명으로, 신규지원자 389명, 기간연장자는 115명이다. 그리고 총지원금액은 110억원으로 신규지원금 85억원, 기간연장금 2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3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억원)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신규지원	16	4.45	32	8.4	19	4.55
기존연장	29	7.67	5	1.3	6	1.7
합계	45	12.12	37	9.7	25	6.25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6)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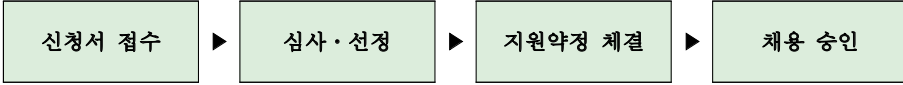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의 일반국민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이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표 3-37〉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의 일반국민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8.5%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2-2110-7174 각 지방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신청서 접수단계, 심사·선정단계, 지원약정 체결단계, 채용 승인단계 등 총 4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7〉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프로세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의 수혜자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전체 17,735명 중에서 여성이 12,946명으로 73.0%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체 10,873명 중에서 여성이 7,543명으로 69.4%, 2011년에는 전체 8,647명 중에서 여성이 6,053명으로 7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여성수혜자 비율은 평균 70.8%로 각 연도와 비교 시 큰 차이가 없지만, 전체적인 사업수혜자 및 지원예산 감소로 여성기업의 지원수혜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38〉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사업 수혜자	전체	17,735	10,873	8,647
	여성(비율)	12,946(73.0)	7,543(69.4)	6,053(70.0)
	남성(비율)	4,789(27.0)	3,330(30.6)	2,594(30.0)
지원사업 예산	전체	169,815	118,409	74,536
	여성(비율)	123,965(73.0)	82,176(69.4)	52,175(70.0)
	남성(비율)	45,850(27.0)	36,233(30.6)	22,361(30.0)

주) 2011년은 예산 집행 추정치임

※ 자료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2010-2012

7) 여성발명진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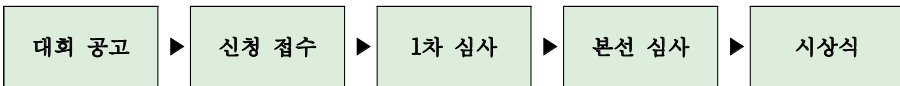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은 창의력 있는 여성 우수발명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유도하며, 여성발명품 박람회 등을 통해

여성 우수발명인의 판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대생,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기업인 등이며, 발명인력 교육 및 워크숍 참석 기회를 제공하고, 발명한 사항에 대한 변리자문 서비스와 발명박람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한다.

〈표 3-39〉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대생,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기업인
지원사항	발명인력 교육 및 워크숍 참석기회 제공, 변리자문 서비스,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청 : 042-481-5167 • 한국여성발명협회 : 02-538-2710

〈그림 3-8〉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여성발명경진대회)의 프로세스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살펴보면, 2009년 13,181명에서 2010년 13,449명, 2011년 13,507명으로 2009년 이후 수혜자 수는 2% 미만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예산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0〉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사업 수혜자	13,181	13,449	13,507
지원사업 예산	1,517	1,517	1,553

주) 2011년은 예산 집행 추정치임

※ 자료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2010-2012

8)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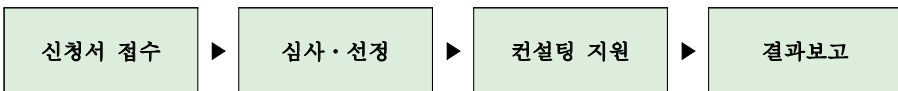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예비 여성기술 창업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상업화에서부터 기술창업 지원 및 특허활용 기술창업 등 정부 각 부처가 제공하는 창업준비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며 2011년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표 3-41〉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과학분야 특허 및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여성 기술창업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전문교육 알선 및 수강료 80% 지원 • 창업아이템 구상 및 창업계획, 사업실행단계에 따라 해당분야 컨설팅 사업은 안내 또는 지원 • 기술특허 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특허 : 출원비용의 80%, 최대 100만원 지원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 02-2100-6341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02-3277-3642

지원대상은 과학분야 특허 및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여성창업자이며, 정부의 창업전문교육 알선 및 교육수강료의 80%를 지원하고 창업컨설팅 지원과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술창업을 위한 기술특허의 변리상담 및 특허 출원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신청서 접수단계, 심사·선정단계, 컨설팅 지원단계, 결과보고단계 등 총 4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9〉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프로세스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지원사업으로서 수혜자 수는 총 22명으로 창업교육 5명, 특허출원비용 5명, 창업컨설팅 12명 등이 지원받았으며, 총 21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2〉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1년 계획	2011년 실적
지원사업 수혜자		10명 내외	22
세부내용	창업교육	-	5
	특허출원비용	-	5
	창업컨설팅	-	12
지원금액		10	21

나. 여성기업 육성(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수출여성기업지원, 여성기업 전용관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등이 있다.

1)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사업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여성기업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채널의 다양화를 통하여 마케팅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였다. 지원대상은 자체 온라인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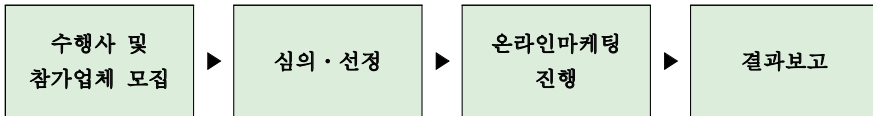
이며, 종합홍보사이트를 통한 우수여성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고 스마트폰용 모바일웹 구축을 지원하였다. 또한 유·무료 체험단을 운영 및 QR코드,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지원하였다.

〈표 3-43〉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자체 온라인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홍보사이트를 통한 우수 여성기업 및 제품 홍보 • 참여 여성기업별 스마트폰용 모바일웹 구축 • 유·무료 체험단 운영을 통한 소비자 홍보, 이벤트/프로모션 홍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6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사업은 수행사 및 참가업체 모집단계, 심의·선정단계, 온라인마케팅 진행단계, 결과보고단계로 수행된다.

〈그림 3-10〉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사업 프로세스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사업은 2011년도까지 시행하고 종료된 사업으로서, 참가업체수는 2009년 20개, 2010년 15개, 2011년 20개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2008년도 대비 10.6% 증가, 2010년에는 2009년도 대비 38.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1년에는 2010년도 대비 2%로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1년 업체별 사이트 유입자수 증가율은 2010년도 대비 10% 증가하였다. 이렇게 2011년도에 실적이 이전 연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온라인 마케팅 사이트가 2011년 12월에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운영 후 2개월 동안의 실적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표 3-44>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참가업체수	20	15	20
매출액증가율	10.6	38.8	2
업체별사이트 유입자수 증가율	-	-	10
만족도	86	-	81

주) 2011년 실적은 2012년에도 진행 중이며, 일부 실적만 반영된 결과임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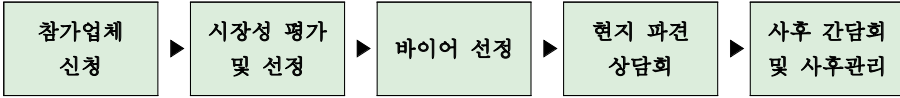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수행사를 활용하여 해외바이어와의 연계 및 전략 파트너쉽 구축과 수출채널의 다변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2011년도까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였다. 지원대상은 수출유망 여성기업 및 수출초기 여성기업이며, 바이어 매칭비,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와 통역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성 있는 업체 선발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45>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수출유망 여성기업 및 수출초기 여성기업
지원내용	바이어 매칭비,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통역비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 042-481-446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2

〈그림 3-1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수행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은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 박람회지원으로 세분화하여 추진되었다.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의 참가업체수는 2009년 28개사, 2010년 20개사, 2011년 22개사이며, 상담액은 2009년 50만 달러, 2010년 79만 달러, 2011년 519만 달러로 2011년에는 2010년도 대비 약 6.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1년 국내 박람회 지원 참가업체수는 33개 업체이며, 상담건수는 428건, 매출액은 약 76백만원이다.

〈표 3-46〉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만 달러, 점, 건, 백만원)

사업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참가업체수	28	20	22
	상담액	50	79	519
	만족도	-	-	84.5
국내 박람회 지원	참가업체수	-	-	33
	상담건수	-	-	428
	매출액	-	-	76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3)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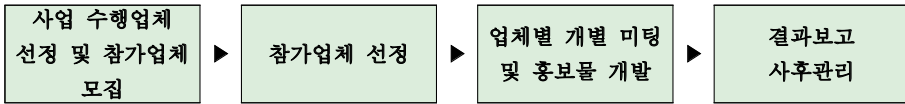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의 마케팅 및 홍보능력이 부족하여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기업에 있어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였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업이며, 전자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사업은 업체별 개별 매칭을 통해 맞춤형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표 3-47>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기업
지원내용	전자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 지원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5

<그림 3-12>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사업 프로세스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사업은 2010년에서 2011년도까지 시행하고 중단된 사업으로서, 참가업체수는 2010년 252개사, 2011년 28개사이며,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는 15.7%가 증가하였으며, 만족도에서도 2011년도에 8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가업체수의 급격한 감소 원인은 사업내용 차이로 2010년도는 전자카달로그 제작 및 홍보를 지원하였고, 2011년도는 전자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였다.

<표 3-48>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10년	2011년
참가업체수	252	28
매출액 증가율	-	15.7
만족도	-	80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4)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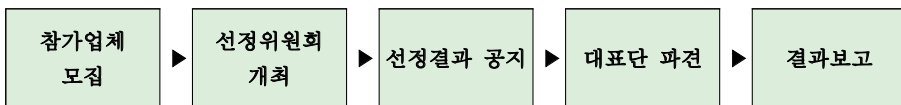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여성기업인대회에 국내 대표단을 파견해서 여성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표 3-49〉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기업 대표, 학계, 관련 정부기관, 여성문제 전문가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비,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의 공통경비 일부 지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 본회의 및 세미나 등 공식행사 참가 - 주제별 워크숍 참가 및 발표 - 네트워킹 런치 및 만찬 참가를 통한 해외여성기업인과 교류 - 주최국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 참여
2012년 참가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WLN(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인원 : 2012년 6월 26일~28일, 9명 • FCEM(독일 베를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인원 : 2012년 9월 26일~30일, 3명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2

지원대상은 여성기업 대표, 학계, 관련 정부기관, 여성문제 전문가로서 공통경비 일부와 본회의 및 세미나,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지원하며, 여성지도자 네트워크회의(APEC-WLN)와 세계여성경제인대회(FCEM) 등에 참가를 지원한다.

〈그림 3-13〉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며 개별 기업으로는 맺기 어려운 고급 수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지도자 네트워크회의(APEC-WLN)와 세계여성경제인대회(FCEM)에 국내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책 홍보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여성경제인대회는 2006년 국내에 처음 유치한 이후, 2012년 재유치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동 대회에서 아시아 지역위원 대표 및 운영위원회 부회장이 한국 대표단에서 선임된 성과도 얻게 되었다.

연도별 참가자 수는 2009년 21명, 2010년 23명, 2011년 12명이며, 2011년도에 참가자수가 감소한 원인은 개최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거리·시간·비용 상의 문제로 파견인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대표단 파견은 APEC-WLN에는 매년 참석을 하였지만, FCEM에는 2009년도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0>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참가자수	21	23	12
APEC-WLN	제14회 회의	제15회 회의	제16회 회의
FCEM	제57회 총회(불참)	제58회 총회	제59회 총회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5) 수출여성기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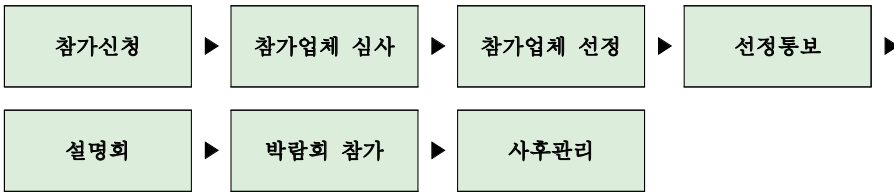
수출여성기업지원분야에는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이 있다.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과 수출경험이 부족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명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수출 및 해외 판로확대와 판로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출 유망 여성기업으로서,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공통 경비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은 수출초보 기업도 어려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출업무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표 3-51〉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수출유망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박람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의 70%, 통역비 등 공통경비 지원 - 참가비 30% 및 항공, 체재비 및 운송비 등은 자부담 • 수출통상전문가 컨설팅, 사전바이어 매칭, 무역협회 회원등록 지원 중 선택적(택1)으로 컨설팅을 지원 • 수출초보 여성기업에게는 수출업무 교육을 제공
2012년 참가지원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TEX Technology Week(두바이) - 10개사 • COSMOPROF AISA(홍콩) - 10개사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29

〈그림 3-14〉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 프로세스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의 참가업체수는 2009년 24개사, 2010년 34개사, 2011년 30개사이며,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는 1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액은 2009년 268만 달러, 2010년 558만 달러, 2011년 655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09년 및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는 각각 144.4%, 17.4% 증가하였다. 그리고 참가자 만족도는 2009년 80.5점, 2010년 83점, 2011년 81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2〉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만 달러,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참가업체수	24	34	30
계약액	268	558	655
참가자 만족도	80.5	83	81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6)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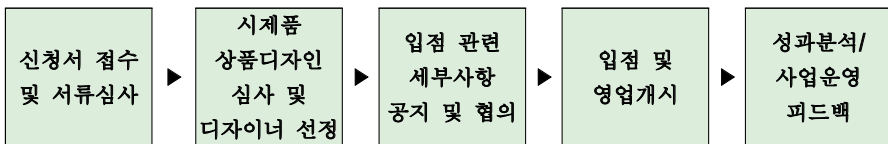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은 우수한 품질 및 저렴한 가격을 갖추고 경쟁력은 있지만, 판매처의 부족으로 제품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 기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에 입점을 지원하여 마케팅장소 제공 및 매장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패션주얼리 전용관 및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영사업으로 구분되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패션주얼리 전용관 운영사업은 2010년까지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영사업만 시행되고 있다.

〈표 3-53〉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의류 및 패션 관련 디자이너 • 대학 및 사설 여성 패션디자인 전공자 • 예술 및 디자인계열 전공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주얼리 전용관 및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입주 지원 • 상품전시 및 판매공간 제공 • 판매사원 및 마케팅비용 지원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413

지원대상은 우수한 실력을 겸비하고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의류 및 패션 관련 디자이너와 대학 및 사설 여성 패션디자인 전공자이며, 예술 및 디자인계열 전공자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운영사업은 자신의 디자인 상품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필요한 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그림 3-15〉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 프로세스



패션주얼리 전용관 운영사업의 매출액은 2009년 1,250백만원, 2010년 1,020백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입점업체수는 2009년 27개사, 2010년 19개사, 홍보·이벤트 실적은 2009년 59회, 2010년 61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4〉 패션주얼리 전용관 운영사업 성과

(단위 : 백만원, 개, 회)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매출액	1,250	1,020
입점업체수	27	19
홍보, 이벤트 실적	59	61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영사업의 지원자 수는 2009년 145명, 2010년 90명, 2011년 101명이며, 지원자 중에서 창업자 수는 2009년 8명, 2010년 33명, 2011년 36명으로 2010년도부터 창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원자 중에서 취업자 수는 2009년 5명, 2010년 5명, 2011년 5명이며, 지원금액은 2010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5〉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영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자수	145	90	101
창업자수	8	33	36
취업자수	5	5	5
지원금액	90	450	500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본 사업 참여 후 2011년 총매출(두타포함)규모는 31억 86백만원, 고용 창출은 68개 업체에서 총 63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참가업체 전시회 참여지원으로 총 132개의 국내외 판로확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공공기관 구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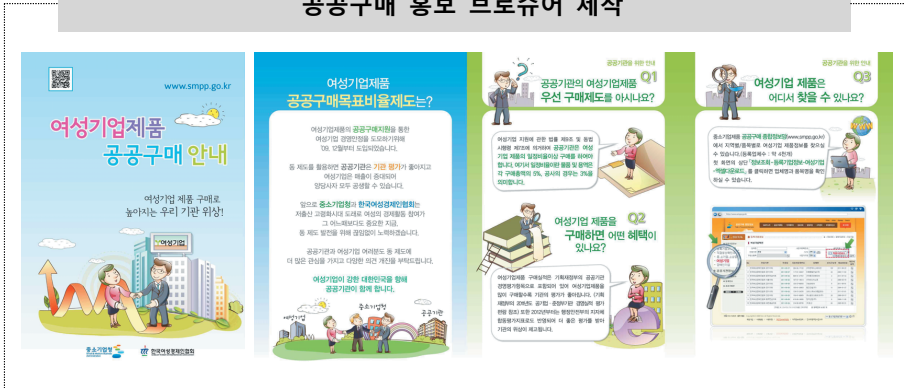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전용 입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요청업체 중 공공구매 입찰에 관심 있는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 사이트를 통한 입찰정보 제공 및 입찰실무 상담과 공공구매 홍보 설명회 및 안내 홍보물 배포 등을 지원한다.

〈표 3-5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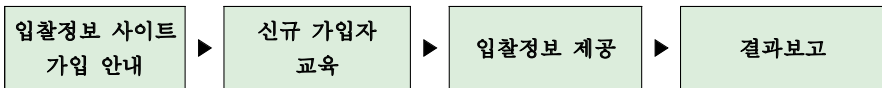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요청업체 중 공공구매 입찰에 관심있는 여성기업 공공기관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 제공 * 맞춤형 입찰정보제공, 예가산출프로그램 및 입찰실무 상담 공공구매 홍보 설명회 및 안내 홍보물 배포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6

공공구매 홍보 브로슈어 제작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은 공공구매 관련 교육과 함께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공공구매를 처음 접하는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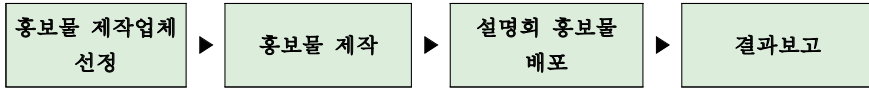
〈그림 3-1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사이트운영 프로세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의 홍보 브로슈어 제작 프로세스는 협회에서 홍보물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단계, 홍보물 제작단계, 협회

및 운영기관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홍보물 배포단계, 홍보결과를 정리하는 결과보고단계 등 총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1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홍보 브로슈어 제작 프로세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의 홍보대상 기관수는 2011년 6,518개로 목표 대비 729.9%의 목표달성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청건수는 2010년 2,802건, 2011년 3,659건으로 2010년도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기업이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를 목적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받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여성기업 확인증발급 신청건수는 2010년도 대비 30.6%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 3-5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건)

구분	연도별 실적	
	2010년	2011년
홍보 대상 기관수	-	6,518
신청건수	2,802	3,659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전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2009년 122.2조원, 2010년 104.4조원, 2011년 99.8조원이며 그 중에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액은 2009년 3.0조원, 2010년 2.36조원, 2011년 2.59조원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2.5%, 2.3%,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제품구매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58〉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단위 : 조원, %)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총구매액	122.2	104.4	99.8
여성기업제품구매액	3.0	2.36	2.59
구매비율	2.5	2.3	2.6

주) 2011년 공공기관 구매실적은 잠정치임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2010

16개 시·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을 보면, 2010년에는 경기도가 995억원으로 가장 많은 구매실적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가 971억 8천만원, 경상남도가 534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에도 경기도가 817억 7천만원, 서울특별시가 765억 4천만원, 경상남도가 558억 9천만원 순으로 구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2011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27조 1천억원 중에서 5,741억원으로, 여성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2.12% 정도이다. 또한, 2010년도 대비 2011년의 여성기업 구매실적이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도 총구매실적 대비 여성기업의 구매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6개 시·도 평균이 2.12%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5.3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5.15%, 부산광역시 3.1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0년 대비 2011년 여성기업의 구매실적 증감율을 보면, 강원도가 29.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6.5%, 충청북도가 1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9〉 16개 시·도 공공기관 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2010년 여성기업 구매실적	2011년 총구매실적(A)	2011년 여성기업 구매실적(B)	비중	여성기업 증감율
				(B/A)*100	
강원도	37,077	2,088,921	47,854	2.29	29.1
경기도	99,500	4,316,847	81,767	1.89	-17.8
경상남도	53,405	2,696,230	55,886	2.07	4.6
경상북도	51,870	2,722,626	53,323	1.96	2.8
광주광역시	7,950	373,120	8,825	2.37	11.0
대구광역시	10,175	824,860	11,574	1.40	13.7
대전광역시	20,652	339,504	17,472	5.15	-15.4
부산광역시	26,156	982,848	31,359	3.19	19.9
서울특별시	97,181	3,069,017	76,541	2.49	-21.2
울산광역시	5,552	414,131	5,162	1.25	-7.0
인천광역시	18,575	1,121,402	20,939	1.87	12.7
전라남도	32,134	2,583,918	29,487	1.14	-8.2
전라북도	40,430	1,793,873	36,677	2.04	-9.3
제주특별자치도	31,939	756,480	40,397	5.34	26.5
충청남도	48,966	1,886,199	33,074	1.75	-32.5
충청북도	20,820	1,163,440	23,726	2.04	14.0
합 계	602,382	27,133,416	574,063	2.12	-4.7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8)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은 미래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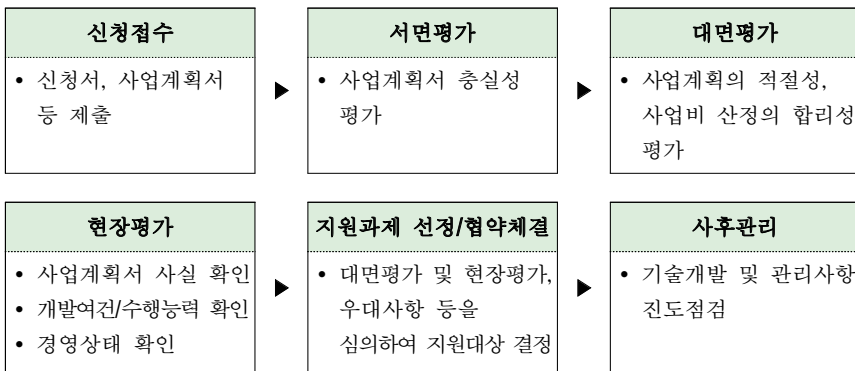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60~75% 이내로 최대 5억원에서 8억원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 3-60〉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지원사항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의 60~75% 이내, 최대 5~8억원의 정부출연금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 투자연계과제 • 미래선도과제 • 서비스연구개발과제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53-4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내용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이 중요 평가 기준이 된다. 평가는 서면뿐만 아니라 현장평가도 실시되며 최종 선발 이후에는 기술개발 진도를 관리하고 있다.

〈그림 3-18〉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1,039개사 중에서 53개사로, 전체에서 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총 2,206억원 중에서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100억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기업수는 2010년 68개사, 2011년 53개사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0년도 대비 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금액도 2010년 119억원에서 2011년 100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6%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3-6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억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1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0년	2011년
지원기업수	1,039	53	5.3	68	53
지원금액	2,206	100	4.5	119	100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 여성가족부 기술개발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청, 사업실적자료, 2011

9)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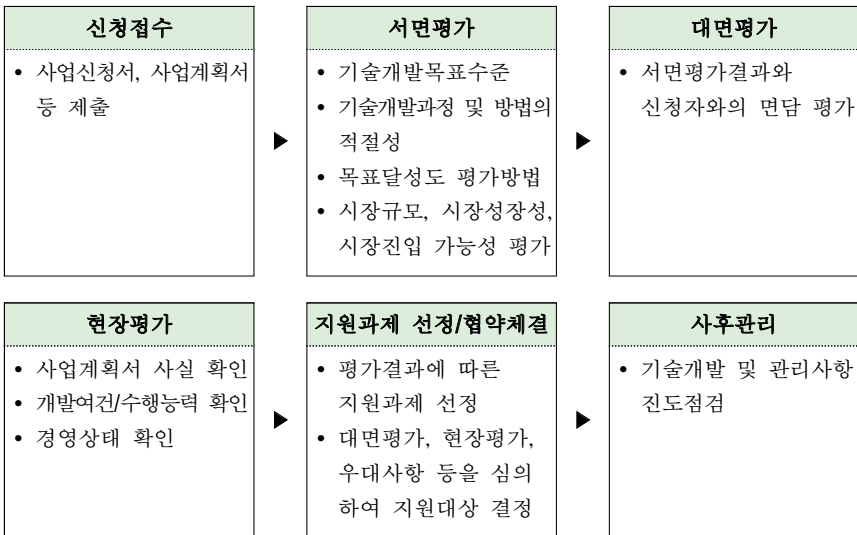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 해외 수요처)이 제안한 과제를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민·관 공동으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최대 2년간 8억원에서 10억원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 3-62〉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지원사항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의 75% 이내, 2년간 최대 8~10억원의 정부출연금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53-4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개발 과정, 일정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함은 물론 기술의 사업성, 시장성 및 시장진입 가능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림 3-19〉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2011년도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458개사 중에서 13개사로, 전체에서 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총 900억원 중에서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25.8억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기업수는 2010년 15개사, 2011년 13개사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0년도 대비 1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금액도 2010년 28억원에서 2011년 25.8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7.9%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3-63>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억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1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0년	2011년
지원기업수	458	13	2.8	15	13
지원금액	900	25.8	2.8	28	25.8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 여성가족부 기술개발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청, 사업실적자료, 2011

10)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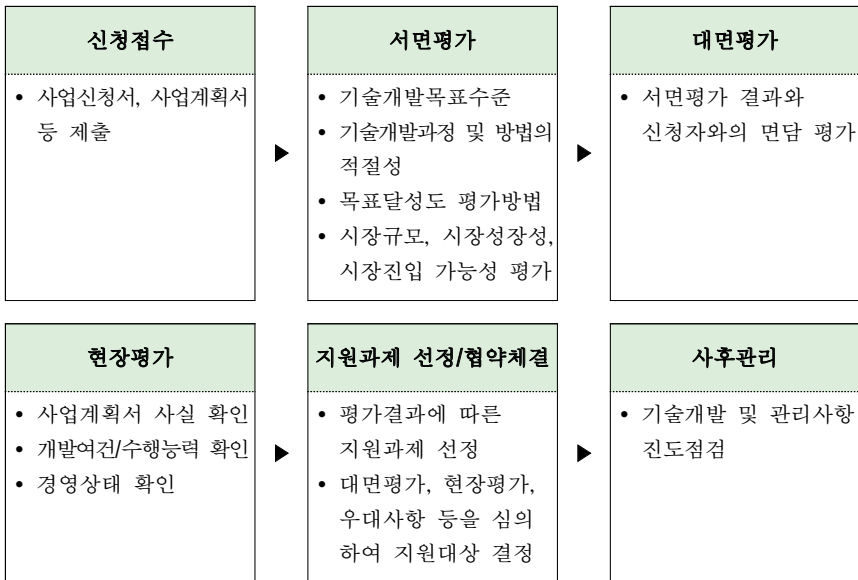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자원(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을 창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 3-64〉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지원사항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의 75% 이내, 2년간 최대 5억원의 정부출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제안과제 • 기업제안과제 • 출연연구기관-중소기업공동개발과제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 042-481-446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30-1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신청접수단계, 서면평가단계, 대면평가단계, 현장평가단계,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총 6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20〉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2011년도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114개사 중에서 2개사이며, 전체에서 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총 200억원 중에서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3.7억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기업수는 2010년 3개사, 2011년 2개사가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2010년 4.4억원에서 2011년 3.7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5〉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억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1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0년	2011년
지원기업수	114	2	1.8	3	2
지원금액	200	3.7	1.9	4.4	3.7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 여성가족부 기술개발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청, 사업실적자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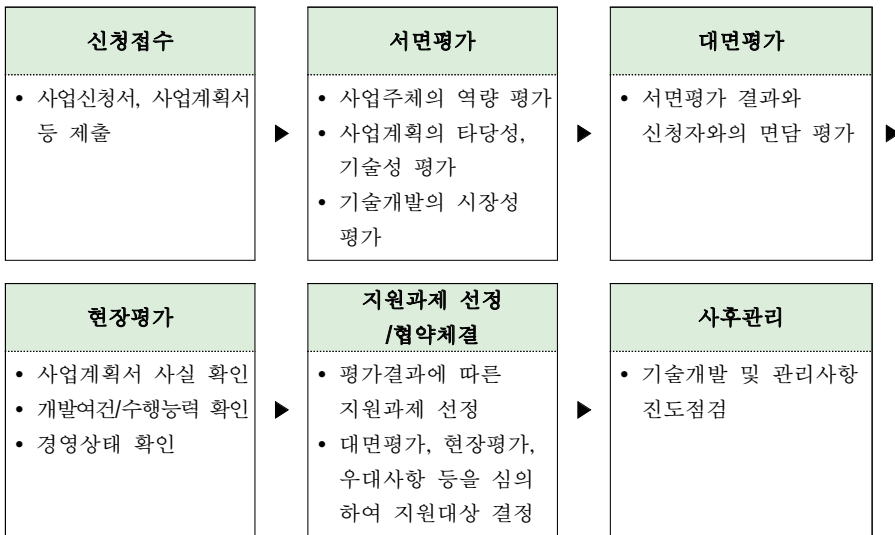
11)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지원사업은 사업성이 높고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자금, 인력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기획을 대신해 주거나, 향후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2년간 최대 2,250만원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 3-66〉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지원사항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의 75% 이내, 2년간 최대 2,250만원의 정부출연금 • R&D 기획지원 • 과제발굴연구회 • 개별기업기술로드맵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3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30-1

〈그림 3-21〉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지원사업 프로세스



2011년도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221개사 중에서 7개사이며, 전체에서 3.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총 50억원 중에서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1.5억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기업수는 2010년 7개사, 2011년 7개사가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2010년 1.6억원에서 2011년 1.5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6.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7〉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억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1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0년	2011년
지원기업수	221	7	3.2	7	7
지원금액	50	1.5	3.0	1.6	1.5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 여성가족부 기술개발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청, 사업실적자료, 2011

12)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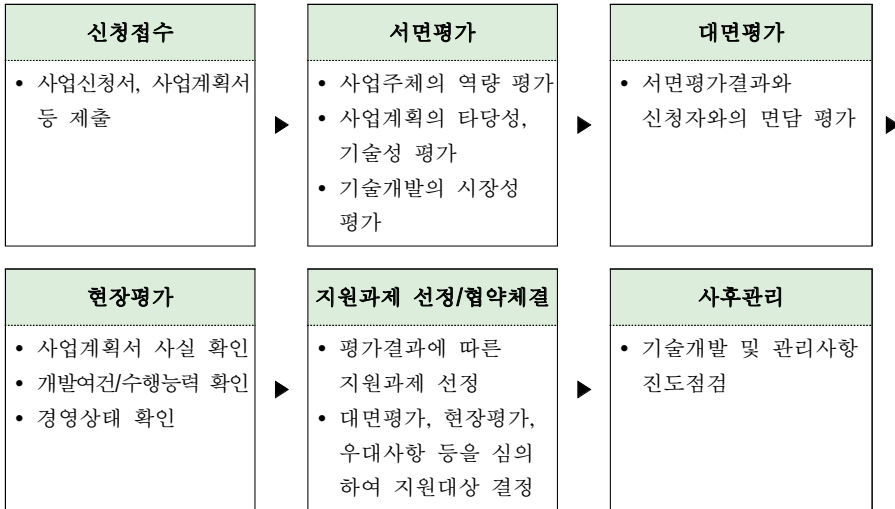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제조공정의 고효율 및 친환경 시스템구축을 위해 에너지·자원의 절감과 온실가스·폐기물 저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공정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2년간 최대 2.5억원에서 6억원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 3-68〉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지원사항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의 75% 이내, 2년간 최대 2.5-6억원의 정부출연금 • 산연협력과제, 출연(연)전용과제, 기업제안과제, 보급확산과제
문의처	•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 042-481-440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30-1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서면평가 후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주체의 역량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을 검증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림 3-22〉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174개사 중에서 7개사이며, 전체에서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총 400억원 중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15억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69〉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억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1년)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	
	총지원 실적	여성기업 지원실적	비율	2010년	2011년
지원기업수	174	7	4.0	7	7
지원금액	400	15	3.8	13	15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 여성가족부 기술개발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청, 사업실적자료, 2011

연도별 여성기업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기업수는 2010년 7개사, 2011년 7개사가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2010년 13억원에서 2011년 15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창업성장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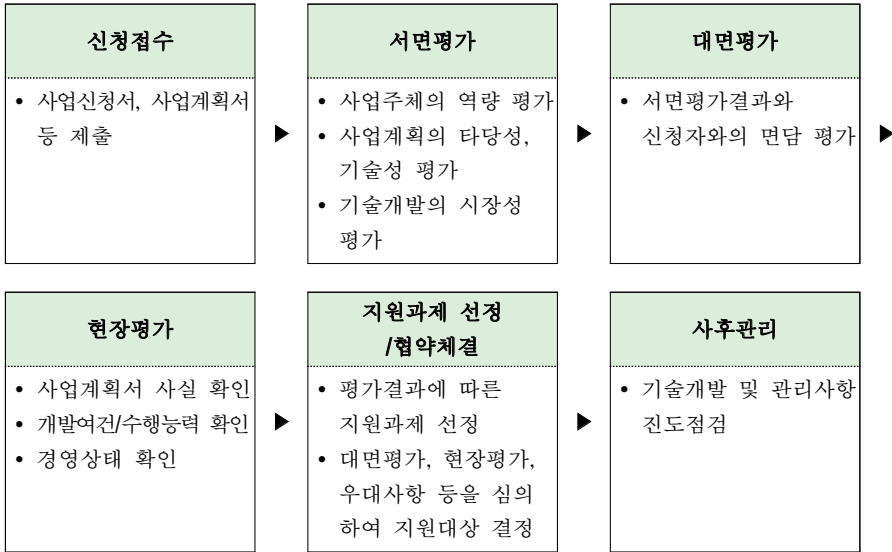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잠재역량은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개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존을 제고 및 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2년간 최대 2.5억원에서 6억원까지 기술개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 3-70〉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지원사항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의 75% 이내, 2년간 최대 2.5-6억원의 정부출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과제 • 성장과제 • 제도약과제 • 1인창조기업과제 • 앱 기술개발과제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 042-481-446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30-1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신청접수단계, 서면평가단계, 대면평가단계, 현장평가단계,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단계, 사후관리단계 등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23〉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2011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지원 수는 전체 지원기업 598개사 중에서 35개사이며, 전체에서 6.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총 917.6억원 중 여성기업의 지원금액은 52억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5.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1〉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억원, %)

구분	중소기업 대비 여성기업(2011년)		
	총지원 실적	여성기업지원 실적	비율
지원기업수	598	35	6.0
지원금액	917.6	52	5.6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 여성가족부 기술개발사업계획서

다.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재정비 지원사업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재정비 지원사업은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CEO MBA 교육, 전국경영연수,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확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 등이 있다.

1)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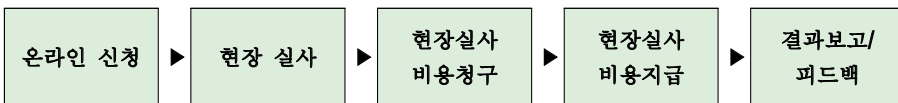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은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시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표 3-72>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사항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에 따른 운영경비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2

여성기업 확인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여성기업 확인증이 발급된다.

<그림 3-24>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여성기업 확인제도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건수는 2009년 2,345건 2010년 2,126건, 2011년 2,921건으로, 2010년도 대비 3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3〉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확인증 발급건수	2,345	2,126	2,921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 여성CEO MBA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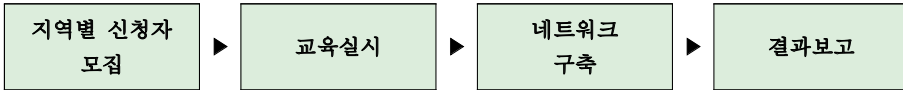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인 및 경영자로서의 자질향상 및 혁신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단계별 경영 전문교육의 기회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CEO, 여성기업 임직원으로서 강사료, 교재제작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하며, 경영실무교육과 정부지원정책 설명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표 3-74〉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직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료, 교재제작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 교육시간 : 2개월(8회, 24시간)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실무 : 조직관리, 사업관리, 협상방법, 경영관리, 고객관리, 디자인, 브랜딩, 홍보, 법률, 세무, 특허, 마케팅 등 정부지원정책 :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 홍보 및 설명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생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25>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2008년부터 4개 지역(서울, 충북, 대전·충남, 강원)을 시작으로 하였으며, 예산은 2009년 98백만원, 2010년 196백만원, 2011년 160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지역별 개최 기간이 2010년 16주에서 2011년 12주로 축소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2010년도 대비 18.4%가 감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연도별 개최지역 수는 2009년 6개 지역, 2010년 9개 지역, 2011년 10개 지역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표 3-75>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개최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주)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소요예산	98	196	160
개최지역 수	6	9	10
지역별 개최기간	16	16	12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개최지역별로 참가자수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서울이 49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 33명, 인천 30명 순으로 많고, 2010년에는 광주·전남이 55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40명, 울산 39명 순으로 많았다. 2011년에는 경기도가 42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부산 41명, 서울과 울산이 각각 30명 순으로 참가자수가 많았다.

한편 2010년도 대비 2011년 참가자 수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4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서울 20%, 충북 1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4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6〉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단위 : 명, %)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0년 대비 증가율
수도권	서울	49	25	30	20.0
	경기	33	40	42	5.0
	인천	30	40	30	-25.0
대구/경북		28	25	26	4.0
대전/충청	충북	-	23	27	17.0
	대전/충남	25	25	-	-
광주/전남		-	55	30	-45.0
전북		-	-	30	-
부산/울산	부산	-	29	41	41.4
	울산	25	39	30	-23.1
강원		-	-	18	-
합계		190	301	304	1.0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여성CEO MBA 교육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교육 수강생수는 2009년 190명, 2010년 301명, 2011년 3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수강생 만족도는 2009년, 2010년에 86점, 2011년 88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매출액 및 고용 성장률은 각각 5.5%, 6.8%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7>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점, %)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교육 수강생수	190	301	304
교육 수강생 만족도	86	86	88
매출액 성장률	-	-	5.5
고용 성장률	-	-	6.8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3) 전국경영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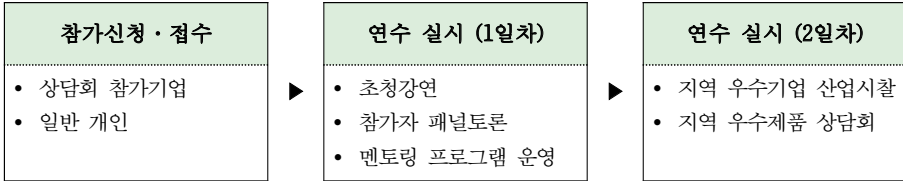
전국경영연수 지원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내 산업탐방으로 현장교육과 우수기업 판로확대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직원으로서 강사료, 교재 제작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며, 초청강연과 워크숍 및 패널토론, 멘토링 및 상담회와 산업시찰 등을 실시한다.

<표 3-78> 전국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직원
지원사항	강사료, 교재제작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공통경비 지원
연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인사 초청강연 • 워크숍 및 패널 토론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우수제품 상담회(참가업체 30개 내외) • 지역 내 우수기업 산업시찰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2

전국경영연수 지원사업은 사업참여 기업 간의 교류 촉진은 물론 상품 판매, 상담회 등의 기회가 제공되며 1박 2일 동안 멘토링을 통해 기업의 문제에 대한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그림 3-26〉 전국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전국경영연수 지원사업의 참가자수는 2009년 693명, 2010년 421명, 2011년 426명으로 2010년 큰폭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3-79〉 전국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참가자수	693	421	426
참가자 만족도	-	-	85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4)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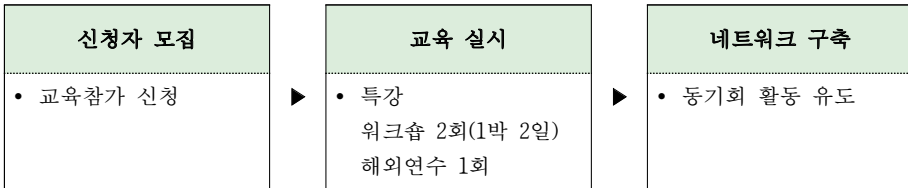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지원사업은 여성관리자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공자 포상 및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여성기업인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직장 내 여성중간관리자 및 여성기업인이며, 리더십 역량강화 특강 및 워크숍을 지원한다.

<표 3-80>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여성중간관리자 및 여성기업인
지원사항	리더십 역량강화 특강 및 워크숍
문의처	여성가족부 : 02-2075-4636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참가 신청자 모집단계, 교육 실시단계, 네트워크 구축단계 등 총 3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27>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수혜자를 살펴보면, 2009년도 195명, 2010년 250명, 2011년 25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사업 예산은 2009년 350백만원, 2010년 424백만원, 2011년 524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3-81>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사업 수혜자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여자	400	500	500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195	250	250
지원사업 예산		350	424	524

주) 2011년은 예산 집행 추정치임

※ 자료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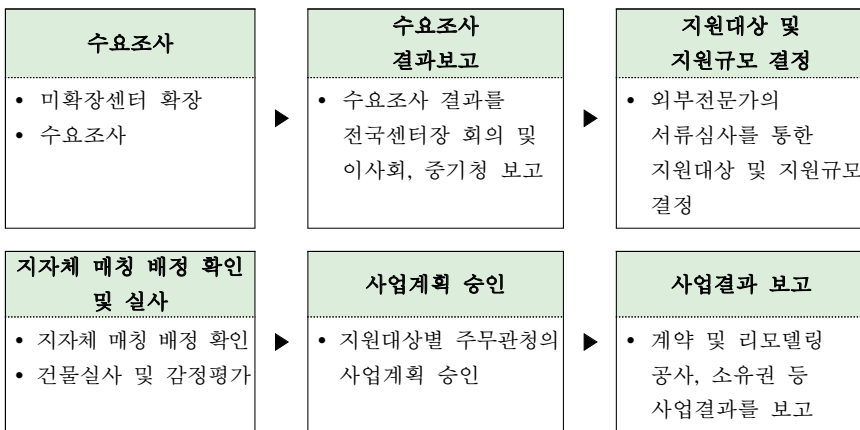
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은 여성의 창업수요 증대에 따라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보육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확장수요가 있는 지역센터로서, 건물 매입비 또는 임차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지원한다.

〈표 3-82〉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확장수요가 있는 지역센터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매입비 또는 임차비 • 건물 개·보수에 소요되는 리모델링비, 취득등록세, 소유권 등기 등의 기타 부대비용 • 총 사업비의 60% 이내로 10억원 이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042-481-397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31

〈그림 3-28〉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 프로세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은 창업보육시설의 수요에 따라 사업규모 및 사업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특히 지원대상을 선발할 때는 사업신청자가 창업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차별화 할 것인지가 많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학교, 연구소 등에서 창업보육시설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단순히 공간만 설치하는 수준으로는 창업보육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보육실수는 2009년 140개에서 2010년 159개, 2011년 168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수는 2009년 132개사, 2010년 148개사, 2011년 154개사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8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보육실 및 업체현황

(단위 : 개)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보육실수	140	159	168
입주업체수	132	148	154
보육실증가수	33	19	9

주) 광주/전남의 보육실 수는 2012년 3월 기준 확장예정인 5개가 반영됨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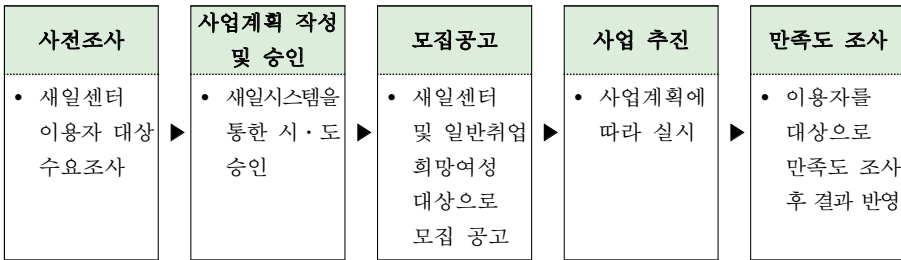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 새일센터) 운영사업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력단절여성 중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며, 미취업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게 6개월간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원한다.

〈표 3-8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 중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지원사항	50만원/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인턴채용 지원금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 02-2075-4636 • 고용노동부 : 02-2110-731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은 새일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를 파악하는 사전조사단계,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을 위한 승인단계, 새일센터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공고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추진단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만족도 조사단계 등 총 5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2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프로세스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이며, 취업 인원은 2009년 6만7천명, 2010년 10만2천명, 2011년 12만명으로 새일센터를 통하여 취업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새일센터는 2009년 72개소가 운영되기 시작하여 2010년 77개소, 2011년 98개소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은 여성취업을 제고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8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성과

(단위 : 천명, 개)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취업인원수	67	102	120
새일센터수	72	77	98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 여성가족부 사업계획서

7)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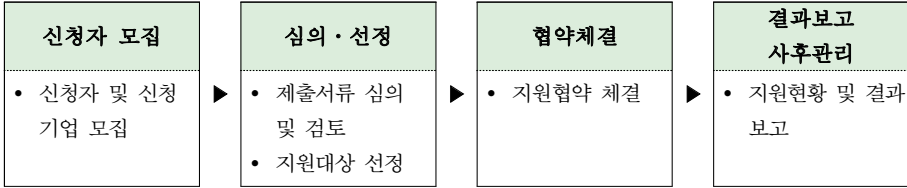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석사·박사·경력기술인력)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이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석사 및 박사, 경력기술인력의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

<표 3-86>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사항	최대 3년간 4,050만원(석사), 4,950만원(박사), 5,400만원(경력기술인력)의 인건비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0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069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취업희망 신청자 및 채용희망기업 모집 단계,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의·선정단계, 지원에 대한 협약체결단계, 지원결과에 대한 보고 및 사후관리단계 등으로 진행된다.

〈그림 3-30〉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 프로세스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전체 수혜자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20.1%(221명), 2010년에는 19.0%(209명), 2011년에는 18.0%(144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지원인력의 평균 약 20%가 여성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수혜자수가 약 27% 감소되는 상황에서 여성수혜자수는 34% 감소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의 감소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7〉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사업 수혜자	전체	1,097	1,100	800
	여성(비율)	221(20.1)	209(19.0)	144(18.0)
	남성(비율)	876(79.9)	891(81.0)	656(82.0)
지원사업 예산	전체	16,000	16,000	12,000
	여성(비율)	2,989(18.7)	2,625(16.4)	2,160(18.0)
	남성(비율)	13,011(81.3)	13,375(83.6)	9,840(82.0)

주) 2011년은 예산 집행 추정치임

※ 자료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2011-2012

3.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사업 성과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자금지원사업과 여성창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인을 위한 교육 및 연수지원사업, 여성기업의 판로지원사업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금지원사업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형태로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여성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창업지원사업은 창업교육 및 멘토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 및 연수지원사업은 여성CEO를 위한 교육과 연수, 세미나, 여성경제인대회 등이 있으며, 판로지원사업으로는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 국내외 전시회, 수출상담 및 수출판로개척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부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각 지역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88〉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

지역	지원사업명	2010년	2011년
서울	여성창업기업 지원	-	40개사
	여성창업 보육센터 설치	-	3개소
부산	여성CEO 경영혁신포럼 개최	21백만원	21백만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1.27억원	1.37억원
	여성창업자금지원	205백만원	235백만원
대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26.6억원	17.6억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4개사	2개사
	여성창업지원(창업멘토링/교육)	3.4백만원	24.5백만원

지역	지원사업명	2010년	2011년
인천	여성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283.29억원	486억원
	여성협회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3.1억원	8억원
	여성 구직 지원	8억원	20백만원
광주	여성친화기업문화조성 25업체 약정체결 지원	-	90백만원
	여성농어업인 기업육성 지원	14.3백만원	11.05백만원
대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123억원
	여성기업인대회 지원	-	70백만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이전	-	3.5백만원
	자전거수리점 창업과정	13.9백만원	-
울산	여성창업교육	-	10백만원
	여성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	55억원
강원	여성기업활동 지원	-	137억원
	여성창업교육	10백만원	10백만원
	여성기업공공구매	371억원	340억원
	여성경제인(CEO) 경영혁신 연수	4백만원	3백만원
	여성경제인 국제교류사업	5백만원	4백만원
	강원여성경제인대회	9백만원	7백만원
	여성기업 전용단지 조성	9개사업주	-
	중소기업 육성자금우대 지원	6억원	-
경기	여성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141.5억원
	여성기업 신용보증우대 지원	-	2,639억원
	여성기업인 해외관로 지원	-	2억원
경북	여성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70백만원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25백만원	40백만원
	운전자금이차보전	459.78억원	670억원
	여성경제인대회 개최	-	40백만원

지역	지원사업명	2010년	2011년
경남	여성기업 활동촉진	-	1.5억원
	여성창업지원센터설치 운영	-	40백만원
	혁신포럼	-	10백만원
	여성창업교육	-	50명
전남	여성기업 창업·경영안정자금 지원	-	256억원
전북	여성기업 디렉토리 구축	10백만원	-
	여성CEO 경영혁신 포럼 개최	10백만원	15백만원
충북	여성기업 자금지원	-	186억원
	내일의 여성CEO 육성	5백만원	4백만원
	여대생 창업센터	2.85억원	30백만원
	여성CEO 멘토링 지원	3.8백만원	3.3백만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충	-	3억원
충남	여성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12.8억원	145억원
	여성입주기업	-	24백만원
	미래 여성CEO 육성	-	4백만원
	여성기업 공공구매촉진	485.22억원	-
	여성기업 사기진작	1개사	1개사
제주	여성기업제품 홍보물 제작	-	44업체
	여성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	150만원
	유망여성CEO 리더십교육 지원	-	25명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0백만원	25백만원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2010년도 여성기업지원 실적 및 2011년도 지원계획

4.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공사례

가. 여성CEO MBA 교육

1) (주)영타운FS

(주)영타운FS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기업단체급식 업체로 2009년, 2010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CEO MBA 교육사업에 참여하였다.

〈표 3-89〉 (주)영타운FS 일반현황

설립년도	1997년 6월	업종	유통/단체급식
주요제품/서비스	기업체 단체급식	직원수	117명
홈페이지	http://ytfood.co.kr	매출	65억원

2009년 박오순 대표는 사업가로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다. 사업체가 커지면서 그녀는 보다 전문적인 경영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때 만난 것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CEO MBA 교육이었다. 이전에도 전국경영인연수 등을 통해 기업인으로서의 덕목과 실무를 꾸준히 공부해 왔지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교육은 확실히 달랐다. 일반적인 지식 강의는 물론이고 여성기업인들의 고충과 애환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 또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2009년, 2010년 두 번에 걸쳐 총 16주 MBA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로 가서 과일양생조리법을 마스터했고, 공주대학교에서 글로벌유통과정, 혜천대학에서 전통조리학을 1년 과정으로 공부했다. 그 외에도 국내 유명 호텔에서 한식요리 수업을 들었다. 평범한 주부에서 한 기업의 대표가 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혼한 일도 아니었다. 그 열정을 되새기며 지금의 자리에서 배워야 할 지식과 덕목을 다시 하나하나 익혀 나갔다.

박 대표는 서울에서 슈퍼마켓을 하다가 유통업으로 전환하여 1983년 영타운유통을 설립했다. 그때부터 안산 반월공단 기업체에 식자재를 공급하다가 직접 식당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좋은 식자재가 많이 부족했어요. 재료 사러 다니느라 힘들었죠. 품질 좋은 재료 공급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내가 아예 식당을 하면, 보다 싸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위탁급식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기업체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소개가 이어지고 차차 거래처가 늘더니 돈이 벌리더군요.”

이후 거래 기업이 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박 대표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동행을 요청하였고, 영타운도 천안으로 이주하여 지금의 (주)영타운 FS에 이르렀다. 현재 (주)영타운FS는 학교, 관공서, 기업체, 병원 등의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식자재 발주부터 메뉴 및 서비스 관리, 인력 운영 등 식사 제공에 관한 토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사 조직으로는 경영지원본부, FS사업부, 기획조정실, R&D개발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FS1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별로 1명에서 5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급식 사업은 어느 한 분야만 잘해선 인정받지 못해요.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조직화되어 있어야 해요. 식자재 공급에서부터 관리, 영업, 마케팅, 요리, 최종 음식 완성까지 철저한 정성을 기울여야 해요. 단체 급식이

체계적으로 정착되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15년 정도죠. 우리 회사는 대기업보다도 앞서 이 분야에 진출했어요. 이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박 대표는 중소기업인으로서 급식업에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의 자본력과 싸우는 일이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영타운FS가 지역 내에서 메이저 급식업체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고 있기에 이를 토대로 새로운 연관 사업을 구상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향토 음식 및 한정식 식단 개발 등으로 메뉴 개발에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CEO MBA 교육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장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아가 타사 경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회사의 현 위치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냉정한 판단을 해볼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솔직히 회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땐 경영자로서 조급해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기업인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당장의 이익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기업의 가치임을 깨달으며, 회사의 또 다른 발전상을 조망하게 되어 매우 흡족하다고 한다.



나. 수출여성기업지원

1) (주)금호글로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의 해외박람회 지원업체로 선정된 (주)금호글로벌은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속 기념품 제작 전문기업으로 2010년, 2011년 해외바이어매칭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

〈표 3-90〉 (주)금호글로벌 일반현황

설립년도	1994년	업종	제조업
주요제품/서비스	상패, 트로피, 기념주화 등	직원수	26명
홈페이지	www.khglobal.net	매출	20억원

사업 확장 및 해외진출의 초석이 되는 중국시장진출에 있어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에 2010년, 2011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에 신청하여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박람회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샘플 및 신제품과 카달로그를 제작하는 등의 과정에서 협회의 지원을 받으며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박람회 기간 중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 및 해외 바이어들과 총 92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해외박람회 참여횟수가 늘어날수록 기업 및 제품 인지도가 향상되는 것을 체감함은 물론 박람회로 연결된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2011년에 약 18만 달러의 해외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해외바이어들에게 업체의 표면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경영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과 ISO 9000 및 14000을 획득하여 바이어들

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것과 체계적인 경영관리 및 Full-Line 생산방식 구축으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여 우수한 제품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주요 성공요인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해외바이어들의 수준이 높아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통역지원으로 바이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협회 자체에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박람회를 선호하고 있는지, 어떤 수준의 바이어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선행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업비의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업비활용에 대한 자율권을 참여업체에 부여해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1) (주)아이에코

(주)아이에코는 천연 여성용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2009년 서울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여 보육지원을 받고 있다.

〈표 3-91〉 (주)아이에코 일반현황

설립년도	2006년 7월	업종	제조/소매업
주요제품/서비스	여성용품 및 천연 곡물 비누 제조	직원수	5명
홈페이지	http://www.isbelt.com	매출	약 3억원

고등학교 교사였던 남편과 사별하고 갑자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놓인 홍옥주 대표는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평소 여성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관심이 많았고, 녹색연합 활동을 하며 ‘즐이기 운동’ 등 다양한 환경운동을 하다가 일회용 여성용품이 여성의 몸에도 좋지 않고 쓰레기 배출도 증가되는 문제에 착안하여 그 대안으로 면 생리대를 개발하며 창업을 하게 되었다.

홍 대표는 좋은 생리대 착용은 여성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며, 그런 맥락에서 면 생리대 이용은 중요한 여성 문제이자, 인류 건강 문제, 환경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뜻에서 면으로 된 생리대를 만드는 일이 자신에게 생계수단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제품 개발은 완성되었으나 여성들이 면 생리대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중적 인식이 부족해 구입을 망설이는 고객이 대부분이었고, 여성용품 시장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을 개척하기도 힘들었다. 한 대기업과 공동마케팅을 시도했지만, 수익 지분을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하여 포기도 했었던 적이 있다. 또한, 약국을 통한 판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철회해야 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구매담당자가 거의 남성이라는 점도 흥 대표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현재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먼 생리대를 홍보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여성 관련 커뮤니티나 여자대학교 같은 데서 무료로 나누어주면서 홍보합니다. 일단 사용해 보아야 그 장점을 알 테니까요. 먼 생리대를 처음 본 여성들도 허다하죠. 하지만 생리대의 기능성, 촉감, 디자인 등을 직접 확인하고는 곧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번 써본 후에는 다시 재구매로 이어졌어요.” 라고 아이에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밝혔다.



초기에는 여성속옷회사와 연계하여 방문판매를 해 왔으나, 지금은 아이에코 쇼핑몰을 비롯해 백화점, 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아이에코 먼 생리대는 친환경제품으로 인정받아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백화점, 마트 같은 대형 쇼핑매장에는 의무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판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소셜커머스 업체와 대량 할인판매를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면 생리대 업계 최초로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를 통하여 판매한 결과, 예정한 전량이 판매되는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사업 성공요인으로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입주기업 여성CEO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교환 및 사업에 대한 발전, 제품에 대한 개선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점과 사업 초기 사무실 임대료의 부담이 크다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많았었는데, 센터에 입주할 수 있었던 점을 꼽았다. 이러한 요인 덕분에 지금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반면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밝혔다. 우선,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발굴과 도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제품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정부조달 등을 통하여 유통판로를 개척하여 제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 크리자인

크리자인은 2010년 전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창업보육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이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주선 대표는 크리자인을 설립하기 전에 의류, 쇼핑몰, 건축회사 및 IT회사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었다. 평사원에서 시작하여 실장으로 근무했던 이 대표는 수동적으로 일하는 직장인이기보다 늘 IT관련 디자인 전문회사를 꿈꾸는 예비창업자였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대표는 창업을 했으나, 막상 창업을 하려고 보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무실이었다. 그래도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소개받아 등지를 틀었으며, 2009년 11월 27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5월 전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지원절차를 밟아 현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표 3-92〉 크리자인 일반현황

설립년도	2009년 11월 (법인전환 2011년 1월)	업종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주요제품 /서비스	웹과 모바일, 편집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직원수	7명
홈페이지	www.cresign.net	매출	-

센터에 입주한 후, 디자인 회사답게 사무실도 꾸미고 사업계획서도 보강하여 거래처를 차근차근 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협회에서 진행하는 MBA 과정을 수료하고,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회사의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했다.



현재 크리자인은 KT와 홈페이지 계약을 수주하였으며, 석영, 씨네소프트, 아하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홈페이지 제작과 캐릭터 개발, CI 작업, 자판기 UI작업, 모바일 어플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월 크리자인이 특허출원한 약도우미(Medi Helper)는 환자가 약국에서 받은 개별 약봉지만으로도 약의 복용법과 종류, 구입일 등 약에 대한 정보를 웹이나 모바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도우미는 QR코드와 일련번호가 인쇄된 약도우미 스티커가 붙어있는 가맹 약국이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약 검색 이외에도 건강정보와 응급처치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위급상황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가 지금처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성공요인으로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거래처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업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가 더욱 넓어져 사업확장의 기반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입주여성기업인들과의 모임 및 지원사업 참가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교환할 수 있었던 점도 성공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지원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을 확장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한다는 건의를 전달했다.



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졸업기업

1) (주)가람UCT

(주)가람UCT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경관조형물 전문기업으로서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창업보육지원을 받았다.

〈표 3-93〉 (주)가람UCT 일반현황

설립년도	2004년	업 종	건설/설계/디자인
주요제품/서비스	도시경관조형물 등	직 원 수	20명
홈페이지	http://www.galam-uct.co.kr	매 출	50억원

지난 2004년에 창업한 (주)가람UCT는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였다. 디자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경관시설물을 친환경 조형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디자인, 설계, 시공의 삼위일체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창업초기 기술 역량은 높았지만, 자금, 경영, 마케팅 등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되어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사업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입주 후 정부의 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점과 다양한 분야의 여성CEO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자칫 기술에 대한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었으나,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아이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성공요인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보육지원과 관련 업종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에 나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업초기 기업은 실적이 없어서 정부 조달시장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책적으로 이들 창업초기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입주 후 입주기업의 성장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가람UCT의 조형물 실적



※ 자료 : 부산 동래의 온천천 거리에 세운 얼썩달수 이미지, 가람UCT 홈페이지

2) (주)엘큐어

(주)엘큐어는 부산이노비즈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연화장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2009년 부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여 보육지원을 받았다.

<표 3-94> (주)엘큐어 일반현황

설립년도	2007년 5월	업종	제조/소매업
주요제품/서비스	천연화장품	직원수	5명
홈페이지	http://www.elcure.com	매출	약 6억원

(주)엘큐어는 2007년 창업 후 차별화된 천연화장품을 성공적으로 개발 하였으나, 제품 출시과정에서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되었다.

입주 후 마케팅 교육, 시제품 제작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판로지원, 기술애로 자문 등 경영전반에 걸친 창업보육 지원을 받았다. 특히 컨설팅과 세미나 등을 통한 마케팅 교육과정에서 이론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사례 중심의 교육을 받아서 마케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매출성장이 아닌 마케팅역량을 획득하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영·기술 자문을 통하여 기존 제품과 차별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공요인으로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마인드 제고 및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마케팅컨설팅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자문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며, 계속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개선되길 기대했다. 또한, 많은 업체를 지원하는 양적인 지원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공정하게 선발해서 집중지원을 하고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는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지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보육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 여성창업경진대회

1) 아이앤컴바인

아이앤컴바인은 2011년 11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다.

<표 3-95> 아이앤컴바인 일반현황

설립년도	2011년 6월	업종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주요제품/서비스	스마트러닝 플랫폼	직원수	5명
홈페이지	http://www.bapul.net	매출	-

이민희 대표를 비롯하여 5명 직원의 평균 연령이 28세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웹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학문제의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겠다는 구상도 젊고 신선하다. 획기적 사업 방식만큼이나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도 야무지다. 여성기업인으로서 많지 않은 나이이지만 사업에 대한 열정과 준비 과정, 그리고 실무적 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대학시절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 게임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서울대, 관악구청, SKT 등의 후원을 받아 봉사활동을 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더 크게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4학년 때 창의적 체험학습 전문 회사를 창업했다. 사업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녀였으나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직장생활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특히 사업을 하려면 물류와 유통을 기본으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녀는 유통 전문회사의 MD로 취업을 하였다. 7개월 동안 MD팀에서 근무하면서 그녀는 매출 분석, 예측, 재고 관리 등 조직의 생리는 물론 일하는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하지만 나의 길은 벤처라는 것에 더 확신을 가지고 퇴사하여 두 번째 창업을 하였습니다. 계기가 된 관심서비스는 유튜브와 메가스터디였습니다. 유튜브는 세상의 모든 동영상들이 모인 커뮤니티인데 이 서비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동영상들이 다 모여 있다는 메가스터디의 영향력도 유튜브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유튜브의 커뮤니티와 메가스터디의 장점을 결합해 보고 싶었는데 아이엔컴바인의 바로 풀기는 이러한 IT와 교육 사업이 통합된 아이템입니다.”

아이엔컴바인의 주력사업인 바로 풀기는 누구나 수학문제의 질문과 동영상 답변을 스마트폰, 웹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이다. 현재 스마트 러닝 플랫폼이자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구현하였고 앞으로는 개인 강사들이 바로 풀기 플랫폼을 통해 유료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 마켓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활용 분야는 학습 콘텐츠(수학, 과학 등)뿐 아니라 동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야(상거래, 무역, 원격진료 등)라면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 압축 인코딩 기술과 트랜스코딩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신개념 콘텐츠 오픈 마켓 모델인 바로 풀기 서비스에 대한 진가는 우선 업계의 전문가들이 먼저 알아보고 주목하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바로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011년 11월 KT와 MOU를 체결하여 서버지원을 받고 있으며, olleh.com에 바로 풀기 서비스를 탑재하였다. 2011년 12월 21일부터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웹사이트 등에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다.

신생기업에는 여성창업경진대회가 사업성을 인정받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수상 기업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된다면 이 사업은 여성 기업인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사업의 실체가 눈앞에 보이는 제조업과는 달리 온라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바로 풀기와 같은 웹 비즈니스가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회원 수를 모으고 마케팅을 하는데 투자해야 하는 기간이 평균 2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IT벤처들이 많이 있다.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1년 동안 지원받으면 재지원이 불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발 자체를 까다롭게 하더라도 제대로 클 수 있는 팀들을 선발하여 최장 3년까지 장기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앤컴바인의 비전은 세계 최대의 콘텐츠 마켓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그 실행을 위해 2012년에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에 집중을 하고 2013년부터는 일본, 미국, 중국 시장 순으로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 대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바.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

1) 오가닉코튼DIY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판로지원사업 중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사업 업체로 선정된 오가닉코튼DIY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아용품제작 전문기업으로 2010년 온라인마케팅 및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

<표 3-96> 오가닉코튼DIY 일반연황

설립년도	2006년 10월	업종	제조/소매업
주요제품/서비스	유기농아기용품Kit	직원수	4명
홈페이지	http://ocdiymall.com	매출	7억원

사업초기에 다양한 판로확대 및 마케팅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마케팅 및 박람회 참여를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무역실무교육과정도 수료하였으며, 제품 카달로그 제작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온라인 마케팅진행 과정에서는 교육세미나 및 마케팅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11번가, G마켓 등의 유통업체와 더불어 네이버에도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0년 여성기업 온라인 지원사업의 참여로 마케팅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품을 홍보하게 되었으며, 15%의 매출증대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마케팅세미나를 통하여 온라인마케팅에 대한 개념 및 실행절차를 사전에 습득한 것이 실제 온라인마케팅을 추진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단순하게 온라인마케팅비용을 지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진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여성기업 온라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개선할 점으로는 1회성 지원이 아닌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3차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과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연계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 3 장

해외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1. 미국의 여성기업지원 현황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법 및 여성기업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가. 주요 지원기관

1)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국(Office of Women's Business Ownership)³¹⁾

현재 여성기업국은 훈련 및 기술 지원, 신용 및 자금 조달, 정부계약에 관한 자문, 국제무역 기회증진을 위한 훈련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110개의 지방 여성기업센터와 온라인 여성기업센터의 사업을 관할하고 있으며, 기술, 회계,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신용, 자본, 시장진출에 관한 사업 자문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여성기업센터(Women's Business Center)³²⁾

1988년 의회의 승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미국 내 모든 주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민간단체(Private organization)로서 여성기업국(OWBO)이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개인의 출자금(matching fund)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업무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기업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교외·도시 등

31) 2003년에 제정된 여성중소기업 프로그램증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부기관으로서, 동법에서 OWBO의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2) 이 센터는 미국의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1988; WBOA) 제2장 제201조에서 명시된 비영리 민간조직이다.

다양한 경제지역에서 여성경영인들을 대상으로 SBA프로그램³³⁾과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여성자문·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전역에 총 110개의 WBC가 여성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표 3-97〉 미국 WBC 현황

연번	지역	개소	연번	지역	개소
1	Alabama	4	27	Nebraska	1
2	Alaska	1	28	Nevada	1
3	American Samoa	1	29	New Hampshire	1
4	Arizona	1	30	New Jersey	1
5	Arkansas	1	31	New Mexico	6
6	California	14	32	New York	9
7	Colorado	2	33	North Carolina	3
8	Connecticut	3	34	North Dakota	1
9	Delaware	1	35	Ohio	1
10	District of Columbia	1	36	Oklahoma	2
11	Florida	3	37	Oregon	1
12	Georgia	2	38	Pennsylvania	4
13	Illinois	1	39	Puerto Rico	1
14	Indiana	2	40	Rhode Island	1
15	Iowa	1	41	South Carolina	1
16	Kansas	1	42	South Dakota	1
17	Kentucky	1	43	Tennessee	1
18	Louisiana	2	44	Texas	5
19	Maine	2	45	Utah	1
20	Maryland	1	46	Vermont	1
21	Massachusetts	2	47	Virginia	2
22	Michigan	3	48	Washington	3
23	Minnesota	2	49	West Virginia	1
24	Mississippi	2	50	Wisconsin	4
25	Missouri	1	51	Wyoming	1
26	Montana	1	합 계	110	

33) SBA 프로그램에는 신용 및 자금 지원, 연방 정부조달 계약, 국제 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전국여성기업위원회(National Women's Business Council)³⁴⁾

연방정부 조달업무를 포함하여 각 정부 부처의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 등을 검토하고,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며,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여성기업 위원회의 주요 활동범위는 첫째, 전국의 여성기업 현황 및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와 둘째, 연방 주·지방정부의 여성기업지원역할과 셋째, 여성기업 관련 자료수집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 주요 지원정책(프로그램)

1)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연방 공공기관의 조달물품 구매 시, 여성기업 진출이 적은 83개 업종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상 여성기업간 경쟁제품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2011. 2. 4.)

< 참고 : 미국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 현황 >

- 미국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실적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 최근 3개년간 실적 : 2007년 3.4%(130억불) → 2009년 3.7%(163억불)
 - 정부부처 24개 기관의 공공구매 목표대비 실적을 매년 발표
- 여성기업간 경쟁제품제도 시행은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중기청의 최우선 과제(미국중기청장 카렌밀스, 2011. 12. 1, 미국 중기청 보도자료)
-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여성기업간 경쟁제품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시행(2011. 2. 4.)
 - 여성기업만이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83개 업종을 지정하였으며, 참여를 위해서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아야 함
 - 낙찰가격이 제조의 경우 5백만불 이하, 기타의 경우 3백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자료 : 중소기업청

34) WBOA 제4장 제401조부터 제407조까지에서 전국여성기업위원회의 설립, 위원회의 직무, 위원의 구성, 위원회의 이사와 직원, 위원회의 권한, 보고, 업무위임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여성전용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여성전용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Women's Prequalification Loan Program)은 여성기업인이 은행에 가기 전에 25만 달러 이하에 대하여 사전에 보증을 제공하고, 용자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용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는 프로그램이다.

3) 소액금융지원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저소득층, 재향군인, 소수민족기업인 등) 및 여성기업인에게 제공되는 평균 \$10,000 이하(최대 \$35,000)의 소액대출과 담보없이 제공되는 신용대출지원으로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원재료 또는 기계구매 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4) 여성소기업 연방정부 계약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법 제8조에 제시된 여성소기업에 대한 연방정부 계약지원 프로그램(2000년 시행)은 여성소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정부기구로 하여금 제한경쟁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기존 여성기업인에게 일정률의 계약을 지원하던 조치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조달정책실과 중소기업청은 일괄계약을 제한하는 법규를 제안하여 일괄계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행되고 있다.

5) 연방정부 납품 계약 지원

재향군인, 상이군인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소수민족 포함)와 여성기업에 대하여 연방기구는 연방정부와의 계약(하도급계약 포함) 참여에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⁵⁾ 그리고 이들이

35)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116.

하도급계약자가 되었을 경우 원계약자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를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1994년에 제정된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에 의해 연방기구가 납품과 관련하여 여성소기업과 5%의 계약체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⁶⁾

2. 영국의 여성기업지원 현황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 교육 및 훈련지원 등이 활성화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 또는 지원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잉글랜드 지역에 국한되어서 영국 중소기업청(SBS)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도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다.

가. 주요 지원기관

1) 소수인종 및 여성기업부³⁷⁾

영국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으며, 여성기업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프로위스(Prowess)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여성기업인을 돕기 위한 전국 조직이며, 여성친화적인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문화 형성

36)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 제한의 준수가 쉽지 않은 듯하다. 즉 미국 랜드사의 2005년 조사에 의하면, 미 연방 정부의 각 부처들이 전체조달의 5%를 여성기업과 체결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3.3%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정섭, 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2007).

37) 소수인종 및 여성기업부(EMWEU)는 여성기업만을 위한 주무부서이기 보다는 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계층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지역 및 단체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을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업 직원서비스 단체의 능력향상 지원, 기업 지원,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로비 및 정책제안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만명의 여성들을 지원하여 1,000여 개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3) 여성기업개발원

1990년에 영국의 중서부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여성창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서 경영상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 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외에도 taxa수당 지급, 여행비 보조 등의 독특한 훈련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수민족과 사회·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4) 웰파크 기업센터

1996년에 Glasgow에서 설립되었으며, 30개의 taxa소와 22개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사업장 및 사무실 제공, 육아시설, 사업에 대한 조언 및 정보제공, 재정적 지원, 창업 교육, 여성기업가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혁신 여성 마이크로 크레딧 그룹에서의 자본조달 지원, 기존 창업 여성의 요구수준에 맞는 전문가 훈련과정 운영, 그리고 국제적인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 등이 있다.

5) 여성고용기업훈련단체

1987년 노위치에서 설립되었으며, Norfolk and Waveney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지역 노동시장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풀 서클(Full Circle)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사업시작 전 훈련, 사업기술 훈련, 지속적인 지원과 대출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회계장부 기입 등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은 물론 개인성장을 위한 사업 계획 등의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6) 여성네트워크

여성네트워크는 여성들이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워크숍, 전시회, 훈련, 카운슬링과 모니터링 등과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7) 영국 과학기술여성 인력센터

더 많은 여성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진출과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나. 주요 지원정책(프로그램)

1) 여성창업자금 지원프로그램

1996년 Glasgow의 시의회에서 설립되었으며, 해당 지역 내에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초기 창업비용은 최대 2,000파운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 비용내역에는 보육지원비도 포함되어 있다. 자금지원에 대한 우선대상자는 제조업에 속한 여성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닉스 개발 기금(Phoenix Development Fund)

영국에서 사업운영 상의 어려움이나 불이익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여성기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한 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지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직원을 배제시키고, 외부의 평가 패널들로 구성하여 지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원프로그램 관리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의 모든 단계에서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다.

3) RBS(Royal Bank of Scotland)

1964년 영국 최초로 여성 고객들을 위해서 여성지점을 설치하여 여성 직원을 배치하고 여성만의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여성기업 중에서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는 회사 설립 형태, 자금조달, 사무공간 마련, 세금문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 후에는 수출입 업무, E-Business, 산업 및 기업 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4) 글래스고우 여성기업프로그램(GWEN : Glasgow Women's Enterprise Programme)

1996년 Glasgow에 설립된 웰파크기업센터는 지역사업 지원기관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여성을 위한 창업훈련과정,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기업성장 훈련과정, 지역 내 여성들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설정, 지역 내 여성들과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추진, 지역 내 여성 소액 신용 집단을 위한 잠재성 예비분석 등이 있다.

5)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캠페인 프로그램

여성 및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 및 기술분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인 시책이며, 특히, 월별 역할모델 프로그램과 여성복귀 프로그램이라는 지원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별

역할모델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실습 및 연구 중인 학생들 중에서 월별 WISE역할모델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목적의 제도이다. 또한, 여성복귀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분야의 직장에 복귀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2년 간 재교육 실시 및 관련 기관과 연결하여 직업 복귀에 도움을 제공하는 목적의 멘토링 훈련제도이다.

3. 일본의 여성기업지원 현황

일본의 여성기업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차원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중앙정부차원의 여성기업 관련 정책은 주로 경제산업성과 보건국이 집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기업센터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대학기관 등에서 활발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창업 강좌 및 여성창업 콘테스트 실시 등을 통하여 여성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가. 주요 지원기관

1) 보건복지부의 산하 여성국 및 경제산업성

여성기업인과 직장 여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네트워크, 리서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며 지원하고 있다.

2) 경력개발센터

2000년 1월에 보건노동복지부 산하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창업을 위한 세미나, 멘토링, 기업 및 직장여성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분야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통산산업성

경제산업성과는 별개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 및 기술 개발 등의 경영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

4) 여성기업센터

각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약 130여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자금 지원, 세미나 및 강연 개최,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정책 담당, 상공정책 담당, 노동정책 담당 등 각 지자체의 도과에서 관련정책 연구 및 강습 실시, 강연회 및 교류회 실시, 용자 및 채무보증제도의 실시, 상담창구 설치, 매뉴얼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 지원정책(프로그램)

1) 여성기업가 사전승인대출 프로그램

중앙정부 지원의 이 프로그램은 여성기업을 위한 유일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서, 55세 이상의 여성기업주 중 5년 이상 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기간으로 자금투자 목적의 대출은 15년 이내(연장기간은 2년 이내), 운영자금 목적의 대출은 7년 이내(연장기간은 1년 이내)이며, 미국과 달리 담보와 공동보증인이 필요하지만, 직접대출에 한해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특별 면제가 가능하다.

2) 마루케이 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자금지원제도로써,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의 경영지도원으로부터 경영 지도를 받아야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액은 550만엔이며, 거치기간은 6개월 이내로 무담보·무보증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3) 설비자금 지원제도

여성기업인들에게 설비자금을 대출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소요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4,000만엔 이하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대출 시 상환기간이 7년 이내이며,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다. 단, 연대보증인 또는 물적 담보는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기업 및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회 개최, 무역거래 알선 등의 판로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4. 대만의 여성기업지원 현황

대만 중소기업백서(2011년)의 조사 결과, 대만 전체 기업의 35.8%가 여성기업으로서, 산업별로는 도매업 및 유통업 54.1%, 숙박업 및 식품관련업 12.5%, 공업군 13.6% 순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주요 지원기관 간에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여성기업을 위한 교육, 자금,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가. 주요 지원기관

1) 노동위원회

국제여성 포럼(International Women's Forum)을 운영하여 창업경험과 성과공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컨설팅과 사례연구를 위한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 115명의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컨설팅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2) 중소기업서비스센터(SMEs)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서비스 업무를 확장하고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훈련과정 개발 및 지도, 세미나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경제부

여성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법적 지원 및 경영관련 사항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4) 국가 청소년 위원회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OECD포럼, 여성 글로벌 정상 회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주요 지원정책(프로그램)

여성기업이 창업 및 사업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는 자금부족, 기업운영 노하우 및 전문성 부족, 기업 간의 네트워크 부재, 사업 기회를 연계시켜줄 수 있는 기반마련 부족, 전통적인 성역할 편견 및 가족 부양 의무로 조사되었다.³⁸⁾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출지원, 창업 트레이닝 및 멘토링시스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대출을 위한 시스템을 2007년 3월부터 도입하였다.

38) 중소기업청, APEC 회의자료, 2011

멘토링 시스템 성공사례 : 닝바오 하우테 음식점

2008년 1월 Taichung City에서 창업한 Deng씨는 처음에 옷을 팔면서 창업을 했으나, 멘토링 지원을 받고 나서 식품 서비스 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제철 재료를 활용한 특별한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상품을 팔기도 하고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피닉스' 대출을, 2009년 6월에 경제부 멘토링을 지원받았으며,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결과, 2008년 노동부 및 2009-2011년 Taichung city에서 시상하는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연 도	총 매출 (US\$ 1,000)	직원수(명)
2008	270	4
2009	430	11
2010	550	18

※ 자료 : 중소기업청, APEC 회의자료, 2011

<표 3-98> 창업트레이닝 및 멘토링 시스템 운영 현황

(단위 : 명, %)

프로그램	트레이닝 내용	성과		
		기 간	여성수령인 (기업) 수	여성수령인 비율
나는 거위 프로그램 (국가 청소년 위원회:NYC)	자금, 세금, 사업계획 및 마케팅 프로그램(무료)	2002 ~ 2011.07	13,785	98
피닉스 프로그램 (노동위원회 : CLA)	창업 트레이닝, 온라인 강좌 및 디지털 수업(무료)	2007.03 ~ 2011.08	49,546	82
여성기업활동 및 네트워크 배양 프로그램 (경제부 : MOEA)	창업 및 사업 양성과정	2004 ~ 2011.07	8,537 (744개 기업)	49 (41)
여성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경제발전 계획위원회:CEPD)	기본 컴퓨터 사용법 교육(무료)	2007 ~ 2011.08	64,370	100

※ 자료 : 중소기업청, APEC 회의자료, 2011

5. 독일의 여성기업지원 현황

독일은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잘 발전시켜 왔는데, 1990년대부터는 여성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지원정책은 중앙부처간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 주요 지원기관

1) 연방가정노인여성청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여성의 기회균등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연방정부 내의 부처로 되어 있으며,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직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3월에 여성기업인을 위한 중계사무소(Agentur)를 설치하여 여성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여성경제노동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

여성창업인을 위한 경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KfW(Kreditanstalt für den Wiederaufbau) 중소기업은행에서 여성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4) 연방여성창업인 중개사무소(Bundesweite Gründerinnenagentur)

연방차원의 최초의 여성창업인을 위한 기관으로서, 여성창업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자문기능을 제공하며, 여성의 권리보호 및 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 정보사회와 과학기술지원센터(Kompetenzzentrum)

민간지원기관으로서, 기술전문 분야에서 여성기업이 취약한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연방교육관련 부처와 연방가정노인여성청년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매일 많은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지원하고 있다.

나. 주요 지원정책(프로그램)

1) KfW 중소기업은행 창업자금 제도 및 여성기업 박람회

KfW(Kreditanstalt für den Wiederaufbau)는 독일재건을 위한 신용기금으로서, 이 신용기금의 은행그룹의 하나인 KfW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정책이자 대출프로그램이다. 여성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창업자에게 무료로 대출을 하며, 창업 전 신용대출도 지원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판로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KfW 중소기업은행 창업자금에서 지원하는 판로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여성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원하고 있다.

2) 중앙 핫라인 시스템

연방가정노인여성청년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여성의 각종 창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성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 연방결의프로그램

연방가정노인여성청년부, 연방교육연구부, 여성경제노동부 등 3개의 연방기관이 연계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실행하고자 구축한 네트워크 체계이다. 이는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 및 토론과 주제 발표, 강의,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인에게 기업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여성창업인을 위한 온라인 코스

연방결의프로그램 내의 교육 및 훈련지원제도로써, 인터넷을 통한 여성의 창업과 경영을 위한 강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법률과 세금, 회계 등의 전문지식을 실제 적용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6. 각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비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여성기업 관련 정책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은 여성기업과 관련한 별도의 법을 구비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독립된 법·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있지만, 여성기업을 국민경제의 주요 축으로 간주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영국·일본·대만·독일 등의 여성기업 관련 정책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선진 각국은 법·제도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주체이며, 고용창출 등의 국민경제적 기여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국민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성기업을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여성기업지원에서 각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조직인 여성기업센터(WBC)의 지원을 통하여 자국 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여성기업센터(WBC)는 미국 중기청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내, 장기적인 훈련·자문·멘토링, 신용 및 자금 지원, 연방 정부조달 계약, 국제 거래 등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도 자연발생적으로 조직화된 기존의 여성기업 관련 민간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국 내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 각국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 형태보다는 경영자문, 전시회, 세미나, 멘토링, 기업경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간접지원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배경에는 여성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있어서 과도한 자금지원과 같은 직접지원 형태는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반시장 친화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 신용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간접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수혜범위 및 규모면에서의 자금지원은 소수기업들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간접지원 형태는 다수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기업가정신 고양 등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간접지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 각국은 여성기업(여성가장 창업 포함)들을 위하여 소액대출프로그램(예:Micro Credi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소액대출은 한화로 대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각국은 여성기업을 남성기업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차원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 및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과 영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개발(예 : 과학기술 및 연구 분야, IT 등의 인터넷 비즈니스) 지원에 적극적이며, 이러한 성공모델을 전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각국은 미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여성기업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투자의 개념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화와

더불어 경쟁 역량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기업 관련 각 국가별 지원정책의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99〉 여성기업 관련 지원정책의 국내외 비교 분석

구분	차이점	공통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하에 여성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여성기업지원사업을 실시 •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시 및 인증된 여성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정책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고용창출 등의 국민 경제적 기여자로 인식 • 직, 간접적으로 정부(지자체 포함)가 관여되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상황 •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전시회, 세미나, 멘토링,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간접지원 형태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 여성 소액대출(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과 민간기구 간에 유기적인 지원체계구축 • 여성만을 위한 전용 지원프로그램 실시 •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시와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판로확대 정책의 시행 • 연방정부차원의 여성기업 계약프로그램 실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지원조직 구축 • 여성기업인 간의 네트워크구축에 초점 • 지역단위로 여성기업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판로지원 실시 • 여성사업가를 위한 5,000명의 비즈니스 멘토 모집 계획, 모집된 비즈니스 멘토는 여성기업인의 사업체 설립을 돕도록 교육될 예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체계 구축 • 주로 창업을 위한 여성에 대한 교육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판로지원의 경우, 정부와의 계약 시 여성기업에 의무적으로 일정수준 계약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임 • 정부차원의 세미나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대출, 창업 트레이닝 및 멘토링시스템, 컨설팅 서비스 지원 • 국제적인 여성 교류활동을 촉진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인 여성인력 양성과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주요 정부기관들의 효율적인 정책실행체계를 구축 	

제 1 장

여성기업 발전과제

1. 보호 · 육성정책의 전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50%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행히도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하여 창업과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7.1%로, 2007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과를 얻고 있다.

여성기업의 여성인력 고용비율은 62.6%로 남성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점은 여성기업을 늘리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성기업은 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규모면에서도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여성기업의 67.1%가 최근 10년 이내에 창업했기 때문에 기업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성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기업을 일반 중소기업보다 우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여성기업제품에 대해 공공구매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정부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은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아무리 여성기업을 보호·우대하는 정책을 펴더라도 여성기업이 내재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정책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정부가 여성을 약자로 취급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여성기업 육성을 이룰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가부장적 방식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에 그칠 뿐, 그 이상의 효과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³⁹⁾

아직 우리나라 경제환경이 여성기업의 진입과 성장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여성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방적 지원방식의 보호주의는 여성기업의 성장보다는 안주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방향은 기존의 보호·지원에서 경쟁·육성 관점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2.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방향

여성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하여 무엇이 다르고, 특징적인지를 정확히 알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관련법이 정한 바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여성기업 실태조사가 여성기업 연구의 전부라고 여겨질 정도이다. 이렇게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여성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외국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관련 협회나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거나 정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9)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2011

앞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여성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법률체계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이 강점 또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이른바 여성친화 업종의 발굴과 창업 모형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 우대하는 방식의 정책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근거를 찾아내는 것도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여성기업이 사회적 약자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여성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의미와 중요성을 반영하여 여성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특화된 정책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 촉진, 여성기업 육성,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림 4-1>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가. 여성창업 촉진

여성의 창업촉진은 여성기업 정책의 한 축으로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정보제공, 교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창업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이나 창업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여성기업은 성장성이 낮은 업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과 같은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 내용이 많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업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는 개인이 창업하겠다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한계가 드러나 있는 업종에 진입하려는 창업자에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향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의 창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이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감성·지식서비스 분야와 정부의 신성장동력 전략사업, 지역 연고사업 등에 대하여 예비여성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모델을 제시하고, 창업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창업 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지원하고 있다. 보육실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과 더불어 여성창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문 여성인력에 대한 창업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30~40대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육아·보육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가장은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자금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창업초기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고, 사업초기 운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병행 되면 여성가장 창업은 조기 경영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나. 여성기업 육성

여성기업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홍보 및 광고관련 지원, 시장조사 및 교육지원, 신제품 기획 및 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교육, 창업경진 대회, 여성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신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판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신제품 개발 지원, 감성중심의 서비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리노베이션 지원, 공공시장 판매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조달등록 및 입찰지원 등의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여성기업들에게 있어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 등으로 많은 여성기업들이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3D 사이버 전시장을 구축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3D 전시장 운영과 연계하여 3D 전시장을 통해 바이어들에게 반응이 좋고,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현지 직접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초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타겟 국가 선정과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까지 맞춤형 토털 전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는 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형 여성기업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으나, 경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연수 등의 지원은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업종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전(해법)을 제시하며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기업들도 건강수준별 진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치유와 정책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낮고 쇠퇴기에 접어든 여성기업은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구조개선을 하여 미래형 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멘토링, 여성리더십 교육 등을 더욱 확대하여 여성기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

기업의 발전적 미래상 제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이를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창업 관련 정책의 수립, 여성기업의 미래전략과 비전 제시,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할 여성기업정책연구원(가칭) 설립·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시행하는 공제조합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이다. 지금과 같이 2년마다 실시하는 여성기업 실태조사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기업의 창업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조사체계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기업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하고 여성기업 관련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지역별로 여성기업 업종을 세분화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 내 유망업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여성기업 스스로도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계여성경제인대회, 아시아 여성경제인 글로벌 포럼과 같은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여성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구심점이 되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대표 단체는 법률적 지위가 확인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뿐이며, 협회의 뿌리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연륜도 깊다. 향후 협회의 조직과 사업을 더욱 체계화하여 여성기업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순수 여성기업들이 여성기업으로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기업의 인증가치를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지원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보급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 2 장

여성창업 촉진과제

1.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연구 추진

가. 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의 여성 사업체 산업별 분포 특징을 보면, 부가가치가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다.

〈표 4-1〉 여성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수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158	0.0
광업	147	0.0
제조업	58,032	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7	0.0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27	0.1
건설업	11,283	0.9
도매 및 소매업	342,943	28.1
운수업	15,284	1.3
숙박 및 음식점업	413,002	33.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95	0.3
금융 및 보험업	4,317	0.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8,311	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31	0.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12	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04	0.0
교육 서비스업	87,494	7.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9,676	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091	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9,809	12.3
합 계	1,221,653	100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9

또한,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이 창업이후 한 번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비율은 지역, 창업준비기간 및 경력 등에 관계없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창업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의 비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업종선택이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창업 촉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성창업 적합분야를 발굴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제시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성창업 적합분야 발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창업아이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예비여성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창업아이템에 대한 분석 등을 검토하여 여성창업 적합분야 발굴하고자 한다.

그러나 창업성공은 개인의 경험, 능력, 자금 등의 여러 투입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대신 창업자들에게 업종선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 외국의 창업아이템 사례

가) 미국

미국 여성들의 초기 창업은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 여성들이 손쉽게 가정 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사이트(<http://www.powerhomeBiz.com>)가 개설되어 소규모 틈새시장에서 창업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다. 본 사이트에서 제안하는 여성을 위한 비즈니스 아이템 Top 10은 다음과 같다.

〈표 4-2〉 2011년 미국 여성을 위한 비즈니스 아이템 Top 10

연번	아이템	내용
1	가상 어시스턴트 (Virtual Assistant)	온라인으로 비서업무 및 행정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로 워드 프로세싱, 이벤트 기획 및 기타 사무잡무와 같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이메일, 웹사이트, 메시지 및 전화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음
2	블로그 개설 (Blogging)	2009년 통계에 따르면 8백만 여성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포스팅 하고 있음. 블로그를 통한 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광고이며, 성공 핵심 전략은 많은 광고를 확보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토픽과 콘텐츠를 포스팅하여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것임
3	홈 스테이징 비즈니스 (Home Staging Business)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집이 쉽게 판매될 수 있도록 Home stagin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짐. Home staging은 집이 더욱 크고, 밝고, 따뜻하게 보이도록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며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4	데이케어 (Day Care)	맞벌이 부모의 증가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데이케어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 데이케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사업장(집)이 보육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함
5	수공예 (Hand Crafted Items)	수공예 제품판매는 온라인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EBAY.com에서는 수공예 제품 판매상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품의 종류에 따라 도매/소매 및 박람회, 온라인 판매, 바자회, 기프트샵, 백화점 등에 납품할 수 있음. 수공예 제품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경쟁력이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기획, 생산해야 함
6	허브재배 (Herb Farming)	대체 약품인 허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계절에 상관없이 비닐 하우스나 야외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며 도매 및 소매, 식료품점 등에 납품할 수 있음
7	개인요리사 (Personal Chef)	Personal chef는 고객의 입맛과 선호에 따라 6-8종류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수요가 많음
8	노인요양사업 (Elderly Care Business)	입소가 아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홈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인기가 많음
9	컨설팅 (Consulting)	창업자가 금융, 마케팅, 의료 등의 특정산업의 전문가라면 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음
10	보험 클레임지원 (Medical Claims Billing)	보험에 대한 클레임을 취급하고 환자가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 및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

나) 호주

호주는 정부 및 창업기관에서 여성을 위한 별도의 비즈니스 아이템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비창업가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스타트업 스마트(<http://www.startupsmart.com.au>)에서 매년 창업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10대 최고 창업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표 4-3〉 2011년 10대 최고 창업아이디어

연번	아이디어	내용
1	기후예측 안내서비스 (Weather Bill)	수집한 날씨 정보를 대형컴퓨터에 입력한 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정보를 만들어 이를 농부와 농작물 생산 및 가공 회사 등에 전달함
2	모바일하버 (Mobile Harbour)	수심이 낮은 항만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컨테이너선이 바다에서 직접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한 이동식 항구로 대규모 항만을 지을 필요가 없어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3	결핵 탐지하는 전자코 (E-nose)	인도의 연구자들은 호흡을 통해 결핵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전자코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와 비슷한 휴대용 장치임
4	익은 작물만 수확하는 로봇 (Robotic Harvester)	농작물이 익었는지를 로봇이 확인하여 수확할 수 있는 로봇으로 위 아래로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정렬할 수 있음
5	대기 수분 비로 뿌리는 인공강하 (Airdrop)	건조한 사막 공기 속에서 액체 수분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시설로 지하 파이프 네트워크를 통해 식물의 뿌리에 직접 물을 제공함
6	빈집털이범을 막는 스마트 초인종 (Smart Bell)	집을 비우더라도 집 초인종이 울리면 휴대폰을 통해 원격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빈집털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택배가 왔을 때 따로 통화할 필요가 없이 물건을 두고 갈 위치까지 안내가 가능함
7	주식투자정보교환 사이트 (Investable)	주식투자자에 대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며 네트워킹을 통해 토론을 활성화 함
8	예비부부 정보제공 서비스 (Essential Groom)	예복에서부터 신혼 여행지까지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이드 서비스임

연번	아이디어	내용
9	병원대기시간 알려주는 서비스 (TechnowaiT 1-2-3 Go)	환자들은 의사 사무실에 번호를 등록하고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외부에 있어도 진동 및 문자 확인 등을 통해 자신의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임
10	가방 부착용 휴대저울 (Weigh To Go)	짐가방에 부착된 휴대용 스마트 저울을 개발함. 디지털 저울, 가방주인 이름표 및 열쇠의 세 기능이 겸비된 스마트 휴대용 가방으로 저울은 휴대용 짐가방 손잡이 밑에 부착되어 손잡이를 몇 초간 당겼다가 놓으면 가방에 부착된 디스플레이에 무게가 표기됨

예시 : 2011년 10대 최고 창업아이디어 관련 이미지



<Robotic harvester>



<Weigh To Go>



<모바일하버 (Mobile Harbour) 해상시연 장면>

다) 일 본⁴⁰⁾

현재 일본 창업시장의 키워드(Key Word)는 절약, 건강, 환경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건강은 일본 내에서 히트 창업테마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 프랜차이즈협회에서 선정한 일본 내 여성창업 관련 틈새시장(혹은 소상공인) 사업아이템에 대한 Top 10은 다음과 같다.

<표 4-4> 2008년 일본의 여성창업 아이템 Top 10

연번	아이템	내용
1	천연 공정 식품 Nactory (Natural + Factory-천연 공정)	천연 공정 식품 사업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천연공법으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사업임
2	자연 레스토랑	자연 레스토랑은 요리를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닌 음식에 대한 안심감을 제공한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함 특히, 일본 전역에 건강식 레스토랑을 전개하고 있는 '가키 야스혼텐'에서는 몸속의 독소를 빼내는 정화 방법인 디톡스(Detox)요리가 유행하고 있음 대체로 창작요리를 내세우는 이 음식점들의 가격은 대중음식점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되지만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음
3	3R비즈니스 (Reduce-검약, Reuse-재이용, Recycle-재활용)	방만한 소비 풍조에서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반영한 사업모델로서 새로운 창업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구두, 가방 등 피혁제품을 리폼하는 업체인 '지오텍'이 대표적이며, 이밖에도 신간 및 중고서적, 주얼리 명품 등을 대상으로 중고를 활용하는 서비스업이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음
4	라이프 코디네이터	라이프 코디네이터란 전문직의 젊은 층과 중장년층, 실버층을 고객으로 한 관광·레저·여행 등의 플랜을 제공해주는 직업임 역사, 문화 등 테마를 주제로 한 투어상품(여행가이드, 여행상품)이 컨설턴트를 통해 판매되며, 특히 고객맞춤 설계로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강점임
5	실내 생태 정원사업	콘크리트 아파트, 빌딩 등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실내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00% 자연에서 채취한 원료로 한 에코럭셔리 스파 및 자연 그대로의 생태 시스템의 실내 정원을 설치해주는 사업임

40) 이정섭,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진국의 여성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연구, 2008

연번	아이템	내용
6	자동차 외형 복원사업	자동차의 외형을 수선해 주는 아이템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자동차를 광택 내고 흠집을 제거하고 유리를 복원한다든가 부분용접, 범퍼수선이나 차 실내 클리닝 등이 이에 해당됨 친환경적인 사업을 강조하며 향후의 트렌드에 부합하고 수입품 위주의 장비를 사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7	외국인 생필품 전용 쇼펍몰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 발맞추어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외국인을 위한 생필품 및 도서 콘텐츠 등을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서비스임 본 사업은 총 4만여 가지의 아이템을 미국 또는 유럽 현지에서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음
8	네츄럴 테라피 Salon	가격과피형 피부관리실을 비롯하여 식이요법과 특수 개발한 운동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전용 피트니스클럽(예: 버티플라이)이나 남성 피부관리와 체형관리, 탈모관리 해주는 남성 뷰티클럽(예: 픽시레벨) 등 외모를 가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사업을 말함
9	릴렉스 Café	만화, 온라인 게임, 족욕, 간단한 마사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단순한 컴퓨터 이상의 문화공간 창출사업 아이템으로, 카페에는 고객의 필요에 맞추어 전실 개별 부스, 전석 하이스펙 PC 등이 구비되어 있음
10	요리 쿡 홈페이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를 위한 건강 이요식과 맞벌이 및 노년부부를 위한 홈페이지 요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라) 중 국

중국 여성연합에서는 2009년 여성에게 적합한 창업업종을 전국단위로 공모하여 여성적합 정도, 투자자본, 창업 용이성, 성장전망 등을 평가한 후 여성창업 유망업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선정된 3개 분야 8개 유망업종은 다음과 같다.

〈표 4-5〉 2009년 중국의 여성창업 유망업종

연번	업종		내용
1	세탁업	여성전용세탁공정	전국여성경제인연합 및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업 운영주체를 조직하여 전국세탁기계협회와 관련기술 위원회의 협조로 여성만을 위한 세탁 사업을 진행
		수공친환경세탁 체인점	무료 창업교육을 지원하여 3-5일 교육만을 수료하면 관련기술 습득이 가능함 환경 및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세제를 사용한 세탁 사업으로, 체인점 공통의 전용 세탁설비와 부품, 원료를 사용함
2	공예품 가공	컬러열쇠전문점	요즘 유행하는 컬러열쇠는 생필품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식용품으로도 인기가 높은 상품으로 하나의 열쇠를 만드는데 5분 정도면 충분함 창업을 위해서는 3시간의 기술교육이 필요
		꽃공예전문점	꽃공예전문점은 여성의 세심한 미적 감각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각종 꽃꽂이 이외에 꽃을 이용한 도자기 공예품의 취급도 가능함 최근에는 일반인 대상의 교육 강좌를 열어 DIY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유행하고 있음
		디지털사진관	디지털카메라, 인화기, 컴퓨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디지털이미지를 출력해주는 사업으로, 소규모 인원 및 간단한 컴퓨터 조작능력만으로 창업이 가능함
		선물포장업	가맹점 방식으로 운영하며, 선물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도록 포장해 주는 사업
3	세차업	이동세차기업	일반 주차장 내에 간편하게 세차기구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세차하는 사업으로, 설비투자 이외의 운영 경비 소요는 매우 적음
		생활용수 세차업	생활하수 및 빗물 등 생활용수를 이용하여 세차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1톤의 생활용수로 약 20대의 세차가 가능함

2) 우리나라 예비여성창업자의 인식

현재 정부기관 및 여성단체에서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비여성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여성 적합아이템을 조사하고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6〉 예비창업자 조사 개요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중
전체		328	100
교육대상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수강생	140	4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실전창업스쿨 수강생	188	57
지역	수도권	103	31
	부산/울산/경남	63	19
	대구/경북	55	17
	광주/전남/전북/제주	62	19
	강원/대전/충남/충북	45	14
연령대	20대	152	46
	30대	67	21
	40대	72	22
	50대 이상	37	11

조사결과, 준비 중인 창업유형을 보면 1인창조형 창업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인 미만의 소상공인형 창업 25.6%, 5인 이상의 기업형 창업 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창업유형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2.9%로 나타났다. 지역별 창업유형을 보면, 1인창조형은 강원/대전/

충남/충북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권이 38.8%로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의 소상공인형 및 5인 이상의 기업형은 대구/경북이 각각 29.1%,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7〉 예비창업자가 준비 중인 창업유형

(단위 : %)

구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강원/대전/충남/충북	전체
1인창조형	38.8	26.6	27.3	27.4	53.3	34.8
5인 미만의 소상공인형	22.3	27.0	29.1	24.2	28.9	25.6
5인 이상의 기업형	2.9	4.8	14.5	12.9	0.0	6.7
미정	35.9	39.7	29.1	35.5	17.8	32.9

또한 앞서 살펴 본 우리나라 예비여성창업자들은 적절한 창업자금 규모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창업인 경우 예비창업자의 52.1%가 5천만원에서 1억원, 5인 이상 창업인 경우 예비창업자의 43.5%가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를 적정 창업자금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8〉 예비창업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창업자금 규모

(단위 : %)

구분	5인 미만 기업	5인 이상 기업	전체
5천만원 미만	26.0	-	19.8
5천만원 ~ 1억원 미만	52.1	21.7	44.8
1억원 ~ 2억원 미만	17.8	43.5	24.0
2억원 ~ 3억원 미만	4.1	8.7	5.2
3억원 이상	-	17.4	4.2
무응답	-	8.7	2.1

여성에게 적합한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창업유형과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1인창조 및 5인 미만 소상공인형 여성창업자 적합아이템으로는 뷰티샵, 브런치카페 및 베이커리, POP 손글씨, 수공예품 전문 쇼핑몰 등을 응답하였다. 반면, 5인 이상 기업형 여성창업자 적합아이템은 영유아 보육서비스, 공연 및 전시 기획, 공연 및 전시 마케팅, 뷰티샵 등을 응답하였다. 뷰티샵, 브런치카페, 영유아 보육서비스 등은 창업유형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표 4-9〉 창업유형별 여성창업 적합아이템 순위(상위 10가지)

연번	1인창조, 5인 미만 소상공인형 여성창업자	5인 이상 기업형 여성창업자
1	뷰티샵(네일, 스킨, 두피관리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교육, 놀이진행)
2	브런치카페 및 베이커리	공연 및 전시 기획
3	POP 손글씨	공연 및 전시 마케팅(홍보)
4	수공예품 전문 쇼핑몰	뷰티샵(네일, 스킨, 두피관리 등)
5	공예디자인(악세서리, 보석, 안경 등)	생활이벤트(파티, 기념일)
6	DIY공방(가구, 도매)	토속 김치/식재료 온라인 판매
7	패션소매점 디스플레이	관광상품기획/마케팅
8	영유아 보육서비스(교육, 놀이진행)	무대서비스(영상, 미술 설치 등)
9	천연/한방용품 제조(화장품, 비누 등)	콘텐츠(스토리)기획
10	허브용품 제조	브런치카페 및 베이커리

3) 우리나라 여성기업인의 인식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인들은 여성창업 적합업종으로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보다는 감성기반 제조·서비스 분야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여성기업인들이 생각하는 여성창업 적합업종

(단위 : %)

구분	세부 분야	응답 비중
감성기반 제조· 서비스	영유아 보육, 교육 등의 전문 케어서비스	28.1
	스트레스 해소 서비스업(스파, 네일케어, 두피케어, 풋케어 등)	26.4
	실버 홈 헬스케어 서비스(건강 모니터링, 카운슬링, 기기 렌탈 등)	21.3
	가사 노동 경감을 위한 각종 대행서비스	20.4
	친환경 생활, 가정용품 제조 및 판매	18.7
	라이프케어 서비스(자산 관리, 식단 및 운동관리 등)	12.4
	디자인 아웃소싱업(기업체, 개인)	8.2
	색채, 조명, 경관 등 첨단 인테리어업	5.2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1.6
	게임관련업(게임 콘텐츠 기획 및 SW개발업)	1.4
지식기반 서비스	가정 원예 및 조경업	8.7
	레저 여행관련 서비스업	5.5
	광고 및 PR대행업	4
	마케팅 조사 및 사회조사업	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업	2.5
	영화, 방송, 공연 등 문화 콘텐츠기획, 제작업	2.3
	건물, 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8
	경영, 기술 관련 전문 상담(컨설팅)업	1.7
	e-러닝, 디지털출판업	1.4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감성기반 제조·서비스 분야에서는 영유아 보육, 교육 등의 전문 케어 서비스가 28.1%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해소 서비스업 26.4%, 실버 홈 헬스케어 서비스 21.3%, 가사 노동 경감을 위한 각종 대행서비스 20.4%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에서는 가정 원예 및 조경업 8.7%, 레저 여행관련 서비스업 5.5%, 광고 및 PR대행업 4%, 마케팅 조사 및 사회조사업 3% 순으로 나타났다.

4) 여성창업 적합분야 발굴시 고려사항

선진국의 여성창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여성창업은 소규모·소자본 창업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성들은 주로 설비투자나 기술개발(R&D)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섬세함·감성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창업업종을 찾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내외 창업 트렌드를 보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으로 알뜰 소비자를 위한 가치소비, 스트레스 해소 및 체험형 관광, 친환경, 안전과 보안 등이 창업의 중요한 테마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성창업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적합분야를 발굴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여성 적합분야 발굴시 고려사항 >

- 여성의 특성인 섬세함·부드러움 등 여성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다양하게 검토
- 현재 유행하는 업종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방향, 미래사회, 수요 트렌드 등의 기회를 포착하여 수익모델화가 가능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검토

나. 추진방안

- 1) 여성창업 적합분야 제안
- 2)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개발

1) 여성창업 적합분야 제안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창업 적합분야를 찾고, 차별화된 틈새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백서에서는 국·내외 여성창업 특성과 여성창업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여성창업 적합분야로 생활기업을 제안한다. 생활기업은 본 백서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생활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 생활기업의 특징 >

- 가치소비 추구경향을 반영한 기업 : 인디비주얼 패션(Individual fashion)⁴¹⁾, 맞춤형 식품 등 새로운 매력 포인트를 보유하며, 가격 이외의 차별적 효용을 제공
- 문화와 관광, IT기술을 융합한 기업 : 드라마와 영화를 관광산업과 연계한 아이템으로 영상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모바일 기기용 앱을 통해 서비스 등을 제공
- 안심소비 추구경향을 반영한 기업 : 식품, 생활용품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천연, 한방, 유기농 제품 개발
- 따뜻하고 감성적인 콘텐츠를 추구하는 기업 : 사용자의 감성적 체험과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및 콘텐츠 서비스 개발
-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화하는 기업 :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특색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등을 재창조하여 제공

41) 인디비주얼 패션(Individual fashion)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유하면서도 독특한 패션을 말한다.

이와 같은 생활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적합분야를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제시한다. 감성기반 제조·서비스분야로는 천연/한방용품 제조, 맞춤형 유기농 식품제조, 인디비주얼 패션 및 생활용품 아이디어 디자인, 맞춤형 자녀교육환경 코디, 천연염색 및 전통공예 현대화, 영유아 전문 케어서비스를 제시한다. 지식기반 제조·서비스 분야로는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 모바일 관광상품 기획/마케팅, 영유아 학습 콘텐츠 개발, 영화/방송/공연 등 문화 콘텐츠기획 및 제작을 제시한다.

〈표 4-11〉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적합분야

구분	적합분야
감성기반 제조· 서비스분야	천연/한방용품 제조 (천연소재 화장품/여성 생리대/비누 제조)
	맞춤형 유기농 식품제조 (환자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식품제조, 천연조미료 제조 등)
	인디비주얼 패션(Individual Fashion) 및 생활용품 아이디어 디자인 (유모차 디자인, 여성전용 차량용품 디자인 등)
	맞춤형 자녀교육환경 코디
	천연염색 및 전통공예 현대화
	영유아 전문 케어서비스
지식기반 제조· 서비스분야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
	모바일 관광상품 기획/마케팅
	영유아 학습 콘텐츠 개발
	영화/방송/공연 등 문화 콘텐츠기획 및 제작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성창업 적합분야를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예시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

가정주부로서 야채가격 변동이 심하다보니 채소를 직접 재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옥상 정원이나 실외 텃밭에 채소를 기르는 것은 기후변화가 심하고, 추운 겨울에는 재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서 착안한 실내 채소 재배기는 LED 조명기술을 이용해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채소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소모량도 적어 가정에서 직접 재배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는 사업아이템이다.

가정에서 채소를 직접 재배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재배노하우와 제품의 특성을 살려서 실내채소 재배기를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시 : 인디비주얼 패션(individual fashion) 디자인

사회 추세는 디지털화 되고 있지만 문화적, 정서적으로는 아날로그적인 성향이 증가하면서 복고풍의 열풍, 나를 위한 특별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디비주얼 패션(individual fashion) 디자인은 이러한 나만을 위한 특별함을 반영한 사업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미적 감각에 바탕을 둔 패션디자인 제품 개발사업이다.

컵이나 접시, 식기 등 주방생활용품, 패션의류 등을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디자인하여 판매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디자인이나 사진이미지를 받아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개인컵 사용 운동', '커플의류' 등의 영향으로 친구와 연인 사이에 특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을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여성의 창업아이템으로 적합하다.

예시 : 맞춤형 자녀교육환경 코디

아이들의 학습능력은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환경적 요소들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들은 TV나 컴퓨터 등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끼리 보다 나은 자녀교육 방법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카페 등을 개설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서 사업아이템을 착안한 것으로 아이의 성격, 집안 분위기, 부모의 맞벌이 형태,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 등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예시 : 모바일 관광상품 기획/마케팅

전세계 한류열풍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류열풍은 우리나라 관광상품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초기에는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장소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코스화 하고 한국대중문화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 되면서 관광객이 직접 관광코스를 기획하거나, 지역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에는 영상관광 콘텐츠 개발도 활발해 질 것이라 본다. GPS와 연동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관광객이 해당 장소에 가기만 해도 프로그램이 가동돼 관련 관광정보가 모바일 기기 화면에 뜨는 식이다.

모바일 관광상품 기획/마케팅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어떤 활동을 선호하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한국대중문화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다.

2)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개발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창업에 적합한 개별 업종을 선정하여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창업아이템 전쟁이라 할 만큼 많은 창업아이템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창업기업 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모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추진은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단계로 기존 업체 중에서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창업전문가에게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후보기업을 발굴하며, 후보기업에 대해 실사,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업체를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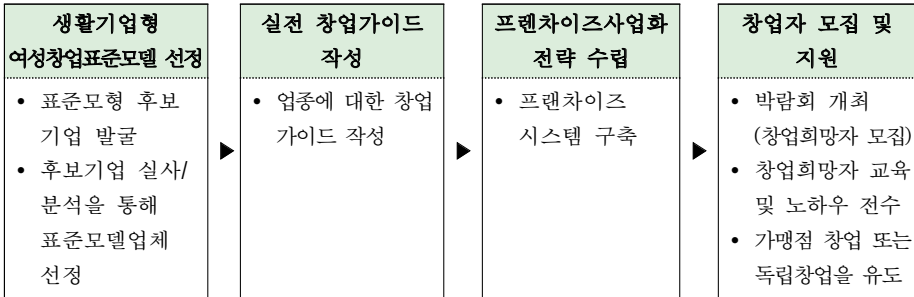
2단계로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업체의 사업특성, 고객구조, 운영방식, 재무특성, 투자내용 등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가이드를 작성한다. 모델기업이 해당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문제는 해당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소(예 : 자금우선지원 등)한다.

3단계로 선정된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업체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기업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4단계로 생활기업형 창업박람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창업희망자를 모집하고, 여성창업 표준모델 업체를 통해서 교육·노하우를 전수하며, 예비창업자의 선택에 따라 가맹점 창업 또는 독립창업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잠재력 있는 업체를 기업형으로 육성할 수 있고,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전에 실제 사업을 체험할 수 있어서 창업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그림 4-2>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발굴 및 창업 촉진 프로세스



예시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업 창업가이드

1.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업 알아보기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업이란?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업의 특성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업 현황

2. 사업성 분석

- 사업성 분석 평가요소, 사업성 분석의 절차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업 사업성 분석

3. 창업절차

- 일반적인 창업절차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업 창업절차
- 개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4. 인허가 절차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5. 마케팅 전략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업 마케팅의 핵심요소
- 실내채소 재배기의 제품 구색 방법
-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업 홈페이지 만들기
- 단골고객 만들기, 개업 후 홍보방법

2. 준비된 창업유도로 성공률 제고

가. 배경 및 필요성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기업인의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은 여전히 자금조달이 가장 큰 것으로 났으나 2008년 대비 그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사업타당성 분석애로는 2006년에 5.7%, 2008년에 5.3%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13.2%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전에 비해 창업분야가 많아지고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아이템을 분석하고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업종선정 애로는 2006년 11.7%에서 2008년 7.0%, 2010년 9.2%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 역시 사업타당성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분석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12〉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 %)

구분	자금 조달	입지 선정 및 확보	사업 타당성 분석	판로 개척	업종 선정	행정 절차	인력 확보
2006년	28.1	29.0	5.7	18.1	11.7	3.7	2.1
2008년	44.7	23.6	5.3	9.4	7.0	4.7	2.9
2010년	30.0	27.4	13.2	9.3	9.2	5.9	1.6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이와 같은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기술, 마케팅, 세무, 특허 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창업준비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은 창업아이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러한 창업 애로사항들을 1회 교육에 모두 담아 설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은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타 창업기관에서 진행 중인 교육과정(바리스타, 베이커리, 떡 카페, 파티플래너 등)과의 차별성 확립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교육을 살펴보면 음식점, 떡 카페, 인터넷 쇼핑몰, 커피전문점 등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육하고 있는 대중적 교육과정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특색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이 보인다. 각 지역별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창업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차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전창업스쿨 교육이 타 기관의 창업교육과정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중적 창업아이템 중심의 교육을 지역 특화와 연계한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실무 교육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창업교육은 여성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창업자 마인드 및 여성창업 적합분야 소개 중심의 기본교육과 창업실행단계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성공사례,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실무교육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 관련 이미지



〈표 4-13〉 일전장업스쿨 교육과정

지역	2010년	2011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티플래너 천연비누화장품 3회 에스테틱전문경영인 패션점포/CS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피케어샵 베이커리카페/외식창업 패션점포(손뜨개 바느질) 아트비즈/CS강사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피케어 초코렛쿠키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피케어샵 아로마테라피 DIY샵 디저트카페
대구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트플라워디자인샵 선물포장, 리본아트 퓨전떡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퓨전떡카페, 커피전문점 예쁜글씨 POP 수제떡 & 쿠키전문
광주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피케어, 천연비누 파티플래너/향토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핑몰창업과 소셜네트워크마케팅 파티플래너 향토음식전문점 패션디자인
대전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집 바리스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집 커피전문점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와 원석공예 베이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이커리카페 바리스타 피부토탈라인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심리치료 바리스타/요양보호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떡카페 미술심리치료 천연비누 & 천연화장품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리스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떼아트, 커피전문점 플라워샵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리스타 베이커리/온라인 쇼핑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ommerce 셀프메이드 쿠키 & 케익전문점 베이커리페이스트리 바리스타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촬영/바리스타 영상제작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가구 DIY 공방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상, 키즈 파티플래너 아동미술심리치료 우리밀쿠키클레이 독서북아트지도사/홈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아트지도사 매너컨설팅트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음식전문점 디지털포토앨범제작 떡카페/웰빙플라워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본코디네이터 애니타임브런치 헤어샵, CS강사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리스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리스타

※ 자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0~2011

〈표 4-14〉 주요지역 소상공인진흥원 창업교육

지역	교육과정명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ke out형 타이요리 전문점 창업 • Color 떡볶이 전문점 창업 • 슈퍼마켓 창업, 스킨케어 창업 • 외식업(주류, 분식, 고기) 창업 • 복합카페(브런치요리, 카페음료, 디저트요리) • 외식(국수, 분식 중심)프랜차이즈 • 쿠키앤 커피 전문점 창업 • 초코아트 여성창업자를 위한 기술형 무점포 창업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쇼핑몰 창업 • 생활도자기 핸드페인팅 창업 • 스토리가 있는 아트 테마카페 • 친환경 천연염색 공방 창업 • 다이어트 치킨전문점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창업 • 플로리스트 창업 • 인터넷 쇼핑몰 창업 • 외식전문점 프랜차이즈 창업 • 건강지킴이 안마 성공 창업 • 장애인 요양복지 창업 • 안경원 창업 • 프랜차이즈(커피중심으로) 창업 • 실전창업교육(공예) • 스마트앱 비즈니스 창업
광주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비누 및 화장품공방 창업 • 파티플래너양성 • 자연음식을 활용한 외식업 창업 • 발효음식활용 반찬전문점 창업 • 친환경 농산물 가공 창업 • 선물포장 창업 • 남도 친환경 식자재를 활용한 식품제조업 창업 • 남도 특산물을 활용한 온라인쇼핑몰 창업 • 홈스쿨 공부방 창업 • 천연염색 공방 창업 • 남도 전통 카페 창업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떡카페 창업, 캐릭터 케이크 전문점 창업 • 피부미용 창업, 햏요가 다이어트 창업 • 전통음식 창업, 퓨전한식 창업 • 전주 콩나물국밥 창업 • 수제 초콜릿 & 와플 • 샌드위치 & 샐러드 카페

※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09-2010

나. 추진방안

- 1)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단계별 교육
- 2)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

1)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단계별 교육

자신의 돈과 기술을 투자하는 창업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부족할 경우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식전달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며 ‘나는 어떻게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과 답을 교육과정에서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업단계의 구체적인 실행표(worksheet)를 작성함으로써, 준비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창업대학이나 전문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철저한 창업준비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 단계별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계별 교육과정은 창업을 구상하고 관련 이론을 습득하는 창업기본과정, 창업모델 체험과정, 사업화과정의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 창업기본과정은 창업을 구상하고 관련 이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창업전문가의 이론교육을 통해 창업과 사업의 기본기, 실무방법론을 습득하고, 창업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강생은 창업에 대한 준비여건, 창업의지 등을 자가평가하여 마인드를 재점검할 수 있다. 2단계 창업모델 체험과정은 여성창업 적합 생활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을 위탁하고,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업종 체험을 통해 실전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체득하도록 설계한다. 3단계 사업화과정은 예비창업자가 1, 2단계 교육 과정을 통해 매력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며 사업화하는 과정이다. 예비창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창업 전문가와 함께 수정·보완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표 4-15〉 단계별 학습체계도(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과정	창업기본과정	창업모델 체험과정 (여성창업 적합분야 10개 과정)	사업화과정
교육시간	30시간 내외	60시간 내외	30시간 + 상시 멘토링
교육인원	인원 제한 없음	700명	700명
교육비	무료	100,000원 내외	100,000원 내외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자가평가 • 창업관련 이론 • 정부지원정책 활용방안 • 여성기업가정신 • 국내외 여성창업 적합 아이템 소개 • 지역전략산업 활용한 새로운 창업트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업종별 창업 (업종별 이론, 성공/실패 사례, 현장학습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1:1멘토링을 통한 현장 창업 지원
신청방법	제한 없음	심사를 통한 교육생 선정	

1단계 창업기본과정은 무료교육으로서 창업저변 확대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기본지식과 여성창업 적합분야를 소개토록 한다. 2단계 창업모델 체험과정 및 3단계 사업화과정은 유료교육과정으로서, 여성창업 적합 분야에 대한 상세이론 및 사례교육과 현장실습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을 통해 교육생의 실전창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16〉 창업모델 제업교육 과정(예시)

NO	과정명	내용
1	실내채소 재배기 개발·유통	LED 기술 등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가정원에, 조정 사업의 재해석, 새로운 시장창출 방법 및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2	천연/한방용품 제조 (천연소재화장품/ 여성 생리대/비누 제조)	천연/한방용품 원료개발, 제조·유통·체험학습장 운영 방법, 지역전략 산업을 활용한 한방용품의 새로운 창업 트렌드, 현장학습
3	맞춤형 유기농 식품제조 (환자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식품제조)	맞춤형 유기농 식품제조, 레시피 개발 방법, 환자식·영유아 식단 개발 시장, 농수산물 천연 조미료 원료개발 방법,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4	인디비주얼 패션 및 생활용품 아이디어 디자인 (유모차 디자인, 여성전용 차량용품 디자인 등)	인디비주얼 패션시장 트렌드, 생활용품 아이디어 디자인의 특성 및 현황, 창업 사례,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5	자녀교육환경 코디네이터	자녀교육시장의 특성 및 현황, 자녀교육환경 코디네이터 사업화 프로세스, 홍보방법, 현장학습
6	천연염색 및 전통공예 현대화	천연염색 및 전통공예시장 특성, 현대화를 통해 성공사례, 지역전략산업을 활용한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7	영유아 전문 케어서비스	영유아 전문 케어 방법, 영유아 전문 케어 민간자격증 소개,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8	모바일 관광상품 기획/마케팅	관광상품 시장 및 현황, 모바일을 이용한 관광상품 시장, 모바일 관광상품 기획 사업화 프로세스, 현장학습
9	영유아 학습 콘텐츠 개발	모바일 앱을 통해 영유아 학습 콘텐츠 개발 방법, 창업사례, 사업프로세스, 현장학습
10	영화/방송/공연 등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시장 현황, 성공사례, 사업화 프로 세스 및 해외시장 진출 방법, 현장학습

그리고 1단계 창업기본과정 수료생이 2단계, 3단계 교육 참여 시 우대를 하고, 3단계 교육은 1년 이내에 창업할 수 있는 소수 인원(차수당 15명 내외)으로 운영하여 창업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단계 교육 수료자가 신규창업 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우대뿐만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차별화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타 기관의 창업교육을 살펴보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창업구상에서 실전창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특징은 창업의 준비단계에 따라 단순 아이템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창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실전교육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사업 개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서울시에서 서울소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창업교육, 창업보육센터 운영, 통상지원, 하이서울브랜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3>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본부 교육체계도



※ 자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단계 기초교육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e-창업스쿨과정에 창업일반과정과 창업기본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3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3단계 교육 과정은 하이서울창업스쿨로 오프라인 학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 창업전문과정은 8개 과정, 3단계 창업실습과정은 5개 과정이 있다.

〈표 4-17〉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본부 단계별 학습체계

구분		내용
e-창업스쿨	창업일반	회원 가입한 누구나 상시학습 가능하도록 개방하여 운영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창업기본	업종별 창업기본교육(상시학습, 창업전문과정 신청 시 가점 부여) * 교육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별도
하이서울창업스쿨	창업전문	업종별 창업전문교육으로 신청자 중 심사 후 교육생 선정 (창업기본과정 이수 시 가점 부여)
	창업실습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으로 창업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신청한 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교육생 선발

〈표 4-18〉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본부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구분	1단계(기초교육)		2단계(전문교육)	3단계(실습교육)
교육과정	창업일반과정 (27개 과정)	창업기본과정 (8개 과정)	창업전문과정 (8개 과정)	창업실습과정 (5개 과정)
교육시간	상시 운영		60시간 내외	30시간
교육인원	인원 제한 없음		1,600명	320명
교육비	무료		100,000원	100,000원
교육대상자 선정	제한 없음		심사를 통한 교육생 선정	심사를 통한 교육생 선정

창업실습과정 교육생에게는 서울시 산하 창업보육실에 입주시켜 창업에 대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제품에 대한 판매와 홍보도 병행하여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다.

2)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준비공간 제공, 전문인력의 1:1코칭, 창업 교육, 제품개발 보조금 및 마케팅 지원 등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1년간 중진공 연수원에 입주하여 교육과 제품 개발에 대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받는다.

< 2012년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

- 지원규모 : 1년간 최대 1억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 지원업종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 지원내용 1) 창업공간(사관학교 창업준비 공간 제공)
2) 창업코칭(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코칭)
3) 창업교육(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 창업 교육)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자가 제품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본인이 원하는 기관, 기업, 사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자유롭게 지원하는 등 창업자 본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창업자가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업을 섭외하여 지원단을 구성해서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이용자의 의견수렴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공개하여 부실지원을 예방하고 있다.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관련 이미지



※ 자료 : 헤럴드생생뉴스, 전자신문

나)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방안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육성사업으로, 여성창업에 적합한 감성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창업지원체계로는 다소 부적합하다. 그러나 창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가 창업으로 일정한 사업성과를 낼 때까지 토탈지원하는 중진공의 창업지원체계 방식은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 중진공의 사업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을 활용하여 여성창업 사업화 교육과정 수료생 및 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생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는 창업사관학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

분석과 창업아이템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수행함으로써 실패위험성이 높거나 리스크 대비 전략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창업사관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성 전문융합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전문융합지원팀(CFT : Cross Functional Team)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아이템에 대한 검증과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내는 창업전문가 조직을 의미한다.

< 여성전문융합지원팀(CFT : Cross Functional Team) >

-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협의체가 단계별 문제를 즉각적으로 지원 및 해결
-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은 창업, 경영전반, 세무 및 법률, 기술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창업 및 육성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의 핵심 업무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선발에서부터 예비창업자의 애로사항을 분석 및 해결, 창업관련 절차의 안내와 필요한 사업네트워크를 지원,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활용 안내, 필요 시 예비창업자와 투자자 연계 등이다.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예비창업자 선발은 여성창업 사업화 교육을 수료하고, 1년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여성창업 경진대회 우수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과 사업역량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사업역량은 아이디어 우수성, 창업자 마인드, 추진역량, 미래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위해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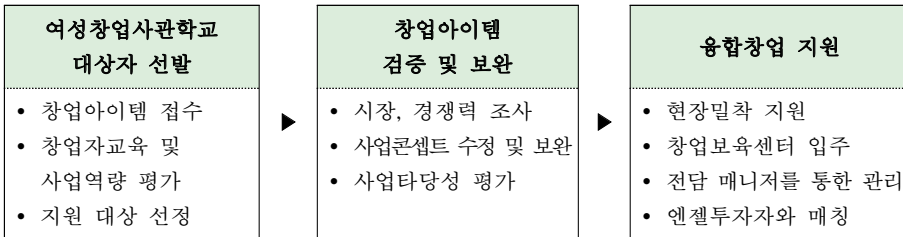
〈표 4-19〉 여성전문융합지원팀 구성(안)

분야	세부분야	분야별 업무내용
창업	아이템	아이템 개발 및 선정
	상권 입지분석	상권/입지 선정 및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및 작성, 비즈니스모델 개발
	자금조달	창업자금 조달 및 신청 준비
	점포개설	점포 선정에서 개점 준비
	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
	디스플레이	상품진열
	디자인	상품 및 포장 디자인
경영	마케팅	마케팅, 판로개발, 판촉 및 홍보
	재무	자금관리 및 원가 분석, 엔젤투자자 연계
	인사	모집 및 종업원관리
	생산	공장혁신 및 생산성 향상
	품질	품질 및 기술 인증(KS, ISO등)
	무역	수출입 절차 및 통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부 시스템 구축
	고객관리	CS(고객만족)
세무 및 법률	세무 회계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
	특허	특허 출원 및 등록
	법무	주식회사 설립
기술	인터넷 쇼핑몰	쇼핑몰 구축 및 운영
	디지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개발(게임 개발 포함)
	S/W	프로그램 개발
	영상	사진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자신의 창업아이템에 대해 목표 시장, 수요층, 시장성 및 경쟁력 등의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кон셉트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시장분석 방법은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의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도를 받고, 시장조사실무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장 조사에 따르는 비용은 센터를 통해 지원 받는다. 시장조사 자료와 함께 수정된 사업кон셉트를 제출하면 센터의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이 최종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여 창업 촉진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림 4-4〉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방안



채택되지 못한 과제는 문제점의 수정·보완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재평가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공개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창업도전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성전문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사업단계별 현장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에 우선 입주기회를 제공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매니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필요시 정부의 자금지원 및 엔젤투자자와 매칭 기회를 주선한다.

3.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 촉진

가. 배경 및 필요성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인의 창업 당시 학력분포는 고졸 이하가 69.4%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은 25.1%, 전문대졸은 5.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여성기업인의 학력별 기업성과를 보면, 대졸 이상 집단의 평균 매출액이 205백만원으로 고졸 이하 집단의 128백만원보다 61% 이상이 높다. 또한 평균종사자수도 대졸이상 집단은 평균 4.8명인데 반해, 고졸 이하는 2.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로는 여성기업인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사업성과 및 평균종사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창업분야에 대한 창업자의 전문지식 및 전문성에 좌우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또는 전문학교생 등의 경우 전공 및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보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창업촉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20> 여성기업인의 학력별 사업성과 비교

(단위 : % 천원, 명)

구분	비중*	매출액	당기순이익	평균종사자수	
전체	100	147,206	32,619	2.9	
대표자 학력	고졸 이하	69.4	127,571	30,408	2.2
	전문대졸	5.3	139,143	33,724	2.5
	대졸 이상	25.1	205,205	38,979	4.8

주) 비중에서 무응답 0.2%는 제외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이러한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창업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대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식·감성기반의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멘토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방안

- 1) 여대생 창업 강좌 내실화
- 2) 여대생 창업 멘토링 운영
- 3) 비즈쿨 여성창업자 육성 및 특성화고등학교 창업교육 운영

1) 여대생 창업 강좌 내실화

여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미래의 여성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교육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과과정에는 창업에 성공한 여성기업인 소개, 기업가 정신, 국내외 창업 트렌드, 여성창업적합분야 소개, 기업경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진로지도에도 창업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대생 창업 강좌 시 발표된 창업아이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방식을 도입하여 여대생 창업아이템에 대해 온라인 상에 웹을 만들고 방문자들이 가상의 시드머니를 제공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고, 향후 사업화 되었을 경우에 고객 및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클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주식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최근 영화, 음악 등 문화 상품이나 정보기술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Crowd funding 사이트 중에서 유명한 Kickstarter는 사이트에 프로토타입(동영상, 그림 등의 미디어 형태가 많음)으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모금 목표액을 올리고 일정기간 동안 기부를 받는다.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그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시 : 클라우드 펀딩(www.kickstarter.com)

The screenshot shows the Kickstarter homepage with the following details:

- Header:** KICKSTARTER logo, navigation links (Discover great projects, Start your project), search bar, and utility links (BLOG, HELP, SIGN UP, LOG).
- Main Banner:** "A NEW WAY TO Fund & Follow Creativity" with logos of featured media outlets like CNN, WIRED, 6000, Pitchfork, NPR, and The New York Times.
- Project of the Day:**
 - TJ* An Animatronic Puppet:** by Jeff Kessler. Description: "TJ* is a miniature fiberboard skull and robotic puppet. But in reality, he could be your new best friend! His Arduino-based remote-control system allows for live control, or you can write your own software to make him do all sorts of cool things. Be sure to check out the video!" Location: Palo Alto, CA. Funding: 966% FUNDED, \$24,751 PLEDGED, 17 DAYS LEFT.
 - Gremolata & Cancellaresca Milanese:** by Russell Maret. Description: "Help type designer and book artist Russell Maret make a new proprietary metal type family to use in his books." Location: New York, NY. Funding: 182% FUNDED, \$45,566 PLEDGED, 16 DAYS LEFT.
- Blog:** "Five Questions: Roy Germano of Mexican Sound" posted about 22 hours 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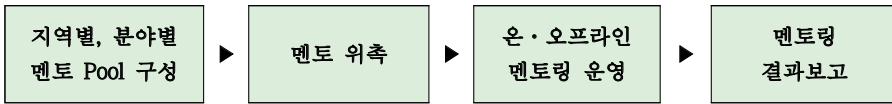
※ 자료 : <http://www.kickstarter.com>

2) 여대생 창업 멘토링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관련 전문가를 구성하고, 창업관련 전문가들이 여대생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과정을 지도하고 상담해주는 여대생 창업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 멘토 Pool(여성기업인, 창업 전공 대학교수, 창업전문 컨설턴트 등)을 구성하여 정보망을 구축하고, 차세대 여성 CEO교육과정 수료생 및 예비 창업자들이 분야별 전문가와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특히, 경영 마인드와 지식이 부족한 이공계 예비여성창업자에게 있어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지원하는 창업 멘토링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4-5〉 여대생 창업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3) 비즈쿨 여성창업자 육성 및 특성화고등학교 창업교육 운영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2년 청소년들의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비즈니스 스킬 함양을 위해 비즈쿨이라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비즈쿨은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로 2002년 5개에서 시작하여 2011년 현재 비즈쿨 100개가 선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80개가 운영되고 있다.

< 비즈쿨 지원내용 >

- 체험학습 및 참여프로그램 지원
 - 비즈쿨 학교 선정, 청소년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비즈쿨 전문 교사 양성교육 사업, 비즈쿨 표준교재 개발사업
- 비즈쿨 일반교육
 - 초등학교 : 어린이 경제, 금융 기초이론 교육 및 실생활과 연계한 실전적 비즈니스 체험 학습교육 실시
 - 중학교 : 청소년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중급 이론 교육 및 올바른 경제관 확립을 위한 인식전환 교육 실시
 - 고등학교 :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고급 이론 교육 및 실전 창업 체험 학습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비즈쿨의 프로그램 중 창업캠프 운영 시 여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하고, 미래 여성CEO 양성 및 발굴을 위하여 여성창업 적합분야 소개, 성공여성CEO와 네트워크 확대 기회 제공 등의 전문여성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 속의 아이디어에 IT 기술 등을 접목하여 틈새시장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술트렌드 및 창업아이템, 여성창업 적합분야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토록 한다.

예시 : 특성화고등학교 여성창업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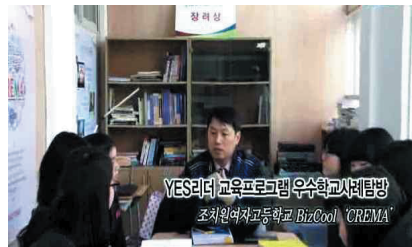
조치원여고의 YES리더 프로그램은 Yes! Leader 특강 프로그램을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인 비즈쿨(BizCool)과 연계하여 구성한 것이 큰 특징이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당찬 CEO'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오프라 윈프리, 칼리 피오리나와 같은 세계적인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을 롤 모델로 설정하여, 저명한 기업인 중심의 강사로 구성된 교내 Yes! Leader 특강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즈쿨 MBA체험 캠프, 창업아이템경진대회, 경제골든벨 대회, 대외 박람회 참가 및 참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과후 교육 뿐만 아니라 교과와 융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문계는 진학을, 상업계는 취업이라는 단순한 교육활동에서 창업을 더하여 특강, 경진대회, 동아리활동, 체험전, 참관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되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육성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내 창업동아리 'CREMA'는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를 이용한 사업아이템 개발하여 상품화를 추진 중이다. 천연 화장품과 비누인 'Natural#', 복숭아 미스트인 '도화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 자료 : 파이낸셜뉴스, 2012. 1

또한 비즈쿨을 통해 사업화를 준비중인 여학생들의 우수 아이템을 매년 선별하여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및 통합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문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전문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창업 정신 고취 및 여성창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여성창업 도전과 성공이라는 여성창업 특강교육을 개발하고, 매월 1회 전문고등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특성화고교, 종합고교, 마이스터고교 등 총 679개의 전문고등학교가 있다.

〈표 4-21〉 국내 전문학교 현황

(단위 : 개)

구분	특성화고교	종합고교	마이스터고교	합계
학교수	476	182	21	679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2011

4.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촉진

가.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소규모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높은 취업 진입 장벽 때문에 창업을 경제활동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뛰어들고 있다.⁴²⁾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창업자의 창업 전 직업은 가정주부 39.6%, 개인사업 24.5%, 기술/생산직 18.1%, 사무직 14.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창업 전 직업 중에서 가정주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4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정책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2009

차지하고 있지만, 기술/생산직도 2008년도 대비 6.5%p, 2006년도 대비 14%p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사무직도 2006년도 대비 9.2%p의 증가폭을 보이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22〉 현 사업계의 대표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단위 : %)

구분	가정주부	개인사업	기술/생산직	사무직	기타
2006년	44.2	11.7	4.1	5.6	14.5
2008년	49.8	21.9	11.6	5.3	11.4
2010년	39.6	24.5	18.1	14.8	3.0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전업주부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회경험 부족과 가사와 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 및 자녀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3〉 전업주부로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 %)

구분	육아/자녀교육	가사와 사업 병행	사회경험, 정보 부족	여성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응답률	17.9	32.1	46.4	3.6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지원 정책 및 창업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2011

창업보육시설은 예비창업자가 정보를 교류하고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여성창업자를 위한 여성창업보육시설도 전국적으로 14개가 설치되어 있다.

〈표 4-2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보육실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보육실수	구분	보육실수
본 회	9	울 산	6
서 울	9	강 원	13
부 산	10	경 기	10
대구/경북	16	충 북	16
광주/전남	10	전 북	13
대전/충남	10	경 남	15
인 천	19	제 주	7
합 계	163		

※ 자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11

〈표 4-25〉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현황

구분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남부여성 창업보육센터	북부여성 창업보육센터
보육 실수	창업보육실(20㎡) 11개	창업보육실(24㎡) 15개	창업보육실(6.4~7.8㎡) 7개(개인사무실)
	창업준비실(6㎡) 20개	창업부스실(7㎡) 4개	창업준비실(52.4㎡) 12개(공동사무실)
입주 기업수	창업보육실 11개	창업보육실 14개 (공실 1개)	창업보육실 7개
	창업준비실 20개	창업부스실 4개	창업준비실 6개 (공실 6개)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컨설팅 및 멘토링 • 전문 세미나 운영 • CEO 아카데미 운영 (창업 관련 기초, 심화) • 각 유관기관 MOU를 통한 사업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 컨설팅 (마케팅 등) • 창업박람회, 전시회 등 외부행사 알선 및 참가비 지원 • 비즈니스 전문교육 지원 • 세무기장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및 시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집기 - 초고속 통신망 - 공동 : 휴게실, 회의실 •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무료창업상담 - 여성CEO아카데미 수강
지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및 회의실 • 사무집기(책상 등) • 초고속통신망, 공동이용 기자재 • 제품보관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실, 수면실 • 스튜디오, 체력단련실 • 자료실, 비즈니스 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실습실 운영 (반찬, 헤어, 피부관리, 네일케어, 의류수선)

※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2011

그러나, 일반창업보육시설 내 어디에도 여성의 육아 및 자녀문제와 관련된 공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여성창업보육시설에도 여성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단지 여성기업들만 입주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여성창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여성의 이러한 창업 애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추진방안

- 1)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확대 및 탁아시설 설치
- 2) 공공형 보육시설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제휴

1)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확대 및 탁아시설 설치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여성기업 전용의 창업보육시설 확대(4.76점)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입주를 희망하는 여성창업자를 현재의 보육실 규모만으로는 모두 수용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기업 전용 창업보육시설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보육실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전용 창업보육실 입주 대상은 여성창업 적합분야에 대한 3단계 교육 수료생 및 창업경진대회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입주기업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내 탁아시설의 설치(4.07점)에 대한 결과도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창업보육시설에 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에 따른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위하여 여성창업보육시설 내 탁아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4-26〉 창업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 평가(입주 대상자 설문결과)

(단위 : 점)

구분		중요도 평가
창업보육시설	여성기업 전용의 창업보육시설 확대	4.76
	사무기기, 인터넷 시설, 홈페이지 지원	4.70
	사무실, 회의실 등 서비스 환경 지원	4.64
	창업보육시설 내 탁아시설의 설치	4.07
	여성 근무자만을 위한 편의/휴게시설	3.93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지원 정책 및 창업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2011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여성창업보육시설 내 탁아시설을 설치하고, 여성창업 적합분야 교육 영유아 전문 케어서비스 과정을 수료한 여성 중보육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 창업마인드 등을 평가하여 탁아시설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탁아시설 운영 여성창업자는 저렴한 창업공간 마련과 함께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자녀들을 고객화하면서 초기 안정적인 고객확보가 될 것이다. 또한 창업보육시설내 입주 여성기업 임직원들에게는 탁아시설 이용 우선권이 제공됨에 따라 일터와 보육공간이 일치하여 육아를 하는 임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증가되고,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운영 및 탁아시설 설치에 국가적으로 보면 출산, 육아 등으로 단절된 전문여성인력들의 창업 촉진 및 경력활용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향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영유아 전문 케어서비스 과정은 민간 자격증화 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시설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시 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을 우선 활용토록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2) 공공형 보육시설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제휴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취약계층만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국가적으로 공공 보육시설 이용대상을 여성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영·유아 보육문제를 경감시켜서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도 10월말 기준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수는 전국에 616곳에 이르는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와 제휴하여 지자체 보조 하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일부를 여성기업인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형 보육시설 이용우대 대상은 여성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입주 여성창업기업으로 한다.

< 공공형 보육시설 (예시 : 서울형 어린이집) >

-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국·공립에 준하는 보조를 해주고 그 만큼의 책임을 지워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으면 평균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의 10%가 기타 운영비로 주어지고 일정 조건에 부합 하는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영아반(만 2세 이하)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취사인력은 인건비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자료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아시아경제

또한 여성가족부는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 유형에 따라 아동 양육중심의 양육 돌봄 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 : 아이돌봄 연계 서비스 전국 확대 현황 >

2007년 : 38개소 → 2008년 : 65개소 → 2009년 : 232개 시군구



※ 자료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향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경제인협회회원 및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업무조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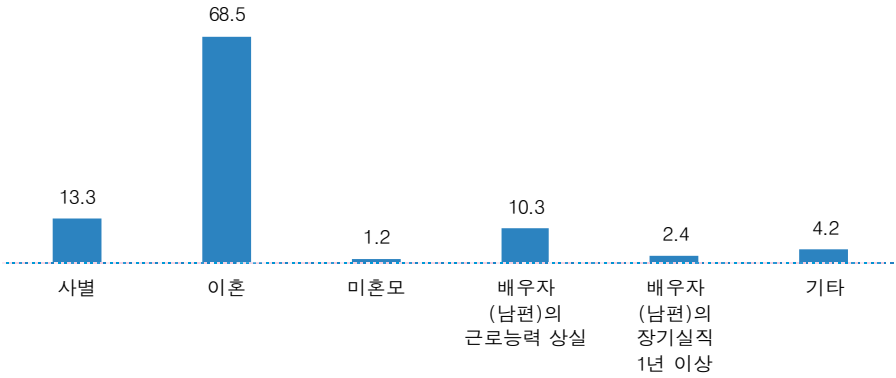
5.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가장 창업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신청 동기는 이혼이 68.5%, 사별 13.3%, 배우자의 근로능력 상실 10.3%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창업자금 신청 동기로 이혼과 사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가장은 배우자와의 이별이라는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철저한 준비없이 내몰리다시피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4-6>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 동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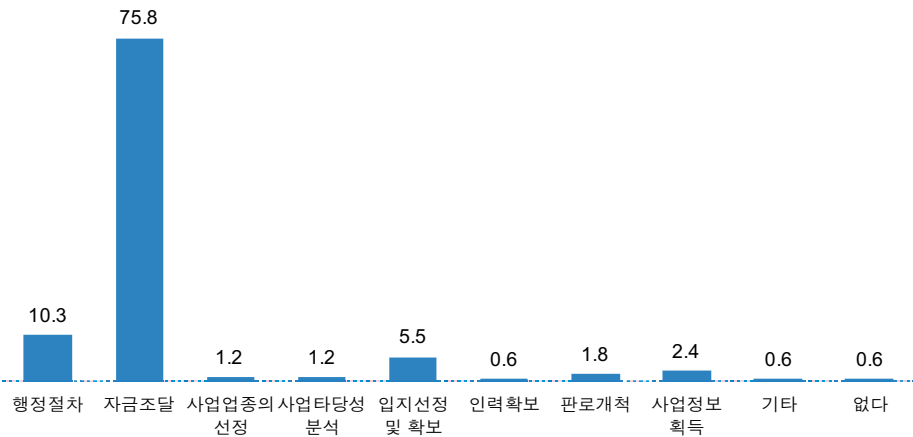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여성가장이 창업준비 시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자금조달 75.8%, 행정절차 10.3%, 입지선정 및 확보 5.5%, 사업정보 획득 2.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여성가장의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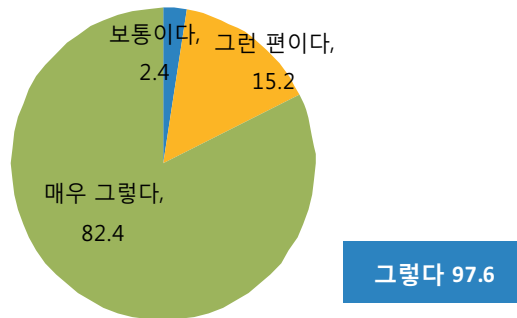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여성가장의 창업 자금조달 애로는 일반 여성기업이 창업준비 시 자금 조달이 가장 어려웠다는 응답비율 30.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행정절차 어려움도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필요서류 준비가 낯설고, 창업시 주변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성가장 창업자들은 정부의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97.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이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효과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8>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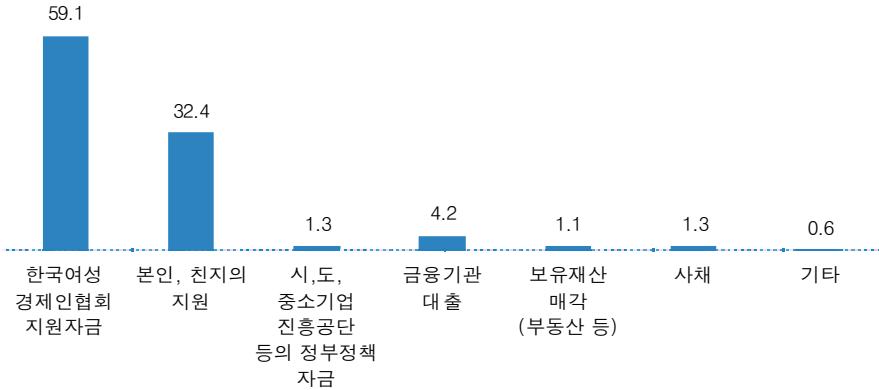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조달경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원자금 59.1%, 본인, 친지의 지원 32.4%, 금융기관 대출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장은 경제적으로 미자립 상태에서 창업에 나서게 되므로, 창업자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창업지원금

이외에도 본인 또는 친지의 지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창업자금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9〉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조달경로 종합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정부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초기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받은 여성기업인은 389명으로 여성가장의 창업 수요에 비해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사업규모의 확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나.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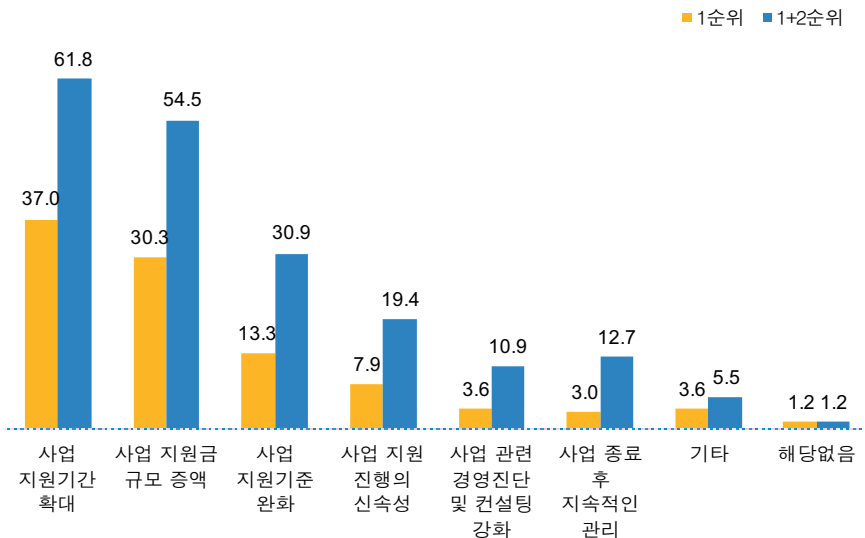
- 1)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 2) 대출금액 증액
- 3)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후관리 체계화

1)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개선점에 대하여 사업 지원기간 확대가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지원금 규모 증액이 54.5%, 사업지원기준 완화가 3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점(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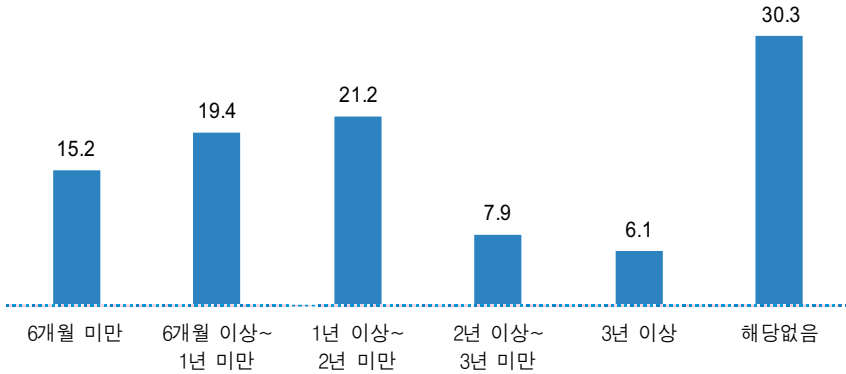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여성가장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 21.2%로 가장 높고, 2년 이상 걸린다는 비율도 14%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하나, 여성기업의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에 비추어 볼 때, 여성기업이 창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을 기본 3년, 추가 2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4-11〉 여성가장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또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년 동안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신규 지원자는 389명이며, 기간연장자는 115명으로 생계형 여성창업 수요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지원대상자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27〉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누적 현황

구분	현황
지원규모	20억원
지원연도	1999년 ~ 2011년 순환지원
지원자수	504명 * 신규지원자(389명) 및 기간연장자(115명) 포함
지원금액	110억원 * 신규지원금(85억원) 및 기간연장금(25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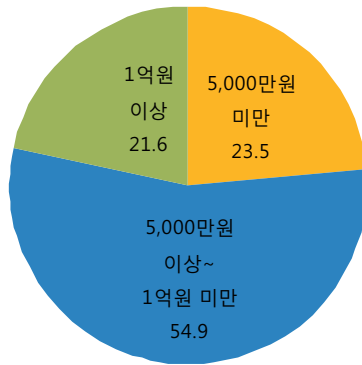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999~2011

2) 대출금액 증액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장 창업자금 적정 대출금액을 조사한 결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54.9%, 1억원 이상이 21.6%로 5,000만원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76.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대출금액 평균은 6,319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여성가장 창업자금 희망하는 적정 대출금액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2010

이것은 여성가장들이 창업을 위해 3,000만원의 임대지원금을 받더라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애로가 있어 창업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을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장과 같은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소상공인자금 및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도 대출한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정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의 확대는 더욱 당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28〉 창업자금 지원 사례

구분	자금신청 자격	대출한도
청년전용창업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 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자 	7,000만원 이내 (단, 제조업은 1억원 이내)
소상공인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5,000만원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 기업 1억원, 나들가게 1억원)

※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후관리 체계화

여성가장은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어렵게 식당, 영세소매업 등을 개업했다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첫째, 현재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발급되는 창업사업 타당성분석 이외에 창업초기 운영안정화를 위한 현장지원 및 상담 등 창업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생계형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여성가장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매 6개월 단위 경영상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실 우려가 있는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컨설팅 기관 등과 업무제휴 추진을 통해 현장애로 해결 전문가 등을 활용한 경영안정화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자금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인력 및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별도의 추가 연구용역도 필요하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여성가장의 창업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여 사업의 내실화 촉진

및 창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및 조기 경영안정화로 자금회수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여성가장 창업 지원효과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사례 : iBT 주니어 어학원 제주지사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이 절대적인 밑천이었죠”

“학습지 교사로 1년을 일하다가 2010년 봄, 지금의 학원에 학습 코치로 취직을 했어요.” 밝은 표정으로 김미자 지사장은 말을 이어가기 시작한다. 어렵게 일자리는 얻었지만 학원의 운영 상태는 부실했다. 이전의 지사장이 운영에 의욕을 잃었는지 그녀에게 인수를 타진했다. 부실한 학원을 인수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가만 있다가는 월급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이 새로이 일시켜 세워 보기로 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원 시스템이 인천 시절의 직장 경험과도 연관성이 있어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죠.” 학원 인수에는 20평 남짓한 장소 임대비와 시설비 등을 포함해 총 6,500만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녀는 가진 돈이 별로 없었다. 여기저기 대출에 대한 귀동냥을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다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가장 창업 자금 대출을 알게 되었다.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연리 3.0%, 2년 후 원금 일시상환(1회 연장 가능)의 좋은 조건이었다. 나머지 자금 3,500만원과 1년치 월세 500만원(제주도는 ‘죽는 세’라 하여 월세 1년치를 선불로 원하는 건물이 많다)은 스스로 마련했다. “여성경제인협회의 대출이 없었으면 창업을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구할 수 있는 돈이 총 비용의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요.”

학원을 인수한 김 지사장은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홍보에 주력했다. 학원 이름을 새긴 지우개, 노트, 팸플릿을 만들어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 손에 나누어 주었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을 하여 월 100만원이던 수익을 현재는 200만원대로 올리고, 더 큰 희망도 키워 가게 됐다. “여성경제인협회의 창업자금 지원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야 알게 됐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은 제주도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제도거든요.”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우수여성기업 성공사례집, 2012

6. 여성창업에 대한 홍보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여성들의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여성창업에 대한 성공사례 및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성기업들은 정부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용경험도 낮은 상태이다.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창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24.8%였으며,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은 16.4%이다. 분야별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자금지원제도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세제지원제도 22.8%, 기술지원제도 15.0%, 판로지원제도 11.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여성창업지원기관 및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여성창업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한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추진방안

- 1) 여성기업 성공 사례집 발간
- 2) 여성 창업성공 방송프로그램 운영

1) 여성기업 성공 사례집 발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 및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기업으로 도약한 성공사례를 담아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창업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신규창업, 가업승계, 업종전환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의 도전 이야기 등 여성창업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고, 업종별 사례들을 담아 예비 창업자들의 마인드 제고 및 여성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다. 발굴된 우수사례는 성공사례집으로 작성하여 책자뿐만 아니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2년 2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여성창업 성공스토리를 담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인데, 향후에도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4-13> 여성창업 홍보강화 추진 프로세스



사례 : 창업 성공사례집



※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2) 여성 창업성공 방송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들이 즐겨듣는 언론사(예 : 여성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 등과 제휴하여 여성창업 성공 시기 공모전 등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우수 내용에 대해서는 시상 및 제품, 서비스 홍보 기회 등을 제공하여 여성창업 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창업 성공 수기는 신규창업, 가업승계, 업종 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특히, 업종 전환(창업 재도전)으로 성공한 사례의 경우, 기존 사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업종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듣는 예비여성창업자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업성공률을 높여 나기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여성창업 Q&A 코너 등을 운영하여 창업관련 궁금증을 즉석에서 상담해 주고, 창업 지원정책 소개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등을 홍보한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다양한 사례 중 우수사례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방문 후 검증과정을 거쳐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을 통해 홍보토록 한다. 여성창업 성공 수기의 내용은 향후 여성기업 성공 사례집과 함께 엮어 전국 여성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기관 및 제휴를 맺은 대학,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 배포하여 창업상담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4장에서 별도 제시)

제 3 장

여성기업 육성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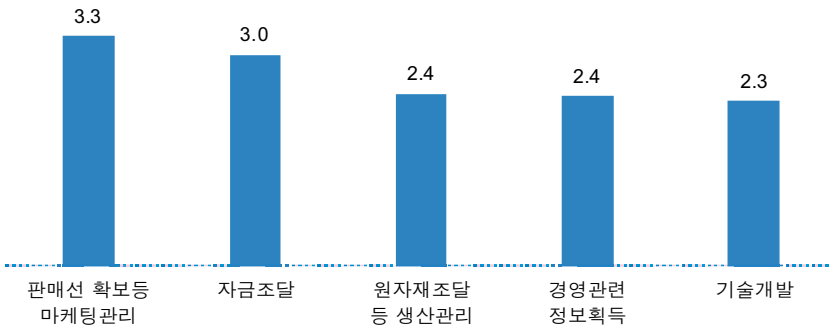
1. 여성기업 마케팅지원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금조달, 원자재조달 등 생산관리 및 경영관련 정보획득, 기술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기업활동 애로사항

(단위 : 점)



주1) 2010년 기준 상위 응답 5개까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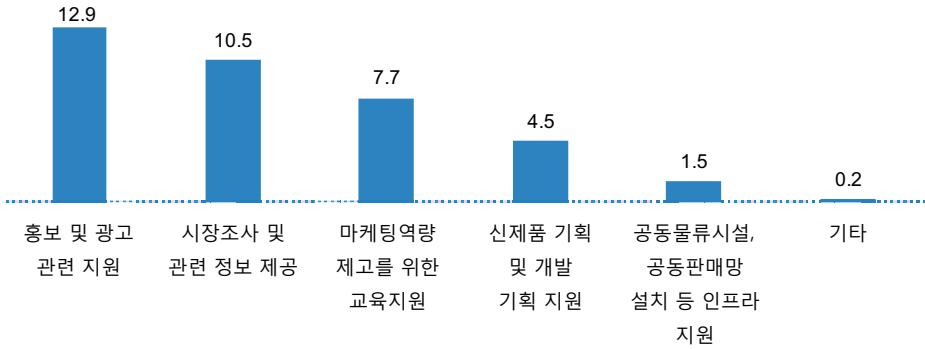
주2) 5점 기준 : 5점 많이 느끼지 않는다 ~ 1점 전혀 느끼지 않는다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 및 광고관련 지원 12.9%,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제공 10.5%,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7.7%, 신제품 기획 및 개발기획 지원 4.5%, 공동 물류시설 및 공동인프라 설치 등의 인프라 지원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마케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분야

(단위 : %)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또한 연도별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을 보면 2008년 2.8%에서 2009년 2.5%, 2010년 2.3%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여성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이 낮은 것도 있지만 공공 구매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업무 프로세스 이해도 또한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여성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정보력 및 자금력이 취약하다보니 효과적인 마케팅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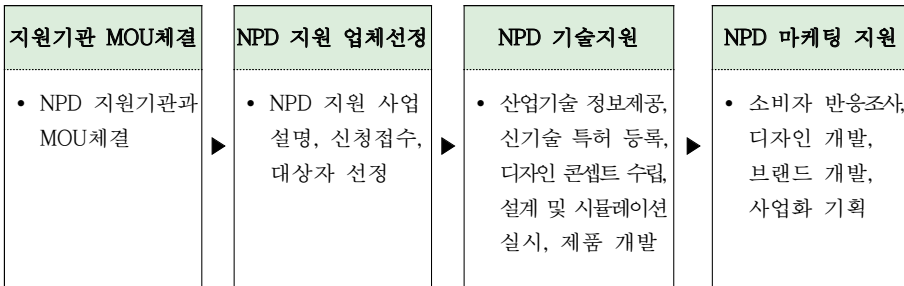
- 1)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개발 원스톱(One-stop) 지원
- 2) 서비스 리노베이션(Service Renovation) 컨설팅 지원
- 3) 공공구매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지원

1)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개발 원스톱(One-stop) 지원

여성기업들은 판매관리에 애로가 있고, 이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판매에 앞서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수출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박람회 지원 등의 일부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체계는 미흡하다. 이를 위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NPD(New Product Development)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NPD 사업에 필요한 국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컨설팅 회사와 MOU체결을 통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여성제조업의 신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판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그림 4-16〉 NPD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지원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창업 후 3년 미만) 국내 여성기업으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성장 유망한 아이디어로 한다. 특히 생활가전, 화장품/미용용품, 식료품/음료, 섬유/의복/가방/신발 등 여성적합 제품분야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여성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중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표 4-29〉 NPD사업관련 각 기관별 주요 역할

주요 기관	주요 역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지원, 제품모형 시뮬레이션 실시, 산업기술 정보제공 등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지역지식센터	신규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의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을 연계 활용(중소기업 공동 AIS센터,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중소기업 제품홍보 지원 등)
컨설팅 회사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 및 사업화 기획

사례 : 산업용 특수테이프 제조 전문기업 '(주)화인테크놀리지'

(주)화인테크놀리지(대표: 서영욱)는 산업용 특수테이프 제조 전문기업으로 13년간 경남산업기술정보협의회에 참여하여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1사 1연구원 밀착지원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서 대표는 반도체 전자재료 관련 신소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KISTI는 짧은 시간에, 기술문헌, 시장정보 등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해 주었다.

사실 서 대표는 기술 자체가 어렵고 리스크가 커서 상당한 모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러나 정보를 받고 검토하고 나니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그 후 자체 기술력과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제품개발을 완료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연구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

※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echno-Leaders' Digest 일부 발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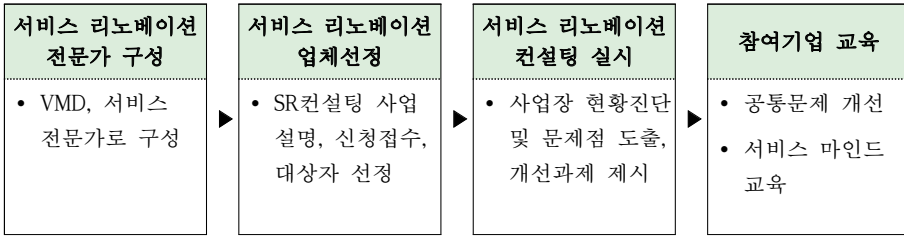
선정된 예비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상품화 제작 프로세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되 지속적인 산업기술 정보제공 및 기술 검토, 신기술 특허등록 등을 지원하고, 디자인 콘셉트 개발, 설계, 시제품 개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목표 시장, 수요층, 시장성 및 경쟁력 분석을 위한 소비자 반응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완성하고,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체성, 기술의 독창성, 경쟁우위성, 마케팅전략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여 사업성공률을 제고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NPD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약체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서비스 리노베이션(Service Renovation) 컨설팅 지원

여성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음식 및 숙박업이 33.8%, 도매 및 소매업이 28.1%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업종은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리노베이션(Service Renovation)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국내 여성기업의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과제 실행을 지원하며,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여성 서비스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서비스 리노베이션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하고, 창업 후 6개월이 지난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을 지원토록 한다.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은 사업장 현황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과제 제시 순으로 실시한다. 사업장 현황진단은 해당 사업장이 제품 및 서비스 콘셉트에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상권 내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입지 및 상권분석을 실시하고, 상품특성 및 매출현황, VMD(Visual Merchandising), 고객관리 및 판촉현황 등을 분석한다.

〈그림 4-17〉 서비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주진 프로세스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지원대상은 여성들의 구매율이 높고, 제품을 직접 보거나, 서비스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요소가 구매에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로 의류판매 및 액세서리 판매점,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한다. 위의 지원대상 업종 중 분기별로 1개 업종씩 선정하여 지원사업 완료시점에 업종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간 서비스 수준 비교 및 공통문제점 발견사항, 우수한 사항에 대한 벤치마킹, 서비스 마인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례 : 남성복 판매점 'OOO'

20대 후반 ~ 40대 중반 남성 맞춤 드레스셔츠 및 남성 의류를 판매하는 OOO 사업장은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장을 6개 운영하였다. 그러나 최근 저가 브랜드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매출이 정체됨에 따라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고급화를 추구하기 위해 서비스 역량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이후 VMD(Visual Merchandising) 서비스 전문가가 6개 사업장을 미스터리 쇼퍼로 방문하여 외관 쇼윈도, 고객 동선 등을 분석하고, 고객응대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였다. 컨설팅사는 서비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전사원 사업장 VMD 개념 및 사례, 고객 응대 및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고 사업장 콘셉트에 맞게 VMD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6개의 사업장은 브랜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사업장 상권별 고객 특성에 맞게 제품진열, 동선 등을 교체하였고,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이후 연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자료 : 맥스경영컨설팅, 'OOO 서비스 리노베이션 컨설팅 결과' 일부 발췌, 2008

사업장에 대한 진단은 고객이 사업장에 들어와 나갈 때까지의 고객동선과 상황에 따라 점장 및 점원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는지 고객접점(MOT : Moment of Truth) 분석을 하고 사업장별로 고객응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표 4-30〉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예시)

구분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
1단계	입지 및 상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위치는 상권의 핵심부위에 위치해 있고 찾기 쉬운가? • 사업장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는 충분한가? • 사업장 주변 상권의 집객시설 및 경쟁사업장의 고객은 어떠한가? • 사업장의 표적고객과 상권의 유동객의 특성이 일치하는가?
2단계	운영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장의 주력 상품은 무엇이며, 주요 콘셉트는 무엇인가? • 주력 상품의 가격대 및 시즌별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 해당 사업장의 손익구조는 어떠한가? •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상품을 보기 좋게 연출하고 고르기 쉽게 진열하고 있는가? • 사업장 방문고객에 대한 이력사항을 관리하고 있는가? • 사업장 방문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가? • 방문고객 유형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 목표고객에 적합한 홍보나 이벤트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 홍보나 이벤트 활동 시기나 횟수는 적당한가? • 홍보나 이벤트 활동에 따른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
3단계	고객접점 (M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을 가장하여 사업장의 서비스 실태조사(미스터리 쇼퍼)방법활용 • 고객접점 및 서비스 실태조사 방법 설명 후, 사업장당 2인의 미스터리 쇼퍼 투입 (사업장별로 시간과 날짜를 달리하여 투입) • 미스터리 쇼퍼는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고객접점 서비스, 기타 고객 클레임 대응 현황 등을 조사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3) 공공구매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지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들이 이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업무 프로세스 이해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은

복잡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계약하며 실제 계약단계별 제출서류 작성,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서류반려, 수정, 재작성, 출장 등의 애로가 발생한다.

< 참고 : 조달청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제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성능, 효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의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제도로써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하고 고객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사업초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 있어서 관련 법령 적용 착오, 절차 위반은 업체의 손실로 귀결됨으로 이에 대한 숙달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여성기업 중에서 조달청에 기존 등록업체, 등록희망업체를 상대로 여성기업의 물품 및 용역의 조달등록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입찰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수공급자계약 실무교육 강사, 조달청 근무 경력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구성하고,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MAS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며, MAS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지원사업 범위 >

- 다수공급자물품 구매참가자격 지원 (조달청 업체등록 / 제조물품등록)
- 적격성 평가 지원 (실적증명발급방법 및 계약물품 인-허가사항검토)
- 협상물품등록 지원 (목록화 요청 및 제품별 표준규격서 작성)
- 가격자료 작성방법 지원 (매출원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토)
- 나라장터 조달업체 업무 온라인 운영방법 지원
- 규격추가, 단종처리, 가격관리,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사후 관리 지원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MAS 지원사업은 사업초기 주간단위 상담체계를 운영하여 전문가가 주간단위로 지정요일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공공구매에 대한 서류작성을 지원하고,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며 향후 상시지원체계로 전환하도록 한다.

〈그림 4-18〉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사례 : 무대 조명기구 제조 '(주)신진스테인지'

(주)신진스테인지 지승희 대표는 20년간 부친이 운영해오던 무대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을 2005년 승계 받아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유흥업소, 소규모 행사 등에 제품을 납품해 왔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매출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이에 지 대표는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고객 창출 방법으로 조달청을 통한 관공서 및 공공기관 납품 시장을 개척하였다.

현재 정부 조달시장의 경우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가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조달시장에 등록 후에는 조달품목 납품을 전담하는 인력 지정, 주식회사로의 전환 등 성공적으로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갔다. 조달시장을 개척하기 전까지는 월 매출이 평균 약 2천만원 수준에 그쳤으나, 관공서 등에 납품한 후에는 꾸준한 수요 등으로 월 평균매출이 3~5배 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조달시장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보다 계약 준비에서부터 납품 완료까지 행적적인 업무가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초기사업에 대해 숙지하고 여성 특유의 꼼꼼함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여성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자료 : 맥스경영컨설팅 인터뷰 결과 요약, 2011

또한 공공구매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우선구매제도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을 통해서 지속적인 조달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참고 :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4장에서 별도 제시)

정확한 서류작성, 숙달된 계약행정업무 수행지원 등의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기업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약진행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신속한 계약추진, 최신 조달 정보 습득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시장 판매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2.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2010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2009년도 대비 28.3% 증가하였고, 총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전년보다 0.7%p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총수출액 대비 중소기업 수출액 비율을 보면, 2007년 30.6%에서 2010년 33.0%로 중소기업 수출액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31〉 중소기업 수출실적

(단위: 억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수출액 (A)	3,714.9	4,220.1	3,635.3	4,663.8
중소기업 수출액 (B)	1,135.5	1,305.2	1,173.1	1,539.4
B/A(%)	30.6	30.9	32.3	33.0

※ 자료 : 중소기업청, 2011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강화 사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간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체수는 2007년 약 7만 2천개에서 2010년 약 8만개로 확대되었다.⁴³⁾

〈표 4-32〉 수출 중소기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중소기업체수	71,688	75,489	77,819	80,564

※ 자료 : 중소기업청, 2011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여성기업은 아직도 해외진출활동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국내 여성 제조기업의 98.7%는 수출실적이 없다. 국내 여성 제조기업이 수출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인력의 부족 50.0%, 내수판매 만족 및 제품 특성상 수출 불가능이 각각 25.0%로 조사되었다. 2008년 조사에 비해 내수판매에 만족하지 않고 수출을 희망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진출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3〉 수출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여성 제조기업)

(단위 : %)

구분	2008년	2010년
제품 특성상 수출 불가능	14.0	25.0
수출 방법을 잘 몰라서	3.1	0.0
전문 인력의 부족	32.9	50.0
내수판매 만족	50.0	25.0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43) 중소기업청, 2011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반면, 수출실적이 있는 여성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37.8%로 수출 중소기업의 총 판매액 중 수출비중 10.5%(2009년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2011년 참가업체수는 2010년 대비 11.8% 감소하였으나, 계약액은 17.4% 증가하여 여성기업 수출확대가능성의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4〉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만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참가업체수	24	34	30
계약액	268	558	655

※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11

따라서 여성기업 중 수출에 적합한 업종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정책적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여성기업 중에서 수출유망업체를 발굴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기업들은 수출을 희망하지만 바이어 발굴, 통역, 전시회 참가 기획 등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보다는 발굴된 수출유망업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나. 추진방안

- 1) 여성기업제품 3D 사이버 전시장 운영
- 2)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 3) 해외 전략지역 토털마케팅 지원

1) 여성기업제품 3D 사이버 전시장 운영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무역은 전통적인 방식인 Off-line 방식에서 점차 온라인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은 거래선 발굴 방법으로 글로벌 B2B 사이트 등 온라인 검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⁴⁴⁾ 중소기업이 비용·시간·인력 등의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쉽게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제품을 살펴보면 이·미용품, 생활용품, IT 등이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제품의 특징은 제품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요소가 구매에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을 직접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이 따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3D 전시장을 구축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성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직접 3D로 제작하여 올리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어려우므로 각 지원센터에 관련 장비를 마련하고, 여성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시장 입점신청을 받아서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센터에서는 구축된 제품에 대한 바이어 리스트를 검색하여 정기적으로 이메일 등을 자동 발송하고 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3D 전시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중상시 운영하고, 3D 전시장을 통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반응이 좋거나, 문의가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박람회 참가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4) 중소기업청, 2011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을 살펴보면 매년 20개 내외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계약액도 매년 증가되고 있어 투입대비 성과가 명확히 나타나는 사업이다. 그러나 박람회 출품을 통한 수출은 한 번의 전시로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와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각 업체가 최소한 3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박람회를 참가하고 홍보해야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3D 사이버 전시장을 운영하여 해외바이어들이 국내 여성기업제품정보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바이어들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3D 사이버 전시장은 상시운영 체계를 갖추어 박람회 이후에도 연중 제품에 대한 문의 및 계약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현재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통상 3~4년에 걸쳐 꾸준하게 해당 전시회에 참가해야 바이어 개척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수출기업들의 견해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예산과 사업운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사업예산을 늘려 다양한 전시회 참가 기회를 마련하고 한 번 선정된 업체는 최고 3년까지 지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 전략지역 토탈마케팅 지원

수출초기의 여성기업은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과 비용문제로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 및 바이어 발굴 등의 마케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지 직접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초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타겟 국가 선정과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까지 맞춤형 토탈 전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전 업종에 대한 지원은 인력, 비용, 시간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에 사업 초기에는 여성기업들의 수출품이 많은 이·미용품, 생활용품, 패션용품, IT 등의 업종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원내용은 1단계 타겟 국가의 선정 및 진출전략 수립, 2단계 현지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홍보 카달로그 제작, 3단계 현지고급바이어 정보의 획득, 4단계 유력바이어 발굴 및 상담, 수출 상담 E-메일·계약서 등 통번역 지원을 통한 수출계약체결 등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초기 여성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거래선 확보 및 수출 역량 강화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타 기관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보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서울통상지원센터는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바이어발굴에 도움을 드리고자 바이어 디렉토리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또한 무역상담, FTA/관세, 법률, 금융/회계 등에 관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은 유선 사전예약제이고,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4-35〉 서울통상지원센터 통상관련 상담분야 및 일정

상담분야	상담요일	상담시간	상담자
관세/무역일반	월, 화, 수, 목, 금	14:00 ~ 17:00	관세사
무역분쟁/계약	월	14:00 ~ 17:00	통상변호사
금융/세무/회계	수	14:00 ~ 17:00	세무사
무역실무	매일	09:00 ~ 18:00	통상지원센터 무역상담원

※ 자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

3. 여성기업의 네트워크 및 혁신역량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기업은 2010년 0.4%로 2008년 2.1%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네트워크 참여에 있어서는 불리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6>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점에 대해 느끼는 정도

(단위 : 점)

내용	평균	
	2008년	2010년
가사, 자녀보육 추가 부담	3.85	3.45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접대 문화 등)에 적응 곤란	3.22	3.16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 제한	3.02	3.06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3.06	2.99
소극적, 위험회피 성향 경영으로 인한 사업 기회 상실 우려	2.99	2.98

주1) 5점 기준 : 5점 많이 느낀다 ~ 1점 전혀 느끼지 않는다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원으로서 기대되는 혜택은 마케팅, 홍보 등 판로지원 31.4%, 여성경제인 상호 네트워크 구축 30.7%,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22.2% 순으로 조사되었다.

5인 미만 기업은 제품 마케팅, 홍보 등 판로지원 혜택을 32.7%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반면, 5인 이상 기업은 여성경제인 상호 네트워크 구축 혜택을 34.9%로 가장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는 소기업 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이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불리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37〉 여성경제인협회 회원으로서 기대되는 혜택(중복응답)

(단위 : %)

구분	5인 미만 기업	5인 이상 기업	전체
제품 마케팅, 홍보 등 판로지원 혜택	32.7	27.9	31.4
여성경제인 상호 네트워크 구축 혜택	29.1	34.9	30.7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혜택	20.9	25.6	22.2
국내,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혜택	14.5	11.6	13.7
없음	2.7	-	2.0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지원 정책 및 창업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2011

한편,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경영자 교육 및 연수 참가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영성과는 참가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자 교육 및 경영자간 교류 확대 등 경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4-38〉 교육 및 연수참가 집단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 천원)

구분		응답 비중	매출액	당기순이익
전체		100	147,206	32,619
여성경영자 교육 및 연수 참가경험	있음	7.8	233,703	36,017
	없음	92.2	139,900	32,332

주) 창업이전 경력은 현재 창업한지 7년 미만 응답자(1,171명)만 대상으로 조사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매년 여성CEO MBA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참가 인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기업들의 교육 및 연수 참가

경험은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여성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보니 인력·시간 등의 제약으로 저조할 수 있으나, 지역 내 홍보 부족으로 여성 CEO 교육에 대한 여성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 사업을 홍보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만족도 및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추진방안

- 1)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中企 기술 융복합 세미나 개최
- 2) 여성CEO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
- 3) 여성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멘토링 기능 강화

1)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中企 기술 융복합 세미나 개최

감성기반의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력이 부족하여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융·복합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타 분야와의 결합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기업 뿐만 아니라, 남성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을 통해 성장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감성아이템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역별, 분기별로 지역 내 산학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中企 기술 융복합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토록 한다. 융복합의 관점에서 Value chain(벨류체인)상 원료, 제조, 유통 관련업체, 이업종 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사례 : (주)삼정P&A와 다인시스템(주)의 공동기술개발

1973년 12월에 설립한 (주)삼정P&A는 철강원료사업과 엔지니어링사업, 철강포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삼정P&A는 자동화 설비 개발에 따른 아이디어를 수입 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각 철강 및 제지 포장라인을 찾아 다녔다. 국내외 우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지를 종이포장재 공급과 부착장치 등 주요설비를 견학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유한 다인시스템(주)을 만나게 되었다.

광주 북구 월출동 첨단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다인시스템(주)은 지난 2000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 자동화 설비를 연구개발해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이다. 다인시스템(주)은 설립 초기 (주)포스코와 한솔제지(주), (주)삼양사 등 국내 대기업에 포장기 공사, 농업연구소 기자재, 탄화로 설비 등을 납품하면서 쌓은 신용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기존의 포장을 해 오던 결속기는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 수입설비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뿐더러 작업시간까지 오래 걸려 생산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고자 (주)삼정피엔지와 2006년 3월 포장엔지니어링 판매 및 자동화 설비 개발을 목표로 다인시스템과 공동 기술개발을 착수했고 그 결과, 세계 최초 포장로봇 결속기(POSCO StrapMaster)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한 다인시스템(주)은 2005년 매출액 15억에서 2008년 45억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2010년은 70억의 매출을 바라보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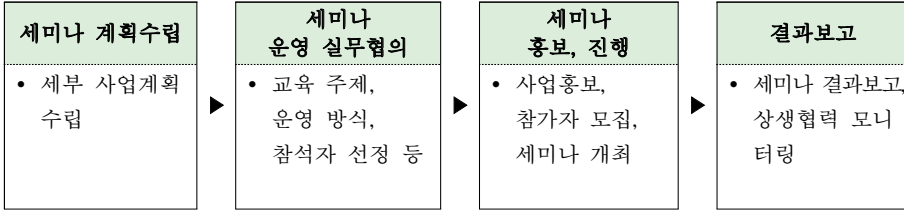


(▲ 다인시스템(주)의 정순임 대표와 (주)삼정P&A 구자영 그룹리더)



※ 자료 :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 우수협력 사례집 일부 발췌, 2010

〈그림 4-19〉 中企 기술 융복합 세미나 추진 프로세스



또한 세미나 전후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업, 기술 융복합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여성기업들의 DB확보와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기업 DB에 대한 통합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여성기업 일반현황,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에 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도록 한다.

(참고 :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4장에서 별도 제시)

여성기업들은 융복합 세미나를 통해 이업종, 중소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고 공동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원가절감 등 실질적 협력 방안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구매 및 구매(납품)협력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법으로 상호협력 해 갈 수 있다.

2) 여성CEO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

여성CEO 교육 성과평가결과 최신 트렌드 습득 및 네트워크 형성 기회 등으로 만족도는 높으나, 경영현장 및 일선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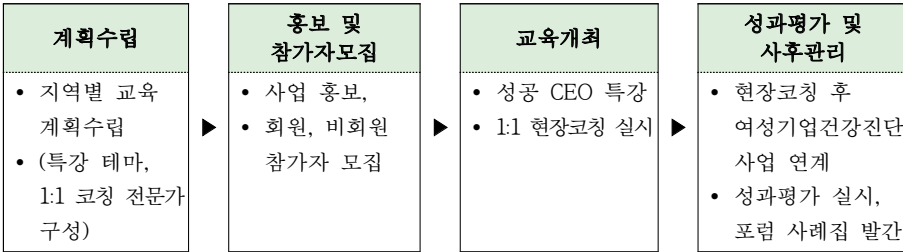
여성기업인들의 경영능력 향상 및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경영기법, 현장사례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토록 한다. 또한 성공 CEO 특강을 통해 경영의지 고취 및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 성공 CEO 특강은 최근 1년 내 코스닥 등록기업, 신기술 융복합 성공 제품·서비스 사례, 신제품 개발 & 서비스 리노베이션, 공동구매 지원사업 성공기업 등 여성기업인 사례 위주의 강연도 바람직하다.

< 여성CEO 교육 프로그램 예시 >

- 국내외 경제전망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
- 고객의 마음을 여는 체험마케팅 성공노하우
- 협업, 융복합을 통한 사업의 변화
- 유망기술로 살펴본 미래 산업 트렌드
- SNS를 활용한 마케팅 성공전략
- 신제품 개발 성공전략
- 소비자 욕구에 관여하는 제품디자인의 역할

그리고 국내외 경제 및 소비트렌드 변화, 정부의 지원 정책변화 등의 강연을 통해 여성기업이 시대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CEO 교육은 매월 전국 순회 개최하고, 교육 후, 분야별 전문가가 1:1 현장코칭을 실시하여 여성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20> 여성CEO 교육 추진 프로세스



여성CEO 교육에 대한 지역 내 여성기업들의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내 주요 신문광고 및 현수막 게재, 홍보물 제작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한다. 강의 내용 및 사례는 강연 참석자뿐만이 아니라, 여성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특강이후 강연별 자료를 취합하여 포럼 사례집을 발간하고,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에 강연 동영상 자료를 게재하여 공유토록 한다.

(참고 :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4장에서 별도 제시)

사례 : 성인용 기저귀 제조업체 '(주)케어'

(주)케어(대표자 : 최선희)는 1985년 신생아용 기저귀 제조 및 판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성인용 기저귀, 위생 패드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최 대표는 교육을 수강하던 중 일본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트렌드에 주목하게 되어 국내도 일본과 같이 노인 인구 비중의 증가로 실버산업이 성장할 것을 예상하였다. 이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신생아용 기저귀 제조업에서 주력 품목을 성인용 기저귀로 전환하여 1989년부터 성인용 기저귀 보급을 시작하였으며, IMF시기 유한킴벌리 OEM 업체로서 국내 최초의 성인용 기저귀 생산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2001년부터는 일본, 중국, 홍콩에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매출액의 20% 이상을 신규설비에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0년 전년 대비 14.5%의 생산량 증대, 매출액 대비 5% 이익을 실현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최 대표는 기업이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꾸준히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여성CEO MBA 교육은 여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맥스경영컨설팅 인터뷰 결과 요약, 2011

3) 여성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멘토링 기능 강화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는 일반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의 진입기 기업, 창업 후 3년 이상 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 기업,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되고 있지만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성숙기 기업,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쇠퇴기 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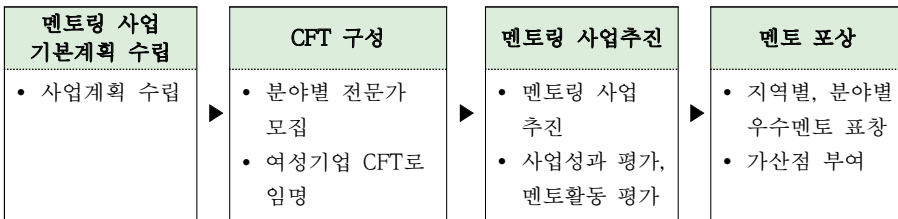
창업 후 3년 미만의 진입기 단계에 속하는 여성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판로개척, 네트워크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선배 여성CEO, 전문가

등과의 연계를 통한 경영노하우, 경영기법 등을 전수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멘토링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가 Pool 구성이 어렵고, 선배 여성CEO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으로 여성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사업이 발전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성기업 전문융합지원체계(CFT : Cross Functional Team)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현장밀착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 : Cross Functional Team의 세부적인 구성은 「2장 여성전문융합지원팀」 내용 참고)

<그림 4-21> 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멘토링을 위한 CFT 멘토는 재능기부 봉사개념으로 모집하고, 멘토링을 위한 교통비는 지원하며, 멘토의 연간 봉사활동을 평가하여 봉사실적에 따라 협회장이 표창하고, 향후 협회사업에 참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멘토의 연간 봉사활동은 멘토 활동 건수, 업체 만족도, 업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CFT 멘토를 재능기부 봉사개념으로 추진할 경우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이 가능하며, 분야별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구조전환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의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자 96.8%, 법인사업자 3.1%로 대부분의 여성기업이 개인사업 형태를 보이며 평균 종사자수도 2.86명으로 영세하다. 또한, 여성기업은 자신의 사업이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6.9%에 달하고 있으며, 진입기라고 인식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다. 일반 중소기업은 성장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9년 48.4%로 높은 반면, 여성기업 전체는 25.8%, 여성 제조기업은 23.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39〉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위시 비교

(단위 : %)

구분	연도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소제조업*	2008년	9.8	46.7	35.1	8.4
	2009년	9.7	48.4	36.0	5.9
여성기업 전체	2010년	7.3	25.8	37.1	29.8
여성기업 제조업	2010년	6.3	23.7	37.3	32.7

- 주) 1. 진입기 :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품/서비스 개발단계
 2. 성장기 :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의 지속적으로 증가, 양적·질적으로 발전 단계
 3. 성숙기 :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
 4. 쇠퇴기 :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단계

※ 자료 : 중소기업청, 2010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이는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에 대한 업종전환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제조기업의 45.3%는 스스로 제품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응답하여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많이 분포

되어 있고,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이 많으며 제품의 기술(기능)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미래형 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추진방안

- 1)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 2)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 촉진

1)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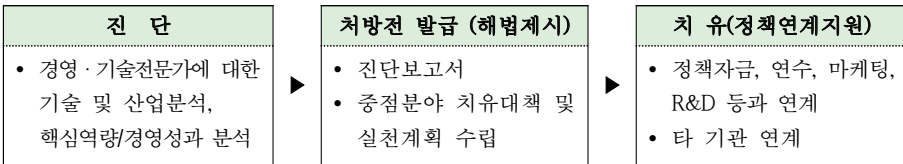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중점사업인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은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종 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는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확대 추진된다.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된 진단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창업 후 2년 이상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전략산업 등 중소기업 4,000개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처방전에 따라 금융, R&D, 마케팅,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그런데 국내 여성기업은 93.4%가 5인 미만 기업으로 좋은 취지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건강진단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여성기업의 현실에 맞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청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여성기업들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건강진단 사업 상담 및 신청을 하면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기업을 방문하여

외부 경영환경과 기업내부 역량 등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경쟁력향상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경쟁력향상 실천계획에 의해 정책자금 융자, 연수, 수출 마케팅, 컨설팅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해당 기업에 맞추어 연계 지원한다.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쇠퇴기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림 4-22〉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프로세스



사례 :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 '바디텍메드'

진단의료기기업체 바디텍메드는 사업초기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 미만의 낮은 영업이익률은 성장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최의열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 본부를 방문해 건강진단을 신청했다. 그 결과 생산시설이 협소하고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는 작업장들로 인해 효율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바디텍메드는 공장이전과 확장을 위한 생산설비자금 13억5천만원과 컨설팅을 중진공으로부터 지원받고, 생산기술력 개선작업에 나섰다. 이를 통해 매출액은 2008년 29억원에서 2010년 84억원으로 290% 성장,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1.8%에서 20.9%로 11.8배 급증했다.



※ 자료 : 서울경제신문, 중소기업진흥공단 건강진단사업 성공사례 일부발췌, 2011

2)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 촉진

건강진단사업을 통해 쇠퇴기에 접어든 여성기업은 국가 전략 및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를 통해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 전환을 유도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융합지원센터는 여성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IT, 바이오, 신소재, 대체에너지 등), 마케팅, 자금, 교육 등 분야별 사업 전환 전문가팀을 구성한다.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여성기업, 건강진단사업 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예비진단 신청서를 접수받고, 교육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및 신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업전환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여성친화 전문분야로 사업전환을 하고,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23〉 사업전환 촉진 프로세스

1단계	사업전환 전문가 구성	기술(IT, 바이오, 신소재, 대체에너지 등), 마케팅, 자금,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2단계	사업전환 예비진단 신청접수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여성기업, 건강진단사업 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예비진단 신청서 접수
3단계	CEO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이해 및 신기술 동향 정보 제공 • 사업전환 사업에 대한 설명, 성공사례 등을 제시하여 사업 마인드 전환 및 동기 부여 • 교육 대상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마련
4단계	전문가 진단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실사 및 진단 •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 제안(신제품 개발, 사업 구조전환 등) • 사업 방향, 구조전환 방법, 사업 비용 등을 제안
5단계	사업전환 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과 전문가가 사업전환 제안 내용 협의 • 사업전환 승낙한 여성기업은 사업전환 신청서 작성
6단계	시책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접목 사업전환 실시, 마케팅 컨설팅 추진 • 자금 및 수출, 판로개척, 제품 디자인 개발 등 연계지원

사례 : 실내 정원 조성업체 ㈜디자인스퀘어

산업디자인을 졸업한 김효진 대표는 1999년 24살에 인쇄물 디자인 회사를 창업 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웠던 시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유관기관 등 초청강연을 들으면서 지역전략산업으로 경관조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이거다 생각하고 2009년 경관조명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그러던 2010년, 한 군단위 지자체로부터 1억원 정도의 일감을 따냈다. 업종 전환 2년 만에 뭐가 좀 되어 가는듯한 감이 느껴지는 뿌듯한 계약이었다. 그러다가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가 왔다. 2011년 4월 지식경제부의 R&D자금 지원을 받아서 투광등을 개발했다. 투광등은 건물 벽이나 고공 시설물을 아래에서 비추는 등 제품을 이르는 것으로, 주로 수은등을 쓰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여 메탈 할라이드(할로젠화물)를 쓰는 등 제품을 디자인했다.

이에 더해 화분형 태양광 가로등, LED 열주등 같은 독창적인 조명제품을 만들었다. 화분형 태양광 가로등은 화분 형태의 지지물에 태양배터리를 숨긴 형태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특허 등록했다. LED 열주등은 폴대에 램프를 넣은 것으로 테마공원에 설치하기 위한 미적 요소가 뛰어난 조명등이다.

시공과 관련해서는 발로 뚫 만큼 계약을 따냈다. 2009년 마산시 합포고등학교 벽화디자인, 통영 동피랑 경관조명에서부터 함안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 실시설계 등 20여 건의 크고 작은 작업을 수행했다.

디자인스퀘어는 김 대표 외에 5명의 직원이 있다. 대부분 디자이너다. 조명 설치에 관한 제안을 구상하고, 새로운 조명등을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 현재는 자가발전 조명(공원의 제자리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면 불이 켜지는 조명등), LED 투광등을 개발 중이다. “자연친화적이고 세계에 내놓아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조명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좋은 디자인에 상도 안겨졌다. 하동군 진교면 양보공원 등에 납품한 경관조명으로 2011년 지식경제부의 우수디자인상을 받았다.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우수여성기업 성공사례집, 2012

제 4 장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1. 여성기업관련 제도 및 법률 검토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과 관련된 법률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여성기업법을 제외한 기타 다른 법률은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백서에서는 여성기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순수 여성기업들이 여성기업으로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여성기업 소유법을 참고하여 여성이 기업을 소유하는 정도의 비율까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여성에 의한 소유와 경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여성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진정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⁵⁾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여 여성기업제품의 실질적인 판매확대 효과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45)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2011

현재 매년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법정구매비율은 물품·용역이 5%, 공사가 3%이나 실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비율은 2%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역차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법적구매비율 준수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소극적 문책성 법규보다 적극적 장려성 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법의 제3조와 제10조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육성하도록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구체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 중에서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지원하기 위한 인증고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검토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법률검토를 추진하여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나. 추진방안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검토
- 2)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고도화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검토

가) 여성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

법률 개정안의 방향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라고 하여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성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 특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지원대상인 여성기업은 여성대표자가 소유 및 경영을 동시에 하는 기업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이 기업의 소유자일 뿐, 경영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으로, 앞서 살펴본 미국의 여성기업 정의와 같이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 여성기업 요건 정립이 필요하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인 여성 소유에 부합하도록 여성대표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분율 50% 초과 요건은 여성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비롯한 경영권을 타인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강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남성기업과의 차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법적구매비율 준수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소극적 문책성 법규보다 적극적 장려성 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우수 공공기관이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의 추가가 요구되며, 이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 법 규정의 구체성 확보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지원체계에 대한 법적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법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동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조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실상 당연한 의무인 그들의 책임만 선언하고 있을 뿐, 동조의 별다른 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동법 제10조의 자금지원 역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거쳐 우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법률의 구체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⁴⁶⁾

그리고 법률이 구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및 해당기관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지원정책들이 있는지 여성기업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여성기업 육성 프로그램 및 제도가 관련 법령에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된다면, 수요자를 위한 법률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의 이행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법제적 정비작업을 통해 법과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 및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고도화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제품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순수 여성기업들이 여성기업으로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백서에서는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증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한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경영평가 항목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여성기업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여성기업제품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6) 김정화,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2011

현재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업무는 중소기업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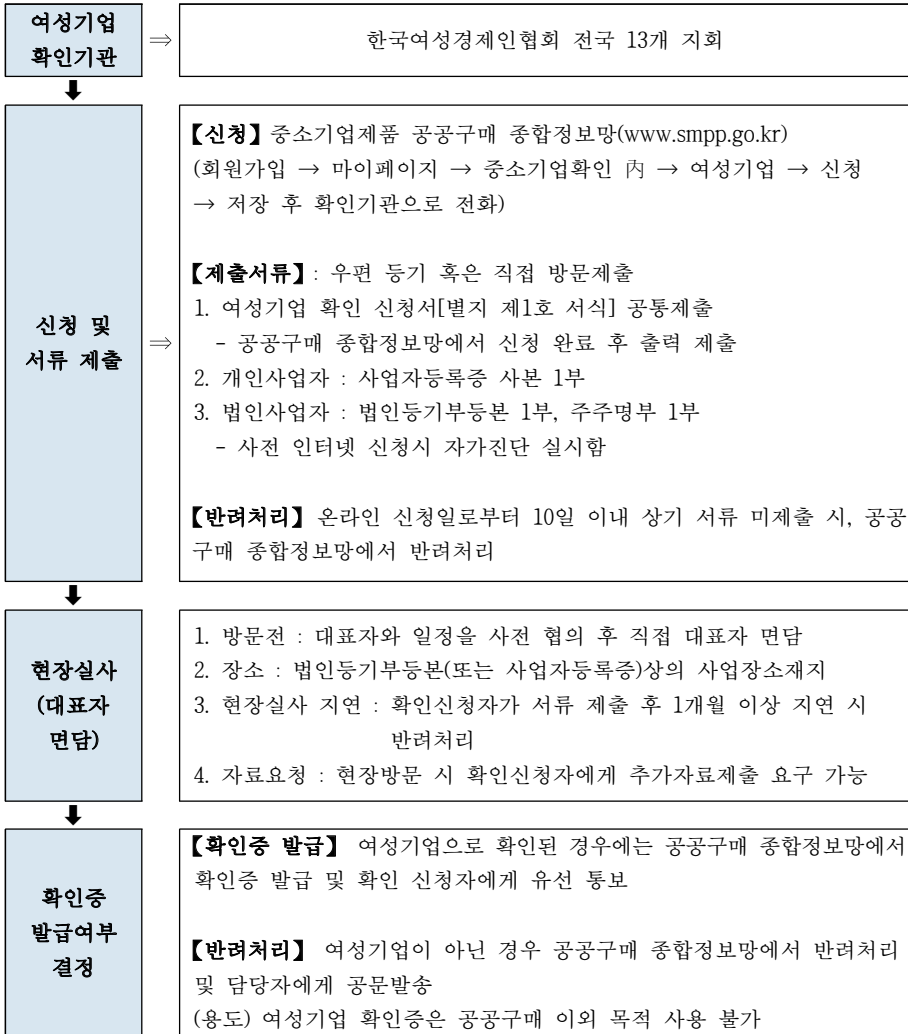
여성기업 확인요령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여성기업으로 확인 받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의 서류를 기업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의 경비는 일체 없으며, 확인신청자는 신청 전에 자가진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 만약, 확인신청자가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기관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반려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여성기업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

여성기업 확인은 관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의 확인을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여성기업 확인업무는 직접방문 조사가 원칙이며, 방문 장소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있다. 여성기업 확인에 관련된 조사는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인 신청자가 추가자료 제출 및 현장실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인기관은 이를 반려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확인기관이 신청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림 4-24> 우리나라의 여성기업확인 신청절차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0년 확인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

이러한 여성기업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해당 확인기준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우리나라의 여성기업확인 인증절차 요약 >

- 온라인을 이용한 등록 및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24시간 이내 각 지역별 지부에서 인증 담당 지부 정보 및 필요 서류, 수수료 등을 이메일로 안내
- 필요 서류 제출
- 현장 실사 및 인터뷰
- 온라인 신청 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90일 정도가 소요됨
- 인증 과정 및 결과는 이메일로 발송되며, 인증이 허가된 기업은 온라인으로 인증서 발급 가능

만일, 확인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자, 이해관계자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의신청 사유와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의 신청을 접수한 확인기관이 이의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확인기관과 이의신청자 및 해당기업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나)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신청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기업 확인신청이 가능한 자는 미국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인 여성 1인 또는 다수, 최소 6개월 이상 경영을 한 자, 1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의 기업을 소유(공개된 기업의 경우 주식의 51%)하는 1인 이상의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 등이 있다.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업무는 중소기업청(SBA)의 WOSB (Women-Owned Small Business) 프로그램 하에 다음과 같이 4개의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업무 수행기관 >

- **EPHCC** : El Paso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 **NWBOC** : National Women Business Owners Corporation
- **USWCC** : US Women's Chamber of Commerce
- **WBENC** : Women's Business Enterprise National Council의 14개 지역 파트너 기관

인증절차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확인신청 후 인증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90일로 미국이 한국보다 더 오래 걸린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요청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지만, 미국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확인 수수료 등의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 확인 수수료는 각 확인기관에 따라 다르며, EPHCC에서는 \$225, NWBOC는 일괄적으로 \$400, USWCC는 회원기업에는 \$275이며, 비회원기업에는 \$350, WBENC는 확인기업의 소재 지역 및 기업의 매출규모 등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여성기업 재확인 시 확인 수수료 역시 확인기관 및 각 지부별로 책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표 4-40> WBENC Southwest의 여성기업 확인 수수료

매출규모 (백만 \$)	수수료 (\$)	비고
1 이하	350	매출규모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
1 ~ 10	500	
10 ~ 50	600	
50 ~ 100	750	
100 이상	1,000	

인증을 받은 여성기업은 최신의 supplier diversity 및 인증제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수백 개의 미국 내 기업들과 연방, 주, 지방

정부들의 조달업무담당자에 대한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멘토링, 교육 및 역량강화 기회 등의 참여자격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면, Dorothy Brother's Scholarship의 Tuck School of Business at Dartmouth과 WBENC의 워크숍 등의 행사, 그리고 WBENC 인증 여성기업간 지원 커뮤니티(Community of Support) 가입 등이 있다.

WBENC에서 인증받은 여성기업은 Women's Business Enterprise Star의 국내 표창, WBENC's Applause Award 표창, International Luminary Award 표창, William J. Alcorn Leadership Award 표창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WBENC에서 인증한 여성기업이라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WBENC의 보도자료 템플릿을 사용하여 새롭게 인증된 기업임을 알릴 수 있다.

또한, WBENC의 행사 후원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WBENC 웹사이트에 위치한 WBE Power Profile에서 60초 분량의 영상홍보 자격과 WBENC의 Social Media Profile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다) 한국과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비교

우리나라와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확인신청 후, 인증서 발급까지의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확인제도의 운영측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한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증받은 여성기업에 주어지는 직·간접적인 지원혜택이 매우 다양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증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공공기관 조달업무 확인과 여성기업관련 워크숍 및 교육 참석 시 자격확인, 여성전용 소액금융지원, 사전 승인대출 등과 같은 자금지원 신청 시 확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성기업 확인 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하지 않는 반면에, 미국은

여성기업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미국이 발급일로부터 1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년으로 차이가 있다.

〈표 4-41〉 한국과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인증 절차	온라인 가입 → 신청서 및 필요 서류 해당 기관 제출 → 현장 실사 → 결과 통보 및 확인증 발급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명부 사본 1부(법인에 한함)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일반정보 소유자 성별 증빙 서류 재무상태 증빙 서류 여성소유자의 소유권 증빙 서류 직원 현황 증빙 서류 지배구조 현황 증빙 서류 등
확인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확인 수수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 수수료 있음(확인기관별 상이, 신청기업의 매출규모 및 지역별 차등)
확인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활동 참여 (교육 참여, 표창, 홍보 등) 공공기관 조달업무 확인
인증서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일로부터 3년 (만료일 1개월 전 확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일 75일 전 확인 신청)
소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 제출 후 5-8일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신청 후 90일 소요

라)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고도화 방안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순수 여성기업들이 여성기업으로서의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운영방식을 미국과 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실제로 해당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순수하게 여성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만 여성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혜택을 다양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백서에서는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장실사 비용 현실화 및 전문화이다. 미국의 여성기업 인증뿐만 아니라 국내 타 기관인증(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의 경우도 인증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신청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인증획득을 받은 업체들의 혜택을 고려할 때 신청기업의 수수료 부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국내 타 기관의 인증 수수료 비용은 신규 신청의 경우 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 기관마다 상이하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 반려율이 20% 내외인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장실사를 통해 서류상 여성기업인 업체를 가려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2011년 기준 국내 여성기업 확인 요청건수는 3,6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된 정부예산 내에서 이 모든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비용은 확인요청 기업이 직접 부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인 수수료는 국내외 사례분석, 여성기업 인터뷰 및 관련기관 의견조사 등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현실적인 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신청건수가 많은 수도권(서울, 경기지회)은 실질적으로 확인업무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확인업무 담당자가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성기업 확인업무의 중요성과 향후 활용 가치가 증대됨을 고려할 때, 확인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표 4-42> 국내 각 기관의 인증심사 비교

구분	VENTURE (벤처)	INNO-BIZ (이노비즈)	MAINBIZ (메인비즈)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하는 기업에게 각종 세제 감면, 자금조달, 금융 및 기술인력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 연계지원 하도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와 같이 높은 기술을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조직 관리/생산성향상 등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
신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접속 (www.venturein.or.kr) 확인신청 및 정보입력 확인기관 의뢰 기관의 실사 벤처 기업 선정 (65/10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접속 (www.innobiz.net) 기업등록 및 정보입력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 통과) 현장 평가 신청 현장 평가 INNO-Biz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접속 (www.mainbiz.go.kr) 기업등록 및 정보입력 온라인 자가진단 (600점 이상 통과) 현장 평가 신청 현장 평가 경영혁신형 기업 선정
현장 평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신용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보, 기정원)
인증 수수료 (심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예비)평가료 - 20만원(VAT 별도) - 벤처투자자 제외 인증수수료 - 10만원(VAT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신청(기술평가료) - 70만원(VAT 별도) 재평가(유효기간 연장) - 40만원(VAT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선정 - 50만원(VAT 별도) 재발급(유효기간 연장) - 40만원(VAT 별도)
인증 소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접수일로부터 30~4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완료까지 2~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진단 이후 약 4주
인증 유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일로부터 2년 기간만료 전 2개월~1개월 내 연장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일로부터 3년 기간만료 전 4개월~2개월 내 연장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일로부터 3년 기간만료 전 90일~35일 내 연장 신청

※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둘째,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실효성이다. 국내의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의거하여 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미국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시 확인뿐만 아니라, 교육신청, 정보 활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기업의 확인용도를 현재의 공공구매 조달용에 국한하지 말고, 정부 및 지자체, 협회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발급한 여성기업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여 인증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할 때는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의 부족으로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등록상의 기업으로 남성이 실질적인 소유·경영자이나, 여성기업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여성을 명목상의 기업 소유·경영자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여성기업 확인 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발급한 여성기업 확인증을 사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기업 인증제도의 고도화이다. 현재는 모든 여성기업을 하나의 인증체계에 따라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 중에서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회원을 기업규모, 성장성, 혁신성 등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은 여성프런티어 기업(가칭)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선정된 여성프런티어 기업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인증패 수여 및 시상, 성공기업사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고, 통합 정보망을 통해 이달의 여성기업인으로 매월 1개 업체씩 홍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4장에서 별도 제시)

<표 4-43> 미국과 한국의 유망여성기업 시상식 비교분석

구분	미국	한국
프로그램	Ernest&Young 여성기업경진대회	Citi-KOSBI 여성기업인상
시작년도	2008년	2008년
공동주최	미국여성기업소유자협회, 뱀슨대학, 여성사장조직	시티재단, 중소기업연구원
목적	유망여성벤처기업을 고성장 기업으로 육성 지원	여성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 모범적인 사례 홍보
참가요건	지난 2년간 매출액 100만불, 51% 이상 여성이 소유하는 업력 10년 미만의 벤처기업	여성기업 (내·외국인 차별 없음)
지원혜택	정보, 교육제공, 협력사 발굴, 멘토링, 홍보, 네트워크 구축, 벤처투자 지원, TED 세미나 무료 참가	상패, 부상(5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
2010년 수상자	10개사(의약, 컨설팅, 환경, 보안, 디자인, 보석, 의료분쟁해결서비스, 통번역, 약물시험, 핵폐기물처리 등)	4개부문 (기업가정신상, 환경친화경영상, 사회공헌경영상, 인재경영상 등)
특이점	미국의 저명한 기업간, 투자자, 자문가와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성장 기업으로 육성하는 매우 효과적인 사업	-
지원효과	2009년 수상기업 LetterLogic사 - 매출 50% 이상 신장, 연간성장률 처음으로 35% 기록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 홍보

※ 자료 : 중소기업청, Citi-KOSBI

Citi-KOSBI 여성기업인상 관련 이미지



※ 자료 : Citi-KOSBI

사례 : 신보스타기업(Tomorrow's Giants)

신용보증기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신보스타기업 100개社를 선정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신보스타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보스타기업은 미래기업가치가 양호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신보형 강소기업을 의미한다.

Tomorrow's Giants는 '내일의 글로벌 거대기업'이라는 뜻으로 신보형 강소기업인 신보스타기업을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 '신보스타기업' 선정절차
: 기업신청→1차 심사(서류심사)→2차 심사(현장방문)→본 심사(선정위원회 평가)
→최종선정
- '신보스타기업' 신청자격
 -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 중소기업
 - * 비상장 외감법인, 설립일로부터 공모마감일까지 5년이 경과한 기업, 당기말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이익 시현, 신보 종합 신용평가등급 "B2" 이상
- '신보스타기업' 우대지원 내용
 - 신보스타기업으로 선정된 후 6년 동안 보증부분, 비보증 부문 우대
 - 보증부분 : 신보의 우대부문 대상기업에 포함, 한도거래 보증 (한도거래 : 2년)으로 운용, 최저 보증료율(0.5%) 적용, 기업규모/보증이용기간, 보증 금액별 감축대상 제외 등
 - 비보증부문 :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기업연수 지원, 경영주치의 파견, 고객자문단 우선 위촉, 홍보 지원 등

※ 자료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2.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2년마다 실시하는 여성기업 실태조사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기업의 창업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조사 체계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기업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여성기업의 창업단계에서 성장단계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정부 부처별, 지원기관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정보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정책 홍보에 애로가 있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수 있고, 이용 시 혼란 및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정책지원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시작, 과정,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통합 정보망은 기존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womanbiz.or.kr) 및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esc.or.kr) 서비스의 기능보완 차원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구축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향후 정보망의 운영·관리는 물론 기능 확장 등에서도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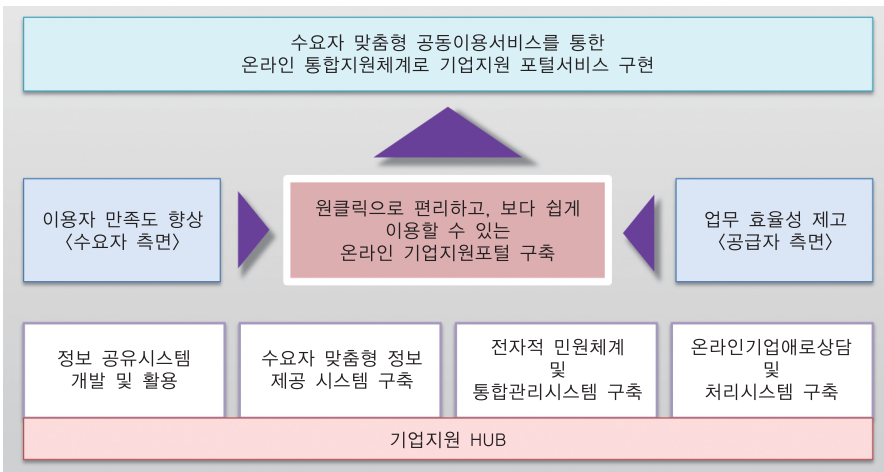
참고로, 미국은 대표적인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가를 위한 웹사이트 womenentrepreneur.com 등이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prowess](http://prowess.com) 등이 있다. 이 사이트의 경우 고부가가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영국

여성과학기술센터(UKRC)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에서 간헐적으로 여성창업과 관련한 교육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화된 웹사이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추진방안

다양하고 분산된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여성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그림 4-25〉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사업 추진목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은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기업정보를 취합하여 여성기업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여성기업 정보의 다양한 구현 및 여성기업 입찰정보, 코트라(KOTRA)의 해외시장 정보 등을 연계가능 하도록 기업지원 포털사이트로 구축한다. 또한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수단 강화를 위한 그룹웨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회비관리를 위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지원사업 공고, 신청접수, 심사,

선정, 대기, 진행관리, 사후평가 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투명한 기업지원 과정과 사후결과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되는 민원, 기업애로를 체계적으로 접수 관리하는 시스템과 전문가 Pool에 의한 사이버 멘토링 및 기업홍보를 위한 3D 사이버 전시장 등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44〉 시스템 구축대상 및 범위

분야	구축대상	주요 내용
포털 및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관리	온라인 회원 가입, 분야별 정보제공서비스, 팝업 및 배너 등을 통한 사업홍보 등
기업DB	기업현황	기업체 일반현황,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정보 제공
	온라인사업관리	온라인 사업신청 시스템을 통한 기업데이터 현행화
	통합관리시스템	각종 기업데이터 검색 및 통계기능 제공
	통합로그인시스템	유관기관 DB통합 및 담당자 통합로그인
정보제공	유관기관 포털시스템 연계	비즈니스포(전국기업지원정책), 무역협회, 코트라(해외시장 정보) 등 기업지원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정보 수집 제공
	실시간 알림 기능	뉴스레터, SMS 발송
	통합로그인시스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연계기능을 제공(고도화 단계)
자료실	여성기업정부시책 및 통계보고서 제공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실태조사, 해외 여성기업동향 등 제공
여성기업 SOS센터	복합에로처리시스템	기업DB, 온라인신청접수, 분야별 담당자 복합에로 처리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각종 이력관리 및 검색·통계관리기능 제공
	진행상황 실시간	진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처리단계별 알림서비스

분 야	구축대상	주요 내용
사내 인트라넷	정보공유	내부 업무 규정 및 지침(양식) 등 공유 서비스
	내부업무처리 시스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관리 기능 지원
	온라인 사업관리	지역별 사업 온라인 사업신청·관리, 교육 신청 관리
	내부 관리회계 도입	BI관리비 및 회비 등 전산 회계 처리 시스템 도입
사이버 멘토링	분야별 전문가 경영 상담	분야별 전문가 및 선배여성CEO 멘토풀 구축으로 온라인 경영애로 상담
	진행상황 알림서비스	상담결과 알림 서비스 제공
	FAQ	자주 문의되는 경영문제 및 애로 사항 공개
사이버 무역전시장	3D 전시장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기업의 제품을 3차원으로 소개하는 사이버 전시장 구축
	해외바이어 상담알림	해외에서의 문의 관리 및 기업 통보
	해외여성기업 DB제공	여성기업 수출 증진을 위해 해외 여성기업 DB제공
통계관리	각종 통계관리	등록회원, 인콰이어리, 사이트 방문 통계 및 분석, 각 사업 및 민원 내용 통계 및 분석
	통합관리시스템	검색·통계관리, 메일·SMS발송 기능 등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은 관리자 측면에서는 여성기업 통계조사, 사업관리, 정부정책을 일원화하여 여성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할 수 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산재된 여성기업 정보가 통합 DB구축을 통해 한 곳에 취합됨으로써 정보 탐색이 쉽고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다.

또한 전문가를 통한 사이버 멘토링으로 기업애로의 실시간 상담 및 관리가 가능하며, 최신기술의 기업홍보 전시관 제공으로 기업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협회의 분회 및 각 지회 직원 간에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교류 및 공유로 기업지원 협업 활동기능이 강화됨은 물론 자동화된 회비관리 및 체계적인 사업지원관리, 민원관리로 업무생산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3. 여성기업정책연구원(가칭 : KWEPI) 설립 운영

(KWEPI : Korean Women Entrepreneur Policy Institute)

가.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여성정책이 단시일 내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여성관련 정책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 「한국여성개발원법」 제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은 2007년 5월 11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2010년 3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주요업무가 여성·가족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연계강화와 미래전략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중점사업분야가 변화되었다.

<표 4-4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년도 중점연구사업

구분	중점연구사업 운영방향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인력 역량증진과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간 본원의 여성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정책분야 기본연구는 녹색성장분야, 사회서비스분야, 사업서비스분야 등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여성 실업자, 농촌 여성과 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여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음. 이에 정부가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 다문화 가족 여성, 탈북여성 등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인력 역량증진과 일자리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준에 비추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을 통한 고품격 국가를 선도하고자 함

구 분	중점연구사업 운영방향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연계강화와 미래 전략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 정책이 현재의 성과를 넘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세부 정책분야별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여성·가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특히 2013년 이후 새 정부가 향후 10년 간 추진할 여성·가족정책 의제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자 함 • 여성·가족·청소년 세 분야의 정책연계를 위해서는 정책개발 및 기획단계에서 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책현장에 이르기까지 정책전달 체계 간의 상호협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세 분야의 정책전달 체계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시스템을 분석하여 상호연계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개발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세 분야 간 정책연계의 필요성이 여성가족부 내부에서는 물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키고자 함
여성·아동의 인권·안전 강화와 성 평등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의 인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인프라 강화 정책을 개발하여 현 정부의 국가비전인 삶의 질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각 분야에 양성평등 관련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이 지체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반이 되는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성인지정책 기반 확대 및 정책 적용 분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사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성인지정책 기반구축과 성인지정책 적용 분야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특히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와 성인지통계시스템의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에게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작성을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하여 여성인력 역량증진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분야가 확대되다보니 여성창업이 취업의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정책연구와 더불어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사·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를 수행할 전문연구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 여성기업들의 성공사례 및 여성기업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성기업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단발성 연구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2011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 있어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연구 및 체계적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정책연구센터와 교육재단을 설치하여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서 여성기업정책 고도화 및 여성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89년에 여성기업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통계생산 등 연구조사를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새로운 시책마련, 여성기업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사례 : 미국 여성기업소유자협회의 여성기업연구센터

미국 여성기업소유자협회에서 여성기업연구센터와 교육재단을 각각 설립하여 연구센터의 연구결과를 매년 고성장여성기업 육성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나. 설립방안

여성기업정책연구원은 여성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여성기업의 미래전략과 비전 제시를 통해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여성기업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과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별도의 연구를 통해 심층 검토한 후 연차별 사업범위와 내용 등에 따라 연구원을 운영하도록 한다.

여성기업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1단계로 여성기업정책연구원(가칭)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2단계로 여성기업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여성기업정책연구원은 별도의 법인조직으로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의 특별조직으로 발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에 여성기업정책연구원을 설립하며, 정책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중소기업청 1명, 협회자체 담당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표 4-46〉 여성기업정책연구원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여성기업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정보수집 • 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산확보, 역할·기능 재정비
2단계	여성기업정책연구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여성기업정책연구원 설립
3단계	여성기업정책연구원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여성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 정책 발굴, 정보제공 • 여성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새로운 시책 마련 • 연구자료 출간 및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 배포 • 여성기업 백서 발행

3단계로 설립 후에는 여성기업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여성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 정책 발굴, 정보제공 및 여성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새로운 시책 마련, 연구자료 출간 및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 배포, 여성기업 백서 발행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여성기업 백서는 2011년 처음으로 발행이 되었으나, 여성기업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여성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정책개발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정책연구원은 이를 매년 정례화하여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정책연구원은 연구과제 기획, 국내외 조사연구, 정책방향 설정,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등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여성기업정책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운영지원본부, 글로벌연구실, 경영정책실, 홍보실로 구성하되, 세부적인 수행업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통해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47〉 조직기능

구분	구성팀	수행업무
운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인사, 총무, 운영기획 업무
	기획운영팀	비전, 목표, 추진과제 기획업무
글로벌연구실	글로벌조사팀	여성정책 자료조사, 현황조사
	글로벌연구팀	자료 분석, 종합 연구업무
경영정책실	경영정책팀	기업 경영운영, 정책방향 설정
	공공정책팀	공공구매 정책현황, 방향 조정
홍보실	대외홍보팀	간행물 발행, 대회 홍보업무
	대외협력팀	유관기관간 업무협력, 지원 업무

4. 여성기업 공제조합 설립 운영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신성장 동력의 대안으로서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기업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자금이나 보증이용 시 어려움이 많아 사업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시행하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나. 공제조합 설립 사례

1) 정보통신공제조합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 조합원의 공동 이익실현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공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법인으로 설립(1988. 3. 31)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요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공사, 용역 및 정보통신기자재의 판매와 관련 있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지급보증 및 하도급이행보증, 임대차보증, 인허가보증, 납세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또는 용역의 시공사금, 운영자금, 공사용기자재의 구입자금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조합원이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 또는 정보통신기자재의 판매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 조합원의 공사용기자재의 구매알선, 정보제공
-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대여
- 조합재산 및 기타부대시설의 임대 등 운영관리 등

2)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SW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SW사업자에게 자금 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자금 투자 등 고유목적 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주요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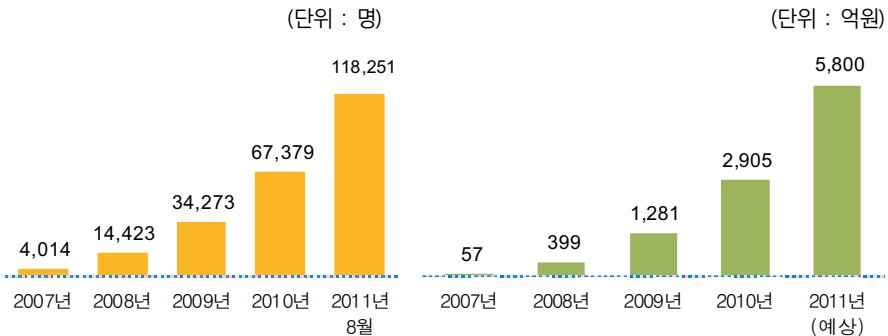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3) 노란우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를 보면 2007년 9월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그해 가입자 4,014명에서 2008년 1만4,423명, 2009년 3만4,273명, 2010년 6만7,379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1년 8월 기준 11만명이 넘었으며, 노란우산공제 운용자산은 2011년 5,8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4-26>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 및 운용자산 현황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내일신문, 2011.8.24

< 노란우산공제회 주요특징 >

-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정망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다. 추진방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국내외 공제조합 관련 사례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운영 유형, 공제상품개발, 적정사업규모 등 여성기업 공제조합설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제조합사업은 주무부서 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공제조합(가칭)의 주요사업은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여성기업의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여성기업 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 회원 증대를 위해서는 통합 정보망에 공제사업의 목적, 특징 등을 홍보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기업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은 영세한 국내 여성기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여성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장기 발전전략

가.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특허청 등 정부기관 산하에 여러 여성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및 지원자금도 분산되다보니 지원정책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정책에 대한 여성기업의 인지도 역시 낮은 상태이다.

또한 각 부처 및 단체로 예산이 나뉘지고 사업이 위탁 관리되다보니, 자금의 중복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여성기업지원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 애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 4-48〉 정부기관 산하 여성기업 관련 단체 현황

(단위 : 명)

관련단체	소관부서	회원수	설립년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1,527	1971년
(社)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청	610	1999년
(社)21세기여성CEO연합	기획재정부	108	2003년
(社)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지식경제부	179	2001년
(社)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지식경제부	800	2004년
(社)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210	1993년
(社)한국여성발명협회	특허청	500	1993년

※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각 기관 담당자 인터뷰, 2011

일반적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간 교류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협회는 많은 회원의 확보와 회원들이 협회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법률적 지위가 확인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기업 단체로, 협회의 뿌리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연륜도 깊다. 그러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경제인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더불어 여성기업도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세계여성경제인대회, 아시아 여성경제인 글로벌 포럼과 같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통하여 한국여성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중심점이 되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단체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은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기업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나눔경영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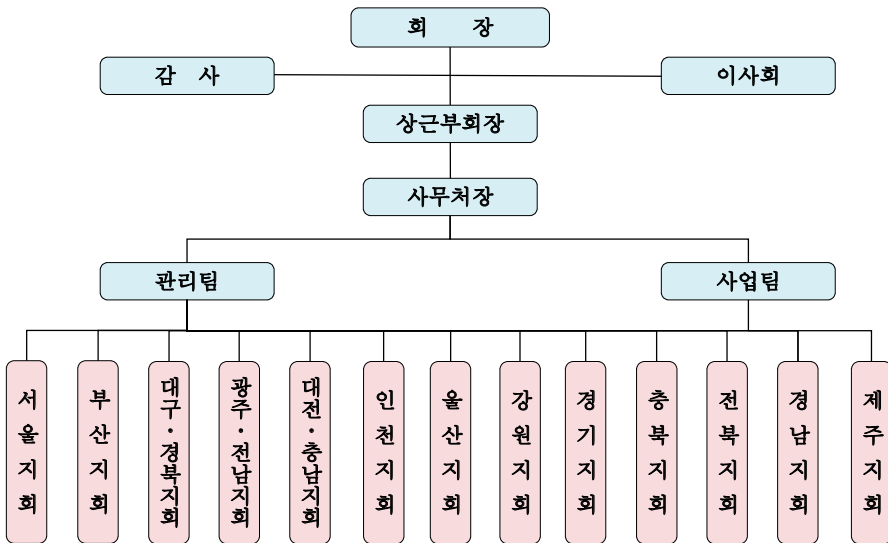
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위상 강화 추진방안

- 1) 협회의 본원적 사업인 회원관리 및 서비스 강화
- 2)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추진
- 3)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적 활동 확대
- 4)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비 확보

1) 협회의 본원적 사업인 회원관리 및 서비스 강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기업인의 힘을 집결시켜 여성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회원 간의 교류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을 확대하여 여성경제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협회는 더욱 체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해 전담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림 4-2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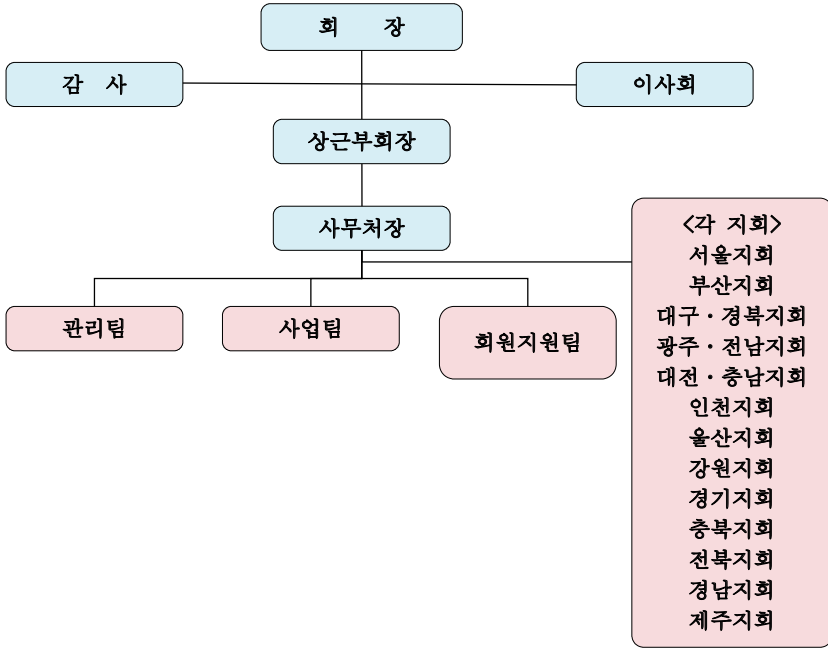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협회가 여성기업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인증, 회원등록, 회원유지,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조직을 개편하고 각 조직 간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협회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및 강화하여 회원증대는 물론, 회원 간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사업성과 제고 및 여성경제인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회원지원팀을 신설하여, 현재 관리팀과 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3개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28>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조직도(개편안)



< 회원지원팀 주요 활동 내용 >

- 회원 증대를 위한 홍보 활동
: 잠재 여성기업 대상 협회 DM발송, 우수 여성기업 대상 회원 유치활동
- 여성기업 확인 업무 실시
: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전담 관리
- 여성기업 통합DB 구축 및 관리
: 업종별, 규모별, 지원사업별 여성기업 현황 정보 관리
- 여성기업회원 교류 지원
: 업종별 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지원, 지회 교류 활성화 지원

회원가입 확대와 더불어 여성기업의 복리증진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은 협회의 본질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니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를 대략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 서비스 예시 >

- 제휴를 통한 할인제공 서비스
- 정부정책 참여 우선기회 제공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
- 각종 교류회, 교육 등을 통한 네트워크 참여 기회 제공
- 각종 문화, 체육, 레저, 관광 등 관련 회원권 이용서비스
- 경조사 관련 편의제공
- 각종 보험, 인증, 인허가 관련 대행
- 원자재 공동구매 등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선발 기회 제공

한편,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성기업 전체에 대한 서비스와 여성기업 중에서 협회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에 대한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하되, 회원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한다.

2011년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회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IBK기업은행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내에 대출상품과 제휴카드를 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휴서비스 내용 >

- 상품명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패밀리기업 대출
 - 여신대상 : 협회 회원으로서 사업기간 2년 이상이며, BB+이상기업 (다만, 80% 이상 부분신용보증서 담보 및 전액담보대출인 경우 예외 취급가능)
 - 대출금리 : 여신대상자에 대하여 1% 감면
 - ※ 기타 지원사항 : 일반상품대비 신용여신 한도 상향, 시설자금 대출한도 확대, 운전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 완화 등
- 상품명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휴카드
 - 여신대상 : 협회 회원사
 - 특징 : 세무지원, 연회비 면제 또는 초년도 연회비 할인
 - ※ 카드 상품의 혜택은 물론 추가로 협회발전기금까지 동시 적립
 - 업무절차 : 인근 IBK기업은행 방문 → 제휴카드 신청 → 발급
 - ※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지점문의 요망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협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회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할 분야를 선정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기업에게 회원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을 비회원 기업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특허, 법률, 세무, 마케팅 등 기업경영의 각 분야에서 회원 서비스를 전담할 기업과 서비스 제공 및 기부관련 협약을 맺고, 협회는 회원들에게 협약서비스 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회원기업에게 협약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수익이 창출되면 수익의 일정비율을 협회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게 하는 방식이다.

2)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추진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여성기업 정책지원활동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을 평가하는 조사이다.

1999년에 여성기업 실태 및 차별적 관행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 통계법 제82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승인되었다.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하여 2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여성기업 육성 시책 등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일대일 방문면접조사, 온라인조사, 팩스 및 e-mail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경영현황, 재무구조, 생산형태 등을 파악하여 여성기업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왔으나, 각 지역별 여성기업의 창업업종, 신규 창업자수, 기업규모, 경영환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각 지역별 특성 및 전략산업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지역별로 여성기업 업종을 세분화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 내 여성기업 비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심층자료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망업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

- 16개 지역별 여성기업의 창업특성, 경영성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정책 요구사항 등 객관적 자료 도출
- 지역 특성에 따른 여성기업 창업 업종 비교분석
- 일반여성기업과 전략산업분야에 속한 여성기업의 특성비교
- 지역별 여성기업의 상대적 경쟁 우위 요소 도출
-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 현황과 연도별 사업규모 추이 조사
- 지역별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요구 특성 변화 등

이러한 여성기업 및 유망업종 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여성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단계별 차별적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법률적, 정책적 방향 설정 및 실질적 지원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실태를 반영한 여성기업 창업교육 아이템 선정 및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49〉 지역 전략 산업 및 연고 산업

지역	전략 산업	연고 산업
서울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IT융합, 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바이오메디컬,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패션	바이오분야, 애니메이션분야, 디자인분야, 녹색성장 등
부산	항만물류산업, 관광컨벤션산업, 기계부품 소재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신발산업, 실버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 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축산업, 울산농산물, 산악·산업·해양관광 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 공예산업, 동구포도주 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 산업, 안경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한복패션산업 등
인천	물류, 자동차, 기계, 금속, 정보통신, 생물(바이오)분야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 텔레메틱스, 자동차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정밀기기, 신소재산업,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산업디자인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경기	전시문화, 화훼산업, 향토자원진흥, 방송영상산업, 의료관광산업, 정보화 전략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여가관광, 관광/레포츠, 친환경농업, 도자기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전기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목목, 옷산업, 태양광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보은문화산업, 바이오농업 등

지역	전략 산업	연고 산업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첨단문화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공주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 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 보령머드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윗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에견(진돗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차량가공업, 과일·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석재가공업, 축산사료유통산업, 하동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남해마늘가공산업, 통영진주가공업, 창녕양파산업, Silk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자료 : 중소기업청

3)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적 활동 확대

여성기업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나눔경영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그동안 여성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여성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06년도에 여성기업이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회가 자율적으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실천하여 왔다.

지회별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지회의 전문계여고생 장학금 지원, 대전·충남지회의 여성가장 및 소상공인 불우이웃돕기 지원, 광주·전남지회의 장애우 사랑의 봉사 및 여고생 장학금 지원, 강원지회의 여고생 장학금 지급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구·경북지회는 소녀가장 및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의 여성기업이 장학금 지원 졸업생을 채용하여 근무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11년 6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이 되어 그 동안 각 지회에서 실천해오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여성기업인들이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 사회적 공헌 활동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여성기업 행복한 동행 발대식’ 이 이루어졌다.

여성기업 행복한 동행 발대식을 토대로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존경받는 여성기업이 되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구심점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기업 행복한 동행 발대식 선언문>

우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인들이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 사회적 공헌활동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하나 우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은 소녀가장들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한다.
- 하나 우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은 여성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선다.
- 하나 우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은 여성기업의 잠재력을 원천으로 소녀가장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여성인재를 육성한다.

2011. 6. 21(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 일동

※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4)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비 확보

여성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지금처럼 정부의 지원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자금 확보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회원가입을 위한 회비도 여성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앞서 설명한 NPD, SR,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의 성공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로 1년간 0.1% 내외 지원받아 자체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그 외 기업이 참여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참가비를 지불해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협회 회원을 증대하고 회원특전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현재 협회 회원들의 회비는 기업규모,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업초기 규모가 작은 여성기업들이 협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연회비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의 규모에 따라 연회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참고로 벤처기업협회의 가입비는 30만원으로 동일하나, 연회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4-50> 벤처기업협회 회원구분 및 회비

회원종류	전년도 매출액	가입비	연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 대한민국에서 활동기반을 갖는 기업으로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 • 특별회원 : 협회발전에 지대한 기여가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기업 	창업 6개월 미만	30만원	면제
	50억 미만		20만원
	50억 ~ 100억 미만		50만원
	100억 이상		100만원

※ 자료 :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또한,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정부지원금이 아닌 신청기업들에게 확인 수수료를 받아 전문적인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되, 확인 수수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존 회원들 중심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아진 자금을 통해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한다면, 점차 신규 회원 증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회원들의 만족도도 제고될 것이다.

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혁신전략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국 14개 지역에 센터를 갖추고 있고, 지역별 센터 간 긴밀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종합센터는 처음부터 정부의 여성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으로 태동되었기 때문에 센터 자체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수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센터 스스로 여성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수행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추진방안

- 1) 여성창업 적합분야의 발굴·보급 기능 강화
- 2) 창업보육 여성기업에 대한 전주기적(全週期的) 관리 도입
- 3)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시스템 강화

1) 여성창업 적합분야의 발굴·보급 기능 강화

여성창업은 경력단절, 육아, 사회적 인식 등에서 불리함을 안고 창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경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인구 고령화, 복지수요의 확대, 교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여성 특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창업 적합분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실증적인 사례 확보도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협업을 통하여 전국의 여성기업 중에서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업종의 창업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고 창업교육과 함께 센터 입주지원, 자금, 기술,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년 1~2개의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되,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제휴하여 매년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창업 적합분야의 개발은 본 보고서의 여성창업 촉진전략에서 제시한 생활기업형의 창업촉진 방안을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여성창업 보육기업에 대한 전주기적(全週期的) 관리 도입

현재 정부의 창업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업기업의 성과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의 창업정책은 창업촉진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도 지금은 창업기업에 맞춰진 상태로 창업기업을 센터에 입주시켜서 지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졸업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성공모델기업으로 육성하려면, 창업기업의 매출,

이익, 고용 등의 지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센터는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의 DMC에서 추진하는 입주기업 관리체계나 창업진흥원의 BI기업 관리체계 등을 참고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주기적 관리체계는 본 연구보고서의 앞장에서 언급된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 대상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여성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체계로는 실질적인 전주기적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에 필요한 전문기관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협력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창업여성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기관 >

- 창업투자회사
: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펀드를 운영, 자금지원 역할 담당
- 컨설팅회사
: 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 특히 여성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인 판로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컨설팅 분야는 필수
- 인재개발회사
: 센터별로 입주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각 개별기업은 하나의 사업부로 인식하여 종합적인 인력개발을 지원

3) 지역 여성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시스템 강화

여성기업의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성창업의 질적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국 14개 지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성창업자의 기업 생존을 제고를 위해서 경영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안으로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예비창업자 및 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여성기업인에게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역의 특화산업 및 신기술 창업에 대한 기술타당성 분석 등 상담·자문을 통해 여성창업 적합 분야로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창업활성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여성창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화산업 및 여성적합 창업 사례 등을 연구·조사하여 공유하고, 지역 특화와 관련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센터 졸업기업에 대해서는 졸업 후 준비해야 할 사무실 임대, 사업소재지 등기이전, 인력 확충에 따른 사회보험과 세무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개

가. 설립목적

전문여성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경제인의 공동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주요기능

-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다. 협회 CI



여성경제인들이 햇불을 높이 들어 주위를 밝히고, 하나가 아닌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척박한 땅을 비옥한 양지로 만들겠다는 여성경제인들의 의지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유니크하게 형상화 하였다. 또한 여성경제인의 단합된 결속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여성경제활동을 통한 복리증진 및 회원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고자 하는 협회의 설립이념과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자 하는 경제인들의 발전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라. 연 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72년에 대한여성경제인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후, 1999년에 중소기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이어져오고 있다.

■ 1990s

- 1999 0205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공포(법률 제5818호)
- 06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발효
- 061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공식 출범, 창립총회 개최
- 0624~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강원, 경기, 전북,
- 0709 경남, 제주 11개 지회 창립총회
- 072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1차 정기총회, 장영신 초대회장 선출
- 1020 충북지회 창립총회 개최
- 1022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도고증권연수원)
- 1206 임시총회 개최 및 제2대 신수연 회장(코리아스테파)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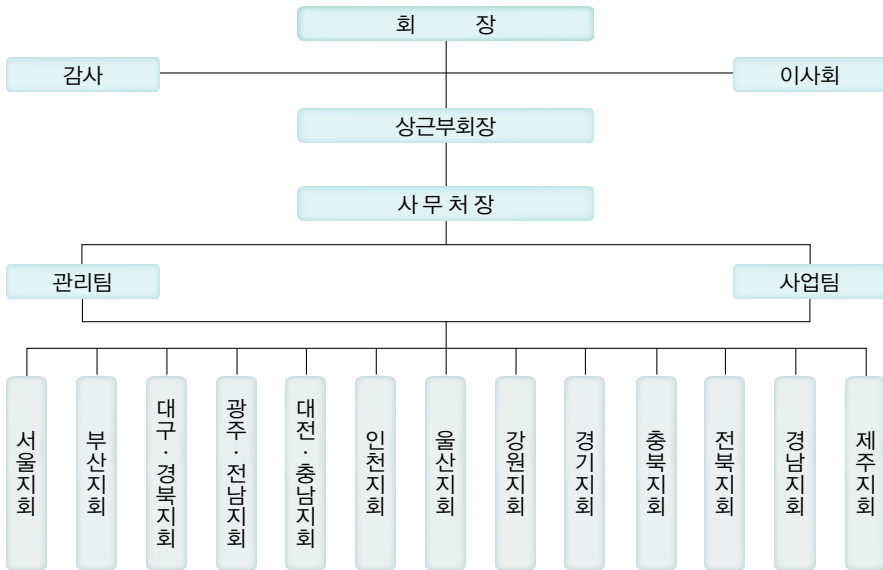
■ 2000s

- 2000 0127 정기총회 개최
- 0407 상반기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부산 그랜드호텔)
- 0614 「제4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0920 하반기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제주 그랜드호텔)
- 2001 0130 정기총회 개최
- 0706 「제5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1024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서울 올림픽파크텔)
- 2002 0129 정기총회 개최 및 제3대 이영숙 회장((주)코모도호텔) 선출
- 0316 울산지회 창립총회
- 0319 제3대 이영숙 회장((주)코모도호텔) 취임

- 2002 0705 「제6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0710 여성최고경영자 경영연수
 1025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강원 현대설악콘도)
- 2003 0128 정기총회 개최
 0523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대전 리베라호텔)
 0704 「제7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1218 제4대 정명금 회장(대구중앙청과(주)) 선출
- 2004 0228 정기총회 개최
 0702 제4대 정명금 회장(대구중앙청과(주)) 취임
 「제8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및 리셉션 개최
 1026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실시(경주 현대호텔)
- 2005 0127 정기총회 개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개정
 0531 (여성경제인 범위확대 : 여성기업의 임원 → 모든 기업의 임원)
 0706 「제9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1021 전국경영연수 개최(경기 라비돌 리조트)
- 2006 0120 정기총회 개최
 0706 「제10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개최
 1027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실시(인천 하얏트호텔)
 1220 제5대 안윤정 회장((주)사라) 선출
- 2007 0124 정기총회 개최 및 제5대 안윤정 회장((주)사라) 취임
 0705 「제11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개최
 0913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실시(경주 코모도호텔)
 1001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허가
 (중기청 허가번호 제 2007-7호)
- 2008 0129 정기총회 개최 및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워크숍
 0703 「제12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0925 2008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1107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실시(부산 코모도호텔)
- 2009 0205 정기총회 개최
 0406 「제13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2009 0507 전국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실시(상반기-경남 씨티폴만호텔)
- 052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시 법제화)
- 0916 2009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 1016 전국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실시(하반기-충북 라마다호텔)
- 111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1항)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물품 및 용역 5%, 공사: 3%)
- 1229 제6대 전수혜 회장((주)오리엔트마린) 선출
- 2010 0127 2010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제6대 전수혜 회장((주)오리엔트
마린) 취임
- 0329 「제14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 0903 2010 여성경제인 워크숍
- 1029 전국여성CEO 경영연수 실시(목포 현대호텔)
- 2011 0222 정기총회 개최
- 0422 전국여성CEO 경영연수(제주 해비치호텔)
- 0621 「제15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

마. 조직도



바. 지회 소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는 전국에 총 13개가 구축되어져 있으며, 본회 및 지회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지역 내에 있는 여성 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기업인 및 여성임원들에게 경영가로서의 자질향상 및 혁신마인드 형성을 위한 여성CEO MBA교육과 전국경영연수 실시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여성친화적인 업종으로 전문화된 실천창업스쿨 운영,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여성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여성창업경진대회와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 글로벌 경영흐름에 따라가기 위해 산업시찰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여, 해외여성기업인과의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산악회, 골프, 다도 등 회원들의 단합과 여가 활동을 위한 클럽활동 운영과 여성기업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내 봉사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지회명	설립일	주소	연락처
본회	1999.07	(135-5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24 7층	02-369-0900
서울지회	1999.07	(133-020)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66-2 삼협빌딩 6층	02-702-4244
부산지회	1999.07	(601-837)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8-8 극동빌딩 4층	051-465-1492
대구경북지회	1999.07	(706-803)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341-5 5층	053-756-0006
광주전남지회	1999.07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 704-9번지 삼산빌딩 1층	062-523-6028
대전충남지회	1999.07	(305-500)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3호	042-526-2862
인천지회	1999.07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인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032-260-3600
울산지회	2002.03	(683-805)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52-998-8585
강원지회	1999.07	(200-959)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26-3 2층	033-241-3475
경기지회	1999.07	(442-83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DSD빌딩 3층	031-211-0292
충북지회	1999.11	(361-818)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0 4층	043-236-6561
전북지회	1999.07	(560-8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0-4 2층	063-272-9973
경남지회	1999.06	(641-200) 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055-212-1240
제주지회	1999.06	(690-827) 제주시 이도2동 1185-9번지 아천빌딩 6층	064-726-4467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개

가. 설립목적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주요기능

- 여성기업창업 보육공간 및 지원시설 제공,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전국 14개 지역센터 운영)
- 여성창업률 향상 사업(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경진대회)
- 수출여성기업 육성(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다. 재단 CI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심벌마크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Coporate Branding의 핵심요소로서 'WE(우리)'의 콘셉트로 개발되었다. 각각의 사각형의 조합으로 'W(woman)'와 'E(enterprise)'를 형성하여 WE를 상징한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장이 되는 '우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21세기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시대에 많은 여성경제인들이 국가경제의 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라.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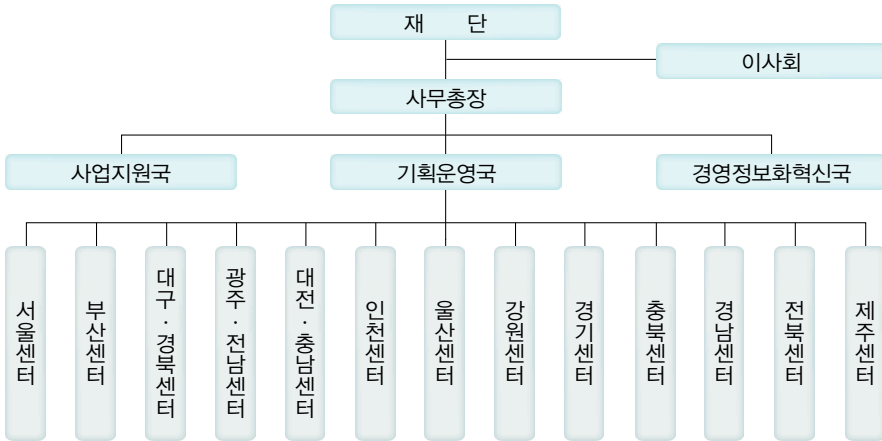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 의해 2001년 국회에 센터 설립관련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이후, 2007년에 중소기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의 명칭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 2000s

2007	100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주무관청 : 중소기업청)
	1009	2007년 정기이사회
2008	0819	2008년 정기이사회
	1130	부산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1230	경기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2009	0224	2009년 정기이사회
	0601	중앙센터보수공사(강의실 및 회의실 등 교육시설 구축)
	1116	대구경북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1218	전북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1216	경남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2010	0127	2010년 제1차 임시이사회
	0130	전수혜 이사장 취임
	0204	2010년 정기이사회
	0223	강원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0413	2010년 제2차 임시이사회
	0724	인천센터 확장완료(임대확충)
	1007	2010년 제3차 임시이사회
2011	0222	2011년 정기이사회
	0131	충북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0630	대전충남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2012	0326	광주전남센터 확장완료(건물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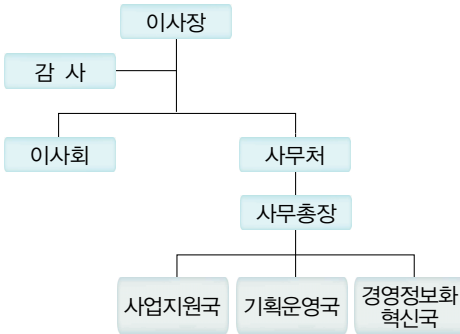
마. 조직 및 기구현황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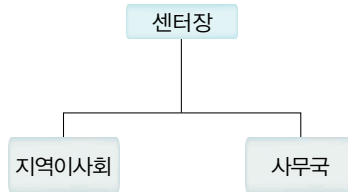


■ 기구

① 중앙



② 지역센터



바. 지역센터 소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14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창업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 제공, 판로, 애로상담, 창업보육 등의 지원을 통해 종합지원체제를 구축, 여성기업 지원기관의 메카로써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각 지역센터 내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중이며, 차세대 여성기업인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차세대 여성 CEO양성교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전창업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예비여성 창업자들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여성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수출경험이 부족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명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수출저변의 확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센터 확장사업을 통해 여성의 창업수요 증대에 비해 부족한 창업보육공간을 확장하여 여성창업 활성화, 여성일자리 만들기 및 녹색성장 기업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는 여성경제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One-Stop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활성화 유도과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센터명	설립일	주 소	연락처
중앙	199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24	02-369-0900
서울센터	2002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66-2 삼협빌딩6층	02-702-4244
부산센터	2000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8-8 극동빌딩 4층	051-465-1001
대구경북센터	1999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341-5 5층	053-742-5192
광주전남센터	1999	광주 북구 중흥동 704-9번지 삼산빌딩 1층	062-527-1612
대전충남센터	2000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2차 C동 223호	042-526-2862
인천센터	2001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032-260-3600
울산센터	2002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52-998-8585
강원센터	200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26-3번지 2층	033-241-3475
경기센터	20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안계동 1015-3 DSD빌딩 3층	031-211-0292
충북센터	20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890번지 4층	043-236-6561
전북센터	20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서로 477 2층	063-272-9973
경남센터	1999	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055-212-1241
제주센터	2001	제주시 이도2동 1185-9번지 아천빌딩 6층	064-726-4467

유용한 지원사업 100% 활용하기

1.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가. 정책자금 지원

1) 창업기업 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의 생산 설비, 사업장건축·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1인창조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중소기업 제외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의 중소기업
-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및 공정설치 등 소요자금
 - 안정성평가 및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1회에 한정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1인창조기업지원자금(회전한도방식으로 운용) 및 재창업자금(생산 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 비용 등 소요자금
 -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용자를 제한할 수 있음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공자기금⁴⁷⁾ 대출금리에서 0.45%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3% 이하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1인창조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7천만원 이내(단, 제조업은 1억원 이내)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 (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47) 공자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 1인창조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5천만원(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7천만원(민간금융 매칭형). 단, 제조업은 기업당 1억원

융자 방식

- 창업자금 : 중진공⁴⁸⁾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융자상환금 조정형과 민간금융 매칭형으로 구분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융자방식을 결정 후 대출
- 1인창조기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재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2)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및 사업화를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8) 중진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용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업체가 선택)

3) 신성장 기반자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생산시설 개량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초기가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제외
-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
- 농공단지입주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
 -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용자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및 공정설치 등 필요자금
 - 안정성평가 및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또는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 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 (매입, 경·공매) 허용
 -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05%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 (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융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업체가 선택)

4) 긴급 경영 안정자금

수출중소기업·재해피해기업·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등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 자금을 2회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재해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기업은 제외)
-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출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지원 제외

융자 범위

구분	내용
긴급경영 안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생산 비용, 제품개발 비용 및 시장개척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자연재해 및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수출금융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 조건

-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5%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5%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 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 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용자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 (업체가 선택)
- 수출금융지원사업 : 중진공 직접대출

5) 사업전환자금

중소기업이 새로운 유망 사업 또는 업종의 추가 등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생산설비 투자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의 대상이어야 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1회에 한정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 조건

-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연간 40억원

융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업체가 선택)

연락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및 각 지역본부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본부	02-769-6700	대구	053-601-5300
서울서부	02-6678-4127~8, 4135~6, 4141~2, 4111~4	경북서북부	054-476-9311
서울동남부	02-2156-2000	경북동부	054-223-2047-8
서울북부	02-769-6816, 6826	경북남부	053-212-3300-1
인천동부	032-450-0500	강원영서	033-259-7600
인천서부	032-450-0560	강원영동	033-655-8870-6
경기남부	031-259-7900	광주	062-600-3000
경기동부	031-259-7946,7994	전남서부	061-280-8000
경기서부	031-496-1081~1085, 1471~1475	전남동부	061-724-1056
경기북부	031-920-6700	부산서부	051-630-7400
대전	042-8660-114	부산동부	051-712-9670-7
충남	041-621-3687	울산	052-703-1100
충북남부	043-230-6800	경남중부	055-212-1350
충북북부	043-841-3600	경남동부	055-310-6600
전북동부	063-210-9900	경남서부	055-756-3060
전북서부	063-460-9800	제주	064-751-2055

나. 기술개발 지원

1) 기술개발자금 지원

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거나 판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술개발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수요처(정부·공공기관·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일정기간 구매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내용

- 수요조사 과제(300억원)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각종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 전략과제 : 국방·기상·소방 등 공공분야의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또는 하나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다수의 부품개발이 필요한 과제(예 : 완제품 1+부품 5개)
- 중소기업제안과제(100억원)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정부출연금비중	비고
수요조사과제	민간	최대 2년, 5억원	55% 이내	대기업 20% 이상 부담
	공공	최대 2년, 5억원	70% 이내	공공기관 부담없음
중소기업제안과제		최대 1년, 2.5억원	70%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2012년 1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이노비즈 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 서류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53~4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4~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중소기업 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나)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고부가가치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글로벌 협력과제(25억원) :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 과제를 발굴하며, 지정공모를 통해 개발 중소기업을 선정
- 기업제안과제(70억원)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조사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비중	비고
글로벌협력과제	2년 이내	5억원까지	50% 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1년 이내	1.5억원까지	50% 이내	지정공모

신청·접수 2011년 1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과제제안서, 구매계약 관련 서류, 신용등급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 042-715-232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다)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정부와 수요처(대기업, 공기업)가 사전에 기술개발 자금을 조성한 후,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수요처는 개발제품을 구매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고 협력 펀드 조성에 참여한 수요처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제출한 기업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총개발비의 70% 이내, 최대 3년간 10억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 중소기업 공동지원협약 및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
 -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신청 시,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미래전략과제 :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 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컨소시움 방식)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금	지원금 비중	비고
수요조사과제	최대 3년, 10억원	총개발비의 70%이내	지정공모
미래전략과제	최대 3년, 10억원	총개발비의 70%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최대 2년, 5억원	총개발비의 70%이내	자유응모

신청·접수 2011년 지정과제 공고 시점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 등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02-3787-051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국산화센터 : 02-368-871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라)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대학·연구기관의 유망기술과 기업의 역량을 접목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법인의 제품화 및 사업화의 필요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공동투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요건을 갖춘 당해년도에 설립된 창업법인

지원 내용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년간 10억원까지 지원(연 5억원한도)

신청·접수 2012년 공고 시점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연 3회 추진예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1단계 : 기술제안서, 공동투자협의체 운영계획서, 투자의향서 등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투자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2단계 : 사업계획서, 주주명부, 사무실 및 공장 임차 계약서 등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444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2-3787-0510, 0545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 02-368-8712, 8714, 8717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마)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현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서비스유망과제 : 「자유응모과제」또는 ‘지정공모과제’의 수행이 가능한 기업
 - (자유응모) 산업기술분류체계상 ‘지식서비스 분야’ 해당 과제
 - (지정공모) ‘신성장 유망서비스 전략과제’ 해당 과제

지원 내용

분야	내용	지원 한도
서비스유망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모방식에 따라 ‘지정공모’와 ‘자유응모’ 방식으로 구분• 개발기간 1년 이내 지정공모 방식은 최대 2억원까지, 자유응모 방식은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의 서비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해당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해당기업)
- 벤처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기업)

- 최근 1년간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 042-481-4443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2, 0510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바)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 혁신의 수단으로 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체 디자인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혁신과제 : R&D 투자비율 5%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디자인 전담 부서 보유 중소기업
- 일반과제 : 디자인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비중	비고
혁신과제	최대 9개월, 1억원	60% 이내	자유응모
일반과제	최대 6개월 2천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신청·접수

- 혁신과제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일반과제는 한국디자인협동조합에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해당기업)
- 주관기관의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41
- 한국디자인진흥원 : 031-780-2188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사) 친환경설계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설계기법을 적용하여 녹색제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지원 내용

-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제품 전주기에 걸쳐 친환경 설계 기법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
 - 친환경설계 기법 : 제품 계획 → 제품 환경성 분석 → 환경성 개선 아이디어 도출 → 아이디어 평가 및 선택 → 제품의 구조 및 사양 도출 → 제품 설계 → 시제품 제작

- 지원조건 : 과제당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1년간 1.5억원 한도

개발 과제	내용
에너지 고효율 제품	에너지사용량 절감, 자원사용량 절감, 재활용·재이용 가능성 향상, 사용수명 최적화 등
환경규제 대응 제품	온실가스 저감, 유해물질 대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분해 용이성 및 소재 순수성향상 등

제출서류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해당기업)
- 벤처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기업)
- 최근 1년간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 042-481-4406, 각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02-3787-0506
- 전용정보사이트 :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참조
- 전화상담은 1661-1357(중소기업 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2) 기업간·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 장비, 기술 등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기업
- 지역사업 : 창업 9년 이하,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 지원
(창업과제 : 5년 이하, 일반과제 : 5년 초과 9년 이하)
 - 전국·국제사업 : 창업 9년 초과 또는 매출액 50억원 초과 기업 지원

지원 내용

- 지역사업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방비와 매칭)
 - 지원한도 : 1년간 1억원
- 전국사업 :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거나 녹색·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
 - 지원한도 : 2년간 4억원
- 국제사업 :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
 - 지원한도 : 2년간 4억원
- 중점사업 : 과제기획-기술개발-사업화 등 기술개발 전주기적 지원
 - 지원한도 : 2년간 20억원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문의처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 042-481-445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서울)기술혁신지원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사)한국산학연합회 : 042-720-3300

나)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또는 중소기업간(산-산)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산연협력과제
 -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한 기업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센터연계형과제
 -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한 기업
- 융합사업계획승인과제
 -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한 기업
- 농공상융합형과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법인

지원 내용

- 산연협력과제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융·복합지원센터 등에서 발굴·기획된 중소기업형 미래유망 첨단융합기술 분야의 과제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첨단 융합기술 과제 40개 내외
- 기업제안과제
 -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도출한 산업(기술)간 일반 융·복합기술 분야의 과제
 - 중소기업 간(산-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일반 융·복합기술과제 25개 내외
- 센터연계형과제
 - 중소기업 기술융·복합지원센터를 통해 평가후 추천된 첨단 융합 기술 분야의 우수기획과제
 - 중소기업기술융·복합지원센터에서 발굴·기획된 과제 중에서 추천된 우수 과제 20개 내외(산-산, 산-연)
- 융합사업승인과제
 - 융합사업계획 승인기업에 지원되는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융합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간(산-산) 혹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간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
 - 중소기업융합사업승인제도(2012년 2월 별도 공고 예정)에서 융합사업승인을 받은 기업이 지원하는 자유응모形 첨단 융합기술과제 25개 내외(산-산, 산-연)
- 농공상융합형과제
 - 지역 특화 농수산원물을 활용한 산업바이오 분야 신제품 개발 과제
 - 농어민 또는 농어업번인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자유응모形 일반 융·복합기술 10개 과제 내외(산-산)

구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기업 자부담금	보증 (용자)금		
산연협력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이내	18%이상	20%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최대 1년, 5억원	60%이내	2%이내	18%이상	20%이내	자유응모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년, 5억원	60%이내	2%이내	18%이상	20%이내	자유응모
융합사업승인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이내	18%이상	20%이내	자유응모
농공상융합형과제	최대 1년, 2억원	60%이내	2%이내	18%이상	20%이내	자유응모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접수

제출서류

- 주관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해당기업)
- 벤처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기업)
- 주관기관의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5, 397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21, 052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다) 중소기업기술융합센터 지정·운영 사업

신제품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첨단기술간 융합화를 위해 전국 11개 센터에서 중소기업형 기술융합과제 발굴 및 R&D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해당 권역별 특화산업분야 업종의 중소기업, 연관된 업종의 기업, 사업자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10이상의 기관(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교류회

지원 내용

구분	내용
R&D과제 기획	융·복합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센터가 멘토가 되어 멘토링 구성, 융·복합 R&D 방향 및 방법수립, 기술적 타당성 및 사업분석 등 융·복합 R&D 기획 과제 발굴
유망기술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해당 권역별 특화산업분야 업종의 중소기업, 연관된 업종의 기업, 사업자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10이상의 기관(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교류회를 운영하여 유망기술과제(RFP) 도출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지원

신청·접수 11개 지역별 센터에서 개별 접수

제출서류

- 융합 R&D 기획 멘토링그룹 사업신청서
- 중소기업 기술 융합 교류회 사업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해당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3976, 4445
- 중소기업융합중앙회(중앙센터) : 02-769-6436~7

라)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가 가능한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내용

- 산연협력과제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상용화 되지 않은 특허기술(등록 또는 출원)을 이전받아 추가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
 - 국내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의 상용화 되지 않은 특허기술(등록 또는 출원)을 이전받아 추가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 해외기술이전과제
 -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우수과제 연계 및 해외 선진기업 등의 기술을 이전받아 추가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20, 0535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다. 판로확대 및 수출 지원

1)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가)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1,000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 납품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활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및 1,000만원 이상의 특정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지원 내용

-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제도 이용가능
-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과 동일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하단에 상시 공고

신청·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발급분)
-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 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명기)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구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납품실적 증빙서류 : 납품실적(민급 또는 관급) 증빙자료
- 전기 사용실적 증빙서류 : 전기료 납부 영수증
- 생산정보 증빙 서류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63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 02-2124-3120~5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EPC, GS, NEP, NET, 우수조달제품,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등 6종)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 NEP 및 GS(기술표준원), NET(과학기술NET : 기술표준원, 환경NET : 환경부, 건설NET : 국토해양부), 우수조달(조달청), 성능인증 및 구매 조건부사업 성공제품(중소기업청) 중 하나의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NEP, NET, GS, EPC, 우수조달제품,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등 6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 사업 참여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은 해당 제품의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구매를 요청함

문의처

- 관할 지역 지방중소기업청
- 기술표준원 : 02-509-7286

다) 성능인증제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지원내용과 동일

인증대상

-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기술혁신형기업 제품 등 17종
- 대상품목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www.smba.go.kr → 정보마당 → 법률정보 → 현행고시에서 검색)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신청·접수 연중 수시 온라인(www.bizfinder.go.kr)을 통한 신청

제출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직접 작성

- 성능인증신청서, 규격설명서
-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 자격 증빙서류, 기술도면 등(필요시)

문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2) 판로확대 지원

가)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개성공단 입주기업 제품 포함). IT기업은 서비스 소프트웨어제품 가능

지원 내용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선발하여 TV, 신문 등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신청·접수 연중 수시 온라인(www.bizfinder.go.kr)을 통한 신청

제출서류 홍보사업신청서, 품질인증 관련서류, 제품심사용 설명자료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 4473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나)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전시장 임차료, 부스설치비, 홍보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전문 바이어와의 ‘상담의 장’ 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소속	내용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비영리 업종단체(협회) 및 기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
구매상담회 참가지원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

지원 내용

-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 전시장 임차료, 부스 설치료, 홍보비 중 70% (3,000만원 이내)
- 특별판매전 : 중기제품 판매전을 개최하여 참여업체의 판로확대
- 구매상담회 :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담당자와 만남의 장을 제공

신청·접수 온라인(www.bizfinder.go.kr)을 통한 신청

제출서류

- 전문전시회 보조금 지원신청서
- 전시회 개최 계획서
- 보조금사용 계획서 및 서약서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70
- 중소기업유통센터(www.sbdc.co.kr) : 02-6678-9342

다)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중소기업 A/S시스템을 구축해 제품의 A/S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국내 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참여 가능 제품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S 지원 가능한 제품 선정

지원 내용

- 전문상담요원을 두어 제품 사용안내, 소비자 불만처리
- A/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교환·반품요구에 대한 A/S 실시
- 참여업체가 제품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A/S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상담 자료를 DB화하여 제조업체에 제공
- A/S 비용 및 통신료 등은 업체 부담

신청·접수 연중 수시 온라인(www.askorea.or.kr, www.bizfinder.go.kr)을 통한 신청

제출서류 중소기업공동A/S센터 신청서, 기업현황, A/S희망제품 설명서 등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473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64
 - 생활가전 관련제품 : 02-6678-9361
 - 정보통신 관련제품 : 02-6678-9364
- 중소기업 공동A/S센터 홈페이지(www.askorea.or.kr)

라)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표개발비를 지원하고,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공동상표 개발지원 :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공동상표 홍보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공동상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의한 중소기업공동상표 대표자
 - 홍보지원은 정부가 개발지원한 상표 외에 자율적으로 개발·사용하는 상표도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대상이 됨

지원 내용

- 공동 상표개발 : 상표개발 소요비용의 70%, 상표당 5,000만원 한도

- 공동 상표홍보 : 예산과 지원수요를 감안하여 TV, 신문 등 광고매체를 정하고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신청·접수 1~2월 중 온라인(www.bizfinder.go.kr)을 통한 신청

제출서류

- 공동상표 개발 또는 홍보 지원신청서, 공동상표사업추진 계획서, 공동상표규약서,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 부착대상품목
- 특허청상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70
- 중소기업유통센터 전시홍보팀 : 02-6678-9343
- 마케팅정보시스템 : 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마)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 조성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업 및 제품의 진단과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 CEO 및 마케팅 담당자(2인 1조)
-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전문가 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기업 전수조사

지원 내용

- 교육과정 운영 : 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제주권 등 광역권별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4단계 프로그램 진행 예정

구분	교육명	주요 내용	해당 기업
공통교육 I	마케팅 전략기획 (25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트렌드와 마케팅 • 마케팅총론 및 전략기획 • 시장 및 고객 분석 이해와 활용 • STP 전략기획 • 마케팅 믹스 전략/전술 수립 	1년차 참여기업
심화교육 I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25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프로세스 • 아이디어 개발과 콘셉트화 • 상품화 및 상품개발 전략 • 신상품 출시 마케팅 전략 • 브랜드 개발 및 히트브랜드 육성 	1~2년차 참여기업
심화교육 II	판로개척 및 활성화전략 (25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및 제품 분석 • 판로특성 분석 및 수요예측 • 판로선정 및 개척방법 수립 • 판촉/영업 실행 전략/전술 • 고객관계 강화 전략 	1~2년차 참여기업
심화교육 III	마케팅 문제(이슈)해결 (25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및 상품 다각화 전략 • 신규(해외) 시장 개척/다변화 전략 • 고객 및 A/S 관리 • 마케팅/영업 관리 방안 • 우수 마케팅/영업 조직 육성 	2년차 참여기업

신청·접수 1~2월 중 온라인(www.bizfinder.go.kr)을 통한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마케팅 실태조사서계획서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75
- 중소기업유통센터 전시홍보팀 : 02-6678-9343
- 마케팅정보시스템 : 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바) 벤처마케팅 지원사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을 발굴하여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홈쇼핑 입점, 제품홍보 등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예비 창업벤처 포함)
- 선정기준 : 경쟁력 있는 혁신 제품(기술)이거나 성장 유망한 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우대사항 :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정책에 참여하거나, KS·특허·실용신안 등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

지원 내용

구분	내용
대기업 협력사 등록지원	대기업과 협력이 가능한 벤처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발굴하여 협력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
유통기업 활용 판로개척 지원	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업체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
파워 블로거 활용 마케팅 지원	인터넷 파워 블로거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검증 및 홍보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신기술 및 제품 홍보

신청·접수

2012년 1월부터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회사 소개서, 제품(기술)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 확인서 등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3965
-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팀 : 02-890-0627
- 마케팅정보시스템 : 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3) 수출 지원

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규모와 역량에 따라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꼼꼼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은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유망기업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중 수출 100만불 초과 ~ 500만불 미만 기업
- 강소기업은 직수출실적이 500만불 초과 ~ 5,0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은 100만불로 예외요건 부여

지원 내용

지원기업의 수출단계별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구분	항목	내용	정부지원
초보 (90%)	수출교육	무역실무, 온라인 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FTA교육과정, 환리스크 관리과정	20 백만원
	홍보용 디자인 개발	외국어 전자·종이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해외신용조사, 국내외 홍보전문지 활용 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 중소기업플러스 보험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유망 (70%)	수출교육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FTA교육과정	30 백만원
	홍보용 디자인 개발	외국어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심층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해외신용조사, 국내외 홍보전문지 활용 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등록지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	
글로벌 강소 기업 육성 (50%)	글로벌 브랜드 개발	글로벌 브랜드 개발 지원	50 백만원
	제품 및 홍보용 디자인 개발	외국어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국내외 홍보전문지 활용 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지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	

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 042-481-4369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2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출 500만불 이상 기업 중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역량진단부터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만불 이상 5천만불 이하인 기업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는 수출 100백만불 이상으로 신청 자격 완화

지원 내용

글로벌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직접 및 연계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수출역량진단 및 시장조사, 전용 해외마케팅)
 - (기초진단 및 시장조사) 선정기업은 해외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해 기업현황진단 및 타깃시장조사, 해외진출 전략컨설팅을 지원
 - (전용해외마케팅) 3년간 총 1억원 규모의 전용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제공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 수출 R&D 연계지원(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 과제)
 -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 10억원 → 30억원

-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 향후 타 금융권 등과 협약을 거쳐 추가 우대 상품 제공 추진

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 042-481-4471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2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지원사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

지원 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수출역량강화사업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우대지원,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참여 시 우대,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 금융 및 보증지원 : 무역금융지원, 신용·기술보증(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 등

- 서비스업 지원 : 문화산업완성보증 비율우대, 지식문화동반성장프로그램 보증료 감면,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재방식) 보험료할인 등
- 기타 :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
- 최근년도 재무제표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 042-481-4424, 각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전용정보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참조

라)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사업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사전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비용, 전시부스 임차료부터 장치비, 운송료, 통역비, 간담회비, 홍보비, 바이어 초청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

지원 내용

- 부스임차료 : 2부스 이내 50%(전시회에 따라 3부스까지 지원)
- 공동홍보 부스 임차료 : 1부스(최대 12㎡)이내에서 100%
- 장치비 : KOTRA 국가별 기준단가의 50%. 단, 보석, 공예, 화장품, 패션, 멀티미디어 업종은 80%
- 운송료 : 1CBM 이내 편도운송료의 50%(대형전시물의 경우 2CBM까지)
- 통역, 회선 임차료, 바이어 간담회, 홍보비(공동홍보물 제작 등) 지원
- 홍보비 : 업체당 30만원 이내 정액 지불
- 항공료 : 주관단체 1인에 한해 왕복 항공료

신청·접수

해외전시 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계획안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전시회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
 - 파견 이후 현재까지 파견성과 평가자료(업체별 수출실적 등)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 042-481-4465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부 : 02-2124-3226, 8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초기화면 상단(전시회 정보)

마)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광고 및 디자인 등) 영위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파견자이력서 및 입주활동계획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2-769-6955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

라. 창업 지원

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지원사업

대학,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협약종료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1년 미만)

지원 내용

-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 조건부로 지원

신청·접수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386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042-480-4341~2, 4346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2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2) 맞춤형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요자 선택방식을 통해 창업수요자에게 지원분야 및 주관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지원 내용

- 기술특화(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연계) : 시제품개발비, 마케팅비 등
- 아이디어특화(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연계,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연계) : 시제품개발비, 마케팅비 등
- 입소형 교육특화(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 : 창업공간, 창업코칭 및 교육 등
- 준입소형 교육특화(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 : 창업공간, 창업코칭 및 교육 등
- 창업성과특화(유망창업자집중육성지원사업) : 생산기반구축비, 제품개발비 등

신청·접수

2012년 2월부터 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042-480-4345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2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2.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가. 여성창업 지원

1) 여성벤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여성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예비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창업연수, 창업캠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예비여성창업자, 실업계 및 특성화 고교 재학 여고생 등

지원 내용

- 창업교육 : 마케팅, 회계 등 창업공통교육, 기술사업화, 제품기획 등 창업심화교육, 팀별·개인별 사업계획 발표, 피드백, 시상 등 창업에 관한 교육 실시
 - 연수기간 : 80시간 내외(12개 과정)
- 창업연수 : 우수교육생 대상 창업현장연수(50명, 60시간) 기회 제공
 - 연수기간 : 60시간
 -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적합자 선정후 여성벤처기업 등에 60시간 내외 실습 및 멘토링비 연수수당 지급
- 창업화 지원 : 우수 예비창업자를 선정, 제품생산 준비(시설, 시제품제작, 특허등록 등) 및 창업컨설팅(시장조사, 자금, 마케팅) 등의 창업화 지원
 - 제품생산 준비지원 60명, 창업컨설팅 지원 60명
- 창업캠프 : 대학 재학생, 일반인, 특성화 여고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트렌드 교육 등을 통한 창업관련 정보제공, CEO 특강, 네트워크 확대 기회제공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역량강화 및 창업인식 제고
 - 캠프기간 : 2박 3일
 - 대학재학생 및 일반인 120명, 실업계 및 특성화 고교 재학 여고생 80명

지원 규모

구분	창업교육	창업연수	창업화 지원	창업캠프
인원수	300명	50명	120명	200명

나. 여성일자리 지원

1) 새일여성인턴제 지원사업

출산·육아 부담,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실직여성에 있어서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제활동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전업주부, 실직여성 등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 새일센터를 통하여 여성인력의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발굴하여 6개월간 인턴으로 재취업을 알선
 - 여성인턴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인턴채용 지원금을 3개월 또는 6개월을 지원
 - 새일센터 운영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0	19	6	3	5	5	2	2	4	11	5	4	6	4	5	7	2

지원 규모 여성 4,800명

문의처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075-4679
- 새일센터 : 1544-1199

다. 여성근로자 관리직 진출 지원

1) 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

-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무국 운영
 - 업종, 직급, 지역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 승진, 인사, 커리어 개발 등에 대한 영역별 사례 발굴 및 홍보와 멘토링을 지원
- 다양한 부문별 여성리더 간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여성 인재포럼 개최

지원 규모 4회 1,000명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2075-4663

라. 영·육아 보육지원

1) 아기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시간제 돌봄 :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
- 영아종일제 돌봄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2,000원 지원
- 영유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4,000원 지원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075-8709

여성발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
-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 가. 남녀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다. 여성의 복지 증진
 -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④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1.18.>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여성주간(女性週間)으로 한다.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평등<개정 2008.6.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② 삭제<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8>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가정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鼓吹)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出刊)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老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並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영유아(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보호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제24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金)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0.5.17>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8>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청문) 시·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2002.12.11>

제6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5136호, 1995.12.30.>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여성발전기본법

-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 (정부조직법) <제5529호, 1998.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 여성발전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 등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 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 1999.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여성발전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중 “개발원 또는 여성단체” 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으로 한다.

⑦ 내지 <21> 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5934호, 1999.2.8>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 <제6400호,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8> 생략

<79> 여성발전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중 “정부는” 을 각각 “여성부장관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부” 를 “여성부장관” 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정부가” 를 “여성부장관이” 로 한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 칙 <제6770호, 2002.12.1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고금관리법) <제6836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 여성발전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을 “기금수입 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 한다.

<25> 내지 <31>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법) <제7413호,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 중 “여성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중 “여성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⑪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7786호, 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와 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의 설립 당시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특별시장·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4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의 채권은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4>까지 생략

<755>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75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126호, 2008.6.1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시·도지사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법률 제7786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은행법) <제10303호, 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 을 “은행” 으로 한다.

<52>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 (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 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 을 “어린이집” 으로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5조(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7조(실태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전문개정 2009.12.30]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16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제17조(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19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지도·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09.12.30]

부 칙 <제5818호, 1999.2.5.>

이 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산업디자인진흥법) <제6415호, 200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을 “한국디자인진흥원” 으로 한다.

부 칙(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675호, 2002.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 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2항” 으로 한다.

부 칙 <제7557호, 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086호, 2006.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5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⑩ 내지 ⑰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 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으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 <제9684호, 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⑫ 부터 ⑳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9892호, 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11>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7.6.11>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9>

제4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6.11, 2009.11.19>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7.6.11, 2008.2.29, 2009.11.19, 2009.11.20, 2010.3.15, 2010.7.12>

1.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전무이사
7. 그 밖에 경제분야·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6.11.> [제목개정 2009.11.1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향상과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6.11>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7.6.11>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11.19]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9.11.19>

[제목개정 2009.11.19]

제9조(협회설립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제1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여성의 창업지원
3.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11>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비용)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조제2항·법 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당해 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6394호, 199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4> 생략

<125>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로 한다.

<126> 내지 <152> 생략

부 칙 (여성부직제) <제17116호,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노동부·건설교통부”를 “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로, “여성특별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부 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 를 “여성가족부” 로 한다.

<19> 내지 <35> 생략

부 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1> 생략

<152>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조달청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을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153> 내지 <241> 생략

부 칙 <제20087호, 2007.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 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부 칙 <제21832호, 2009.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 를 “여성가족부” 로 한다.

<17>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 를 “고용노동부” 로 한다.

<89> 부터 <136> 까지 생략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1.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발굴 분야
5.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분야<신설 2010.12.29>
6.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분야<신설 201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4.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업

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로 본다.

제6조(여성기업의 홍보)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

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명부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0.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 칙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6.7.>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기업은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7.>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지원과장, 회계계약심사과장, 건설심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7.28> <개정 2011.6.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6.7.>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개정 2011.6.7.>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1.6.7>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 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 시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대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5조의 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6. 그 밖에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서 여성기업 우대<개정 2011.6.7.>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기타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6.7>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12.24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7.28 조례 제484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 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으로 한다.

⑦ - ⑨ “생략”

부 칙 <2011.06.07 조례 제4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기업 확인) 「인천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지원의 제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2.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
2.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8조의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을 시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울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기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실장, 투자지원단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 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우대
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3. 그 밖에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구·군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광주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
2. “여성경제인” 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기업활동촉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설정시 우대
2.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4.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6조(여성기업지원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가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경제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명부작성 및 홍보)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할 수 있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도의 책무)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
2. 여성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도의회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지원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우대
4.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5.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CEO 연수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제품의 홍보전시회 사업
3. 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4.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기업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12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충청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18>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같은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지원·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11.18>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30>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 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4.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5.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10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6.30 조례 제3265호)
(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18 조례 제3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전라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여성의 기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이란 도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공장이나 사업장이 도에 있는 여성기업에 지원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 중인 기업

제5조(도지사의 책임과 의무) 도지사는 여성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지원·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 시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공동 계약 참여 시
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4.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5.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과 관련된 각종 시책 추진 시

② 여성기업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여성기업지원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의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올려 줄 것을 요구하면 명부에 올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투자기관 등에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 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경상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해당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경상남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 지원 및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수립한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등)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를 설정할 경우
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3.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중에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대행, 입지 및 창업자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 또는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고용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영리사업자
2. 휴·폐업중인 업체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4.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3조(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패션 등 지식·감성기반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발굴 분야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연수·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여성기업지원 특례)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창업 및 기술·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기업육성자금 지원한도액 및 이차보전 확대
3. 생산물품의 판로 및 공공구매 확대
4. 물품·용역·공사 및 그 밖의 계약 시 참여기회 확대

제5조(여성기업지원방안 심의)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기업인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 등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주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우수향토기업 발굴·육성 시 평가와 관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지원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계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 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심의위원회 위원
5.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전주시포상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구미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계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여성기업 대표
4.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5.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
-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유공자 포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9.9.28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경기도 광주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 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다.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3조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책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자금 및 기술 도입, 지적재산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전시회 등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
3.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 우대

제8조(유공자 포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광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경기도 고양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고양시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고양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고시(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다.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기술·구매활동·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서 지원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의한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및 여성기업 업무담당국장, 간사는 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고양시의회 관련 상임위 위원
 2.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4. 고양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5.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고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여성 취·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 취·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목 차

〈표 1-1〉 각 나라별 여성기업 정의	5
〈표 1-2〉 OECD 주요국가의 여성고용률 추이(15~64세)	23
〈표 1-3〉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24
〈표 1-4〉 국가별 여성창업률 현황	25
〈표 1-5〉 아·태지역 여성기업 환경조사 주요 순위	27
〈표 1-6〉 아·태지역 여성기업환경 종합분석 결과	29
〈표 1-7〉 전체 사업체 및 여성 사업체 추세	30
〈표 1-8〉 남녀 종사자수 규모	30
〈표 1-9〉 남녀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	31
〈표 1-10〉 남녀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32
〈표 1-11〉 기업구분별 경영실적	33
〈표 1-12〉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남녀학생 분포	34
〈표 1-13〉 벤처 창업자의 성별 분포	35
〈표 1-14〉 기업인의 성별 특성	36
〈표 1-15〉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점에 대해 느끼는 정도	38
〈표 2-1〉 여성기업의 국가별 창업유형	45
〈표 2-2〉 창업준비기간 현황	46
〈표 2-3〉 여성기업의 관심 사업 분야	51
〈표 2-4〉 창업준비 시 도움 받은 기관	58
〈표 2-5〉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의 평균 종사자수	60
〈표 2-6〉 고용유형별 비중	61
〈표 2-7〉 대표자의 학력	61

<표 2-8> 연도별 재무 현황	63
<표 2-9>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연도별 주요 경영지표 비교	64
<표 2-10> 성장단계별 위치에 대한 인식	66
<표 2-11> 남성기업 대비 여성기업이 느끼는 불리함의 정도	68
<표 2-12> 여성경영자 교육의 필요성	73
<표 2-13>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정책 인지도 및 평가	76
<표 3-1>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주요 내용	85
<표 3-2>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 흐름	87
<표 3-3>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 흐름	88
<표 3-4>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현황	89
<표 3-5> 성평등 목표별 여성수혜자 비율	89
<표 3-6> 일자리 사업 유형별 여성수혜자 비율	90
<표 3-7> 지자체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황	94
<표 3-8> 주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	95
<표 3-9>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97
<표 3-10>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98
<표 3-11> 21세기여성CEO연합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99
<표 3-12>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100
<표 3-13>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100
<표 3-14>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101
<표 3-15>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102
<표 3-16> 주요 여성기업지원기관	103
<표 3-1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104
<표 3-18>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105

<표 3-19>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106
<표 3-20>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의 주요 지원사업 개요	107
<표 3-21> 중앙부처의 여성기업지원사업 구분	108
<표 3-22>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지원사업 구분	110
<표 3-23>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개요	112
<표 3-24>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성과	113
<표 3-25> 지역별 실전창업스쿨 교육 현황	113
<표 3-26> 여성창업경진대외 지원사업 개요	114
<표 3-27> 여성창업경진대외 지역별 참가 현황	115
<표 3-28> 여성창업경진대외 지원사업 성과	116
<표 3-29>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개요	116
<표 3-30>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성과	117
<표 3-31>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참가자 현황	118
<표 3-32>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119
<표 3-3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현황	120
<표 3-3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121
<표 3-35>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121
<표 3-3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123
<표 3-37>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개요	123
<표 3-38>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성과	124
<표 3-39>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 개요	125
<표 3-40>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 성과	125
<표 3-41>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126
<표 3-42>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성과	127
<표 3-43>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사업 개요	128

<표 3-44>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사업 성과	129
<표 3-45>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129
<표 3-46>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성과	130
<표 3-47>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사업 개요	131
<표 3-48>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사업 성과	131
<표 3-49>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132
<표 3-50>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133
<표 3-51>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 개요	134
<표 3-52>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	135
<표 3-53>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 개요	135
<표 3-54> 패션주얼리 전용관 운영사업 성과	136
<표 3-55>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운영사업 성과	137
<표 3-5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138
<표 3-5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139
<표 3-58>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140
<표 3-59> 16개 시·도 공공기관 구매실적	141
<표 3-60>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개요	142
<표 3-6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성과	143
<표 3-62>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144
<표 3-63>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145
<표 3-64>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146
<표 3-65>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147
<표 3-66>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지원사업 개요	148
<표 3-67>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지원사업 성과	149
<표 3-68>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149

<표 3-69>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150
<표 3-70>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151
<표 3-71>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	152
<표 3-72>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153
<표 3-73>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154
<표 3-74>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개요	154
<표 3-75>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계획 현황	155
<표 3-76>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계획 내역	156
<표 3-77>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성과	157
<표 3-78> 전국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157
<표 3-79> 전국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158
<표 3-80>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지원사업 개요	159
<표 3-81>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지원사업 성과	159
<표 3-82>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 개요	160
<표 3-8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보육실 및 업계현황	161
<표 3-8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개요	162
<표 3-8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성과	163
<표 3-86>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 개요	163
<표 3-87>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 성과	164
<표 3-88>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	165
<표 3-89> (주)영타운FS 일반현황	168
<표 3-90> (주)금호글로벌 일반현황	171
<표 3-91> (주)아이에코 일반현황	173
<표 3-92> 크리자인 일반현황	176
<표 3-93> (주)가람UCT 일반현황	178

<표 3-94> (주)엘큐어 일반현황	180
<표 3-95> 아이앤컴바인 일반현황	182
<표 3-96> 오가닉코튼DIY 일반현황	185
<표 3-97> 미국 WBC 현황	188
<표 3-98> 창업트레이닝 및 멘토링 시스템 운영 현황	199
<표 3-99> 여성기업 관련 지원정책의 국내외 비교 분석	204
<표 4-1> 여성 사업계의 산업별 분포	215
<표 4-2> 2011년 미국 여성을 위한 비즈니스 아이템 Top 10	217
<표 4-3> 2011년 10대 최고 창업아이디어	218
<표 4-4> 2008년 일본의 여성창업 아이템 Top 10	220
<표 4-5> 2009년 중국의 여성창업 유망업종	222
<표 4-6> 예비창업자 조사 개요	223
<표 4-7> 예비창업자가 준비 중인 창업유형	224
<표 4-8> 예비창업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창업자금 규모	224
<표 4-9> 창업유형별 여성창업 적합아이템 순위(상위 10가지)	225
<표 4-10> 여성기업인들이 생각하는 여성창업 적합업종	226
<표 4-11>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적합분야	229
<표 4-12>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234
<표 4-13>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	236
<표 4-14> 주요지역 소상공인진흥원 창업교육	237
<표 4-15> 단계별 학습체계도(안)	239
<표 4-16> 창업모델 체험교육 과정(예시)	240
<표 4-17>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본부 단계별 학습체계	242
<표 4-18>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본부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242
<표 4-19> 여성전문융합지원팀 구성(안)	246

<표 4-20> 여성기업인의 학력별 사업성과 비교	248
<표 4-21> 국내 전문학교 현황	253
<표 4-22> 현 사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254
<표 4-23> 전업주부로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254
<표 4-2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보육실수 현황	254
<표 4-25>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현황	255
<표 4-26> 창업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중요도 평가(입주 대상자 설문결과) ..	257
<표 4-27>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누적 현황	264
<표 4-28> 창업자금 지원 사례	266
<표 4-29> NPD사업관련 각 기관별 주요 역할	274
<표 4-30>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예시)	277
<표 4-31> 중소기업 수출실적	280
<표 4-32> 수출 중소기업체 수 현황	281
<표 4-33> 수출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여성 제조기업)	281
<표 4-34>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	282
<표 4-35> 서울통상지원센터 통상관련 상담분야 및 일정	285
<표 4-36> 여성기업인의 불리한 점에 대해 느끼는 정도	286
<표 4-37> 여성경제인협회 회원으로서 기대되는 혜택(중복응답)	287
<표 4-38> 교육 및 연수참가 집단별 경영성과 비교	287
<표 4-39>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위지 비교	294
<표 4-40> WBENC Southwest의 여성기업 확인 수수료	307
<표 4-41> 한국과 미국의 여성기업 확인제도 비교	309
<표 4-42> 국내 각 기관의 인증심사 비교	311
<표 4-43> 미국과 한국의 유망여성기업 시상식 비교분석	313
<표 4-44> 시스템 구축대상 및 범위	317

<표 4-4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년도 중점연구사업	319
<표 4-46> 여성기업정책연구원 단계별 추진내용	322
<표 4-47> 조직기능	323
<표 4-48> 정부기관 산하 여성기업 관련 단계 현황	327
<표 4-49> 지역 전략 산업 및 연고 산업	334
<표 4-50> 벤처기업협회 회원구분 및 회비	337

그림 목 차

<그림 1-1> OECD 주요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15~64세)	22
<그림 1-2> 아·태지역의 여성기업 성장률	28
<그림 2-1> 여성기업인의 창업유형	44
<그림 2-2> 창업준비기간 현황	47
<그림 2-3> 현 사업체의 대표를 맡기 전 종사한 직업	48
<그림 2-4> 창업이전과 창업업종의 연관성	49
<그림 2-5>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52
<그림 2-6> 창업초기 애로사항(1)	54
<그림 2-7> 창업초기 애로사항 (2)	55
<그림 2-8>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56
<그림 2-9> 중소기업/여성기업 간 조직형태 비교	59
<그림 2-10> 대표자의 전공분야	62
<그림 2-11> 제품의 핵심적인 경쟁력(제조업)	65
<그림 2-12> 남성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67
<그림 2-13> 기업활동 애로사항	69
<그림 2-14> 여성기업이 취약한 마케팅 분야	69
<그림 2-15> 시장정보 수집능력 애로	70
<그림 2-16> 모기업 납품거래 시 애로사항	71
<그림 2-17>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실시 여부	72
<그림 2-18> 직원 교육(훈련) 내용	72
<그림 2-19> 여성경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	75

<그림 2-20> 여성경영자 교육에 적합한 방법	75
<그림 2-21> 대기업과 여성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78
<그림 3-1> 중소기업청 여성기업관련 지원사업	91
<그림 3-2> 실전창업스쿨 지원사업 프로세스	112
<그림 3-3>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115
<그림 3-4>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117
<그림 3-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센터 입주프로세스	119
<그림 3-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122
<그림 3-7>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프로세스	124
<그림 3-8> 여성발명진흥 지원사업(여성발명경진대회)의 프로세스	125
<그림 3-9>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프로세스	126
<그림 3-10> 여성기업제품 온라인 지원사업 프로세스	128
<그림 3-1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130
<그림 3-12>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사업 프로세스	131
<그림 3-13>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132
<그림 3-14>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 프로세스	134
<그림 3-15>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사업 프로세스	136
<그림 3-1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사이트운영 프로세스 ·	138
<그림 3-1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홍보 브로슈어 제작 프로세스	139
<그림 3-18>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142
<그림 3-19>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144
<그림 3-20>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146
<그림 3-21>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지원사업 프로세스	148

<그림 3-22>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150
<그림 3-23>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프로세스	152
<그림 3-24>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153
<그림 3-25> 여성CEO MBA 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155
<그림 3-26> 전국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158
<그림 3-27>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지원사업 프로세스	159
<그림 3-28>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사업 프로세스	160
<그림 3-2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프로세스	162
<그림 3-30>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 프로세스	164
<그림 4-1> 여성기업 발전과제와 전략	209
<그림 4-2> 생활기업형 여성창업 표준모델 발굴 및 창업 촉진 프로세스 ...	233
<그림 4-3>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본부 교육체계도	241
<그림 4-4> 여성창업사관학교 운영방안	247
<그림 4-5> 여대생 창업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251
<그림 4-6>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 동기	260
<그림 4-7> 여성가장의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	260
<그림 4-8>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필요성	261
<그림 4-9>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조달경로 종합	262
<그림 4-10>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점(증복응답)	263
<그림 4-11> 여성가장의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264
<그림 4-12> 여성가장 창업자금 희망하는 적정 대출금액	265
<그림 4-13> 여성창업 홍보강화 추진 프로세스	269
<그림 4-14> 기업활동 애로사항	271
<그림 4-15> 마케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분야	272

<그림 4-16> NPD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273
<그림 4-17> 서비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276
<그림 4-18> 공공구매 MAS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279
<그림 4-19> 中企 기술 융복합 세미나 추진 프로세스	290
<그림 4-20> 여성CEO 교육 추진 프로세스	291
<그림 4-21> 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293
<그림 4-22> 여성기업 건강수준별 맞춤지원 프로세스	296
<그림 4-23> 사업전환 촉진 프로세스	297
<그림 4-24> 우리나라의 여성기업확인 신청절차	305
<그림 4-25> 여성기업 통합 정보망 구축사업 추진목표	316
<그림 4-26>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추이 및 운용자산 현황	325
<그림 4-2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현 조직도	329
<그림 4-28>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조직도(개선안)	330

2011 여성기업 백서

발 행 인 : 전수혜

편 집 인 : 전수혜

발 행 일 : 2012년 2월

발 행 처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수행기관 : 맥스경영컨설팅(주)

인 쇄 : 한울 (042-255-0445)

본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중소기업청에 있습니다. 아울러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청 「2011 여성기업 백서」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